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유해미·김지현·박은정·송신영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저 자

유해미, 김지현, 박은정, 송신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94-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양육자가 배려와 지지를 받는 사회적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적인 예로 201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노키즈존’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을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역 및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식당이나 카페의 아동 출입 제한이나 금지 문제에서 나아가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이 배제되거나 불편이 야기되는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하여 18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14년부터 2023년에 걸친 소셜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아동친화 운영 사례도 분석하였다. 이로써 아동과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가 편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응의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안하고, 공공장소의 유형별로 세부과제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아동이 존중받고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아동권리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요약	1
I. 서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2. 연구내용	26
3. 연구방법과 추진절차	27
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40
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와 대응 경과	45
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47
2. 유관 입법 및 규제 동향	56
3. ‘노키즈존’ 관련 이슈 및 논쟁점	63
I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 분석	79
1. 분석 개요	81
2.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88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	97
4. 소결	119
IV. 사례분석	123
1.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례	125
2.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사례	139
3. 소결	160
V.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 및 경험과 요구	163
1. 일반국민의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165
2.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171
3. 유자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개선요구	207

4. 일반국민의 사회적 대응에 관한 인식과 요구	231
5. 소결	237
VI. 정책 제언	241
1. 요약 및 종합	243
2. 사회적 대응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전략	250
3. 사회적 기반의 조성 방안	253
4. 세부 과제	264
참고문헌	273
Abstract	283
부록	285
부록 1. 설문조사표: 일반국민 대상	285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305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청년용	312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 공무원용	320
부록 5. 사례조사 질문지: 운영자용	330



표 목차

〈표 I-3-1〉 설문조사 문항	31
〈표 I-3-2〉 설문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32
〈표 I-3-3〉 설문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_초등 이하 자녀 가구	33
〈표 I-3-4〉 심층면담 대상 및 규모와 조사내용	35
〈표 I-3-5〉 심층면담 일정 및 참여자 일반적 특징: 유자녀 가구	35
〈표 I-3-6〉 심층면담 일정 및 참여자 일반적 특징: 청년층	36
〈표 I-3-7〉 사례조사 대상 및 일정: 아동친화 운영 관련	38
〈표 II-3-1〉 노키즈존 운영업체의 주요 특성(2023)	64
〈표 II-3-2〉 노키즈존 운영 형태(2023)	64
〈표 II-3-3〉 노키즈존 사업장의 개선요구(1+2순위)(2023)	68
〈표 II-3-4〉 노키즈존 도입 배경(2023)	73
〈표 II-3-5〉 노키즈존 논쟁 관련 인식: 기본권 침해 vs. 과잉 조치(2019/2023)	75
〈표 II-3-6〉 노키즈존 논쟁 관련 우선 고려 대상(2019/2023)	76
〈표 II-3-7〉 노키즈존 논쟁 관련 우선 고려 사항: 고객의 행복 추구권 vs. 아동의 기본권(2019/2023)	77
〈표 II-3-8〉 노키즈존 관련 핵심 쟁점(2023)	78
〈표 III-1-1〉 소셜 빅데이터 수집 키워드 개요	81
〈표 III-1-2〉 데이터 정제 키워드(불용어) 및 문서 주제	82
〈표 III-1-3〉 채널별 전체 문서량 추이(2014-2023)	86
〈표 III-1-4〉 주제별 문서수(2014-2023)	88
〈표 III-2-1〉 아동 관련 화제어 Top 20: 2014년 vs. 2023년	89
〈표 III-2-2〉 뉴스 기사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 관련 인식(전체 기간)	91
〈표 III-2-3〉 소셜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 관련 인식(전체 기간) ..	91
〈표 III-2-4〉 아동권리 관련 화제어 Top 20: 2014년 vs. 2023년	95
〈표 III-2-5〉 뉴스 기사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권리 관련 문서(2014 -2023)	96
〈표 III-2-6〉 소셜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권리 관련 문서(2014-2023)	97
〈표 III-3-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화제어 Top 20: 2014년 vs.	

2023년	100
〈표 III-3-2〉 뉴스 기사의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2014-2023)	102
〈표 III-3-3〉 소셜의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2014-2023)	102
〈표 III-3-4〉 양육자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14년	114
〈표 III-3-5〉 양육자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23년	116
〈표 III-3-6〉 일반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14년	117
〈표 III-3-7〉 일반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23년	118
〈표 IV-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 관련 조례안 비교	130
〈표 IV-1-2〉 서울 성동구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사업 개요	131
〈표 IV-1-3〉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추진 과정	134
〈표 IV-1-4〉 부산 금정구 ‘에스키즈존’ 추진 과정	138
〈표 IV-1-5〉 부산 금정구 ‘에스키즈존’ 지정기준표	139
〈표 V-1-1〉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_일반국민: 전체	166
〈표 V-1-2〉 아동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66
〈표 V-1-3〉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_일반국민: 전체	167
〈표 V-1-4〉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68
〈표 V-1-5〉 아동권리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169
〈표 V-1-6〉 아동권리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70
〈표 V-2-1〉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포용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171
〈표 V-2-2〉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_일반국민: 전체	172
〈표 V-2-3〉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73
〈표 V-2-4〉 차별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전체	174
〈표 V-2-5〉 차별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74
〈표 V-2-6〉 한국사회의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_ 일반국민: 전체	176
〈표 V-2-7〉 한국사회의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76
〈표 V-2-8〉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전체	178

〈표 V-2-9〉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179
〈표 V-2-10〉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엄마를 별레에 비유한 표현	180
〈표 V-2-11〉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	180
〈표 V-2-12〉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전체	181
〈표 V-2-13〉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182
〈표 V-2-14〉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엄마를 별레에 비유한 표현	183
〈표 V-2-15〉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 자에 대한 표현	184
〈표 V-2-16〉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_ 일반국민: 전체	185
〈표 V-2-17〉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한국사회의 인식_ 일반국민: 전체	186
〈표 V-2-18〉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_일반 국민: 주요 변인별	187
〈표 V-2-19〉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한국사회의 인식_ 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88
〈표 V-2-20〉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기피 및 혐오표현 경험 여부_일반국민: 전체	189
〈표 V-2-21〉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기피 및 혐오표현 유경험 비율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190
〈표 V-2-22〉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유경험 비율(중복응답)	192
〈표 V-2-23〉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불편한 경험_일반국민 (중복응답)	195
〈표 V-2-24〉 노키즈존 인지 여부_일반국민	197
〈표 V-2-25〉 노키즈존 이용 여부_일반국민	198
〈표 V-2-26〉 노키즈존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199
〈표 V-2-27〉 노키즈존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200

〈표 V-2-28〉 노키즈존 도입 배경 관련성 정도_일반국민: 전체	201
〈표 V-2-29〉 노키즈존 도입 배경 관련성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202
〈표 V-2-30〉 노키즈존의 필요성 인식_일반국민	205
〈표 V-3-1〉 자녀의 훈육 또는 통제 관련 역량 인식_초등 이하 자녀 가구 ..	207
〈표 V-3-2〉 공공장소의 자녀 훈육 관련 어려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208
〈표 V-3-3〉 공공장소에서 자녀 훈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10
〈표 V-3-4〉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불편 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11
〈표 V-3-5〉 공공장소 유형별 자녀 동반시 불편사항(중복응답)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12
〈표 V-3-6〉 공공장소 유형별 자녀 동반 시 불편사항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14
〈표 V-3-7〉 공공장소 유형별 불편사항(중복응답)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15
〈표 V-3-8〉 초등 이하 자녀 공공장소 동반 시 적대감을 느낀 표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16
〈표 V-3-9〉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출입/이용 제한 및 방문 포기 유경험 비율: 주요 변인별	217
〈표 V-3-10〉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노키즈존 사전확인 여부	218
〈표 V-3-11〉 키즈존 인지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21
〈표 V-3-12〉 웰컴키즈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21
〈표 V-3-13〉 케어키즈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22
〈표 V-3-14〉 노페어런츠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	222
〈표 V-3-15〉 오케이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 방문 시 도움받은 내용(중복응답)_ 초등 이하 자녀 가구	224
〈표 V-3-16〉 한국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225
〈표 V-3-17〉 한국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25
〈표 V-3-18〉 공공장소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경험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226
〈표 V-3-19〉 공공장소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유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227

〈표 V-3-20〉 초등 이하 자녀와 공공장소 이용 시 조치의 필요도 인식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28
〈표 V-3-21〉 초등 이하 자녀와 공공장소 이용 시 요구되는 추가 조치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30
〈표 V-4-1〉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231
〈표 V-4-2〉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233
〈표 V-4-3〉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응_일반 국민: 전체	234
〈표 V-4-4〉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응_일반 국민: 주요 변인별	235
〈표 VI-3-1〉 주요국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254
〈표 VI-3-2〉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관련 법안 및 조항	255
〈표 VI-3-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예방 관련 아동기본법안 및 조항 ..	257
〈표 VI-3-4〉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사업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258
〈표 VI-3-5〉 충북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60
〈표 VI-3-6〉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연계 관련 규정: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시)	261
〈표 VI-3-7〉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연계 관련 규정: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시)	263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절차 및 추진체계	39
[그림 I-3-2] 연구 분석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원인 분석	39
[그림 I-4-1] 연구범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분석 영역 및 범위	41
[그림 I-4-2]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대응의 수준 및 방식	42
[그림 II-1-1] 공공장소 내 만13세 미만 아동으로 인한 불편 경험 여부(2023)	52
[그림 II-1-2] 공공장소 내 만13세 미만 아동으로 인한 불편 경험 장소: 기혼 유자녀(2023)	52
[그림 II-3-1] 노키즈존 운영 제한 연령(2023)	65
[그림 II-3-2] 개업 시 노키즈존 운영 결정 사유(1+2순위)(2023)	66
[그림 II-3-3] 노키즈존 변경 운영 사유(1+2순위)(2023)	66
[그림 II-3-4] 노키즈존 인지 여부(2021/2023)	69
[그림 II-3-5] 노키즈존 찬반 의견(2021/2023)	71
[그림 III-1-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과정	84
[그림 III-1-2] 채널별문서 발생 비중 추이(2014-2023)	86
[그림 III-1-3] 전체 문서 발생 추이(2014-2023)	87
[그림 III-2-1] 채널별 주요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 아동 관련 인식(전체 기간) ..	90
[그림 III-2-2] 아동권리 관련 문서 발생 추이: 뉴스 기사(2014-2023)	93
[그림 III-2-3] 아동권리 관련 문서 발생 추이: 소셜(2014-2023)	94
[그림 III-2-4] 채널별 주요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 아동권리 관련 문서(2014- 2023)	96
[그림 III-3-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 발생 추이: 뉴스 기사 (2014-2023)	98
[그림 III-3-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 발생 추이: 소셜 (2014-2023)	99
[그림 III-3-3] 채널별 주요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2014-2023)	101
[그림 III-3-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네트워크맵: 2014년 vs. 2023년	104
[그림 III-3-5]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네트워크맵: 2014년 (양육자 vs. 일반)	107

[그림 III-3-6]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네트워크맵: 2023년 (양육자 vs. 일반)	109
[그림 III-3-7]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감성분석	110
[그림 III-3-8]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부정 문서 워드 클라우드 : 2014년 vs. 2023년	111
[그림 III-3-9]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워드 클라우드: 양육자 vs. 일반	112
[그림 IV-1-1]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 인증 스티커	126
[그림 IV-1-2]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 이용 안내문	127
[그림 IV-1-3] 서울 성동구의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슐랭' 지정 절차	132
[그림 IV-1-4] 서울 성동구의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슐랭' 아이사랑 맛집 포스터	132
[그림 IV-1-5] 부산시 동래구의 '웰컴키즈존' 인증 스티커	136
[그림 IV-1-6] 부산시 동래구의 '웰컴키즈존' 영업자 준수사항	136
[그림 IV-1-7] 부산시 금정구의 '에스키즈존' 인증 스티커	139
[그림 IV-2-1] 전주시청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141
[그림 IV-2-2] 부산 금정구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어린이열람실	146
[그림 V-2-1]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과 한국사회의 인식_일반국민: 비교	185
[그림 V-2-2]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유경험 비율_일반국민	191
[그림 V-2-3] 노키즈존 필요성 인식_일반국민	204
[그림 V-3-1]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불편 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211
[그림 V-3-2]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출입/이용 제한 및 방문 포기 유경험 비율: 전체	216
[그림 V-3-3] 키즈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220
[그림 V-3-4] 키즈존 이용 경험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223
[그림 VI-4-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대응 방향 및 주요 전략과 세부 과제	270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공공의 장소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지만, 노키즈존 등과 같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편의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됨.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중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에 주목하고, 심각성이 우려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중심으로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내용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차별 및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함.
- 사회적 대응으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해소에 관한 입법 동향의 가능성 및 한계점과 아동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관련된 조례(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를 살펴봄.
- 아동을 사회적 관계 및 참여에서 배제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목되는 ‘노키즈존’의 운영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 및 이슈를 파악함.
- 지난 10년간(2014~2023년)의 아동 및 아동권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
 - 주요 변인별(세대/성별/자녀 유무 등) 아동 및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유자녀(초등 이하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이용할 때 경험한 불편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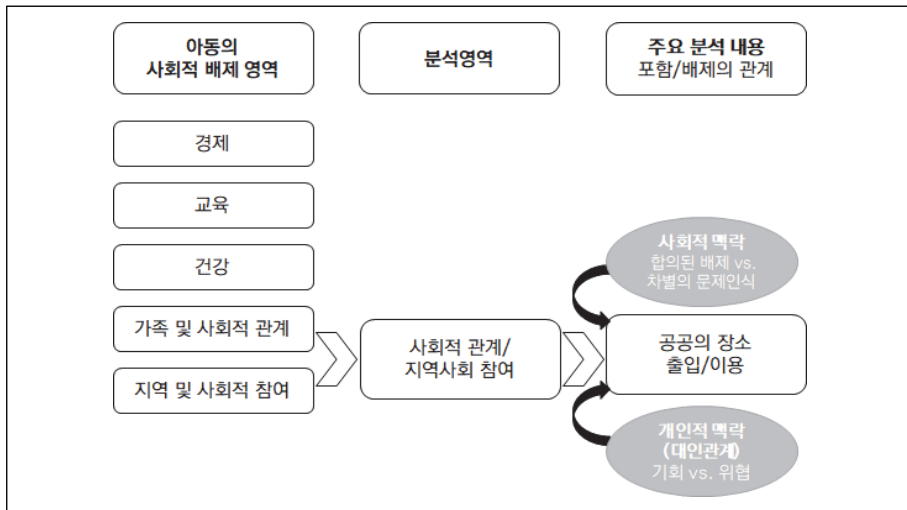
-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출입과 이용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아동 및 양육자를 배제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응 방향 및 세부과제를 제안함.

다. 연구방법 및 범위

- 주요 연구방법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사례조사임.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2014년부터 2023년에 걸쳐 아동권리 및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고, 양육자와 일반국민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함.
 -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아동에 대한 배제의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들 중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추가 할당하여 유자녀 가구의 애로사항 및 요구를 분석함.
 - 면담조사는 유자녀 가구(영아/유아/초등저학년)(총 12인), 청년층(20~39세 남녀)(총 12인)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사회적 대응 관련 인식을 분석함.
 - 사례조사는 1) 지방정부의 정책(서울,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금정구)과 2) 아동친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운영 사례(총 7사례)를 분석함.
-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¹⁾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 한하여 공공장소 및 공간을 위주로 진단함.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은 공적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사(私)인이 운영하는 영업장도 포함함.
 - 혐오는 적대적 감정이나 태도, 혐오표현은 이를 언어 즉,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 그리고 차별은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아동 특성을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부정적 인식을 포괄하여 진단하였음.

1) 국내외 아동청소년 사회적 배제 지표의 공통영역으로는 경제,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주관적 경험이 포함됨(김소은·정익중·정수정, 2016: 8).

[요약 그림 1] 연구범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분석 영역 및 범위



출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표의 영역은 김소은·정익중·정수정(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 요인. p.8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와 대응 경과

가. 유관 입법 및 규제 동향

□ 노키즈존 관련 조치 및 논의 경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²⁾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함.

2) 국가보고서는 각 나라의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5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칭함.

□ 유관 입법 동향

- 아동기본법안: 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주된 내용이므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구체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의의를 지닌다고 논의됨.

나. ‘노키즈존’ 관련 이슈 및 논쟁점

□ ‘노키즈존’ 업소 및 사업장 운영 실태 및 요구³⁾

- 노키즈존 운영 이유에 대해서는 개업 시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경우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남(김아름 외, 2023: 77).
-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의 개선요구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배상보험 처리 시 자기분담금 지원’(47.3%),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36.5%)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김아름 외, 2023: 89).

□ 노키즈존 관련 사회적 인식 및 요구⁴⁾

- 노키즈존 찬성 비율이 반대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2021년에 비해 2023년 찬성 의견이 80%에서 73%로 다소 감소하고, 반대 의견이 10%에서 18%로 증가함.
- 노키즈존이 생겨난 원인에 대한 2023년 조사결과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관과 무책임 때문에’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때문에’ 30.3% 순으로 응답함.
- 노키즈존은 ‘기본권 침해보다는 업장의 과잉조치다’라는 인식이 기본권 침해

3)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사업장(205개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4) 2021년과 2023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노키즈존 인식조사와 2019년과 2023년에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노키즈존(No Kids zone) 인식조사의 결과임.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23.1%로 2019년(20.2%)보다 해당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 분석

가. 분석 개요

□ 자료수집

- 전체 문서 수집에 사용된 단일 키워드는 ‘아동’, ‘어린이’, ‘아동정책’, ‘아동권리’이며, 복합 키워드로는 ‘아동/어린이’와 ‘차별/출입/금지’를 조합하여 투입하고, 해외여행 중 시설 이용 경험, 특정 아동학대 사진, 촉법소년, 학생인권조례, 교사 관련 사건 문서는 제거함.
- 수집 채널은 뉴스 기사, 포털 카페(네이버/다음), 커뮤니티, SNS(유튜브, 트위터) 총 4개 채널을 활용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간의 문서를 수집함.

□ 분석 방법

- 기초분석으로는 문서 발생량을 중심으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고, 포털 카페를 활용하여 양육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비교하여 담론의 차이를 파악함.
- 심층분석으로는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함.

□ 문서 발생량

- 10년 간의 문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문서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나.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 화제어 분석

- 2014년에는 ‘노키즈존’ 포함 문서가 796건에서 2023년 14,729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카페, 식당, 병원 등 구체적인 장소의 언급량 순위가 상승함.
- 2023년에는 ‘진상’, ‘교육’ 키워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맘충’, ‘혐오’ 키워드가 상위 20위에 등장하여 양육자 혐오 표현이 증가함.

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

□ 화제어 분석

- 식당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사건이나, 노키즈존/예스키즈존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뚜렷하게 증가함.
- 2014년에는 진상, 식당, 교육, 무개념, 노키즈존, 사건, 카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노키즈존, 진상, 카페, 교육, 식당, 사장, 맘충 순임.

□ 네트워크 분석

- 2014년 중심어는 식당, 출입금지, 반대, 찬성, 가정, 유치원, 논란, 마트, 장소, 건강 순으로 중심어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2023년 중심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키즈존, 민원, 병원, 고소, 가정, 결혼, 여행, 노키즈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의 특정 장소 이용 행태나 출입금지에 대한 논의가 2023년에는 보다 구체화되어, 행태나 양상을 지칭하는 용어나 신조어가 핵심 중심어를 구성하고 있으며, 노키즈존이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해서는 ‘아동권리 존중’과 ‘업주의 자유’라는 상반된 관점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임.

□ 감성분석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4년에는 긍정이 31.4%, 부정이 56.5%, 중립이 12.0%로 나타나며, 2023년에는 2014년 대비 긍정 비율이 감소하고 부정 비율이 증가하여 해당 문서 중 64.5%가 부정적 문서임.
- 2023년 양육자와 일반 포털 카페를 비교하면, 양육자 카페의 문서에서 부정 비율이 53.2%로 일반 카페 44.3%보다 높게 나타남.

□ 토픽 모델링(LDA) 분석

- 양육자 카페의 경우 2014년 토픽 수는 총 5개이며, 1번 토픽(21.8%)은 ‘노키즈존 피해 경험 및 양육자 무개념 행동’으로 분석되며, 2023년 토픽 수는 총 8개이며, 1번 토픽(29.8%)인 ‘보육교육기관의 갑질 부모’ 토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 카페의 경우 2014년 토픽 수는 총 6개이며, 1번 토픽(20.9%)은 ‘양육자 비하와 편견’으로, 진상, 무개념, 쓰레기 등의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일반 카페의 1번 토픽은 ‘아동권리와 보호’, 지자체별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NGO 단체나 아동권리 보장원 등에서 실시한 캠페인 등에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됨.

- 2023년에 일반 카페에서는 2014년에 비해 직접적인 여성 양육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하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젠더 갈등의 심화나 혐오 문화가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라. 소결

-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노키즈존을 위주로 문서량이 급증하며, 노키즈존이 2023년에도 주요 화제어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은 양육자에 대한 혐오와 관련이 높고,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양육자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됨.
-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에서 제기된 담론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입장과 상반된 입장이 공존함을 알 수 있음.
 - 공통된 담론은 노키즈존 등 아동의 배제의 원인이 단지 아동의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라는 점과 아동을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 양육자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눈치가 보이고, 사과를 해야 하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반면, 일반국민은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적대감을 지닌 입장과 부당한 차별로 인식하고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존함.
- 시기별로는 아동에 대한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사례분석

가.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례

-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키즈존' 사업
 - 2022년 12월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 동반 외출이 즐거

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장은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2023년부터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함.

- 노키즈존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소에서 아이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예스키즈존을 따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노키즈존을 당연시하여 아동 차별의 인식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됨.

□ 서울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 2023년 5월에 마련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4년 8월 현재 시립 체육시설 9개소⁵⁾와 시립 문화시설 2개소⁶⁾에서 실시하고 있음.

□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 기존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등으로 그 방향성을 전환하여 수정 가결됨.

□ 기초 지자체 사례로는 다음 3개 지역을 다룸.

- 서울 성동구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아이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하고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함.
-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사업: 아동 동반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을 대상으로 방문심사를 거쳐 ‘웰컴키즈존’을 선정함.
- 부산 금정구 ‘금정 예스키즈존’ 사업: 아이동반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 음식점을 발굴하여 ‘금정 예스키즈존’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함.

5)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잠충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야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빙상장

6)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나.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사례

□ 공공청사: 전주시청

- 2019년 6월에 노송광장에 어린이의 자연친화적인 정서와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돌입하였으며, 광장의 일부를 소규모 문화 행사가 가능한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쉼터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을 운영함.
- 공공기관의 공간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됨.

□ 도서관: 부산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 소규모로 운영하는 단층 구조의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어린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아동 방문객을 위해 좌식 공간으로 아동 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온돌 기능이 있는 마루바닥(좌식)을 설치함.
- 어린 아동의 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 특성에 대한 성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 아동의 도서관 이용예절 교육, 자녀 동반 양육자의 도서관 이용예절 준수, 운영자의 아동과 성인 이용객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중재 노력(안내사항 고지 등) 등이 강조됨.

□ 식당1: 대기업

- V식당은 아동 식사 메뉴를 구비하고, 어린이 의자, 식기, 아기 침대 등을 비치하며, 놀이방 등 아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해당 공간에 어린이 매트나 색칠놀이 도구 등을 구비하여 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
- 지원요구로는 아동친화적 매장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및 공공 사이트에 해당 정보의 게시 등이 제기됨.

□ 식당2: 개인사업자

- B식당은 아동의 출입 허용에 대한 공지는 자녀 동반 시 식당 이용 제한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아동 동반 출입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양육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지원요구는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법적 장치로서 체계적인 민원 대응 및 법률적 조치 등이 제기됨.

□ 여가문화시설: 미술관/공연장/경기장

- 수원시립미술관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관람객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영 공간에 별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함.
- M컴퍼니(공연장)는 모든 아동이 클래식 공연의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소극장 실내악 축제인 '위클리클래식 페스티벌'이라는 전국 지역의 소형 클래식 공연장, 갤러리, 피아노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기획함.
- 고척스카이돔(경기장)은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제'를 시행하고 '유아동반 가족석'을 제공하고 있음.

다. 소결

- 지방정부 사업은 노키즈존 확산을 예방하고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동권리가 보다 부각되는 방향성이 요구됨.
-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키즈존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업소의 안심보험 제도와 민원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방안 등이 요구됨.
- 지방정부의 키즈존 사업의 적용범위는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 한정되므로 적용범위를 다양한 공공장소 및 공간으로 확장하고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함.

5.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 및 경험과 요구

가. 일반국민의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아동이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3%로 조사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사회적 활동 및 참여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3%에 달하는 반면, ‘아동 자신만의 견해를 지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8.6%에 그침.

-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행동(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선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놀이권을 보장하며,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항목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아동이 부모의 지시에 따르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나.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 사회적 배제와 관련되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관계에 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그 결과 타인을 배려하는 데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 특히 사회적 신뢰도가 관련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관련되는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일반국민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평균 4.5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4.4점) 순으로 높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4.0점과 3.9점에 그침.

□ 나이에 따른 차별 인식

- 일반국민에게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경제적 지위(소득 등)에 따른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4.0점(5점 만점)과 3.9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이에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3.3점에 그침.

□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5점 척

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 자녀(초등 이하)를 동반한 여성양육자에 대해 평균 3.1점으로, 남성(2.6점)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어린 아동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은 2.9점으로 조사됨.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이나 양육자에 언급되는 표현의 사회적 허용에 대해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55.1%인 반면, '초보자를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비율이 59.3%로 조사됨.
- 혐오표현에 대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62.7%로 가장 높고,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 37.2%,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8.0%로 조사됨.

□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경험

- 개인의 인식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가운데, 한국사회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한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74.8%(평균 3.9점, 5점 만점)로 높게 나타나고,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한 비율은 33.7%(3.0점)로 조사됨.
-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 15.8%,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함)' 15.2%,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 불편감이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다' 9.8% 순으로 조사됨.
-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중복응답)은 식당과 음식점 50.5%, 카페 24.3%, 마트(시장, 쇼핑몰, 백화점)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순으로 조사됨.
-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2%로 다수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에 그치며, '노키즈존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이용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조사됨.
-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5점

- (5점 만점)이고,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3.4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에 대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에 대해서는 평균 4.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와 관련이 있다’를 등장 배경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공히 3.7점 순으로 나타남.
 -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간에 한하여 노키즈존 운영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다수였고,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조사됨.

다. 유아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개선요구

□ 자녀 훈육의 어려움과 공공장소의 부모 역량

-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평소에 자녀를 훈육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1.9%(평균 3.2점, 5점 만점)로 조사되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조사됨.

□ 공공장소의 자녀 동반 시 어려움

- 최근 1년 이내 공공장소에서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카페와 식당에서 30.5%와 3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화관 22.6%, 도서관 19.3%, 대중교통 18.2%, 박물관이나 미술관 14.3% 순으로 조사됨.
- 최근 1년 이내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할 때, 출입/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봐 이용이나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식당이나 음식점 34.1%, 카페 32.1%, 영화관 23.3%, 도서관 19.3%, 대중교통 16.4%, 미술관과 박물관 15.0% 순으로

조사됨.

- 최근 1년 이내 자녀와 동반하여 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고, 대부분 확인하는 비율은 23.1%로 확인하지 않는 비율(29.8%)과 유사한 수준임.
-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배려하거나 환대하는 오케이존 등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케이키즈존' 31.6%, '웰컴키즈존' 26.9%, '케어키즈존' 22.4%, '노페어런츠존' 13.5% 순으로 조사됨.
- '키즈존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오케이키즈존'과 '웰컴키즈존'은 56.7%, '케어키즈존'과 '노페어런츠존'은 53.6%로 조사됨.

□ 아동 존중 및 양육친화 환경 관련 인식

-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와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이 54.3%(평균 3.4점, 5점 만점)와 50.5%(3.4점)로 절반 이상의 양육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 최근 1년 이내에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64.3%,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42.8%,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40.8% 순으로 조사됨.

□ 공공장소 이용 시 지원요구

-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한다' 평균 3.9점(5점 만점). '업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등)를 강화한다'와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웰컴키즈존 등)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가 공히 3.7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라. 일반국민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인식과 요구

□ 공공장소의 아동 존중 및 양육자 배려에 대한 인식

-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평균 3.9점(5점 만점),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와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공히 3.8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공공장소의 아동 존중 및 양육자 배려에 대한 인식

-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다’에 대한 중요도가 공히 평균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한다’ 4.1점으로 조사됨.

마. 소결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여 명확한 이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아동에 대한 공공장소의 배제는 아동의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파악되므로 아동 혐오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어린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인식보다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 사회적 대응의 방향으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양육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대체로 높은 지지를 보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장소 이용 시 불편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인식은 주로 여성 양육자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지며,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됨.

-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간 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부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6. 정책 제언

가. 요약 및 종합

-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
 - 영유아 발달에 대한 높은 수용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 어린 아동에 대한 기피 현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피나 혐오의 대상은 문제행동을 하는 초등학생을 적절히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양육자로 파악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문제행동을 하는 초등학생과 타인을 배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한 배제라고 진단되나, 여성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이해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서 일반국민은 아동을 미성숙하고 통제와 제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
 -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짐.
 - 우리 사회가 남성 양육자에 비해 여성 양육자에 대해 더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고(평균 3.4점, 5점 만점), '공공장소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에 달하고,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8%로 조사됨.
 -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 또는 컨디션,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양육기술의 부족 등으로 조사되므로,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원인을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주의를 요함.

- 일반국민이 이타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수준이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고 판단되어 양육친화적인 환경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됨.

□ 공공장소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포괄 범위 확장

- 공공장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장소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주민 등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부각함.
- 아동 존중 및 양육친화적 공공장소의 개념 확장: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진단은 단지 출입 허용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아동친화적인 환경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아동 배제의 장소 및 공간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대응: 자녀동반 양육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은 식당이나 카페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장소나 공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불편사항이 제기되므로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확장하고 세분화된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사회적 대응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전략

□ 기본 방향과 목표

-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아동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공공장소 및 공간의 운영이 요구됨.
- 양육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됨.
- 공공의 장소나 공간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어울리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모든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허용하되, 아동보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아동 특성에 부합하는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
- 공공장소를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전략

- 아동 존중과 양육자 배려 관련 우수사례의 확산
- 모든 연령대를 위한 열린 공간의 확충을 통한 아동 배제의 극복
-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의 연계를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경험의 확장을 위한 민관협력과 지역 자원 연계 강화
- 노키즈존의 사회적 대응: 차별금지과 아동보호 기준 마련
- 공공장소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아동 존중 및 배려 조치 마련

다. 사회적 기반의 조성 방안

- 아동의 권리 강화와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와 구제조치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 아동의 권리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
- 아동친화업소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 관련 사항을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제안함.
- 아동 및 양육자 배려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아동친화업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모색
- 아동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기업의 활동이 어린이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

4. 세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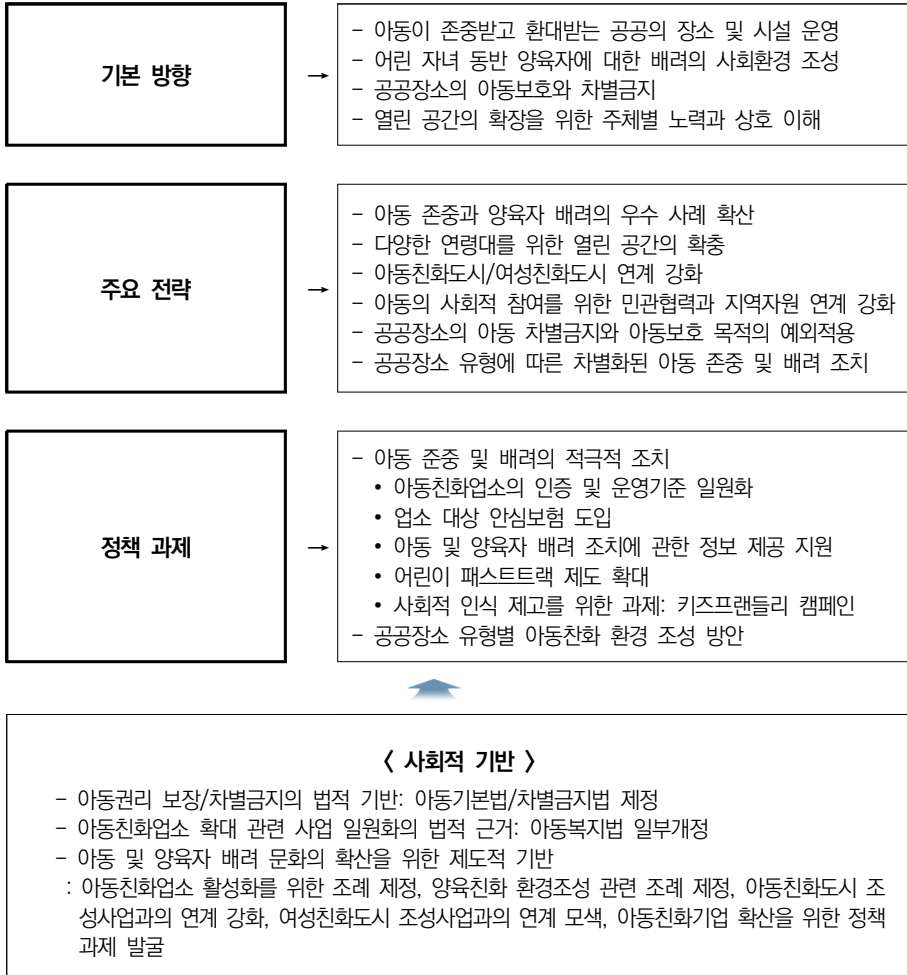
- 아동 존중 및 배려의 적극적 조치
 - 아동친화업소(식당/카페 등) 인증 및 운영기준 일원화: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사업 명칭을 고안하고(가칭: 위드키즈),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이나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동친화 인증 기준: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위생청결관리, 아동 배려조치 공지 등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고, 인증 업체 또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체 정보의 공시 등 홍보를 지원하고, 편의용품 제공 등을 고려함.
- 아동친화 인증업소의 준수사항: 아동 이용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배려, 인증 표찰 부착,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기준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업소 대상 정부 안심보험 도입: 음식점이나 카페의 업주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동 및 양육자 배려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양육자가 아동 배려 물품이나 시설 등 조치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당 등 업소나 공공시설 입구에 부착하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함.
-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확대 및 요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되, 아동 동반 양육자가 우선적으로 입장함에 따라 그 외 이용자의 이용 기회가 제약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함.

□ 공공장소의 유형별 아동친화 환경조성 방안

-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다양한 연령의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을 추구하기에 적합하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놀이터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어린 아동을 위한 설비 즉, 어린 아동을 위한 공간을 분리하되, 온돌 기능을 갖춘 좌식 공간으로 구성하고, 아동을 위한 공연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술관: 미술관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이 미술관을 놀이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을 발굴하여 어린 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문 해설자 진행을 편성하며, 공연 시작 전에 아동 및 양육자의 공연 예절, 과 다른 이용객 대상 어린 고객에 대해 미리 공지함.

[요약 그림 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대응 방향 및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



I

서론

- 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과 추진절차
- 0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I. 서론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절차 및 추진 체계, 그리고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명료화하고,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이 발달 특성이 이해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진단이 기존의 빈곤 등 경제적 차원에서 최근 들어 사회적 관계 등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고는 있으나, 특히 어린 아동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으로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기회가 박탈되고 배제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된다(김소은·정익중·정수정, 2016: 4).

사회적 배제가 장소와 시간이라는 상황적 요인 속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참여와 권한 등 관계적 이슈를 담고 있는 다차원적인 박탈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공공의 장소는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는 ‘제1의 장소’인 가정과 ‘제2의 장소’인 일터 이외에 ‘제3의 장소’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아동에게 남겨진 것이 고립이라고 우려하였다(레이 올든버그·김보영 옮김, 2019: 368). 아동의 사회적 고립은 가족이 더 이상 사회와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모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이웃과의 교류가 줄면서 아동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레이 올든버그는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

간관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본능적으로 적응하고 기쁨과 평안을 느낀다고 인식하면서 이는 성인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긴장을 풀고 웃을 때 느끼는 충족감과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레이 올든버그·김보영 옮김, 2019: 8). 이러한 지적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제3의 장소'에 해당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서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동을 사회성을 습득하거나 예절을 배우는 등 교육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시민 참여의 기반으로 기능하는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나이를 이유로 이들 공간에서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1년 11월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협약」에서 아동은 가족적 환경과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7). 최근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초저출산의 극복을 위해 거액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노키즈존(No Kids Zone)' 영업장이 성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노키즈존에 비판하는 자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3. 6. 26.,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AKR20230626068900009>, 2023. 2. 18. 인출).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배제가 개인적 맥락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맥락에서 차별적 요소를 내포함을 말해준다. 노키즈존에 대해 2017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 행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점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업시설 이용 시의 나이 제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그러나 이후로도 노키즈존은 가파르게 늘어서 2023년에도 유사한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매일경제, 2023. 8. 29.,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16925>, 2024. 2. 28. 인출).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들 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서는 아동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을 지정하여 양육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서울시 보도자료, 2022: 1-2), 제주도에서는 2023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배제에 관한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2023년 8월에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의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제안에 대해 같은 해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키즈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양육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데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관계부처 합동, 2020: 28)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가칭)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3: 7), 그 실천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 존중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및 제도의 변화가 지체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는 아동의 참여와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그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25). 게다가 ‘아동종합실태조사’가 매 3년마다 실시되고, 매년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사회적 관계 및 참여의 측면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지 식당이나 카페 등에 한정하지 말고, 그 범위를 전반적인 공공의 장소나 공간으로 확장하여 아동이 배제되는 현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구조적인 이해 즉,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포용이나 관용의 수준 등 관련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나이에 따른 금지구역 설정은 단지 아동에 대한 차별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대상을 배제하여 공공의 장소에서 자신과 다른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세계일보, 2024. 2. 20., https://www.segye.com/view/20240220503617?utm_source=dable, 2023. 2. 27. 인출). 같은 기사에서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의 노키즈존 현상에 대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현상이 고령층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상호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과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젊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하였다(연합뉴스, 2023. 6. 26., <http://www.yna.co.kr/view/AKR20230626068900009>, 2023. 2. 18. 인출).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중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 및 사회적 참여에 주목하고, 그 심각성이 우려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빈곤(경제), 교육, 건강 부문에서 비해 아동의 사회적 관계나 참여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미흡하였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때 아동의 사회적 배제는 그 특성상 부모를 포함하고(김소은 외, 2016: 5),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적 대응으로는 아동권리와 아동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주체들 즉, 아동 및 양육자, 다른 이용객, 영업장 업주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차별 및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권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영역, 혐오 및 차별의 개념과 개입의 수준 및 방식에 관하여 다루었다. 또한 혐오 인식의 확산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다차원적 사회적 원인에 관련 실태조사(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둘째, 사회적 대응으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해소에 관한 입법 동향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의 기반으로 아동친화 지역사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등)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키즈존'에 대하여 제기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검토하였다.

셋째, 아동을 사회적 관계 및 참여에서 배제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목되는 ‘노키즈존’의 운영 실태와 사회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 및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돌보는 사람 즉,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포함하므로 관련 논쟁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넷째, 아동 및 아동권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의 이슈와 화제어 및 연관어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담론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주제어의 변화를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로 구분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 대상별로 그 원인 및 대응을 달리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별(세대/성별/자녀 유무 등) 아동 및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자녀(초등 이하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이용할 때 경험한 불편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일곱째,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출입 및 이용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아동 및 양육자를 배제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의 복합적인 원인에 부합하여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과 추진절차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방법과 추진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과 혐오 인식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연구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이들 간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의 함의를 파악하고, 하위 분석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배제의 차원 중에서 주된 현상으로 지목되는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업체의 운영 실태와 일반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나) 입법 동향 및 주요 경과 검토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 차원에서 유관 입법 동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2) 소셜 빅데이터 분석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아동 및 아동권리, 아동 및 양육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가시화하고, 사회적 담론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패턴이나 상관성을 밝혀내어 사회적 의견이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며 특정 대상이나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Hassani, Beneki, Unger, Mazinani & Yeganegi, 2020; Lee & Choi, 2020; 오수경·양은별·김서현·정익중, 2023: 363에서 재인용).

한편 이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현상의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의 일부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가) 분석 자료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그리고 양육자를 동반한 혐오 등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 대해 뉴스 기사(미디어), 포털, 커뮤니티, SNS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특히 양육자의 배제 경험을 일반국민과 구분하여 가시화하기 위해서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 분석 시기

‘노키즈존’이 신조어로 등장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에서 2023년에 걸쳐 분석하고, 주요 화제어 또는 연관어, 주제어의 변화와 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특정 년도 즉, 2014년과 2023년 자료에 한정하여 그 추이 변화에 주목하였다.

다) 분석 내용

1)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관련 주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양육자와 일반국민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비교하고 그 함의를 모색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인식, 아동 배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경험과 개선요구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규모와 표본설계,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및 규모: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200명
- 표본설계

①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일반국민 조사

※ 층화변수: 연령, 성, 권역 / 연령별·성별·권역별 비례할당)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② 부스터 표본: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 200가구 추가 할당

※ 초등 이하 자녀 유무가 주요 변인이므로 추가 할당⁸⁾

※ 전체 1,200표본 중 초등 이하 자녀 가구의 비중이 약10~13%⁹⁾선으로 추정되므로 부스터 표본 추가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조사업체 패널 활용, 연령 등 할당에 따른 무작위)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을 일반국민과 유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고, 세부 항목은 <표 I-3-1>에 제시하였다.

- 일반국민: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아동관, 아동의 문제행동 수용성, 아동권리 인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인식(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아동 차별과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배제 및 차별 인식과 불편 경험, 노키즈존의 인지 및 이용 경험과 필요성 인식, 사회적 대응의 방향 및 과제
- 유자녀 가구(초등 이하): 아동 및 양육자의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경험과 개선 요구(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불편 경험과 지원요구 등)

7) 설문조사 표본설계(안)

단위: 명

권역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86	74	77	72	91	86	100	97	146	171	1,000
서울	16	18	16	16	16	16	16	17	25	31	187
인천/경기	28	24	27	24	32	30	33	32	42	48	320
대전/세종/충청	10	7	8	8	10	8	11	11	16	18	107
광주/전라	9	6	6	6	9	9	11	9	16	19	100
대구/경북	8	6	6	6	8	8	10	10	16	19	97
부산/울산/경남	12	10	11	9	13	12	15	14	24	28	148
강원/제주	3	3	3	3	3	3	4	4	7	8	41

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5월 기준

- 8) 2023년에 엠브레인이 실시한 '2023 노키즈존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장소내 자녀 동반 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취학 아동이 29.0%, 초등 저학년 아동 36.9%, 초등 고학년 45.3%에 그치므로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경험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마크로밀 엠브레인, 2023).
- 9)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표본조사 '인구부문' 결과, 20세 이상 여성(43,957,547명) 중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이면서 초등 이하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49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13.3%(5,863,745명)임.

〈표 I-3-1〉 설문조사 문항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조사대상	
			일반 국민	유자녀 가구
I.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영유아 문제행동의 수용 여부 • 아동권리 존중 인식 수준 		◎	◎
II. 아동의 사회적 배제 및 차별 인식	사회적 포용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요인: 사회적 관계 및 교류 • 구조적 요인: 이타주의 가치관,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	◎
	아동 및 양육자 차별 및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와 출산에 따른 차별 인식의 상대적 중요도 인식 •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차별 인식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배제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편견 여부 •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거부, 기피 인식 여부 • 아동 및 양육자로 인한 불편 경험 여부 •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 여부 		
	노키즈존 이용 경험 /도입 배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키즈존 인지 및 이용 경험 여부 • 노키즈존 현상에 대한 인식: 아동 차별 등의 정도 등 • 노키즈존 도입 배경 관련 인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인식 부족 등 • 노키즈존 필요성 여부 및 해당 장소 		
III. 아동 및 양육자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요구	부모 역량 /양육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훈육 관련 어려움 정도 • 자녀 훈육 관련 요인: 양육스트레스 정도 등 	-	◎
	공공의 장소 및 공간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및 사회적 공간의 유형별 불편 여부 및 세부 불편사항 • 혐오표현 노출 경험 여부 • 아동친화업소 인지 및 이용 경험 및 도움 내용 • 자녀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주관적 인식 • 자녀 동반 시 지원요구 		
IV. 아동의 사회적 배제 관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등의 정도 • 공공장소 및 사회적 공간의 배제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응의 중요도 인식 		◎	◎
응답가구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성별 • 자녀 변인: 자녀 유무, 총 자녀수, 출생순위 • 응답자 취업 여부 및 직업 • 결혼상태/맞벌이 여부 • 가구소득 • 거주지역 규모 		◎	◎

주: 아동에 대한 인식_황현주(2017).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의 영유아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일부 내용 수정 및 재구성.
 아동 문제행동 수용도_Dinah Jayson. 신의진 번역(2005). 어린이의 문제 행동.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아동권리 인식_“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초 인식도 조사”(양옥경·정익중·배은경·임세와·최서경·유진주, 2017). p. 1
 27. 일부 항목 수정 및 재구성.
 부모 양육스트레스_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2023). 한 눈에 보는 영유아 발달지원 가이드북. 일부 내용 재구성.
 사회통합 관련 질문_“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3)의 일부 항목 수정 및 재구성.
 차별 인식 관련 질문_“인권의식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23)의 세부 항목 수정 및 재구성.

다) 참여자 일반적 특징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국민 조사의 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이 절반 수준으로 고르게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60대 까지 고르게 분포하며, 기혼자의 비율이 73.8%로 다수이고, 거주지역은 읍면지역 이 12.9%로 나타난다.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30.7%를 차지한다.

〈표 I-3-2〉 설문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맞벌이 가구 여부	
남성	49.4 (593)	맞벌이 가구	45.9 (407)
여성	50.6 (607)	홀벌이 가구	45.2 (401)
연령		모두 근로 안함	8.9 (79)
20~29세	14.3 (171)	직업	
30~39세	15.2 (182)	농림어업 종사자	0.6 (7)
40~49세	18.0 (216)	자영업/개인사업	6.8 (82)
50~59세	19.8 (238)	판매/영업/서비스직	8.6 (104)
60세 이상	32.8 (393)	생산/기능/노무직	8.6 (103)
월평균 가구소득		사무/관리/전문직	38.7 (464)
300만원 이하	22.9 (275)	전업주부	19.9 (238)
301~500만원	33.9 (407)	학생	4.3 (51)
501~700만원	24.4 (293)	은퇴	7.3 (88)
700만원 이상	18.7 (224)	무직	4.1 (50)
결혼 여부		기타	1.1 (13)
미혼/비혼	19.2 (231)	거주지역1	
기혼(사실혼 포함)	73.8 (886)	대도시 지역	44.9 (539)
사별/이혼	6.9 (83)	중소도시 지역	42.2 (507)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읍면지역	12.9 (155)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0.7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69.3 (832)		
계(수)		100.0(1,200)	

주1: 맞벌이 가구는 부와 모가 모두(한부모 가구는 부 또는 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임.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포함됨.

주2: 가구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임.

주3: 거주지역 구분의 대도시는 광역시에 해당하며, 중소도시는 특례시와 세종시가 포함됨.

주4: 표에 제시된 결과는 가중치 적용되어 일부 수치는 총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혼자 기준이므로 총 사례수 다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다음으로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이 절반 정도로 유사하며,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48.2%와 37.7%이고, 20대 부모는 3.6%로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일반가구 전반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54.9%로 일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막내 자녀의 연령은 유아가 33.0%로 가장 높고,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영아의 비중은 유사한 수준이다.

〈표 I-3-3〉 설문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_초등 이하 자녀 가구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맞벌이 가구 여부	
남성	48.9 (218)	맞벌이 가구	54.9 (237)
여성	51.1 (228)	홀벌이 가구	44.9 (194)
연령		모두 근로 안함	0.2 (1)
20~29세	3.6 (16)	막내 자녀 출생순위	
30~39세	37.7 (168)	첫째 자녀	41.3 (184)
40~49세	48.2 (215)	둘째 자녀	49.3 (220)
50~59세	9.0 (40)	셋째 자녀 이상	9.4 (42)
60세 이상	1.6 (7)	막내 자녀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영아	21.7 (97)
300만원 이하	7.6 (34)	유아	33.0 (147)
301~500만원	38.1 (170)	초등 저학년	23.3 (104)
501~700만원	29.4 (131)	초등 고학년	22.0 (98)
700만원 이상	24.9 (111)		
계(수)		100.0(446)	

주1: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가 기준이므로 모든 응답자가 기혼자는 아님.

주2: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함. 자녀가 2자녀 이상 가구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함.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4) 면담조사

심층면담은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경험 및 개선요구를 심도 깊게 파악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대립적 의견과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¹⁰⁾

10) 2023년 매크로밀 엠브레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기혼 유자녀에서 가장 높고, 기혼 무자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3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노키즈

가) 조사대상 및 규모/조사내용

조사대상별로 조사의 규모와 선정기준,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1: 유자녀 가구 대상

- 조사대상 및 규모: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출입 및 이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가구 총 12인
 - ※ 할당: 자녀연령 그룹별(영아/유아/초등 저학년) 4인
 - ※ 공공장소 및 공간의 유형(식당/카페, 문화 및 여가시설, 대중교통 등)별 유경험자(불편이 우려되어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포함)
- 조사내용: 공공장소 등 자녀 동반 시 애로사항,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경험 및 세부내용, 자녀 훈육 관련 요인(양육스트레스 등)에 관한 의견, 개선 요구 등

□ 조사2: 청년층 대상(노키즈존 찬성/반대)

- 조사규모 및 할당: 노키즈존 찬성/반대 인식을 지닌 무자녀 20~30대 청년층(만 20~39세) 총 12인
 - ※ 할당1: 연령 및 성별(각 그룹별 6명)¹¹⁾
 - ※ 할당2: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르게 배분
- 조사내용: 어린 아동 및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인식, '노키즈존' 이용 경험 여부 및 찬반 사유,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에 관한 의견, 사회적 대응 관련 요구 등

존에 반대하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마크로밀 엠브레인, 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조사).

11) 심층면담_청년층(20~30대) 대상 할당(안)

단위: 명

그룹	20대	30대	합계
전체	6	6	12
1. 여성	3	3	6
2. 남성	3	3	6

〈표 I-3-4〉 심층면담 대상 및 규모와 조사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내용
유자녀 가구 12명 (아동 배제 유경험자) ※ 자녀 연령별 할당 - 영아 - 유아 - 초등저학년(1~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내 사회적 배제의 경험 및 육아의 어려움 - 온라인 상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및 배제 인식과 경험, 양육자로서의 의견 - 공공장소의 자녀 동반 시 사전 준비(태블릿, 간식 등 준비) 여부 및 세부내용, 자녀동반 외출의 어려움 여부 -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 자녀 훈육의 어려움 관련 요인(양육 스트레스, 양육기술 부족 등)에 관한 의견 - 공공장소 및 공간의 이용 시 도움 받은 내용과 지원요구
청년층: 총 12인 (노키즈존 찬반 할당) ※ 2개 그룹 성별 할당 - 20대 여성/30대 여성 - 20대 남성/30대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초등학생 이하) 및 양육자에 관한 인식: 1) 나의 생각, 2) 우리 사회의 인식에 관한 의견 - 노키즈존의 이용 경험과 찬반 사유: 등장 배경에 대한 인식 지정 필요 장소의 유형 및 해당 사유 등 - 노키즈존 이외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 자녀)이 있는 경우 불편 등에 관한 의견 - 온라인 상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맘충 등)에 관한 의견 -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개인적 고립감,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의식 등)에 관한 의견 - 사회적 대응 관련 동의 정도

나) 참여자 일반적 특징

면담조사는 총 5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자녀 가구의 참여자는 전원 여성이고, 유아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모두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가 참여하였으며, 자녀수는 1~2명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4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 가구로 고르게 분포한다.

〈표 I-3-5〉 심층면담 일정 및 참여자 일반적 특징: 유자녀 가구

면담 차수	일자	번호	연령 (만)	직업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만)	맞벌이 여부	월 평균 가구소득
1차 (영아 가구)	7.29	1	32세	육아휴직중	2명	2세	맞벌이	800만원 이상
		2	43세	무역업 사무직	1명	2세	맞벌이	800만원 이상
		3	28세	육아휴직중	2명	0세	맞벌이	800만원 이상
		4	37세	전업주부	1명	2세	홀벌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면담 차수	일자	번호	연령 (만)	직업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만)	맞벌이 여부	월 평균 가구소득
2차 (유아 가구)	7.29	1	41세	전업주부	2명	5세	홀벌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	39세	전업주부	2명	5세	홀벌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	29세	전업주부	1명	4세	홀벌이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	39세	전업주부	2명	5세	홀벌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차 (초1~3 가구)	7.30	1	41세	전업주부	2명	초등2	홀벌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	42세	전업주부	2명	초등1	홀벌이	800만원 이상
		3	47세	전업주부	1명	초등3	홀벌이	800만원 이상
		4	37세	프리랜서	1명	초등1	맞벌이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다음으로 청년층 참여자 중에서 기혼자는 여성의 경우는 2명, 남성의 경우는 1명이고, 전일제 근로자는 여성에서 3명, 남성에서 2명으로 나타나며, 미취업인 경우는 대학생으로 여성에서 2명, 남성에서 2명이다. 연령은 여성은 20~34세, 남성은 21~33세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표 I-3-6〉 심층면담 일정 및 참여자 일반적 특징: 청년층

면담 차수	일자	번호	연령 (만)	노키즈존 찬반 여부	경제활동 여부	결혼 여부	월 평균 가구소득
4차 (청년 /여성)	7.30	1	32세	찬성	전일제	기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32세	찬성	시간제	미혼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	22세	반대	미취업	미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	34세	찬성	전일제	기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5	29세	반대	전일제	미혼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	20세	반대	미취업	미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면담 차수	일자	번호	연령 (만)	노키즈존 찬반 여부	경제활동 여부	결혼 여부	월 평균 가구소득
5차 (청년 /남성)	7.31	1	32세	찬성	전일제	기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33세	반대	전일제	미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	24세	찬성	미취업	미혼	800만원 이상
		4	32세	반대	시간제	미혼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	21세	찬성	미취업	미혼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6	26세	반대	전일제	미혼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사례조사

사례조사는 지방정부의 사례와 공공장소 및 공간의 운영 사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및 규모와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정부 정책 및 입법 사례

- 조사대상

① 광역: 서울시, 제주도

② 기초: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금정구

- 조사내용: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기대효과,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전국적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등

□ 아동친화적 공공 공간의 운영 사례

- 조사대상: 공공청사(전주시청), 도서관(부산시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식당(대기업/개인사업자), 미술관(수원시립미술관), 공연장(M컴퍼니), 경기장(고척스카이돔)

- 조사내용: 아동친화 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아동친화 운영 주요내용,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중앙정부의 역할 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I-3-7〉 사례조사 대상 및 일정: 아동친화 운영 관련

번호	소속	참석자	방법	일시
1	전주시청	담당주무관	Zoom을 통한 화상면담	8/19(월) 11:00
2	부산 금정구청	담당팀장	서면 및 관련 자료 제공	-
3	V식당(C기업)	담당팀장	서면 및 관련 자료 제공	-
4	B식당	대표	Zoom을 통한 화상면담	8/14(목) 15:00
5	수원시립미술관	담당팀장	Zoom을 통한 화상면담	8/14(목) 18:00
6	M컴퍼니	대표	Zoom을 통한 화상면담	8/9(금) 14:00
7	서울시설공단(고척동)	담당팀장	서면 및 관련 자료 제공	-

6)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정책 제언의 방향성이 아동권리 존중과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세부 과제의 현실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 관련 법률 전문가, 아동권리 및 인권 보장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세이브더칠드런 등)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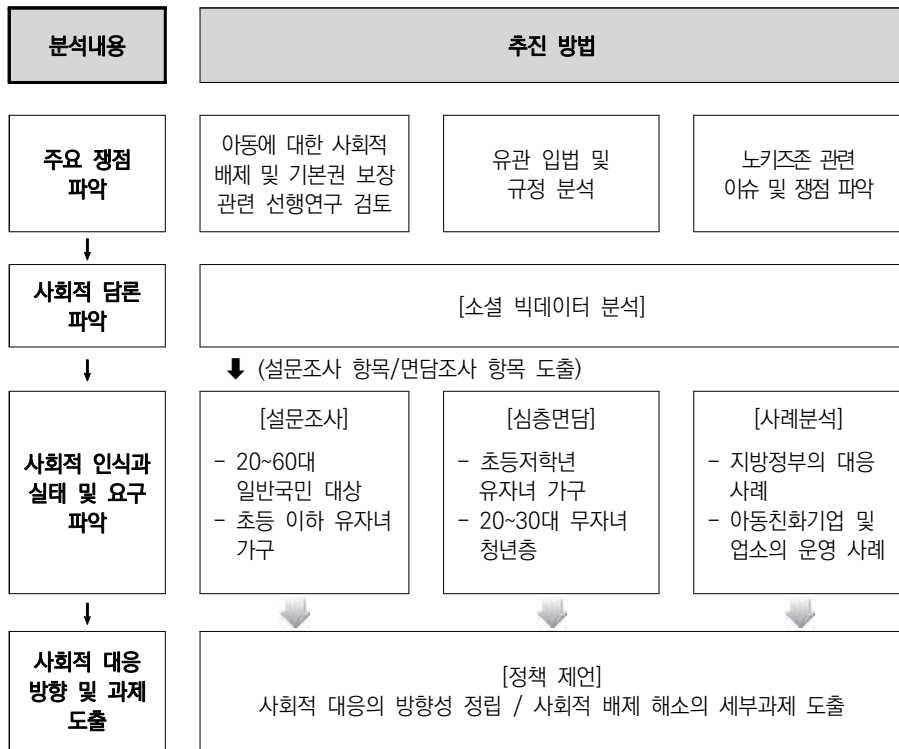
7) 정책 공모전 실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공공장소의 조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고(2024. 7. 15. ~ 2024. 8. 30.),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정책과제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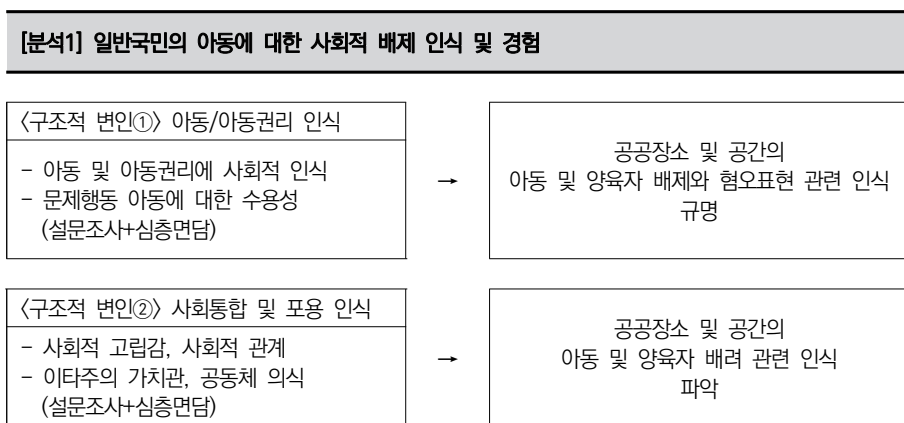
나. 연구 절차 및 범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절차 및 체계와 분석 내용을 이하 [그림 I-3-1]과 [그림 I-3-2]에서 제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 관련 항목과 유자녀 가구의 자녀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위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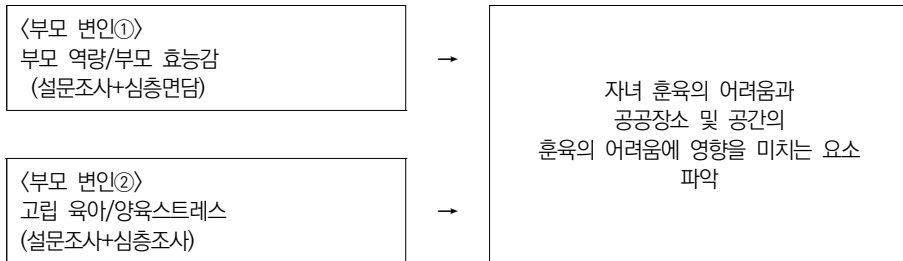
[그림 I-3-1] 연구절차 및 추진체계



[그림 I-3-2] 연구 분석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원인 분석



[분석2] 유아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인식 및 경험



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가.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¹²⁾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 한하여 공공장소 및 공간을 위주로 진단한다. 단, 이때 공공 공간은 식당이나 카페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제3의 장소’¹³⁾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출입이나 이용에 관하여 다룬다. 단,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은 운영 주체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는 공(公)적 자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곳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공적 부문의 운영 주체 이외에도 사(私)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은 공적 주체에 의한 운영되는 공공의 장소 이외에도 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에 의하면,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일터 또는 학교에 이어 목적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제3의 장소에는 도서관,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 교회, 시장, 카페, 식당, 카페, 이발소, 서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이 포함되며, 실제로 상업시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장소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경우는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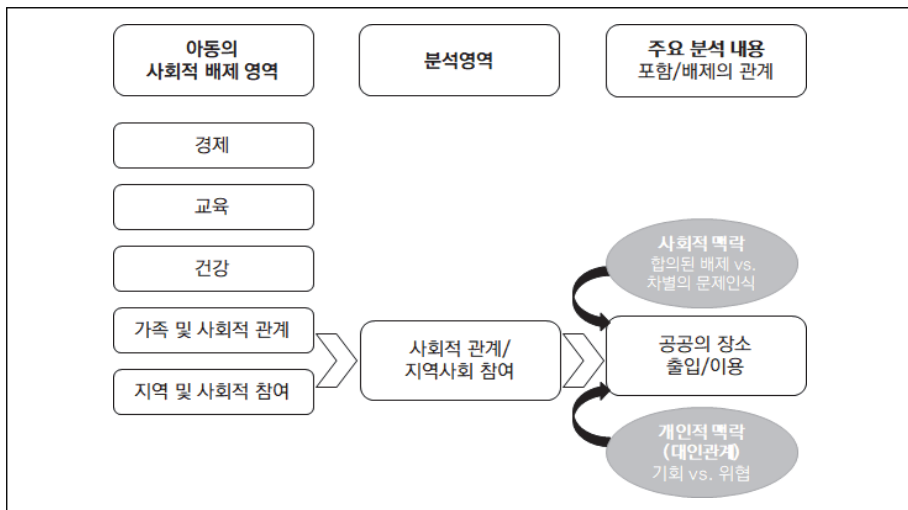
12) 국내외 아동청소년년 사회적 배제 지표의 공통영역으로는 경제,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주관적 경험에 포함됨(김소은 외, 2016: 8).

13) 레이 올덴버그에 의하면,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일터 또는 학교에 이어 목적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제3의 장소로서 도서관,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 교회, 시장, 카페, 식당, 카페, 이발소, 서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도 포함됨.

에 해당하는 제2의 장소가 교육 등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들 기관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그 원인 등 현상의 진단에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맥락이 모두 다루어져야 하므로 아동의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간의 출입 금지의 경우 그 적용은 「청소년보호법」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업소’¹⁴⁾를 제외한다.

이상의 연구범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이하의 [그림 I-4-1]과 같다.

[그림 I-4-1] 연구범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분석 영역 및 범위



출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표의 영역은 김소은·정익중·정수정(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 요인. p.8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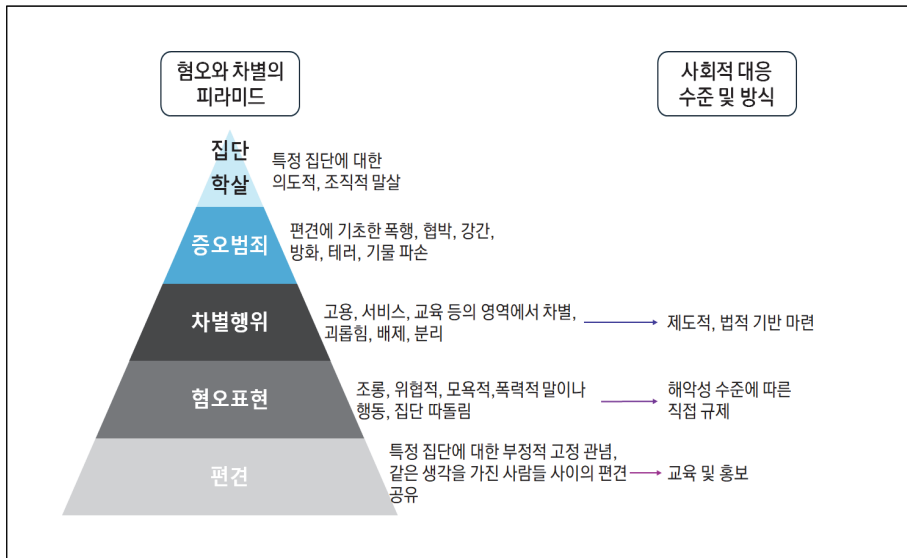
또한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은 이하 [그림 I-4-2]에서와 같이 그 차원이 다양하고, 피라미드의 위편으로 점차 심화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부정적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 청소년 출입 및 금지 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_1)~11)번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_청소년보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undefined>, (2024. 2. 20. 인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관념의 존재 여부, 혐오표현 노출 여부, 차별 및 배제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한다.

[그림 1-4-2]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대응의 수준 및 방식



자료: 혐오와 차별의 피라미드_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박성원(2023), p.8에서 재인용.

나. 용어 정의¹⁵⁾

이 연구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영역 중에서 이 연구의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관계 및 참여’는 가족 이외에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의 장소나 공간을 출입하여 불편이 없이 편하게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정의한다. 이때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지 출입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그 대상에 양육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다음으로 ‘차별’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를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15) ‘차별’과 ‘혐오표현’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법정조사로 실시하는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용어 정의를 토대로 개념화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2023: 8).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모욕·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동이나 양육자에 대한 편견에 의해 적의 또는 적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¹⁶⁾ 그 밖에도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아동의 고립’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레이 올든버그의 논의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어린이집 등 상시로 이용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나이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이 제한되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교류의 기회가 박탈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혐오는 적대적 감정이나 태도를 말하며, 혐오표현은 이를 언어 즉,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이고, 차별은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아동 특성을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부정적 인식 즉, 부당한 편견이나 혐오표현의 사용이 곧 아동의 차별이나 배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실상을 진단한다.

16) 대표적인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여성 혐오 표현), 된장녀(여성 혐오 표현), 한남충(남성 혐오 표현), 맘충(자녀가 있는 여성 혐오 표현), 툇딱(노인 혐오 표현) 등을 들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3: 8).

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와 대응 경과

- 0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02 유관 입법 및 규제 동향
- 03 '노키즈존' 관련 이슈 및 논쟁점

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와 대응 경과

제2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입법 동향 및 유관 규정을 살펴보고, 제도적 기반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며,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목되는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 및 이슈와 규제 관련 경과를 살펴보았다.

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아동관의 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인식

1) 아동의 정의와 아동관의 변화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태어나서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마무리되기 이전의 발달단계에 있는 연령층의 집단으로서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애주기를 발달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하면 출생부터 6세까지의 시기인 영·유아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를 아동기, 이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청소년기로 나누기도 한다. 법적으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달리 정의하며, 이 시기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어린이, 영유아, 미성년자, 청소년 등 다양하다. 유엔(UN)에서 제정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고, 일부 법률에서는 아동이란 용어 대신 미성년자로 사용되기도 한다(오서현·정기상, 2019).¹⁷⁾

이처럼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아동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아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시각은 원죄설에서 비롯된 사악한 아동(evil child)으로, 아동을 쉽게 유혹에 빠지고, 부모의 엄격한 양육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았다(Rogers & Rogers, 1992; 조복희, 2006: 12에서 재인용). 18세기 무렵에는 순진무구한 아동관(innocent

17) 현행법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

child)이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20세기에는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해 아동 중심적인 사상이 구축되며, Freud의 무의식의 아동관, Piaget의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아동관이 주요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조복희, 2006: 12-13).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그들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아동기를 별도의 발달단계로 구분하지 않던 시기에는 영유아가 지난 후부터는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아동의 발달상의 미숙함과 특별한 욕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기며 의무를 부여하였다. 15~17세기에 이르러서야 부모에게서 분리될 수는 있지만, 독립적 개체로 살아가기에는 부모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며 아동기 개념이 출현하였다.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아동기의 발견(Discovery of Childhood)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 시기를 전후로 아동에 대한 지위는 달라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동권리 인식은 미흡하여, 부모의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중산층에서는 성인 세계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졌지만, 빈민층에서는 유기, 학대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혼합 수용 등으로 아동의 높은 사망률이 문제 되기도 하였다(정익중·오정수, 2021: 58). 19세기에도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혹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사회운동과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정익중·오정수, 2021: 59). 현대에 접어들어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채택으로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동이 무한한 능력을 지

구분	연령기준	법률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어린이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영유아	출생 후 6세 미만	모자보건법
	6세 미만(취학 전)	영유아보육법
유아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민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

출처: 오서현·정기상(2020), pp.36-37; 정익중·오정수(2021), p.25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닌 존재로 인식되어 스스로 성장할 기회와 놀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과도한 교육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과잉보호와 가족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훈육 등 아동 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동관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와 아동기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온전한 독립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이 필요하다.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미숙함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주양육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아동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 상호교제가 필요한 관계적인 존재(정익중·오정수, 2021)로, 주변 사람들과 행하는 상호작용은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을 배우는 기회이다.

Erikson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사회적인 욕구와 능동적인 자아를 갖고 있으며, 각 시기마다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발달 과업을 지낸다. 18개월 전후부터는 자율성을 획득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수치감 또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독립하려는 욕구와 자기주장에 따른 행동이 많아지고, 12개월 전후의 시기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이며 시행 착오적인 탐색을 즐기며 활동 반경을 넓혀간다. 이 시기의 영아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울음이나 짜증, 행동으로 표현하며, 발달 전 영역에 걸친 이러한 영아기 특성은 ‘the terrible twos’라고 명명할 만큼 까다로운 시기이다.

4~5세가 되면 아동은 언어, 신체, 인지 발달이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빠르게 발달하고 이전 시기에 획득한 신뢰감과 자율성을 기초로 목적 지향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려 한다. 그러나 아직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자아 통제력이 미흡하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인지능력의 미성숙 또한 이 시기 아동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Piaget에 따르면, 유아기는 자아 중심적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지구조가 덜 발달한 시기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타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전진옥·전인옥, 2015: 40). 그러므로 양육자의 일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조복희·도현심·유가효, 2010: 33).

이에 비해 학령기에 접어들면 인지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아 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기능하게 된다(정익중·오정수, 2021: 112). 가정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다니며 또래 관계가 본격화되고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며,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한다. 이런 점에서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Bronfenbrenner에 의하면,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거리에 따라 여러 수준의 체계로 구분하였다. 즉, 부모나 형제, 가정환경, 또래 관계, 학교 등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미시체계, 미시체계 간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중간체계, 부모의 교육 및 재산, 사회계층, 부모의 직장, 사회관계망과 같은 외체계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관, 신념과 같은 거시체계도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회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공간에의 출입 제한 등은 아동의 자아 개념 및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접근의 필요성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경제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차원적 불리함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취약 집단 및 현상에 주목하는데 유용하다(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41). 장소와 시간이라는 상황적 요인 속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참여와 권한 등 관계적인 이슈를 담고 있으므로 다차원적 사회적 박탈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며(우경연, 2016: 91),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강신욱 외, 2005: 5).

또한 김안나 외(2008)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는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핵심 영역 이외에도 대상별로 고유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홍인옥·김태완 외, 2008: 264)¹⁸⁾. 또한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생산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였는데,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 지표는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이 지표는 관계성에 주목하여 사회구조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주목하여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안나 외, 2008: 27).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아동에 적용하는 데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소은 외, 2016: 4). 즉,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주류 등으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이므로, 아동의 사회적 배제는 아동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된다(김소은 외, 2016: 4). 또한 아동의 사회적 배제는 대개 아동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이거나 성인의 문화적 상황 관련 요인을 포함하므로,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논의할 시에는 부모의 사회적 배제를 포함해야 한다(Aber et al., 2002, 김소은 외, 2016: 4-5에서 재인용).

한편 미취학 아동도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배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서인·진경선, 2023: 104-105). 이 연구에서는 배제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아동들이 이를 시청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배제된 주인공의 기분이 더 슬플 것 같다고 답하고, 자신과 친구의 거리를 더 가깝게 그리는 것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사회적 배제에 대해 이해하고 피해자의 기분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소속 욕구가 증가함을 밝혔다(이서인·진경선, 2023: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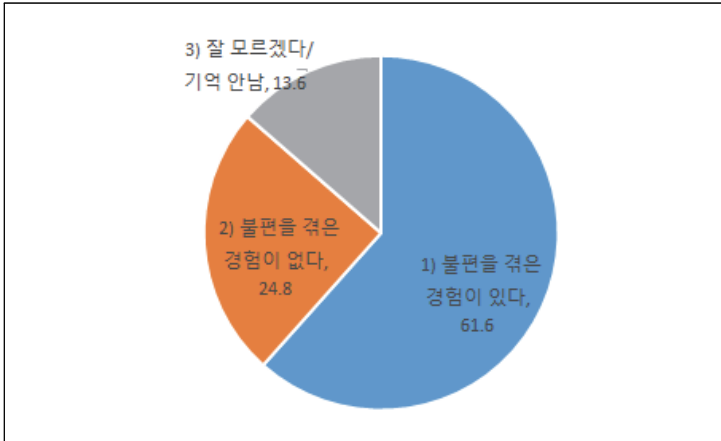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공공장소에서 만13세 이하 아동으로 불편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61.6%에 달하고, 유아녀 가구가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식당이나 카페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마크로밀 엠브레인, 2023)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I-1-1, 그림 II-1-2 참고).

18)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측정을 위한 고유지표는 1) 사교육비, 2) 학교생활 적응도, 3) 자존감 수준이 제기됨.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그림 II-1-1] 공공장소 내 만13세 미만 아동으로 인한 불편 경험 여부(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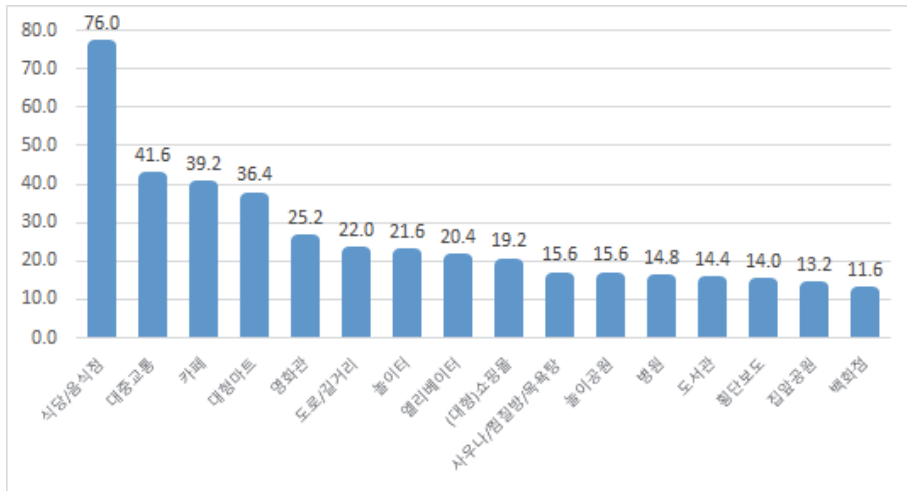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그림 II-1-2] 공공장소 내 만13세 미만 아동으로 인한 불편 경험 장소: 기혼 유자녀(2023)

단위: %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다. 혐오표현의 개념적 이해와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 관련 논의

1) 혐오 및 혐오표현과 차별 현상

혐오는 오래된 정서일 수 있으나, 혐오표현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차별 개념에서 비롯된다(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 2018: 13). 혐오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1997년 유럽회의 장관위원회가 내린 혐오표현에 대한 권고안으로 확인된다.¹⁹⁾ 이 권고안에서는 혐오표현이 인종적 증오 등 불관용에 근간을 두거나 차별과 적대감에 대한 표현이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협약 당사국 정부가 민법, 형법, 그리고 행정법 영역에서 혐오표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및 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및 권리와 상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이수연 외, 2018: 14-15). 한국에서 혐오표현은 2010년 무렵부터 온라인, 소셜미디어, 포털 등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전경옥·김영란·김현숙·황혜미, 2019: 3)

혐오표현의 핵심은 적대, 모욕, 적의, 비하, 조롱, 경시, 그리고 폭력과 선동 등의 포함 여부이다(이수연 외, 2018: 25). 특히 적대적 표현, 적의의 문제는 혐오를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이는 혐오라는 말이 종종 '싫어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에서 드러나는 적대성은 단지 싫어함과 같은 감정 표현이 아닌, 대상 집단에 관한 편견에 기반을 둔 적대성으로 해당 집단을 배척하는 강력한 사회적 무기가 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혐오의 원인과 적대의 여부 등이 중요하며, 표현의 결과로서 대상을 배척하고 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불거진 노키즈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맘충'이라는 표현은 엄마를 뜻하는 맘(mom)에 벌레 충(蟲)자를 붙인 것으로 모성을 혐오하고 어머니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인식된다(김도균·유보배, 2016: 12-13). 그 밖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키즈존 관련 빈도가 높은 10위 안에 드는 키워드에 혐오와 차별이 포함되어 해당 현상이 차별 및

19) Council of Europe's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97)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 2018: 13)

혐오 인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오수경 외, 2023: 369).

이처럼 혐오는 생활공동체 등에서 배제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상생활을 수행할 권리와 함께 그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한상희, 2019: 14). 혐오표현은 주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혐오 대상자의 어느 부분만을 추출하여 사회적으로 가공되는 속성을 지니지만, 소수자의 성격은 주요한 개념 요소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한상희, 2019: 17). 이는 대상 집단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거나 일상화된 차별 상황을 수용하고 대항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언급된다(한상희, 2019: 17).

그러므로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한상희, 2019: 19). 이처럼 혐오표현은 차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전경옥 외, 2019: 20), 혐오는 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이기도 하다(한상희, 2019: 13). 이런 측면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인터넷, 대중매체 다음으로 사회생활 공간으로 지목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2020: 21).

한편 혐오표현의 사회적 대응과 관련하여 혐오의 규제를 엄두에 두는 경우는 그 정의가 구체적이고 경계도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표현의 선동성 등을 기준으로 '수용적 혐오표현'과 '선동적 혐오표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이수연 외, 2018: 27). 이때 수용적 혐오표현은 인종 등 차별적 요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나, 타인의 비방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로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차별구제 행정 행위를 위해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된다. 이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그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 직접 규제하는 경우와 2) 교육 및 홍보 등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로 구분된다(한상희, 2019: 21). 또한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 외국 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바에 의하면(박성원, 2023), 간접차별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해야 하며, 돌봄 등의 차별 사유도 새롭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다(박성원, 2023: 27-28).

2) 혐오 확산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 인식의 추이

홍성수(2019)는 혐오의 확산 조건에 대해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전자로는 막연한 편견과 거부감, 집단 정체성이 강한 문화, 획일주의 문화, 외집단을 배제하는 중심 담론 등이 제시된다(홍성수, 2019: 8). 또한 혐오의 확산 조건으로는 경제적 맥락에서 불평등 구조, 허탈감, 열등감, 우울, 저성장 시대의 취약한 개인이 지목되고, 소극적 지지자의 경우는 현실에 대한 욕구 불만,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기 평가 등으로 인한 소극적 순응에 대해서도 논의된다(홍성수, 2019: 10). 이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status)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며, 인정(recognition)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참여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홍성수, 2019: 11).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동 존중과 양육자에 대한 배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이타주의 가치관’, ‘대인 신뢰도’, ‘사회적 관계망’을 들 수 있다. 우선 이타주의 가치관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3년에 93.5%로 지배적이었으나, 2023년에는 78.3%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76.2%에서 2023년에 66.4%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23_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69&upCd=11>, 2024. 4. 19. 인출). ‘대인 신뢰도’는 2013년에 72.2%였으나 2023년에는 52.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19~29세와 30~39세의 해당 응답률은 46.7%와 48.2%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통계청_사회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67&upCd=11>, 2024. 4. 19. 인출).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는 경우’에서 그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에 비해 2023년에 하락하여 각각 81.8%에서 79.8%, 74.7%에서 74%로 하락하였다(한국행

정연구원, 2023_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69&upCd=11>, 2024. 4. 19. 인출).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가 아동 및 양육자의 사회적 배제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2. 유관 입법 및 규제 동향

가. 노키즈존 관련 조치 및 논의 경과

‘노키즈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수단을 모색할 시의 주요 논점으로는 ① 어떤 법률에 근거할 것인가, ② 금지 의무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③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④ 규제 외에 어떤 정책적 수단을 함께 규정할 것인가 등이 제기된다(조덕상, 2023: 59). 이에 대해 유관 법률안의 가능성 및 한계점을 논의하면 이하와 같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 196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여 동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4). 협약은 아동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에서 커다란 전환을 강조한다. 즉, 아동을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독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하며, 권리 행사를 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에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아동기를 강조하고 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본다(이재연·황옥경·강현아·서영숙·이완정·구은미·정선아, 2018: 굿네이버스, 2019: 8에서 재인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하여 제출한 5-6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같은 해 10월에 개선과제 및 이행을 위한 최종권해를 발표하였다. 즉,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질문 목록을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받은 질의에 정부가 문서로 답변하고, 유

엔아동권리위원회와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최종견해를 표명하였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9). 여기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점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는지’가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15).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²⁰⁾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키즈존’이 결과적으로 아동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동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5월)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6).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늘어나는 노키즈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고, 한국이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김진, 2023: 72).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의 공공장소 출입 제한에 대해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라고 보고,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는 2016년과 2023년에 걸쳐 보고된다.

먼저 2016년에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식당으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한 차별이라고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영업장의 주인은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요구, 다른 고객들에 대한 피해 발생, 기물 파손, 부모들과의 충돌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하게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식당 입장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7: 1).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는

20) 국가보고서는 각 나라의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5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칭함.

결정을 내리면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6). 관련하여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5). 또한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 행위에 상응하여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5).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김정수, 2020: 29). 이들 결정이 비록 강제력이 없는 경고이기는 하나, 영업주 입장에서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수, 2020: 50).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3년에는 생후 100일인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3).

3)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기에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를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1).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에는 노키즈존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즉,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의 관리 방향은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고,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양육친화 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2). 이에 따라 캠페인을 통해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2).

나. 유관 입법 동향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 동향과 한계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안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1) 아동기본법안

‘노키즈존’ 등은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로서 우려되고 있으므로 아동 인권에 관한 기본법인 「아동기본법」을 통해 그 규제와 예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21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의안번호 제21756, 2023년 5월 2일 발의)과 양금희 의원(의안번호 21733, 2023년 4월 28일 발의)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안은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절차가 사실상 전부이고, 아동권리 옹호관이나 아동권리 ombuds 퍼슨에 의한 법적 조치가 한계를 지닌다고 우려된다(조덕상, 2023: 60).

또한 이상의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관련 법률의 연령이 증척되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보다 두터운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3a: 16-17), 이는 기본법 성격을 지닌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대상 아동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8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이를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박고은, 2023: 31).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나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노키즈존은 실정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고, 노키즈존을 영업 방침으로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장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논의된다(김정수, 2020: 50). 또한 혐오표현 방지의 해법으로 유엔은 거의 매년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박성원, 2023: 26).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련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인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주된 내용이고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가 미흡한 한계가 있어서 관련 제정안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20: 11).

‘노키즈존’ 등 아동의 출입 제한을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앞서 다룬 아동기본법안과 더불어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조덕상, 2023: 60-61).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116, 2020년 6월 29일 발의)과 권인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23330, 2021년 8월 31일 발의) 등이 발의된 바 있으며, 공통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관련 구제 절차를 마련해두었다.²¹⁾

21) 전자의 법률안에서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2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제51조에서 차별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후자의 법률안에서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자와 유사하게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제22조에서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제26조에서는 문화, 오락, 그 밖의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성별 등의 이유로 공급, 이용에서 배제,

이들 법률안은 앞서 다른 아동기본법안과 제주도 조례안과는 달리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한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제도 등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을 주목할 만하나, 이들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조덕상, 2023: 60). 즉,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업종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영업장의 실태를 조사 감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조덕상, 2023: 61).

한편 OECD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앞서 다른 제정안과 유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들이 다수 있고, 법률명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나이를 차별금지의 항목으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20: 8-11). 대표적으로 영국의 「평등법」(2006년)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규율을 명시하고, 동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금지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2006년)에서도 나이에 따른 동등 대우를 규정하고, 스웨덴의 「차별금지법」(2008년)에서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권법」(1977년)에서는 나이로 인해 서비스 등의 이용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에 대한 규율을 명시하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차별 의도를 암시, 표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하는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재현물을 공공에 출판 또는 제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20: 8-11).

3) 유관 법률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180, 2023년 7월 11일 발의)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46, 2021년 5월 17일 발의)을 들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친화업소 지정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위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전자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제41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해두었다.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36조의2 신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3b: 69).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동을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으므로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에서는 노키즈존과는 달리 긍정적 인식을 사회에 확산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다만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이 노키즈존의 반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아동금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입장 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3b: 70).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46)에서는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거 조항(제151조 신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발의된 바 있다(국회운영위원회, 2021).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2021)에서는 국회가 모성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국회운영위원회, 2021: 4). 다만, 동반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에 대해서는 영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증진에 대한 고려와 회의장 내 질서유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회의장의 출입 권한과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출입을 불허하는 입장이 논의되었다(국회운영위원회, 2021: 5-6).

4) 유관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아동친화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등 전국 155개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조례에는 아동친화적 공공시설의 조성 이외에 아동친화업소 지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3b: 70).

3. ‘노키즈존’ 관련 이슈 및 논쟁점

노키즈존은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2014년 7~8월경부터 등장하여 주로 음식점, 카페 등에서 운영되고,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업주의 영업할 권리 및 다른 고객 배려 등의 이유로 나이를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한다(오수경 외, 2023: 361-362). 특정 공간의 출입 제한이나 규제 시에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키즈존 매장은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한이나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노키즈존 운영 실태와 일반국민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다루었다.

가. ‘노키즈존’ 업소 및 사업장 운영 실태 및 요구²²⁾

2014년경부터 생겨난 노키즈존은 2017년 온라인상에서 ‘노키즈존’을 표시한 구글맵이 화제가 되어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왔지만, 실제 식당 방문 시 출입문 앞에 ‘노키즈존’인 것을 밝혀 출입을 불허하는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²³⁾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2023년에 노키즈존 업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에는 사업장 대표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 2023).

1)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의 특성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76.1%가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속하였고,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 기간은 5년 미만인 곳이 6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10년 미만이 27.3%로 나타났다. 또한 점주 연령은 30대가 41.5%, 40대가 21.0% 순으로 많았다(김아름 외, 2023: 65).

22) 해당 내용은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

23) 이태일리(2021.06.18.). “노키즈존인지 알려라도 주세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779011&memberNo=3939441&Type=VERTICAL> (2024. 2. 27. 인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II-3-1〉 노키즈존 운영업체의 주요 특성(2023)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 (205)	점주 연령	
사업장 형태		20대	9.3 (19)
음식점업	18.0 (37)	30대	41.5 (85)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	76.1 (156)	40대	21.0 (43)
애견 카페 등	3.9 (8)	50대	19.0 (39)
기타 업종*	2.0 (4)	60대	9.3 (19)
사업장 운영 기간		사업장 주요 고객 연령*	
5년 미만	64.9 (133)	20대	47.3 (97)
5~10년 미만	27.3 (56)	30대	67.3 (138)
10~15년 미만	4.9 (10)	40대	60.5 (124)
15~20년 미만	1.0 (2)	50대	33.7 (69)
20년 이상	2.0 (4)	60대	9.8 (20)

주1: '사업장 형태' 기타 응답은 '사업장 형태-세부'에서 '숙박업', '가족제품 중개업', '기타'에 해당함.

주2: '사업장 주요 고객 연령'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65.

〈표 IV-1-1〉 재구성.

2) 노키즈존 운영 제한 방식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 205곳 중 사업장의 전체 구역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곳은 62.4% 정도였고, 일부구역 및 시간, 상황만 제한하는 노키즈존도 37.6% 정도 차지하였다.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에서는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76.1%를 차지하나, 그중에서 46.8%는 일부 구역/시간/상황만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전체 구역 다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79.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김아름 외, 2023: 66-67).

〈표 II-3-2〉 노키즈존 운영 형태(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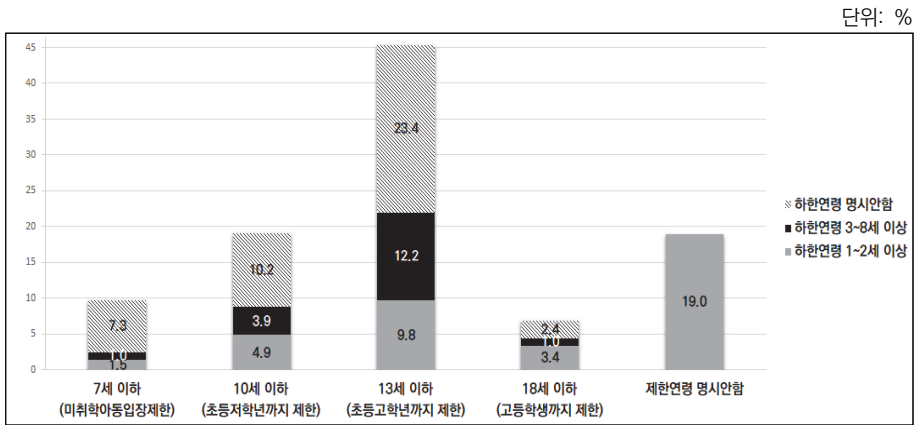
구분	전체 구역 노키즈존	일부구역/시간/상황만 노키즈존	계(수)
전체	62.4	37.6	100.0(205)
사업장 특성			
음식점업	89.2	10.8	100.0(37)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	53.2	46.8	100.0(156)
애견 카페 등	100.0	0.0	100.0(8)
기타 업종	100.0	0.0	100.0(4)
$\chi^2(df)$	24.179(3)*** ^(b)		
사업장 지역			
대도시	79.1	20.9	100.0(67)
중소도시	63.9	36.1	100.0(83)

구분	전체 구역 노키즈존	일부구역/시간/상황만 노키즈존	계(수)
읍면 $\chi^2(df)$	40.0	60.0	100.0(55)
		19.813(2)***	

주: 카이제곱 값의 (b)표기는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임.
 자료: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66-67.
 <표 IV-1-2> 재구성.

일부 조건만 노키즈존인 경우 노키즈존의 적용 연령은 13세 이하(초등고학년까지 제한)가 가장 많았고, 10세 이하(초등저학년까지 제한)가 그 다음을 이었다. 부분 노키즈존 운영의 경우 그 제한 공간으로는 '실내 특정구역'을 아동에게 제한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높았고, 옥상/루프탑 26.0%, 테라스석 또는 실내 좌석 전체를 제한한 경우가 각각 13.0%로 다음을 이었다(김아름 외, 2023: 69).

[그림 II-3-1] 노키즈존 운영 제한 연령(2023)



주: n=205.
 자료: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69.
 [그림 IV-1-1].

3) 노키즈존 운영 이유 및 노키즈존 공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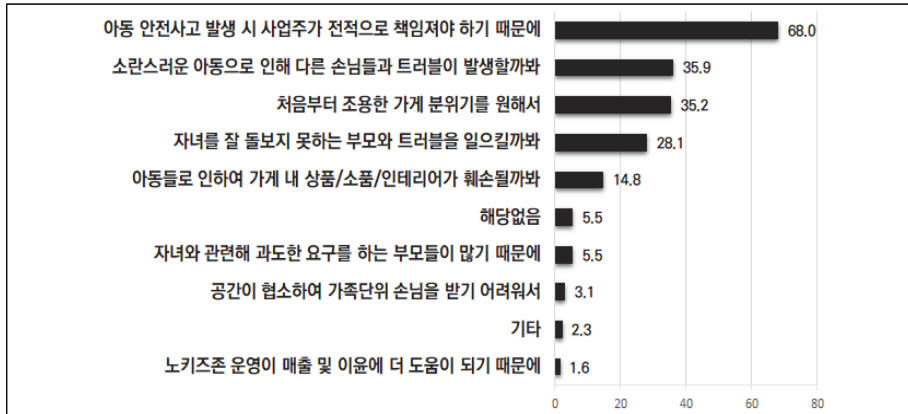
노키즈존 운영 이유는 개업 시부터 노키즈존 운영을 결심했는지, 운영 중 노키즈존으로 변경했는지에 따라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개업 시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경우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았고,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과 트러블이 생길까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가 그 다음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이었다(김아름 외, 2023: 77). 운영 중에 노키즈존으로 변경한 경우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트러블을 일으켜서’가 57.1%로 가장 높았고,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로 인하여’(42.9%),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해서’(42.9%)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아름 외, 2023: 79).

[그림 II-3-2] 개업 시 노키즈존 운영 결정 사유(1+2순위)(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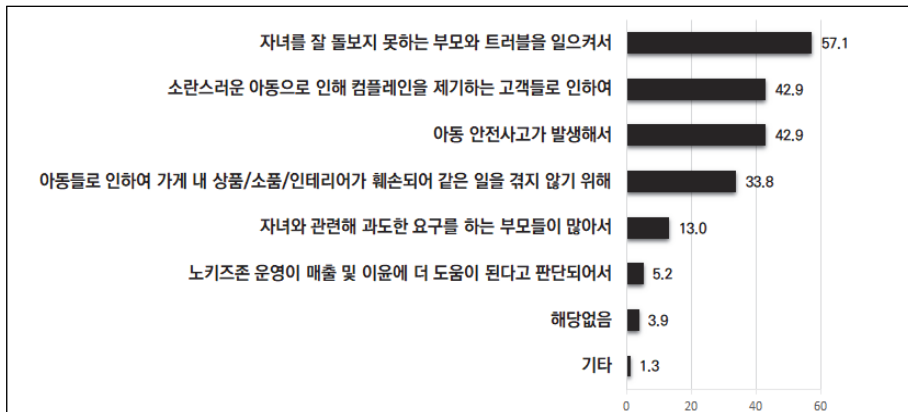


주: n=128.

자료: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7. [그림 IV-1-5].

[그림 II-3-3] 노키즈존 변경 운영 사유(1+2순위)(2023)

단위: %



주: n=77.

자료: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친화문화 조성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9. [그림 IV-1-6].

또한 노키즈존 운영에 있어서 아동을 동반한 고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사업장 외부에는 노키즈존임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장에 입장 후에야 노키즈존임을 알게 되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였다.²⁴⁾ 사업주에 의하면 가게 앞/웹게시판/지도 어플 등에 노키즈존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94.1%가 노키즈존을 명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복수응답 기준으로 노키즈존을 명시한 경우(n=193)의 80.3%가 가게 입구 알림판에 알렸다고 하였고, 71.5%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에 공지'에 응답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아름 외, 2023: 73).

한편 심층면담에서는 대부분의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의 경우 '손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최대한 알리고 있다'고 하였으나, 일부의 경우 노키즈존의 운영으로 생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하여, 인터넷상에 공지하지 않고, 아이가 입장했을 때만 구두로 알려주거나, 사업장 내에만 팻말 표시를 해두고 운영한다는 경우도 있었다(김아름 외, 2023: 95-96). 노키즈존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노키즈존에 대한 민원 대응, 아이들을 동반한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을 언급하였다(김아름 외, 2023: 93-94).

4) 사업장의 개선요구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의 개선요구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배상보험 처리 시 자기분담금 지원'(47.3%),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36.5%)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러한 요구는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가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점과 일맥상통하므로 노키즈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24) 일요시사(2023.10.04.) 제주도 맛집·카페 "노키즈존 공지하면 큰일 나나?"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97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II-3-3〉 노키즈존 사업장의 개선요구(1+2순위)(2023)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6.4	27.1	36.5	47.3	71.4	8.4	3.0	(203)
사업장 특성								
음식점업	0.0	21.6	37.8	56.8	67.6	13.5	2.7	(37)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	7.1	27.9	37.0	46.8	72.7	5.8	2.6	(154)
애견 카페 등	12.5	12.5	37.5	37.5	87.5	0.0	12.5	(8)
기타 업종	25.0	75.0	0.0	0.0	25.0	75.0	0.0	(4)
점주 연령								
20대	5.3	42.1	42.1	42.1	63.2	0.0	5.3	(19)
30대	9.5	23.8	34.5	42.9	77.4	9.5	2.4	(84)
40대	2.4	21.4	31.0	50.0	78.6	9.5	7.1	(42)
50대 이상	5.2	31.0	41.4	53.4	60.3	8.6	0.0	(58)

주: ① 유아동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유아 식기, 식탁의자, 문구류, 장난감 등) ② 유아 안전을 위한 공간 인테리어 비용 지원
 ③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④ 배상보험 처리 시 자기 부담금 지원 ⑤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 ⑥ 에스키즈
 존 포털 구축 및 가계 홍보 ⑦ 해당 없음

자료: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2.
 [표 IV-1-19] 재구성.

한편 심층면담(김아름 외, 2023: 86)에서 사업장의 정책적 요구로는 배상 건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 입장에서 고객의 잘못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한 지원이 제기되었다.

나. 노키즈존 관련 사회적 인식 및 요구

2021년과 2023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노키즈존 인식조사²⁵⁾와 2019년과 2023년에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노키즈존(No Kids zone) 인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1) 노키즈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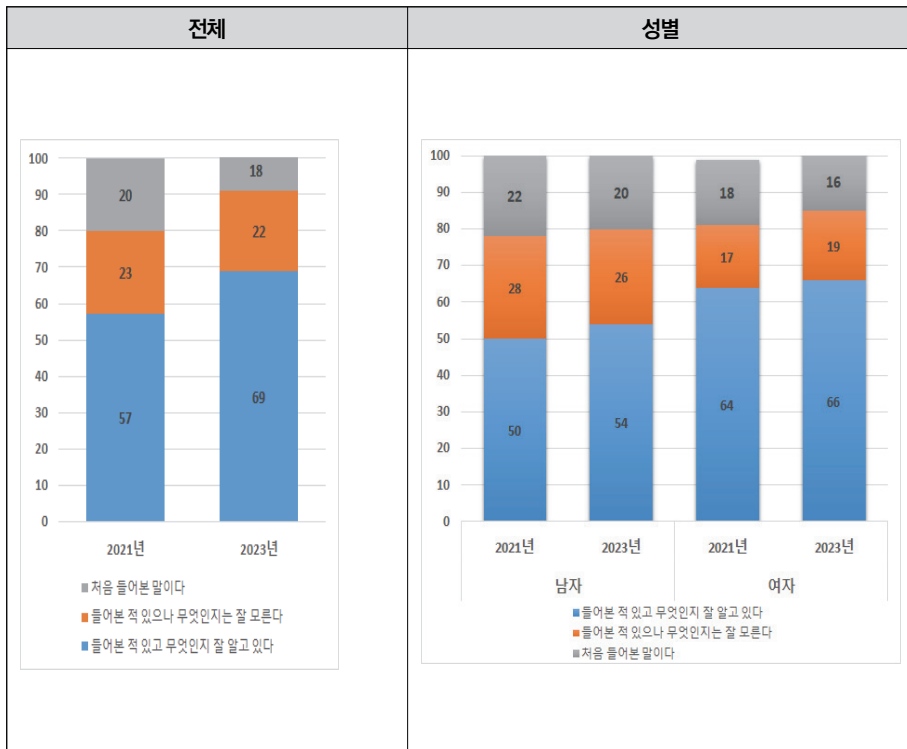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노키즈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지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노키즈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21년 57%

25) 한국리서치의 노키즈존 인식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을 통해 1,000명을 조사하였고,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노키즈존 인식조사는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하였음.

에서 2023년 69%로 1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성별, 초등 이하 자녀 유무별, 연령별)로 노키즈존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키즈존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노키즈존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12%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 이하 자녀 여부에 따라 노키즈존 인지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95%가 노키즈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80%가 잘 알고 있는 반면, 초등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56%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노키즈존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는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노키즈존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I-3-4] 노키즈존 인지 여부(2021/2023)

단위: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자료: '한국리서치(2021). 한국리서치 2차 정기조사 -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2023). 한국리서치 3차 정기조사 -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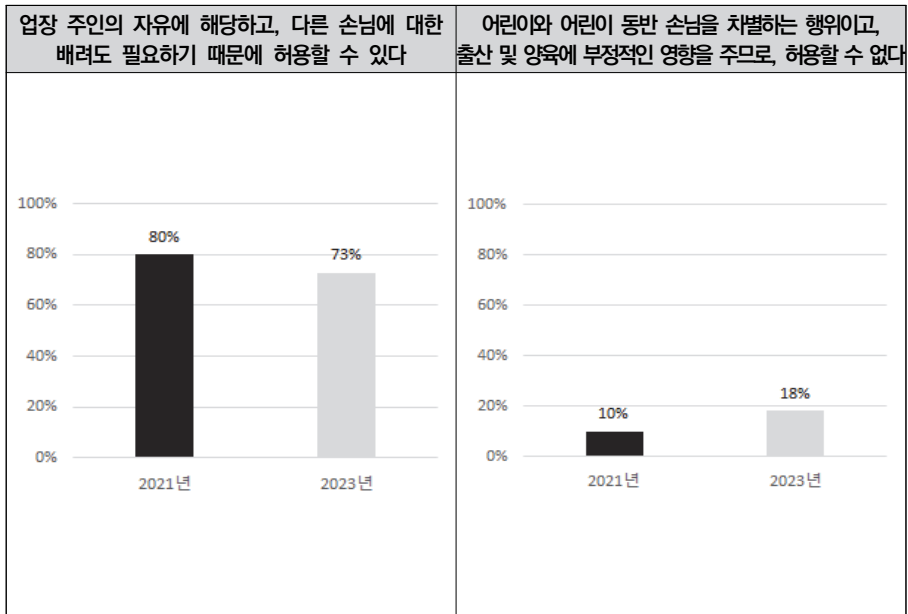
2) 노키즈존 찬반 및 쟁점에 대한 인식

가) 노키즈존 운영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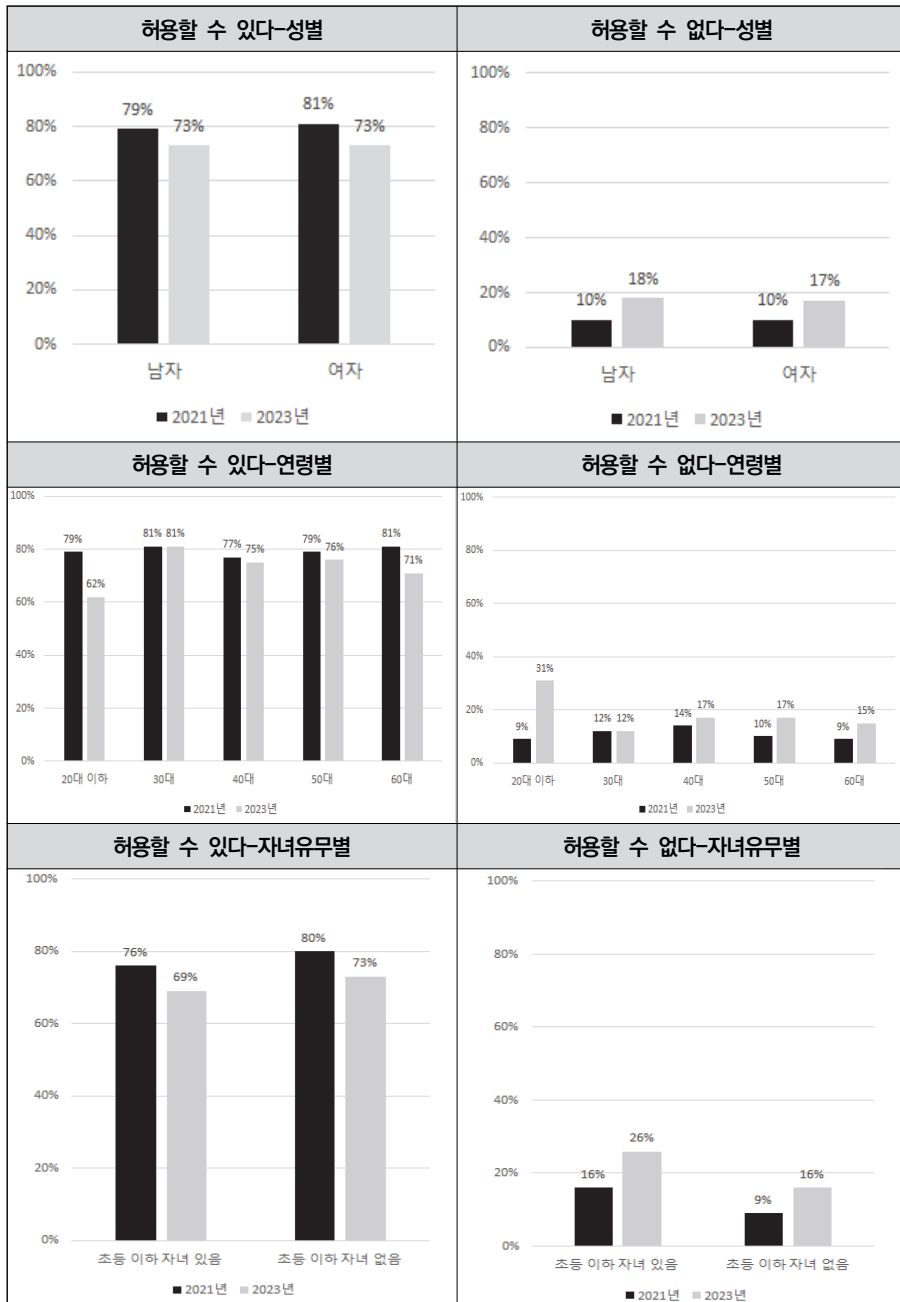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에 비해 2023년 찬성 의견이 80%에서 73%로 다소 감소하고, 반대 의견이 10%에서 1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모든 연령대의 노키즈존 찬성 비율이 4% 이내 차이를 보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에는 3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노키즈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반대 의견이 2021년 9%에서 2023년 31%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관련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 이하 자녀 유무별로는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해당 비율은 2021년에 16%에서 2023년에 26%로 증가하여 초등 이하 자녀가 없는 집단과의 입장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I-3-5] 노키즈존 찬반 의견(2021/202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자료: '한국리서치(2021). 한국리서치 2차 정기조사 -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2023). 한국리서치 3차 정기조사 -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40~41에서 재인용.

나) 노키즈존 도입 배경

노키즈존이 생겨난 원인에 대해 질문한 202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관과 무책임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때문에’ 30.3%, ‘사고 발생 때마다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28.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 때문에’ 2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심(23.7%)이나 아동에 대한 배려나 이해의 감소(13.4%) 등 사회적 포용이나 관용을 노키즈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3-4〉 노키즈존 도입 배경(2023)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도입 배경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2.3	30.3	28.3	27.2	23.7	13.4	8.0	6.9	5.8	(1,000)
성별	남성	51.8	30.2	27.0	30.4	25.8	10.6	7.8	6.6	5.0	(500)
	여성	52.8	30.4	29.6	24.0	21.6	16.2	8.2	7.2	6.6	(500)
연령별	20대	50.8	33.6	33.6	23.6	16.0	17.2	5.6	8.0	7.2	(250)
	30대	55.6	27.6	24.8	32.4	24.4	12.4	7.2	5.2	4.8	(250)
	40대	52.4	29.2	24.4	30.4	25.6	25.6	10.0	5.6	7.2	(250)
	50대	50.4	30.8	30.4	22.4	28.8	28.8	9.2	8.8	4.0	(250)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미혼	53.1	31.7	30.8	30.6	19.6	19.6	6.5	4.8	5.8	(480)
	기혼무자녀	49.4	29.6	27.2	39.5	18.5	18.5	3.7	6.2	6.2	(81)
	기혼유자녀	51.6	29.4	25.8	21.2	28.7	28.7	10.0	9.5	5.8	(411)
	기타(이혼 등)	57.1	21.4	25.0	21.4	35.7	35.7	17.9	7.1	3.6	(28)

주1: ①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관과 무책임 때문에 ②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때문에 ③사고발생 때마다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④자녀에 대한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 때문에 ⑤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때문에 ⑥과거에 비해 아동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⑦아이를 키우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⑧더 많은 손님을 맞아 영업이익을 내고 싶은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 때문에 ⑨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주2: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전체 응답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관과 무책임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집단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 때문’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30.4%로 남성 집단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 40대에서는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고,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20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을 지적한 응답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과거와 달리 아동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감소한 점과 자녀 양육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한 점을 노키즈존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별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 무자녀 집단에서 부모의 방관과 무책임(49.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39.5%)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의 책임을 지적하는 전체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기혼 유자녀와 기타(이혼 등) 집단에서는 미혼이나 기혼 무자녀 집단에 비해 부모나 아동 이외에 요인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 노키즈존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인식

영업주의 노키즈존 영업이 아동과 그 부모의 기본권 중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 상 과잉조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됨에 따라(김정수, 2020: 42-44),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노키즈존은 ‘기본권 침해보다는 업장의 과잉조치다’라는 인식이 기본권의 침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20.2%p, 2023년에는 23.1%p로 격차가 커졌다.

성별로는 2019년, 2023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업장의 과잉조치라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19년에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기본권 침해라고 보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20대에서 노키즈존이 기본권 침해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20대(30.1%)가 노키즈존을 기본권 침해라고 보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기본권 침해보다는 업장의 과잉 조치다’라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모두 증가하였다.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기혼 유자녀 집단이 기본권 침해라는 응답이 2019년, 2023년 모두 가장 높았으며, 기혼 무자녀 집단이 가장 낮았다.

〈표 II-3-5〉 노키즈존 논쟁 관련 인식: 기본권 침해 vs. 과잉 조치(2019/2023)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논쟁 관련 인식						(수)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보다는 업장의 '과잉조치'다		기타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전체		26.0	28.4	46.2	51.5	27.8	20.1	(1,000)	(1,000)
성별	남성	26.1	27.8	44.6	50.4	29.3	21.8	(500)	(500)
	여성	25.8	29.0	47.8	52.6	26.4	18.4	(500)	(500)
연령별	20대	24.0	30.1	44.5	48.1	31.4	21.8	(250)	(250)
	30대	24.4	26.1	44.6	49.4	31.0	24.5	(250)	(250)
	40대	26.2	28.7	50.2	54.2	23.6	17.1	(250)	(250)
	50대	29.3	28.5	45.5	54.4	25.2	17.1	(250)	(250)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미혼	22.2	26.9	44.1	48.8	33.7	24.3	(457)	(480)
	기혼무자녀	15.2	22.3	42.8	55.0	42.0	22.7	(58)	(81)
	기혼유자녀	30.8	31.2	48.6	54.4	20.6	14.4	(485)	(411)
	기타(이혼 등)	-	27.9	-	46.3	-	25.9	-	(28)

주: 2019년에는 '기타(이혼 등)' 집단에 해당 사례 없음.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19).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라) 노키즈존의 주체별 기본권 충돌 인식

노키즈존은 아동과 부모, 영업주, 고객이라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권리 충돌이 발생한다. 먼저, 영업주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공공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영업주가 영업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아동과 부모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평등권 이외에도 행복 추구권의 문제가 있다. 아이와 부모는 차별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장소를 이용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고객들도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방해 받거나 이용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행복추구권 측면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와 고객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김정수, 2020: 47-49).

이와 관련하여 노키즈존 논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반 고객'이라는 응답이 2019년 82.6%, 2023년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장 사업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45.2%, 2023년 49.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동 동반 고객, 아동, 근로자 순이었다. 집단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일반 고객이

우선고려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영업장 사업주’가 노키즈존의 우선고려 대상이라는 응답은 2019년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2023년에는 20, 30대에 비해 40대, 50대의 응답 비율이 낮았다. ‘아동 동반 고객’과 ‘아동’이 우선고려 대상이라는 응답은 2019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2023년에는 20, 30대에 비해 40, 50대가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혼 유자녀 집단은 이외 집단들과 달리 노키즈존 논쟁에서 ‘아동 동반 고객’을 ‘사업주’보다 우선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에는 기혼 유자녀 집단이 다른 집단들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들에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I-3-6〉 노키즈존 논쟁 관련 우선고려 대상(2019/2023)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논쟁 관련 우선 고려 대상										(수)	
		일반고객 (손님)		(영업장) 사업주		아동 동반 고객		아동		근로자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전체		82.6	79.0	45.2	49.4	32.8	31.6	18.6	20.6	11.5	9.6	(1,000)	(1,000)
성별	남성	79.4	79.0	47.2	53.4	31.8	28.0	21.4	22.0	12.8	9.6	(500)	(500)
	여성	85.8	79.0	43.2	45.4	33.8	35.2	15.8	19.2	10.2	9.6	(500)	(500)
연령별	20대	82.0	72.8	57.6	56.8	23.2	26.0	9.6	19.6	18.8	16.8	(250)	(250)
	30대	82.8	77.2	52.4	60.0	28.8	25.2	14.8	16.8	13.2	10.8	(250)	(250)
	40대	84.0	82.0	40.8	42.0	35.6	40.0	24.0	20.0	6.0	7.6	(250)	(250)
	50대	81.6	84.0	30.0	38.8	43.6	35.2	26.0	26.0	8.0	3.2	(250)	(250)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미혼	83.4	76.0	56.0	58.5	23.6	25.8	12.3	16.7	16.4	14.2	(457)	(480)
	기혼무자녀	84.5	84.0	50.0	42.0	27.6	23.5	10.3	23.5	20.7	9.9	(58)	(81)
	기혼유자녀	81.6	81.8	34.4	39.7	42.1	39.9	25.6	24.3	5.8	4.6	(485)	(411)
	기타(이혼 등)	-	75.0	-	57.1	-	32.1	-	25.0	-	3.6	-	(28)

주1: 2019년에는 ‘기타(이혼 등)’ 집단에 해당 사례 없음.

주2: 기타 문항은 2023년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0.3%로 비교표에서 삭제함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19),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다음으로 고객의 행복 추구권과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객의 행복 추구권이 아동의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19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객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연령 증감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기혼 유자녀에서 가장 높고, 기혼 무자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7〉 노키즈존 논쟁 관련 우선 고려 사항: 고객의 행복 추구권 vs. 아동의 기본권(2019/2023)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논쟁 관련 우선 고려 사항						(수)	
		고객의 행복 추구권		아동의 기본권		기타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2019	2023
전체		68.9	66.2	26.5	28.9	4.7	4.9	(1,000)	(1,000)
성별	남성	69.2	67.8	26.0	26.9	4.8	5.3	(500)	(500)
	여성	68.6	64.6	26.9	30.9	4.6	4.5	(500)	(500)
연령별	20대	70.7	64.8	24.7	30.6	4.6	4.6	(250)	(250)
	30대	70.0	69.3	24.9	25.3	5.2	5.5	(250)	(250)
	40대	68.9	65.0	26.9	30.2	4.2	4.8	(250)	(250)
	50대	65.9	65.7	29.4	29.4	4.7	4.9	(250)	(250)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미혼	73.2	67.2	22.5	27.3	4.3	5.5	(457)	(480)
	기혼 무자녀	74.4	73.6	20.2	22.2	5.4	4.2	(58)	(81)
	기혼 유자녀	64.1	63.3	30.9	32.4	5.0	4.4	(485)	(411)
	기타(이혼 등)	-	70.7	-	22.9	-	6.3	-	(28)

주: 2019년에는 '기타(이혼 등)' 집단에 해당 사례 없음.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19),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노키즈존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복수로 응답하도록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수의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 집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키즈존이 확산되면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아동 동반 고객의 권리 침해, 아동권리 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소수로 인해 전체 아동집단 출입 제한의 문제가 쟁점이라는 항목에서 여성(60.8%)이 남성(51.2%)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노키즈존 확산이 아동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및 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 유발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혼 유자녀 집단에서는 소수의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이 노키즈존의 대상자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3-8〉 노키즈존 관련 핵심 쟁점(2023)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관련 쟁점				(수)
		①	②	③	④	
전체		56.0	50.6	34.1	29.1	(1,000)
성별	남성	51.2	44.2	31.0	28.8	(500)
	여성	60.8	57.0	37.2	29.4	(500)
연령별	20대	54.8	53.6	38.8	33.6	(250)
	30대	53.6	52.4	32.0	24.0	(250)
	40대	57.2	50.8	35.6	32.0	(250)
	50대	58.4	45.6	30.0	26.8	(250)
결혼여부 /자녀유무	미혼	52.9	49.0	32.9	27.5	(480)
	기혼무자녀	46.9	43.2	25.9	13.6	(81)
	기혼유자녀	61.6	54.3	37.0	34.5	(411)
	기타(이혼 등)	53.6	46.4	35.7	21.4	(28)

주1: ① 소수의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집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② 노키즈존이 확산되면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③ 노키즈존은 아동 동반 고객(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노키즈존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주2: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마크로밀 엠브레인(2019).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조사;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

I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 분석

- 01 분석 개요
- 02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 0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
- 04 소결

I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 분석

제3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과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소셜 빅데이터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분석내용을 언급하고,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사회적 담론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에서는 유자녀 가구와 일반국민을 구분하여 주제어의 시기별(2014년/2023년)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1. 분석 개요

이하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수집과 정제, 그리고 분석과정 및 방법에 관하여 제시하고, 수집된 문서량 등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가. 자료수집

1) 수집 및 분류 키워드

이 연구에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단일 키워드와 복합 키워드를 투입하여 문서를 수집하였다. 전체 문서 수집에 사용된 단일 키워드는 ‘아동’, ‘어린이’, ‘아동정책’, ‘아동권리’이다. 복합 키워드로는 아동이 제3의 장소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차별 인식 관련 문서들이 수집되도록 ‘아동/어린이’와 ‘차별/출입/금지’를 조합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아동과 아동 동반 양육자에 대한 배제 및 차별 인식이 포함된 문서 추출을 위해 ‘부모/엄마/아빠’와 ‘민폐/진상/무개념’이 조합된 복합 키워드를 적용하였다.

〈표 III-1-1〉 소셜 빅데이터 수집 키워드 개요

구분	수집 키워드
전체 수집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키워드: 아동/어린이, 아동정책, 아동권리, • 복합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어린이 + 차별/출입/금지 - 부모/엄마/아빠 + 민폐/진상/무개념

구분		수집 키워드
주제별 분류 키워드	아동 전반	• 아동/아이/어린이/아기/애기
	아동권리	• 아동/어린이/아이 + 권리/인권/존중/기본권/감수성
	아동 차별 및 배제	• 아동/어린이/아이, 노키즈/오케이 키즈, + 차별/배척/배제/거부/제한/금지/불가/친화/편의
	양육자 인식	• 부모, 맘충, 혐오 + 진상/민폐/무개념/책임/독박/이해

전체 문서를 수집한 후에 아동권리, 아동 차별 및 배제, 양육자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하는 분류 키워드를 적용하여 문서를 추출하였다. 각 주제별로 추출하는 문서에는 복합 키워드를 적용하였다. 문서 수집에 사용한 키워드를 정리하면 위의 <표 III-1-1>과 같다.

2) 데이터 정제: 불용어 처리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목적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불용어를 선정하고 불용어가 포함된 문서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목적과 무관한 내용을 다룬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된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맥락에서 발생한 문서들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주제는 해외여행 중 시설 이용 경험, 특정 아동학대 사건, 촉법소년, 학생인권조례, 교사관련 사건문서들이다. 데이터 정제에 사용된 불용어와 제거된 문서 주제는 다음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데이터 정제 키워드(불용어) 및 문서 주제

구분		수집 키워드
불용어	온라인 구매 및 거래	• 공구, 거래, 가성비, 구매, 베희시장, 상품등록 양식, 아동 옷 , 아동의류, 아동 신발, 세일, 판매합니다, 판매 지역
	종교	• 오늘 기도, 주님, 스님, 영생, 역술, 성경 말씀 등
	게임, 연예, 애니메이션	• 오버워치, 엑소, 엔시티, 팬덤, 유키노, 무당거미, 나루토, 디지몬 등
	주식, 투자	• 주식, 재테크, 투자, 오늘의 주식 등
	책 후기 및 토론 등	• 꿈꾸는 문학, 단행본, 서평 • 면접 자료 관련
정제 문서 주제	해외 여행	• 여행 커뮤니티(광, 세부 등) 실내 장소 사용: 노키즈존 언급
	아동학대 사건	• 특정 아동학대 사건
	특정 이슈	• 촉법소년 • 학생인권조례 • 교사 관련 사건: 주호민, 서이초 사건 등

3) 수집 채널 및 분석 대상 기간

데이터 수집은 각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뉴스 기사, 포털 카페(네이버/다음), 커뮤니티, SNS(유튜브, 트위터) 총 4개 채널을 활용하였다. 분석에서는 수집 채널의 성격을 뉴스 기사와 소셜 채널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온라인 미디어 뉴스 기사는 매체를 통해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거나 여론 형성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소셜 채널과는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 포털 카페, 커뮤니티, SNS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의견이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로 대중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 기사 채널과 구분하였다. 뉴스 기사는 네이버 뉴스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한편, 2014년에 ‘노키즈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간 온라인에서 발생한 문서를 수집하였다. 아동 관련 문서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문서 발생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담론의 변화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2~3개 구간으로 시기를 구분했을 때는 담론의 변화 정도가 희석되어 화제어나 토픽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의미한 담론의 변화가 나타나는 2014년과 2023년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나. 분석과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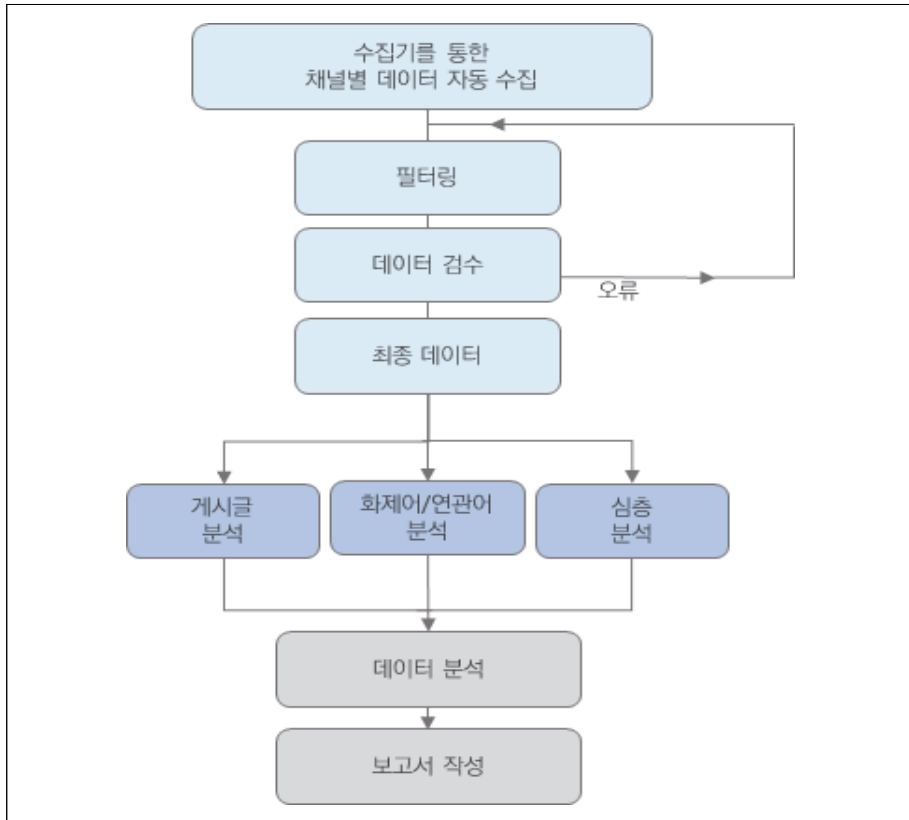
1) 분석과정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수집 키워드와 수집 채널을 정한 후 수집기를 통해 자동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서에 불용어 및 제외 문서를 적용하여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 검수를 수차례 반복하여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우선 최종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발현량 분석, 화제어 및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데이터 심층분석으로 네트워크맵 분석, 감성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분석에는 포털 카페 채널에서 추출한 문서가 활용되었으며,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그림 III-1-1 참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분석 수집기는 WISE BICrawler이며, 분석프로그램으로 WISE Analyzer를 사용하였다.

[그림 III-1-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과정



2) 분석 방법

기초분석으로는 문서 발생량을 중심으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0년간 전체 데이터의 발생 현황을 채널별로 검토하였다. 또한 세부 주제별로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1)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아동권), 2) 아동권리, 3) 아동 차별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주제를 구분하였다. 각 세부 주제에 대한 채널별 (뉴스 기사/소셜) 문서 발생 현황과 과거(2014년) 및 현재(2023년)의 화제어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소셜 빅데이터 심층분석은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현상에 대해 실시하였다. 수집된 문서 중 포털 카페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며, 포털 채널 중 문서 발생 빈도가 높은 카페를 파악하여 선정하였다. 포털 카페 채널만을 활용한 것은 양육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비교하여 담론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육자 집단을 구분해내기 위함이다. 양육자 카페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회원의 대부분이 양육자임을 알 수 있는 카페로 선정하였으며, 주 가입자가 양육자가 아닌 카페(친목, 취미 등)를 일반 카페로 분류하였다.

심층분석으로는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에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다(박주섭·김나량·한은정, 2018). 토픽 모델링 분석 중 일명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 분석은 양육자/일반과 시기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 분석에서는 긍정, 부정, 중립의 비중을 확인하고, 과거(2014년)와 현재(2023년)에 대한 부정 문서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또한 양육자와 일반 카페 문서를 구분하여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도 실시하였다.

다. 문서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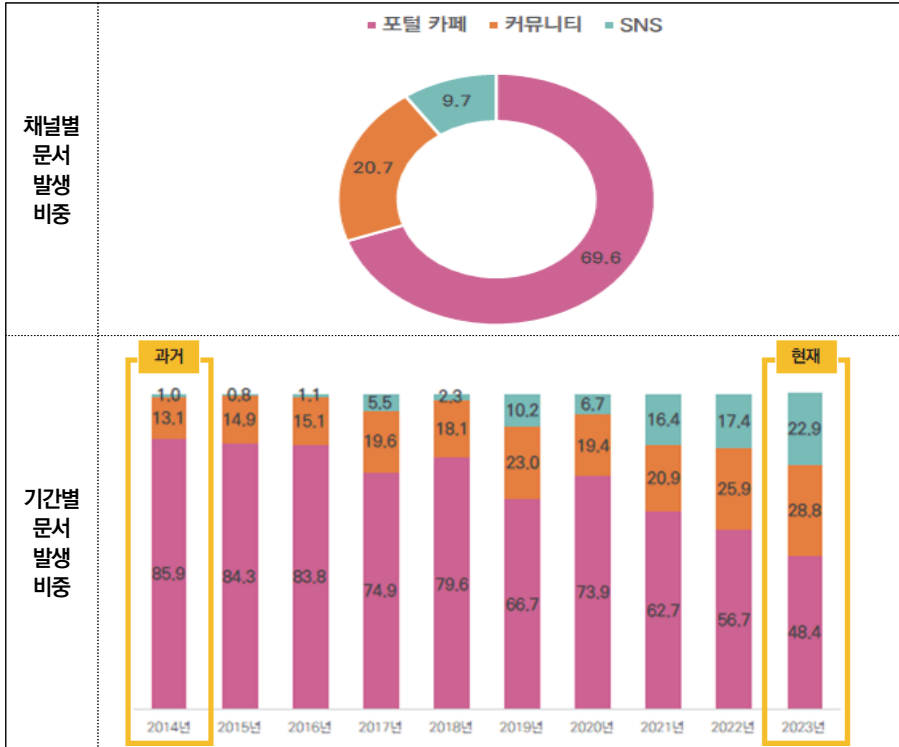
1) 총 온라인 문서

전체 수집 문서 수는 567만건 이상이었으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분석에 포함된 문서 수는 1,213,297건이다. 소셜 채널인 포털 카페, 커뮤니티, SNS는 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의 역동을 확인하기 위해 원글과 댓글을 모두 수집하여 진행하였으나, 뉴스 기사 채널은 원글만 수집하였다. 먼저, 소셜 채널 문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문서 비중이 가장 높은 채널은 포털 카페로 69.6%이며, 커뮤니티는 20.7%, SNS가 9.7%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포털 카페의 문서 비중이 2014년에 85.9%에서 2023년에는 48.4%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23년에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커뮤니티와 SNS는 점차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커뮤니티는 22.9%, SNS는 28.8%로 나타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그림 III-1-2] 채널별문서 발생 비중 추이(2014-2023)

단위: %



뉴스 기사는 특정 사건을 다룬 문서가 많아서 정제과정에서 1.76%만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문서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10년간 소셜 채널과 뉴스 기사 채널의 문서 수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채널별 전체 문서량 추이(2014-2023)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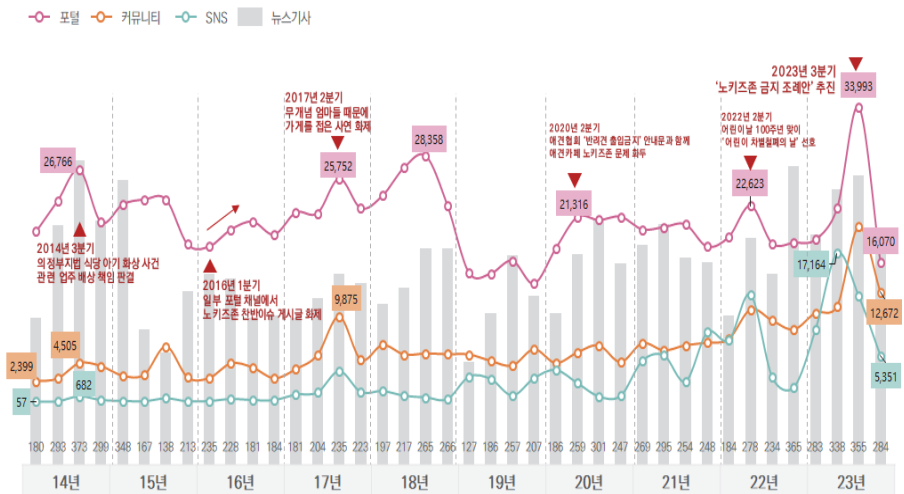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셜	106,347	104,793	93,741	123,314	128,879	90,142	111,019	126,225	139,189	189,648
뉴스 기사	1,145	866	828	843	945	777	993	1,066	1,061	1,260

10년 간의 문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한 방향으로 증감을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문서 수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키즈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2014년에 발생 문서 수는 106,347건으로, 특히 식당 아기 화상 사건에서 업주에게 배상책임 판결 사건이 있었던 2014년 3분기에 문서 발생 수가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문서 수가 감소하였다가 노키즈존 관련 찬반 이슈가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털 카페에서 문서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채널들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2017년에 무개념 부모로 인해 폐업한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단기간 문서 발생이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포털 카페, 미디어 문서 발생 수가 예년보다 감소하여 온라인 상에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2분기에 애견카페의 노키즈존 운영이 화제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아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포털 카페와 미디어의 문서가 다소 증가하였다. 2022년 2분기에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이 선포되었고,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로 논의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모든 채널의 문서가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2023년 2~3분기에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소셜 채널들에서 문서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 문서 수가 189,6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2023년 4분기에는 문서 발생량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3] 전체 문서 발생 추이(2014-2023)

단위: 건



2) 주제별 분석 온라인 문서

우선, 수집 문서 중 ‘아동’, ‘아이’, ‘어린이’, ‘아기’, ‘애기’ 키워드를 적용하여 아동 전반에 대한 문서를 별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서 수는 767,874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문서 중 63% 이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제별 분류 키워드를 적용하여 전체 문서에서 ‘아동권리’, ‘아동차별 및 배제’, ‘양육자 인식’ 3가지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추출하였다. 각 영역에는 중복 데이터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혼재도가 높았다. 아동권리는 총 15,906건이 추출되었으며, 아동 차별 및 배제는 총 254,829건, 양육자 인식은 281,888건이었다. 이 중에서 아동 차별과 양육자 인식 간의 중복 데이터가 10만 건 이상 발생하였다. 아동 차별 및 배제와 양육자 인식은 구분하여 논의하기 어렵고, 데이터의 혼재도도 높으므로 두 영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II-1-4〉 주제별 문서수(2014-2023)

단위: 건

주제	주제별 분류 키워드	분리된 문서	혼재된 문서	총 문서수
아동권리	• 아동/어린이/아이 + 권리/인권/존중/기본권/감수성	7,994	7,912	15,906
아동 차별/배제	• 아동/어린이/아이, 노키즈/오케이 키즈 + 차별/배척/배제/거부/제한/금지/불가/친화/편의	138,550	116,279	254,829
양육자 인식	• 부모, 맘충, 혐오 + 진상/민폐/무개념/책임/독박/이해	167,588	114,300	281,888

2.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이하에서는 아동과 아동권리에 관한 문서를 통해 화제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아동 관련 사회적 인식

1) 분석 문서

‘아동’, ‘아이’, ‘어린이’, ‘아기’, ‘애기’ 키워드를 적용하여 추출한 아동에 대한

인식 관련 문서는 전체 문서의 63.3%(767,784건)이었다. 2014년 문서 수는 60,259건이며 2020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여 2023년에는 134,542건이었다. 전체 문서와 아동에 대한 문서의 발현량은 연도별, 채널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 화제어 분석

아동 관련 전체 문서의 2014년과 2023년 화제어를 도출하였다. 2014년에는 ‘진상’, ‘문제’, ‘교육’, ‘카페’, ‘무개념’, ‘민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노키즈존’, ‘진상’, ‘교육’, ‘카페’, ‘식당’, ‘병원’ 순이었다. 진상, 무개념, 민폐 등 양육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언급하는 부정적 표현은 지속적으로 상위에 발현되었다. 2014년에는 ‘노키즈존’ 포함 문서가 796건에서 2023년 14,729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카페, 식당, 병원 등 구체적인 장소의 언급량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는 2014년에는 ‘사건’, ‘사고’ 등 특정 이슈에 대한 표현이 상위에 등장한 반면 최근에는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아동 관련 담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III-2-1〉 아동 관련 화제어 Top 20: 2014년 vs. 2023년

단위: 건

2014년 화제어			2023년 화제어		
	화제어	총합계		화제어	총합계
1	진상	3,052	1	노키즈존	14,729
2	문제	2,295	2	진상	12,349
3	교육	1,862	3	교육	5,235
4	카페	1,511	4	카페	4,397
5	무개념	1,442	5	식당	2,474
6	민폐	1,379	6	병원	2,432
7	병원	1,373	7	보호	2,212
8	식당	1,250	8	민폐	2,085
9	쪽지	1,180	9	무개념	1,984
10	입장	1,079	10	맘충	1,813
11	짜증	1,050	11	혐오	1,725
12	사건	1,011	12	결혼	1,703
13	결혼	980	13	출산	1,540
14	사고	843	14	불편	1,525
15	노키즈존	796	15	해결	1,414
16	기저귀	796	16	배려	1,397
17	아줌마	794	17	참여	1,386
18	안전	725	18	동제	1,329
19	시설	718	19	노력	1,286
20	스트레스	702	20	사과	1,239

2023년에는 ‘진상’, ‘교육’ 키워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맘충’, ‘혐오’ 키워드가 상위 20위에 등장하여 양육자 혐오 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자 혐오 표현의 증가와 함께 ‘해결’, ‘배려’, ‘노력’, ‘사과’ 등 갈등 해결과 양육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조치에 대한 언급들도 증가하였다.

전체 기간에 발생한 아동 관련 문서를 채널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뉴스 기사 채널에서 도출한 화제어는 지원, 권리, 교육, 서울, 보호,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기사 채널 특성 상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문제제기, 정책 변화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키워드들이 주로 도출되었다. ‘지원’, ‘권리’, ‘문제’ 화제어의 유사어를 도출해보았으나, 노키즈존, 진상, 민폐, 무개념 등 소셜 채널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데이터 원문을 확인해본 결과,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나 담론을 확인하는 내용보다는 정책이나 문제 해결 방안, 전문가의 의견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이나 사업 등을 통한 공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에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2-1] 채널별 주요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 아동 관련 인식(전체 기간)



소셜 채널 문서에서 도출한 화제어는 ‘노키즈존’, ‘진상’, ‘문제’, ‘교육’, ‘선생’, ‘카페’ 순이었다. 노키즈존과 함께 등장한 유사어로는 예스키즈존, 어덜트존, 아동혐오자, 케어키즈존으로 실제 노키즈존과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개념의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문제’의 유사어로 ‘근본’이 뉴스 기사와 소셜 채널 모두에서 등장하여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2〉 뉴스 기사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 관련 인식(전체 기간)

	화제어	인급량 (건)	화제어	유사어	유사도
1	지원	6,880	지원	생계비	0.645689
2	권리	4,834		운영비	0.609353
3	교육	4,696		교육비	0.576959
4	서울	4,392		부담금	0.556563
5	보호	4,044		고충	0.683383
6	정부	3,354		아동권리협약	0.673081
7	진행	3,351		인격체	0.650663
8	사업	3,280	문제	평등	0.646295
9	가속	3,086		근본	0.609555
10	시설	3,049		현실	0.605900
11	사건	2,915		해결책	0.602316
12	기관	2,783		논리	0.558436
13	복지	2,618			
14	참여	2,573			
15	운영	2,550			
16	문제	2,466			
17	피해	2,084			
18	위원회	2,074			
19	보장	2,037			
20	정책	2,023			

〈표 III-2-3〉 소셜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 관련 인식(전체 기간)

	화제어	인급량 (건)	화제어	유사어	유사도
1	노키즈존	39,030	노키즈존	예스키즈존	0.755505
2	진상	28,004		어덜트존	0.754500
3	문제	26,577		아동혐오자	0.719233
4	교육	18,257		케어키즈존	0.709788
5	선생	17,569		근본	0.758668
6	카페	16,647	문제	무지성	0.700909
7	사회	15,319		전가	0.690494
8	남편	15,155		잘잘못	0.689744
9	아동권리	14,567		가정교육	0.636698
10	어른	13,603	교육	소양	0.607696
11	권리	13,404		예의범절	0.607673
12	민폐	12,436		식사예절	0.572044
13	식당	11,999			
14	맘충	11,929			
15	입장	11,319			
16	고생	11,314			
17	어린이집	10,990			
18	병원	10,773			
19	무개념	10,199			
20	짜증	8,026			

다만, 뉴스 기사에서는 현실, 해결책, 논리 등 문제해결과 관련된 유사어가 주로 도출된 반면에 소셜 채널에서는 무지성, 전가, 잘잘못 등 노키즈존 등 문제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교육’의 유사어로는 가정교육, 소양, 예의범절, 식사예절 등 자녀교육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한편, 소셜 채널에서는 맘충, 진상, 무개념, 짜증 등 혐오표현이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키워드들도 상위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아동이나 노키즈존 경험에 대한 문서뿐만 아니라, 업주나 아동의 입장에서 노키즈존 현상을 해석하는 의견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도지사는 또 업소의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위한 권고와 계도,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 2023.5.8.)

노키즈존이 카페 사장 사정에 따라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동혐오일수도 있는 건 맞음 그건 잘잘못을 따지기가 약간 모호하다고 봐... (트위터, 2022.5.15.)

한 폰이라든 더 버는 것이 좋은 업주가 굳이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이유가 ‘아이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싶기 때문’ 이겠냐? 아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아이타령을 해. (트위터, 2017.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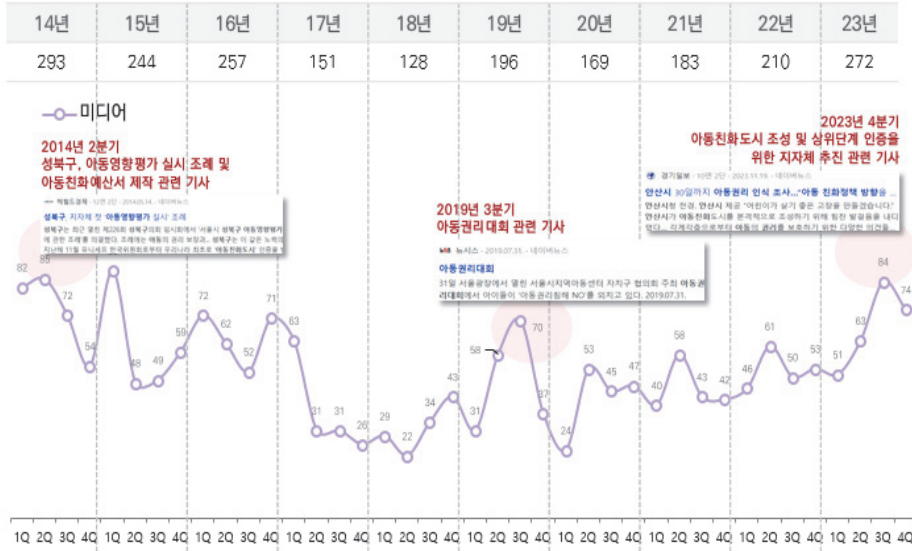
나. 아동권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

1) 분석 문서

전체 문서 중 아동권리 관련 사회적 인식 문서는 1.3%(15,906건)이다. 전체 문서에서는 뉴스 기사 채널의 비중이 0.9%였으나, 아동권리 관련 문서에서는 1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뉴스 기사의 특성상 연도별로는 정책 및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문서 발생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반복하였다. 뉴스 기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기사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보장원 등 아동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국내 활동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III-2-2] 아동권리 관련 문서 발생 추이: 뉴스 기사(2014~2023)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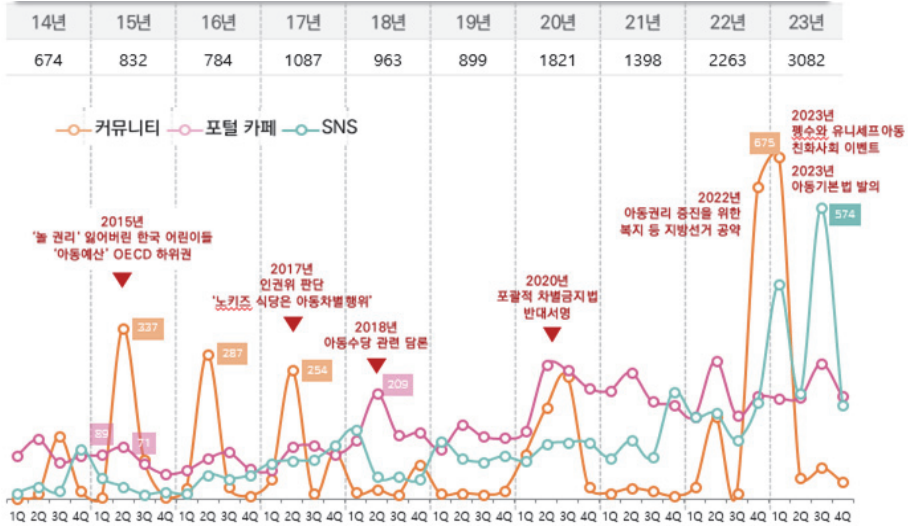
2014~2018년 기간에 비해 2019~2023년 기간에 포털 카페와 SNS에 아동권리관련 문서의 발생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아동권리 증진 관련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SNS에 문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로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온라인 상에서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정책 및 정치적 이슈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커뮤니티에서는 ‘네이트판’에서 화제 글을 중심으로 파생 언급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아동권리 보장 측면과 사업주의 권리 간에 대립적 담론도 확인되었다. 포털 카페에서는 어린이집, 아동 관련 단체에서 진행한 활동 기록에 대한 문서가 주로 발생하였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그림 III-2-3] 아동권리 관련 문서 발생 추이: 소셜(2014-2023)

단위: 건



2) 화제어 분석

아동권리 관련 문서의 2014년과 2023년 화제어를 도출하였다. 아동권리 관련 문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화제어별 문서 증가율이 적게 나타났다. 2014년에는 ‘교육’, ‘원칙’, ‘활동’, ‘운영’, ‘아동권리협약’, ‘프로그램’ 등이 화제어로 도출되었다. ‘교육’과 ‘아동권리협약’은 2023년에도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2023년 주요 키워드로 ‘노키즈존’, ‘맘충’, ‘진상’ 등 부정적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였다. 이는 노키즈존 확산이 아동권리 침해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양육자에 대한 혐오 담론도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II-2-4〉 아동권리 관련 화제어 Top 20: 2014년 vs. 2023년

단위: 건

2014년 화제어			2023년 화제어		
	화제어	총합계		화제어	총합계
1	교육	468	1	교육	654
2	원칙	246	2	보장	587
3	활동	214	3	보호	459
4	운영	174	4	사업	424
5	아동권리협약	144	5	존중	397
6	프로그램	124	6	노키즈존	310
7	시설	108	7	굿네이버스	245
8	캠페인	87	8	아동친화도시	233
9	놀이	83	9	맘충	231
10	정책	81	10	세이브	222
11	서비스	80	11	진상	205
12	평가	78	12	아동권리협약	192
13	환경	78	13	캠페인	191
14	존중	77	14	위원회	188
15	유엔	74	15	유니세프	173
16	위원회	73	16	자립	171
17	재단	72	17	피해	171
18	기업	72	18	놀이	166
19	조사	70	19	혐오	164
20	미혼모	70	20	침해	163

전체 기간에 발생한 아동권리 관련 문서를 채널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뉴스 기사 채널에서 도출한 아동권리 관련 화제어는 교육, 사업, 서울, 아동친화도시, 보호, 조성, 캠페인 순이었다. 채널 특성 상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된 기관 및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였다. ‘교육’은 아동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서울’은 ‘2019 서울 놀이 주간’ 관련 행사에 대한 기사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아동친화도시’ 키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이나 관련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문서가 다수 존재하였다.

소셜 채널의 화제어는 교육, 사회, 존중, 보호, 보장, 지원, 인권 순이었다. ‘교육’, ‘보호’ 등은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논의들이 많았으며, 주로 어린이집 및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권리 증진 관련 활동 기록용 문서가 다수 발생하였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그림 III-2-4] 채널별 주요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 아동권리 관련 문서(2014-2023)



<표 III-2-5> 뉴스 기사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권리 관련 문서(2014-2023)

	화제어	언급량 (건)	화제어	유사어	유사도
1	교육	1,417	교육	지원청	0.807551
2	사업	1,384		환경	0.633503
3	서울	960		아동권리증진	0.629831
4	아동친화도시	913		종로구	0.905139
5	보호	900	서울	어린이날	0.778195
6	조성	762		공원	0.692928
7	캠페인	668		유니세프	0.890109
8	복지	663	아동친화 도시	조성	0.824131
9	유니세프	645		군산시	0.822554
10	반론	603		부산시	0.805982
11	프로그램	508			
12	세이브	500			
13	놀이터	462			
14	굿네이버스	425			
15	여성	409			

〈표 III-2-6〉 소셜 채널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권리 관련 문서(2014-2023)

	화제어	인급량 (건)	화제어	유사어	유사도
1	교육	3,460	교육	유익	0.691773
2	사회	2,128		공무원	0.651245
3	존중	1,886		종사자	0.650262
4	보호	1,729		인형극	0.610089
5	보장	1,726	보호	독립	0.773394
6	지원	1,596		인격체	0.677182
7	인권	1,527		충족	0.674283
8	활동	1,342		동등	0.673126
9	아동권리협약	1,309	노키즈존	존엄	0.66524
10	참여	1,307		업주	0.916187
11	복지	1,243		아동혐오	0.912102
12	문제	1,220		배제	0.83636
13	노키즈존	1,168		논리	0.771855
14	유엔	962			
15	멈춤	950			

한편 화제어 중 ‘노키즈존’에 대한 유사어와 문서 원문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의 권리 침해 및 혐오’와 ‘업주의 영업 자유’라는 대립적인 의견이 대두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불필요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애가 크더라도 노키즈존인 곳은 갈 생각 없어요. 지금도 아이 없이 남편이랑 데이트 갈 때도 안가고요. 통제안되는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쫓아냈으면 하지, 어린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간다는 건 아이한테 설명하기도 민망하고 미안해요. (레몬테라스, 2023.3.16.)

인권을 따진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장사를 해야하는 업주의 인권은 어디로 간 건가요 저도 엄마고 노키즈존 찬성입니다. 아기가 약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배려받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욕심 같아요 인권으로 이런 주장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혐오로 확대 하는 것도 무리고요, 어쩔 수는 없지만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지금은 내 아기 말고 다른 아기 다 예뻐 보이지만 저도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맘스홀릭베이비, 2018.4.29.)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

이하에서는 아동 차별과 양육자 혐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화제어 분석과 더불어 주요 단어의 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 부정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감성분석, 그리고 주제를 포함하는 키워드를 통해 그 함의를 모색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LDA) 분석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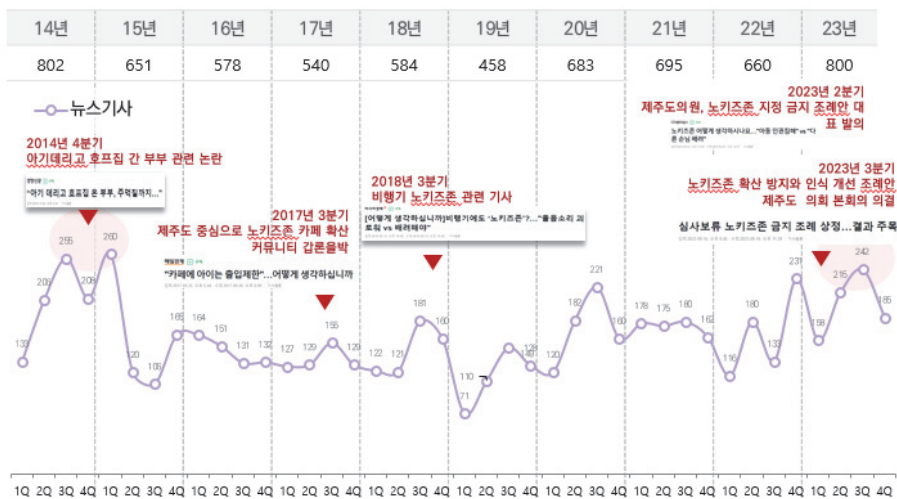
가. 화제어 분석

1) 분석 문서

주제별 분류를 통해 추출한 ‘아동 차별/배제’와 ‘양육자에 대한 인식’ 문서를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로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전체 문서 중 총 34.9%를 차지하였다. 소셜 채널에서는 포털 문서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커뮤니티, SNS 순이었다. 뉴스 기사는 문서 수가 적고 변동폭이 크지 않았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증감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키즈존 관련 사건이나 논의가 발생할 때 다소 문서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 채널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문서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뉴스 기사에 비해 소셜 채널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식당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사건이나, 노키즈존/예스키즈존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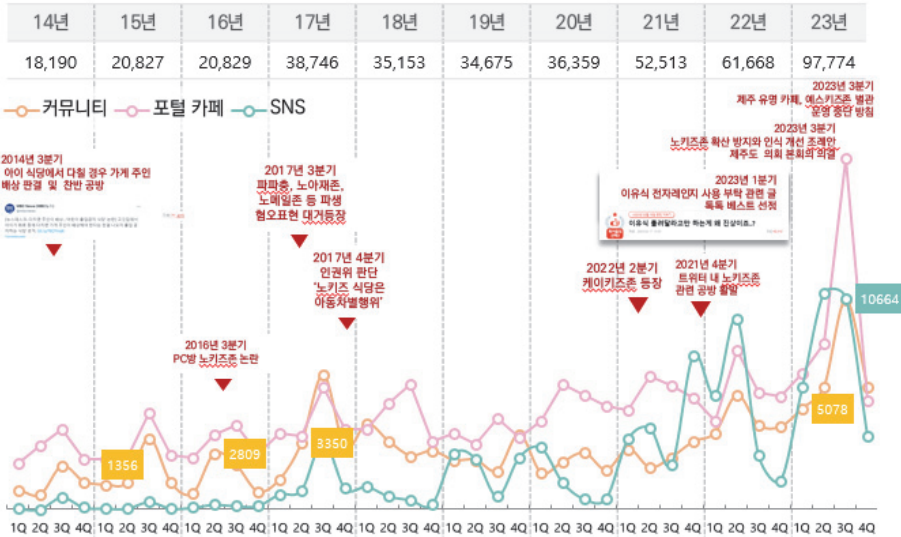
[그림 III-3-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 발생 추이: 뉴스 기사(2014-2023)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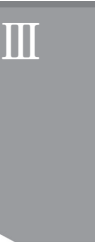
[그림 III-3-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 발생 추이: 소설(2014-2023)

단위: 건



2) 화제어 분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의 2014년과 2023년 화제어를 비교하여 보았다. 2014년에는 진상, 식당, 교육, 무개념, 노키즈존, 사건, 카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노키즈존, 진상, 카페, 교육, 식당, 사장, 맘충 순이었다. 2023년에는 '노키즈존' 온라인 언급량이 14,729건으로 매우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제주 유명 카페의 에스키즈존 운영 중단 등이 이슈가 되면서 문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에는 노키즈존과 유사하게 노시니어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적 용어들이 확인된다. 한편, 맘충, 혐오 등이 화제어로 등장하여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담론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화제어 Top 20: 2014년 vs. 2023년

2014년 화제어			2023년 화제어		
	화제어	총합계		화제어	총합계
1	진상	1,072	1	노키즈존	14,729
2	식당	902	2	진상	9,051
3	교육	850	3	카페	3,626
4	무개념	844	4	교육	3,622
5	노키즈존	796	5	식당	2,114
6	사건	677	6	사장	1,893
7	카페	639	7	맘충	1,812
8	권리	634	8	혐오	1,725
9	민폐	509	9	무개념	1,526
10	사고	484	10	민폐	1,321
11	출입금지	437	11	진상부모	1,273
12	기저귀	425	12	출산	1,095
13	병원	422	13	분위기	915
14	짜증	378	14	해결	853
15	아줌마	362	15	소아과	803
16	테이블	257	16	갑질	785
17	유모차	235	17	훈육	779
18	알바	227	18	노시니어존	722
19	배려	224	19	비행기	715
20	불편	220	20	약자	616

전체 기간에 발생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를 채널별로 살펴 보았다. 먼저, 뉴스 기사 채널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대한 화제어는 조사, 사건, 서울, 사고, 입장, 사과, 대책 순이었다. 채널의 특성 상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나 관련 조례안 및 법안 추진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노키즈존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조례안 관련 기사나 제주 식당 및 카페 운영 및 노키즈존 관련 보도가 많았다.

소셜 채널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대한 화제어는 노키즈존, 진상, 문제, 카페, 맘충, 사회, 식당 순이었다. 소셜 채널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노키즈존 관련 다양한 담론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키즈존 관련 용어로 어덜트존, 에스키즈존, 케어키즈존, 아동혐오자 등이 유사어로 등장하였다. 또한 화제어로 등장한 ‘카페’의 경우는 카페가 노키즈존인지 확인하려는 문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카공족’이 노키즈존과 비교되면서 유사어로 도출되었다.

[그림 III-3-3] 채널별 주요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 (2014-202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 원문을 살펴보면, 노키즈존 등 아동 출입금지에 관한 이슈에서 부모, 다른 고객, 업주 등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논의들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 책임이나 자녀훈육을 강조하는 문서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아동이나 양육자가 아니라 일부 ‘진상’ 부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 관찰 되었다.

노키즈존 케어키즈존 >> 감당할수 없는 아이가 있다면 입장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로 인해 타인을 불편하게 했다면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해요. (레몬테라스, 2022.6.7.)

나도 노키즈존은 반대임. 그냥 특정으로 묶지 말고 진상은 골고루 다 쫓아내줬으면 좋겠음.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노키즈존은 찬성하는 댓글이 많은데 본인이 키즈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노카공쪽에 대해선 불쾌해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 (루리웹, 2021.1.2.)

노키즈존 얘기는 너무 어려워 양쪽 다 이해가...근데 애가 난리쳐도 뭐라 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긴 게 크겠지...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안타깝지. (여성시대, 2020.4.10.)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III-3-2〉 뉴스 기사의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2014-2023)

	화제어	언급량 (건)	화제어	유사어	유사도
1	조사	1743	지적	비판	0.822545
2	사건	1519		이슈	0.787278
3	서울	730		혐오	0.708501
4	사고	658		제주	업소
5	입장	425	조례안		0.723972
6	사과	420	지정		0.677648
7	대책	411	노키즈존		0.666081
8	안전	400	출입		0.640374
9	신고	373	식당		0.61511
10	논란	346			
11	지적	330			
12	자식	319			
13	키즈	312			
14	어린이집	276			
15	제주	269			

〈표 III-3-3〉 소셜의 주요 화제어 및 유사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2014-2023)

	화제어	언급량 (건)	화제어	유사어	유사도
1	노키즈존	84,834	노키즈존	아동혐오자	0.68625
2	진상	22,741		허탕	0.662261
3	문제	22,206		어덜트존	0.65845
4	카페	18,486		예스키즈존	0.652229
5	맘충	14,171		케어키즈존	0.629697
6	사회	12,469		카공족	0.591504
7	식당	12,116	카페	스벅	0.570755
8	교육	11,775		행궁동	0.559619
9	어른	11,420		이디야	0.556545
10	무개념	10,343	입장	실례	0.624603
11	선생	10,243		양쪽	0.614276
12	입장	9,766		막무가내	0.588213
13	민폐	9,180		트러블	0.556866
14	혐오	7,368			
15	사장	7,212			

나. 네트워크 분석

1) 분석 방법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work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키워드 간에 연관성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네트워크맵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중심성 수치²⁶⁾가 높은 키워드로 노드의 크기가 큰 중심어를 확인하였으며, 노드 간 거리를 통해 키워드(노드) 간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즉, 노드 간 연결선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심어의 노드 크기와 노드 간 연결선의 길이를 통해 키워드 간 관계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였다.

2) 분석 결과

가) 시기별 분석

2014년 중심어를 살펴보면, 식당, 출입금지, 반대, 찬성, 가정, 유치원, 논란, 마트, 장소, 건강 순으로 중심어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생, 출입, 안전, 자유 등이 중심어로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식당, 마트, 병원, 어린이집 등 특정 장소 이용 행태나 출입금지의 동시출현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논란 및 입장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논의에서 민폐, 진상, 잘못, 무개념 등 양육자의 잘못된 태도나 행동을 지적하는 키워드들도 함께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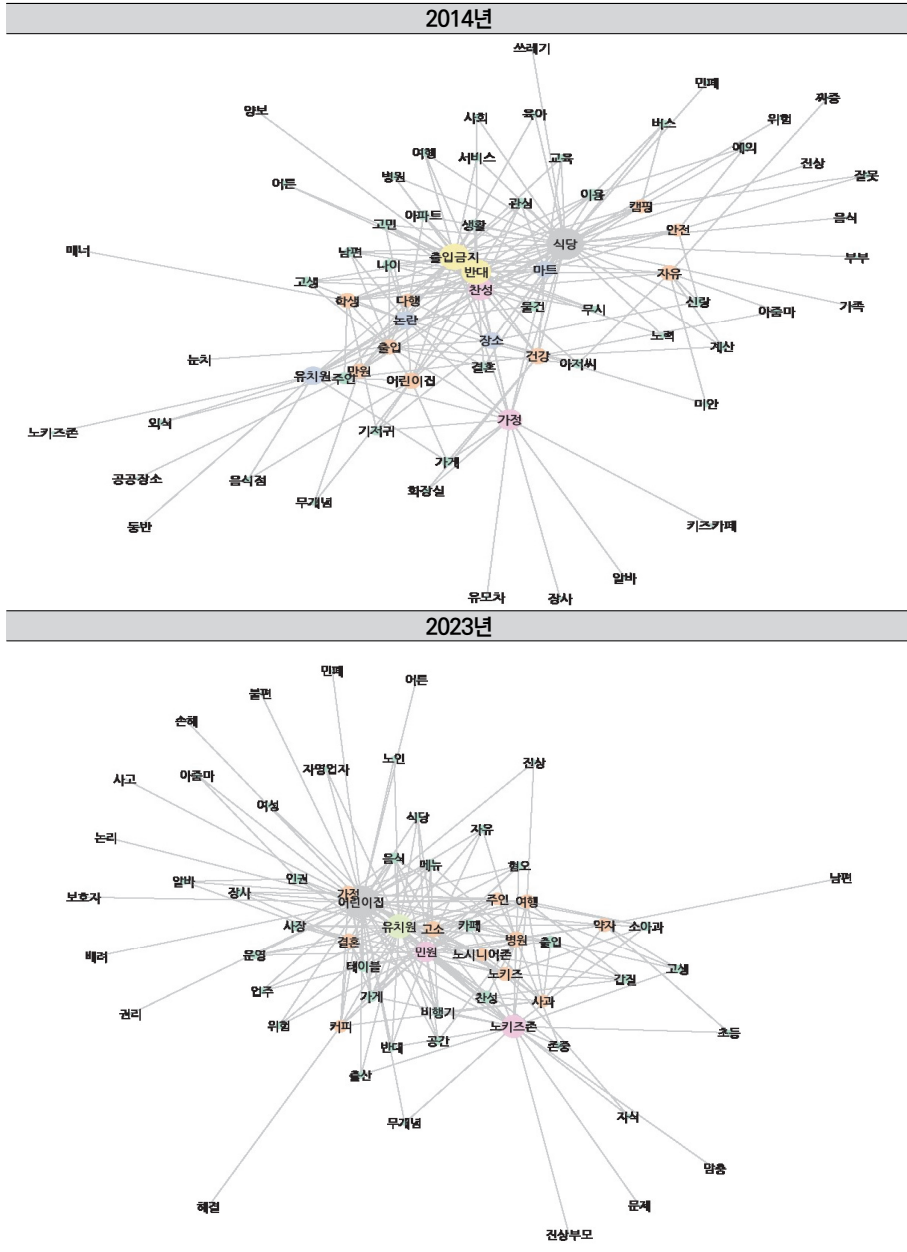
2023년 중심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키즈존, 민원, 병원, 고소, 가정, 결혼, 여행, 노키즈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특정 장소 이용 행태나 출입금지에 대한 논의가 2023년에는 보다 구체화되어, 행태나 양상을 지칭하는 용어나 신조어가 핵심 중심어를 구성하고 있다. 즉, ‘노키즈존’ 자체에 대한 의견이나 노키즈존의 발생 원인을 논하면서 진상부모, 맘충, 무개념, 갑질 등 양육자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하였다. 노키즈존이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논쟁도 보다 구

26) 중심성 수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종합하여 산출됨. 중심성 수치가 높으면 연결선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노드 크기가 증가함.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체화되어 ‘아동권리 존중’과 ‘업주의 자유’라는 상반된 관점이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3-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네트워크맵: 2014년 vs. 2023년



한편, 2023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식당, 여행 등 아동과 양육자의 일상에서 등장하는 장소들이 고소, 민원과 가깝게 위치하여 동시출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나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갈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갈등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대상별 분석: 양육자와 일반국민 인식

먼저, 2014년의 양육자와 일반국민 카페 문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자 포털 카페에서 추출한 데이터에서는 존중, 장소, 자유, 방학, 직장, 관심, 교육, 규칙 등이 중심어로 추출되었다. 핵심 중심어인 '존중'은 양육자가 스스로 부모들이 존중이나 배려를 받으려는 태도를 지적하거나 다른 고객들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로 아동이나 부모를 배려하지 않는 식당이나 장소에 대한 불만 의견도 있었다. 또한 '존중'이 '진상', '불편' 등 뿐만 아니라 '미안', '눈치' 등 아동이나 양육자에게 관용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로 암시하는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였다.

틀린 말 없는데요, 엄마들이야 맨날 보는 관경이니 '그게 모 어쩌냐다 그러고산다 니들도 놓아봐라' 하겠지만 애엄마만 존중받고 이해 받아야 되는 세상 아니자나요. 젊은이들 말 격한건 인정하는데 의미로 본담 틀린 말 결코 없다봅니다. 저리들 생각하고 애까지 욱 먹으니 우린 절대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진상부리지 맙시다. (줌마헬라, 2014.7.9.)

저도 찬성이예요.저도 아기랑 어디 밥먹거나 차 마시러 가서 일부 어이없는 엄마들 보면 눈살 찌뿌려져요. 저는 아이가 있다고 일방적인 특혜나 배려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음 해요. (강동맘, 2014.8.17.)

조용히 카페를 찾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깐요, 존중해줘야겠죠. (달콤한 청라맘스, 2014.8.15.)

아기 테이블이나 아기엄마 배려하지 않은 식당은 앞으로 안 가는 게 정답인 듯 진짜 깨네요. 도대체 어디 스시예요. (부산 북구맘들의 모임, 2014.6.29.)

2014년 일반 포털 카페 문서에 대한 네트워크맵을 살펴보면, 중심어들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키워드들이 동시 출현하는 문서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줌마'를 중심으로 여성, 난리, 고생, 진상 등의 중심어로 등장하고 아이가 있는 여성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해 '초딩'으로

표현하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문서도 다수 발생하였다. 양육자 카페와 비교하면, 일반 카페에서는 비행기, 캠핑장, 버스, 카페, 호텔, 식당 등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이 공유되고 있으며, 양육자와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배제 관련 표현이 보다 많이 등장하였다.

요즘은 커피숍이 붐입니다 솔직히 손님도 널린 게 커피숍이고 이집이 딱히 맛있다 이런것도 없으니 맘대로 행동하고, 커피숍 사장님들도 매출 안 나오는데 그나마 온 손님 안올까봐 넘 소극적으로 된것도 있는 듯 합니다. 전 짱나서 동네 아줌마들 오는 상권에서 커피숍 안합니다. (원원커피숍창업조합, 2014.9.7.)

심지어 테이블에 애 눕혀놓고 기저귀가는 아줌마도 있더라 식당에서 (내가 아는 카페 Mon-Sun, am12:00~am12:00, 2014.1.1.)

5살 미만은 출입금지인 노키즈존...여러분의 생각은 전 찬성합니다. 물론 특정 상점들에 한해서지만요..애들보단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예를 들면 카페나 고급레스토랑 같은곳이면 괜찮을 거 같네요...객적으로 캠방에 초딩 금지법이라도 있었으면. (RKBO, 2014.8.17.)

다음으로, 2023년 현재 양육자와 일반국민 카페 문서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자 포털 카페에서는 중심어인 노키즈, 기저귀, 테이블, 찬성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였다. 양육자 카페에서도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키즈, 기저귀, 테이블 등 중심어는 진상짓, 민원, 고소, 해결 등의 키워드와도 가까웠다. 관련 문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테이블에 기저귀를 두고 가는 부모’, ‘테이블에 아이를 올려두는 경우’ 등 카페나 식당 등에서 진상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하는 일부 부모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문서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노키즈 하고 싶은 자영업자 인데 못걸어도 물티슈나 기저귀를 쓰니 그런 듯 싶네요. 요즘 엄청 많은 부모들이 테이블을 완전 쓰레기장을 만들고 갑니다 야박한거 아니라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 생긴 현상이예요. (맘스홀릭베이비, 2023.09.19.)

맞아요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케어해야 하는 부분 인데.. 현실은 노키즈존이 남발하는 사회 기저귀 테이블 위에 두고 가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구별맘 구로특별맘, 2023.05.05.)

또한 ‘진상’도 중심어로 도출되었으며, 가게, 사장, 식당 등과 함께 등장하였다. 진상은 새롭게 등장한 ‘맘충’ 키워드와도 연관성이 높았다. 양육자 카페 문서에서 ‘맘충’ 관련 담론을 확인한 결과, 양육자들은 ‘맘충’이라는 혐오 표현이 양육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을 토로하였으며, 일부 무개념, 민폐 부모들로 인해 어머니(맘)가 ‘맘충’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한 문서들도 다수 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미안’, ‘눈치’ 등 정서적 불편감이었으나, 2023년에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이라는 점에서 아동이나 양육자가 우리사회의 문화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증가했다고 해석된다.

정말 애키우다 보면 노키즈존 등등 상처 많이 받아요. 무조건적으로 애딸린 맘충으로 보는 시각이 불편해요. 그래서 외식을 안 한지 몇 년된 거 같아요. (줌마멜라, 2023.3.4.)

맘=맘충 아니에요. 이제 슬슬 나오신다니 앞으로 경계 되시겠지만 진짜 같은 엄마가 봐도 넘 개념 없고 민폐 자체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럴때나 맘충, 빠충인 거지. (맘스홀릭베이비, 2023.7.6.)

2023년 일반 포털 카페에서는 과거와 달리 캠핑, 캠핑장, 애견, 강아지가 핵심 중심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비양육자 집단에서 노키즈 캠핑장 및 애견동반 카페를 찾거나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유나 장점을 강조하는 문서가 다수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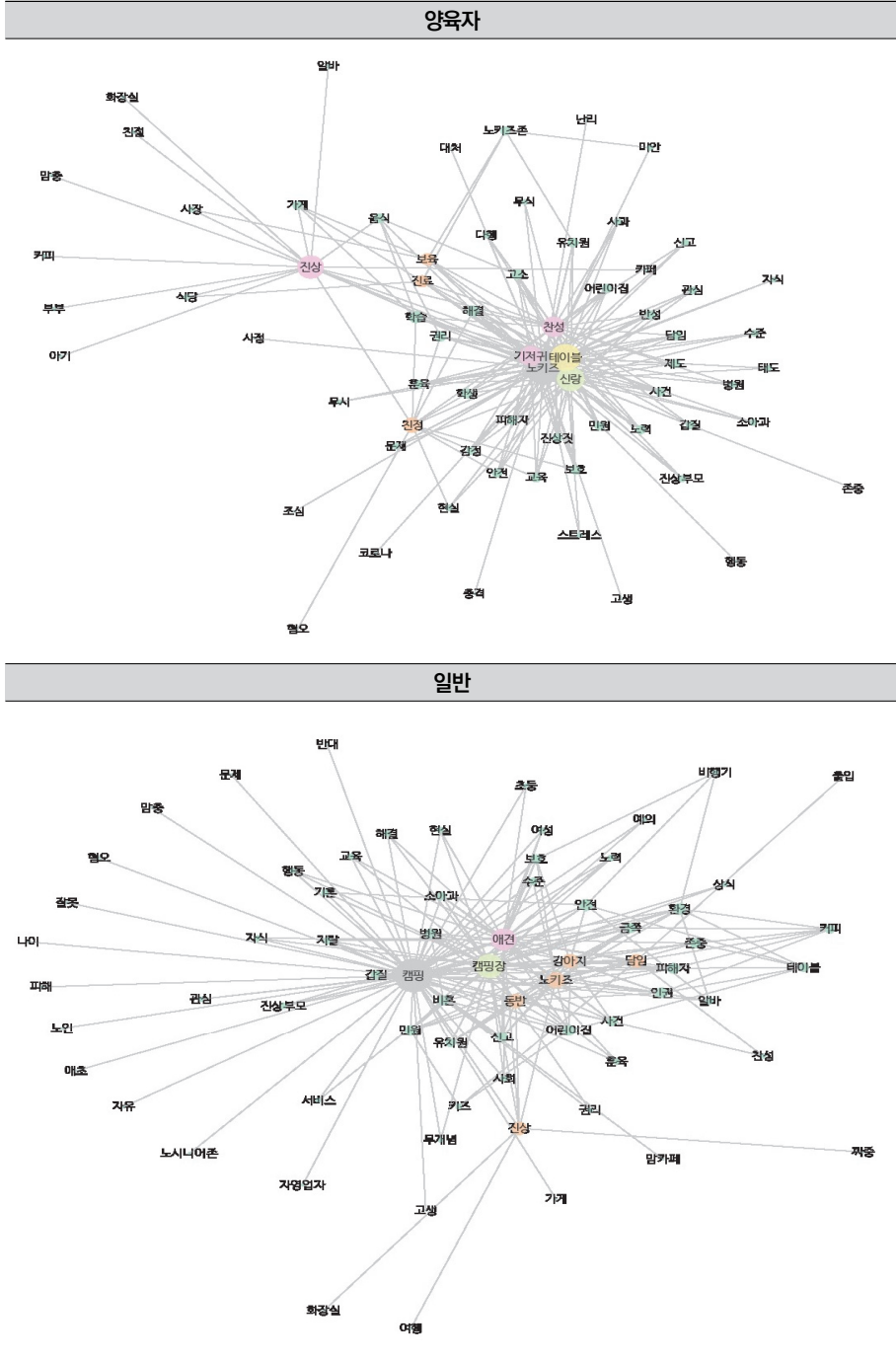
단순 어린이의 소음문제만이 아닌 캠핑장 운영상 추구하는 분위기나 안전상 등의 이유로 노키즈를 하는 곳들도 있으니 당연히 초6이어도 노키즈에 해당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캠핑퍼스트, 2023.11.26.)

노키즈존 아니면 애견카페 안 가요..키즈존 한번 갔다가 애들이 강아지 멋대로 만지고 공놀이 해준답시고 공 강아지한테 사람한테 던지고. (강사모, 2023.9.7.)

2023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진상, 진상부모, 맘충 등이 함께 등장하였고, 더 나아가 ‘맘카페’ 자체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문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표현으로 과거에는 ‘초딩’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금쪽’이라는 키워드가 핵심 중심어와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러다가 장사 접을 때 저 맘충 진상이 알면 ‘나중에 00식당은 내가 맘카페에 글 써서 참 교육했다. 그 가게 문 닫았더라’ 이 지랄할까봐 더 싫네.”(유투브, 2023.9.30.)

[그림 III-3-6]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네트워크맵: 2023년(양육자 vs.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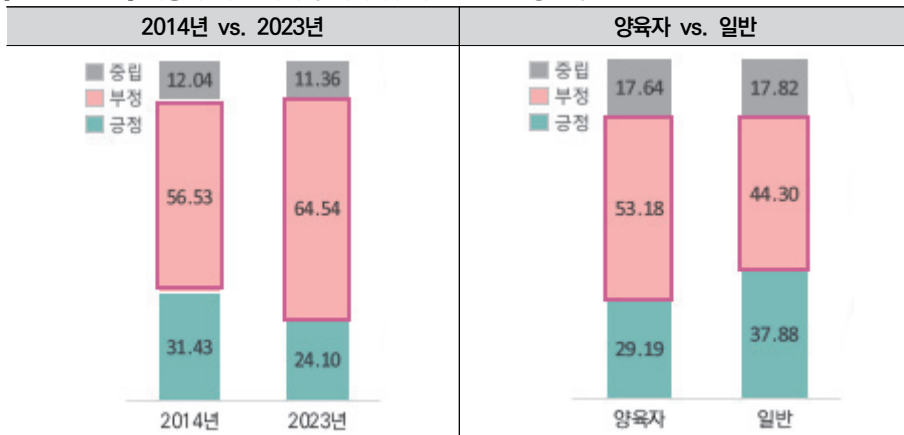


다. 감성분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긍정이 31.4%, 부정이 56.5%, 중립이 12.0%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긍정이 감소하고 부정의 비율이 증가하여 해당 문서 중 64.5%가 부정적 문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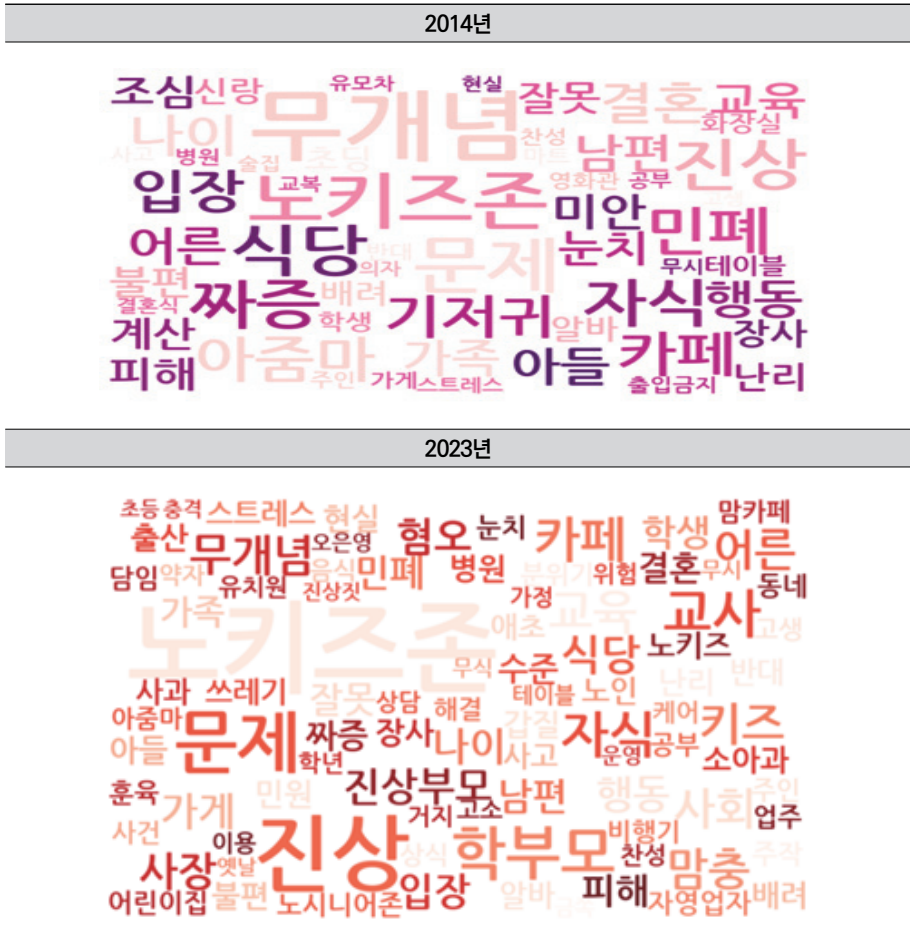
양육자와 일반 포털 카페를 비교하면, 오히려 양육자 카페의 문서에서 부정 비율이 53.2%로 일반 카페 4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7]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감성분석



증가한 부정 문서를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4년과 2023년을 비교해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무개념, 노키즈존, 식당, 문제, 진상, 카페 등은 지속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이었으며, 2023년은 과거에 비해 맘충, 혐오, 진상부모, 민원 등 양육자에 비해 혐오표현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출현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3-8]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부정 문서 워드 클라우드: 2014년 vs. 2023년



한편,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자 카페가 일반 카페에 비해서 부정 문서가 많이 등장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양육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나 혐오표현들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눈치, 미안함 등의 정서가 포함된 문서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양육자일지라도 일부 무개념 양육자나 부모에 대해 비판하는 담론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카페는 부정 문서에서 노키즈존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부모의 무개념, 민폐 행동을 비판하는 문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그림 III-3-9]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워드 클라우드: 양육자 vs. 일반



라. 토픽 모델링(LDA) 분석

1) 분석 방법

토픽 모델링 분석은 주제에 대한 분류에서 나아가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통해서 도출된 주제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토픽 모델링 분석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LDA는 각 토픽이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전제로 문서 집합에서 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제를 구성하는 빈출 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김용진·유덕산·방준성·장광호, 2020; 안상준·유원준, 2023). LDA에서 주제는 수집된 원문 내용에 담긴 다양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유형화 한다. 토픽의 개수는 토픽에 포

함되는 핵심적인 빈출 단어들의 분포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토픽의 의미론적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성(Coherence)²⁷⁾ 수치와 모델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혼란도(Perplexity)²⁸⁾ 수치를 사용하였다.

토픽별 단어 분포는 람다(λ)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독점적 키워드가 도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빈출 키워드가 도출된다. 이 분석에서 독점적 키워드는 람다(λ) 값을 0.4로 설정하여 도출하였다.

2) 분석 결과

카페 채널에서 추출한 문서를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를 시기별(2014년과 2023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픽 간에 중첩이 두드러지고, 키워드의 의미가 배타적이지 않은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차별 및 배제 관련 담론이 구조적 원인을 포괄하여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 사건이나 노키즈존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현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먼저, 양육자 카페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토픽 수는 총 5개이며, 1번 토픽(21.8%)은 ‘노키즈존 피해 경험 및 양육자 무개념 행동’이다. 여기에는 양육자의 경우 다른 양육자가 무개념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만 챙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카페를 이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번 토픽은 1번 토픽과 상당히 유사하나, 다른 양육자의 무개념 행동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적을 의미하는 빈출 키워드(짜증, 진상 등) 비중이 높으며, 공공장소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2, 3번 토픽 모두 양육자가 육아 시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대한 토픽이나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2번 토픽은 공공장소 및 특정 장소 이용 시에 양육자가 눈치를 보거나 조심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3번 토픽은 일상적인 육아 상황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거나 민원을 받게 되어 받는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이 있다. 5번 토픽

27) Coherence Model을 통한 토픽 최적화: 토픽의 의미론적 일관성 판단. 값이 높을수록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음.

28) perplexity를 통한 언어모델 평가: 확률 모델이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판단. 값이 낮을수록 정확하게 예측함.

픽29)도 식당, 극장, 병원 등 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미안함이나 다른 양육자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개념 행동(진상, 민폐, 난리)에 대한 지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저도 맘충 시러요 노키즈존도요, 그런데 또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해요 비상식적인 엄마들이 있으니 그런거겠쥬. 의자에 신발신고 올라가는 애들 여럿 봤어요 병원에서도요, 진짜 개념 좀 챙기면 좋겠어요 (부산 경남 맘스홀릭, 2021.2.20.)

애기 데리고 카페에서 차 한잔도 못 마시게 되는 날이 오는 군요 서로의 입장차이이긴 한데 저도 아가씨 때는 조카들이라도 식당가서 떠들고 소리치면 “난 저렇게 안 키울거야”라고 큰 소리 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특히 카페 같은 곳에서 아이가 기저귀에 똥싸면 집에 갈수 없으니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똥기저귀 갈아야 하는 현실이잖아요. 다만 앞으로 아이를 위한 수유실이라던가 기저귀대 같은 편의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도담도담 대전맘, 2014.8.1.)

〈표 III-3-4〉 양육자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14년

단위: %

	문서 비중	빈출 단어	독점적 단어	문서 비중
1	노키즈존 피해 경험 및 양육자 무개념 행동	노키즈존, 기저귀, 아들, 식당, 번개맨, 화장실, 아기, 무개념, 입장, 테이블, 가게, 피해, 찬성, 커피숍, 유모차, 백화점	노키즈존, 기저귀, 번개맨, 아들, 화장실, 가게, 백화점, 식당, 유실, 커피숍, 피해, 카페, 테이블, 당황, 잘못, 강아지	21.8
2	공공장소 이용시 양육자 눈치·조심	아기, 신청, 자식, 친정, 남편, 어른, 키즈, 파크, 선생, 가족, 조심, 체험, 행동, 시댁, 물놀이, 다행	신청, 자식, 친정, 파크, 남편, 키즈, 아기, 물놀이, 다행, 어른, 결혼, 학교, 도둑, 조리, 가족, 다짐, 당첨	20.5
3	주변의 불편·민원과 양육자 스트레스	쪽지, 아기, 문제, 병원, 민폐, 윗집, 무료, 배려, 규칙, 고생, 물티슈, 눈물, 행사, 스트레스, 사장, 유아, 체험	쪽지, 물티슈, 윗집, 무료, 눈물, 어린이, 규칙, 판매자, 운영, 상담, 행사, 적응, 보호, 우유, 주택, 사장, 예의, 부스, 싱글	20.3
4	무개념 양육자 및 공공장소 출입금지에 대한 의견	무개념, 신랑, 카페, 선생, 짜증, 눈치, 찬성, 식당, 입장, 어른, 아가, 문제, 진상, 시댁, 아줌마, 키즈카페, 출입금지, 매너, 공공장소	무개념, 신랑, 카페, 선생, 짜증, 눈치, 담임, 공공장소, 찬성, 출입금지, 반성, 방해, 키즈카페, 아줌마, 매너, 후회, 비난	19.3
5	시설 입장 및 피해에 대한 미안함	식당, 입장, 아들, 레고, 진상, 아기, 민폐, 장사, 교육, 사고, 극장, 사과, 예약, 프렌즈, 아가, 난리, 가족	레고, 장사, 프렌즈, 극장, 스시, 주니어, 예약, 진상, 병실, 서비스, 입장, 블록, 마인드, 핸드폰, 원칙, 포장, 능력	18.1

주: 총 문서 수는 3,735건

29) 핸드폰, 예약, 프렌즈, 레고, 블록, 포장 등은 장난감이나 판매 관련하여 불필요한 데이터에서 추출된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양육자 카페의 2023년 토픽 수는 총 8개이며, 1번 토픽(29.8%)인 ‘보육교육기관의 갑질 부모’ 토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23년에 학부모 갑질 및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번 토픽도 무개념 학부모와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내용으로 사건, 진상부모, 녹음기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1번 토픽과도 연결된다. 2번 토픽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금쪽’이 포함되었다. 3번 토픽은 병원 이용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4번 토픽은 2014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1번 토픽과 유사하게 ‘노키즈존과 무개념 양육자’ 관련 언급들이 포함되었다.

5번 토픽에는 노키즈존, 사장, 카페, 식당, 입장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업주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번 토픽에는 직접적으로 ‘혐오’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양육자가 노키즈존이나 입장 제한 등을 혐오로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혐오는 시니어, 강아지 등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번 토픽은 ‘코로나 시기 식당 이용 및 양육자 혐오표현’이다. 코로나 시기에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불편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맘충’이라는 여성 양육자에 대한 직접적 혐오표현이 높은 비중의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7번 토픽은 아동 발달이나 장애와 관련된 키워드와 무개념 학부모를 의미하는 ‘진상부모’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8번 토픽은 입장, 장사, 불편, 자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동 출입 제한에 대한 입장차나 찬반 의견에 대한 문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분석 결과를 2014년과 비교하였을 때, 양육자 스스로도 양육자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 표현을 인지하고 불편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키즈존 운영이나 출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보다 활발히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 양육자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23년

	토픽주제	빈출 단어	독점적 단어	문서 비중
1	보육교육기관의 갑질 부모	선생, 학부모, 진상, 교사, 학교, 문제, 교육, 학생, 담임, 민원, 사회, 피해, 자식, 상담, 갑질, 행동, 어린이집, 학년, 잘못, 금쪽	선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진상, 문제, 학생, 교육, 민원, 담임, 갑질, 상담, 피해, 사회, 인권, 보호, 공교육, 제도, 진상짓, 잘못	29.8
2	무개념 학부모와 문제행동 아동	진상, 아들, 어른, 문제, 사건, 가족, 학교, 학부모, 금쪽, 행동, 짜증, 진상부모, 멘트, 화장실, 자식, 유치원, 현실, 참여, 결혼, 담임	진상, 아들, 사건, 멘트, 어른, 화장실, 가족, 동감, 참여, 결혼, 사하구, 자랑, 짜증, 금쪽, 녹음기 피곤, 창피	11.8
3	병원 민폐와 무개념	아기, 남편, 병원, 소아과, 키즈, 진상, 진료, 민폐, 동네, 맞벌이, 진상부모, 충격, 보호자, 무개념, 친절, 반성, 미안, 짜증	아기, 소아과, 남편, 병원, 키즈, 진료, 맞벌이, 동네, 강남, 초음파, 와이프, 보호자, 노트, 응급실, 친절, 음식점, 사탕, 음파, 충격	11.1
4	노키즈존과 무개념 양육자	노키즈존, 무개념, 민폐, 가족, 학년, 어린이집, 교육, 어른, 위험, 조심, 예의, 찬성, 술집, 배려, 피해, 나이, 가정, 윗집, 무식	노키즈존, 무개념, 위험, 찬성, 술집, 민폐, 윗집, 예의, 가족, 눈물, 목욕탕, 키카, 조심, 카트, 무식, 학년, 아자카야, 전염, 요약	10.9
5	노키즈존 운영 및 혐오 관련	카페, 노키즈, 사장, 혐오, 키즈, 진상, 분위기, 커피, 노키즈존, 식당, 유모차, 문제, 행동, 맘카페, 입장, 남편, 강아지, 훈육, 아기, 민폐	카페, 노키즈, 사장, 우유, 유모차, 출입금지, 키즈, 편의점, 시니어, 냄새, 구구절절, 근처, 쪽지, 포인트, 물건, 떡볶이, 인형, 백화점, 혐오	10.8
6	코로나 시기 식당 이용 및 양육자 혐오표현	식당, 맘충, 자식, 마스크, 불편, 배려, 코로나, 기저귀, 테이블, 무개념, 행동, 난리, 노력, 고생, 키즈 학교, 유치원	식당, 맘충, 마스크, 코로나, 기침, 테이블, 자식, 인분, 불편, 서명, 기저귀, 장애인, 배려, 키즈카페, 라운지, 자존감	9.5
7	아동 발달 및 무개념 학부모	진상부모, 장애, 지원, 유치원, 발달, 육아, 공유, 회사, 다행, 사과, 온라인, 기관, 상담, 결석, 해결, 치료, 간식, 관심, 심정	발달, 다행, 장애, 회사, 육아, 아트, 진상부모, 과자, 조언, 아동권리, 봉봉, 세뱃돈, 결석, 심정, 파업, 장애아, 오프라인	8.9
8	공공장소 아동 출입 찬반 의견과 양육자 비하	입장, 이유식, 신랑, 또라이, 눈치, 카페, 감정, 스트레스, 알바, 장사, 마인드, 음료, 무개념, 불편, 자유, 민폐, 음식, 진상	이유식, 입장, 또라이, 신랑, 장사, 지능, 보은, 세면대, 업주, 음료, 남동생, 지각, 하교, 하늘, 집안, 알바, 자유, 울케, 스티커	7.2

주: 총 문서 수는 13,142건

일반 카페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토픽 수는 총 6개이며, 1번 토픽(20.9%)은 ‘양육자 비하와 편견’이다. 진상, 무개념, 쓰레기 등의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2번 토픽에는 여행 중 아동으로 인해 불편을 언급한 키워드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아동과 함께 탑승한 비행기 경험 관련 문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번 토픽은 임신,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와 미안, 조심, 부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4번 토픽 키워드에서는 공공장소 이용 시 피해, 층간소음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속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5번 토픽에서는 4번 토픽과 달리 배려, 입장, 사회 등 일반국민들이 양육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6〉 일반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14년

단위: %

	토픽주제	빈출 단어	독점적 단어	문서 비중
1	양육자 비하와 편견	진상, 예약, 자식, 고민, 공간, 쓰레기, 회사, 여유, 어린이집, 병원, 무시, 이용, 무개념, 위험, 용기, 서비스, 스트레스	진상, 예약, 자식, 어린이집, 공간, 방학, 위험, 캠핑장, 무시, 심판, 아줌마, 감정, 인격, 피곤, 쪽지, 쓰레기, 여유, 불안, 서비스	20.9
2	여행 중 아동으로 인한 불편 경험	여행, 민폐, 학교, 사건, 피해, 교육, 비행기, 무개념, 결혼, 재생, 어른, 고생, 조연, 단체, 문제, 초딩, 가족	여행, 민폐, 학교, 결혼, 고생, 조연, 초딩, 재생, 비행기, 사건, 단체, 욕심, 어른, 교육, 지랄, 멘붕, 애정, 잠시	17.0
3	임산부 및 눈치와 조심	제품, 임신, 관심, 아들, 조심, 이용, 건강, 금연, 캠핑, 공격, 시장, 상담, 미안, 안전, 카페, 윗집, 감기, 부담	제품, 임신, 조심, 금연, 시장, 상담, 공격, 윗집, 감기, 관심, 건강, 수고, 키즈, 중딩, 실천, 브랜드, 비방, 희망, 해외여행	16.2
4	양육자 혐오와 피해	실수, 공부, 아파트, 문제, 후회, 행동, 소음, 아파트, 아가, 행동, 사정, 사회, 짜증, 식당, 완벽, 미친년, 보호, 학생	실수, 공부, 후회, 아가, 미친년, 세금, 문제, 보호, 아버님, 스스로, 공공장소, 종말, 학년, 소음, 취업, 완벽, 식당, 병신	14.4
5	양육자 배려 인식	배려, 마리, 교사, 신청, 센스, 대전, 자격, 교복, 다행, 학부모, 보육, 핫딩, 우유, 타협, 동참, 성실, 사기, 소득, 입장, 스티디	배려, 입장, 사회, 신청, 마리, 교사, 나이, 교육, 센스, 대전, 자격, 선생, 교복, 다행, 지원, 학부모, 모임	14.1
6	-	용품, 아기, 알바, 입금, 공구, 핸드폰, 안전, 가전, 카페, 랜드, 버스, 테이블, 기저귀, 칩대, 직거래, 판매자, 책상, 계좌	용품, 아기, 알바, 입금, 공구, 가전, 랜드, 테이블, 핸드폰, 안전, 통보, 자전거, 카드, 불만, 계열, 판매자, 고문, 책상	17.4

주1: 총 문서 수는 6,197건

주2: 6번은 용품 판매나 활동 규정 등 불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토픽과 분류되어 도출된 것으로 의미 없는 토픽임.



2023년 일반 카페의 1번 토픽은 ‘아동권리와 보호’이다. 지자체별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NGO 단체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실시한 캠페인 등에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2번 토픽은 학부모와 부모 갑질 이다. 양육자 카페보다는 비중이 적으나, 이 역시 당시 학부모 갑질 및 교권 침해 관련 사건들이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번 토픽은 노키즈존 현상 확대 및 찬반 의견에 대한 논의로 입장, 가게, 자영업자,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4번 토픽에는 진상, 맘충, 아줌마, 여성 등 여성 양육자를 지칭하거나 비하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5번 토픽도 4번 토픽과 유사한 맥락에서 맘카페에 대한 편견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담겨있으며, 직접적으로 ‘혐오’ 키워드와 비속어를 확인할 수 있다. 6번 토픽은 용품 판매 및 활동 규정 등에 관련한 불필요한 문서가 다수 포함된 채 도출된 토픽으로 보인다.

2023년에 일반 카페에서는 2014년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여성 양육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하 표현이 다수 포함되었다. 젠더 갈등의 심화나 혐오 문화가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된다.

〈표 III-3-7〉 일반 카페 토픽 모델링 결과: 2023년

단위: %

	토픽주제	빈출 단어	독점적 단어	문서 비중
1	아동권리와 보호	교육, 권리, 사회, 지원, 보호, 이용, 복지, 문제, 상담, 장애, 가족, 참여, 청소년, 건강, 생활, 신청, 가정, 정책, 운영, 아동권리	교육, 권리, 지원, 복지, 참여, 아동권리, 제도, 기관, 정책, 신청, 보호, 조사, 건강, 이용, 장애, 사회, 보장, 발달	21.1
2	학부모와 부모 갑질	진상, 선생, 학부모, 교사, 학교, 학생, 자식, 문제, 민원, 담임, 고생, 학년, 진상부모, 갑질, 피해, 금쪽, 초등	선생, 학부모, 진상, 교사, 학교, 민원, 학생, 자식, 담임, 고생, 금쪽, 학년, 갑질, 다행, 교장, 진상부모, 초등, 공교육, 체벌, 진상짓	19.7
3	노키즈존 현상 확대 및 찬반 의견	노키즈존, 키즈, 카페, 문제, 노키즈, 캠핑장, 입장, 가게, 어른, 어린이, 자영업자, 사장, 동반, 식당, 찬성, 불편, 여행, 애견, 소아과	노키즈존, 키즈, 캠핑장, 노키즈, 가게, 카페, 입장, 동반, 자영업자, 문제, 애견, 찬성, 어린이, 어른, 수영장, 소아과, 노시니어존, 불편	19.3
4	여성양육자 비하 표현	진상, 사회, 무개념, 문제, 남편, 예약, 캠핑, 알바, 노인, 아들, 여성, 자식, 사장, 맘충, 잘못, 아줌마, 분위기, 주작, 어른, 상식, 민폐	무개념, 아줌마, 주작, 진상, 사회, 알바, 노인, 상상, 기저귀, 여성, 남편, 쪽지, 캠핑, 상식, 아들, 신랑, 아저씨, 결혼, 단골, 예약, 또라이	15.2

	토픽주제	빈출 단어	독점적 단어	문서 비중
5	맘카페와 여성 양육자 편견	노키즈존, 카페, 혐오, 기혼, 식당, 사장, 강아지, 아기, 비혼, 병원, 눈치, 비행기, 스트레스, 맘카페, 치료, 지랄, 진상부모, 학교, 어른, 의자, 술집, 악마	기혼, 혐오, 비혼, 강아지, 아기, 악마, 카페, 식당, 비행기, 술집, 눈치, 병원, 사장, 의자, 치료, 맘카페, 지랄, 말투, 치과, 고사장, 외식, 유전, 여혐	12.1
6	-	장애인, 행동, 보육, 청소년, 나이, 카페, 사회, 민폐, 장애, 회칙, 짜증, 진행, 예약, 관심, 현실, 커피, 매너, 방문, 간주, 재고, 환경, 노력	장애인, 회칙, 보육, 간주, 재고, 수량, 행동, 스마트폰, 양보, 명품, 배송비, 사이판, 마약, 중복, 소름, 계좌, 캐리어, 지갑, 국산, 단가	12.7

주1: 총 문서 수는 19,800건임.

주2: 6번은 용품 판매나 활동 규정 등 불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토픽과 분류되어 도출된 것으로 의미 없는 토픽임

일반 카페에서는 양육자 카페보다 노키즈존 경험 및 무개념 부모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율적 운영 vs. 부모의 권리’ 주제에서 약자, 인권, 해결 등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노력을 담고 있는 담론도 동시에 제기되어 관련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아동 및 아동권리, 아동 및 양육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동학대 등 특정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슈로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며,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노키즈존을 위주로 문서량이 급증하며, 노키즈존이 2023년에도 주요 화제어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현상에 한정되어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공장소가 다양한 연령대가 소통하는 공간이므로 어린 아동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동이 훈육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불편한 존재라는 인식하는 부정적 편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기피나 적대감 보다는 다른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의 태도를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양육자 카페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모로 인해 전체 양육자가 개념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은 양육자에 대한 혐오와 관련이 높고,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양육자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노키즈존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2023년에도 온라인 문서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및 참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노키즈존에 한정되며,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해준다. 또한 이때 양육자의 책임은 주로 여성 양육자에서 두드러져서 온라인 상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을 겨냥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로 인해 여성 양육자의 불편한 정서와 양육의 고충이 논의된다.

셋째,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에서 제기된 담론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입장과 상반된 입장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공통된 담론은 노키즈존 등 아동의 배제의 원인이 단지 아동의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라는 점과 아동을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육자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눈치가 보이고, 사과를 해야 하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육아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출산을 기피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에 일반국민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여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적대감이 부각되거나 또는 부당한 차별로 인식하고 사회적 포용이 강조되며, 언론 등에서 사회적 갈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의도 확인된다.

넷째, 시기별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2014년 대비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어 맘충 등 혐오표현이 다수 등장하며, 아동이 배제되는 장소도 2023년에는 식당이나 카페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다양화되어 대중교통이나 캠핑장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아동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2023년에 반려동물이 빈출단어로 등장하는데, 이는 카페 등의 출입에서 아동과 비교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동 및 양육자에서 나아가 노인 등 이외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담론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측면에서 사회적 포용의 수준이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V

사례분석

- 01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례
- 02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사례
- 03 소결

IV. 사례분석

제4장에서는 아동의 출입 제한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사업 및 입법례, 그리고와 아동 및 양육자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여 공공장소를 운영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내용을 다루고,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례

이하에서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 시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그리고 전국적 확산 등을 위한 고려사항이나 사업 요건 등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역할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가. 광역 지자체

1)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키즈존' 사업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 동반 외출이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키즈 오케이존' 매장을 자발적으로 신청 받아 지정하고 2026년 까지 700개소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2: 1-3).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음식점 관련 단체와 프랜차이즈 카페 등 350개소가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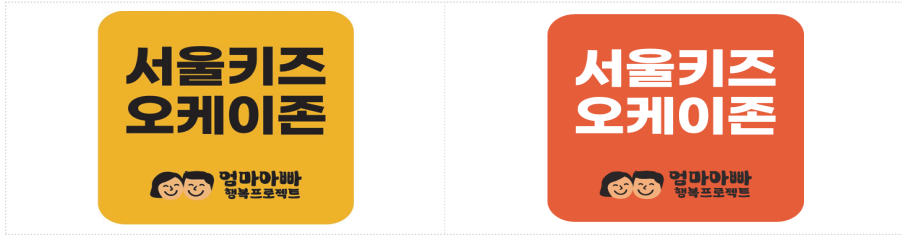
나) 주요 사업내용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으로 지정된 매장에는 아이들이 환영받는 공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란색과 주황색의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판매하거나 아이용 의자와 수저·포크 등을 비치해 아이들의 식사 편의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일정 면적(80㎡ 이상 권장)을 갖춘 영업장을 지정하였다. 이들 ‘서울키즈 오케이존’의 위치와 장소 등 관련 정보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서울생활 테마 지도인 ‘스마트 서울맵’(<https://map.seoul.go.kr/smgi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1]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 인증 스티커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22). “아이는 언제나 환영”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존’ 350개 점포 동참. p.4.

2023년부터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 업체에 유아의자·식기류 등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 업체뿐 아니라 전년부터 참여하는 업체도 지원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3a: 3). 서울시는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 참여 업소는 2022년 9월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5백개소(504개)를 돌파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3a: 1). 여기에 참여한 504개소에는 레스토랑, 분식, 카페 등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다양한 유형의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다.³⁰⁾ 서울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내년에 1,0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_서울소식_서울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1832, 2024. 8. 20. 인출).

또한 서울시는 양육자 존중 캠페인뿐만 아니라 업소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이용 예절에 관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 서울맵’에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업소 안내와 함께 이용안내문도 함께 게재하여 올바른 양육문화의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외식 수요가 많은 지역 생활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3b: 3-4).

30) 지정업체 유형별로는 한식(258개소), 햄버거(78개소), 카페(59개소), 중식(43개소) 양식(36개소), 기타(30개소) 등

[그림 IV-1-2]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 이용 안내문

〈「스마트 서울맵」 '서울키즈 오케이존' 이용 안내문〉

※ 음식점 내에서 크게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등의 행동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모든 공공장소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
육장입니다.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23b). '노키즈' 서울은 '오케이키즈'... '서울키즈 오케이존' 9개월 만에 5백개소 돌파. p.3.

한편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업주 입장에서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시설 파손이나 충돌과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등으로 인해 노키즈존을 운영하게 되는 측면을 지적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험 가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경향신문, 2023. 10. 31., <https://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10311435001#c2b>, 2024. 8. 20. 인출).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4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음식점이나 카페의 업주가 연간 2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하였다(한겨레, 2024. 5. 2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1419.html>, 2024. 8. 20. 인출). 이 보험은 서울에 소재한 16만 일반 휴게 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영업주 누구나 영업장 면적 100㎡ 기준으로 연 2만 원대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한도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1사고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_서울소식_서울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1832, 2024. 8. 20. 인출)³¹⁾.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시의 키즈 오케이존 정책에 대해서는 갈등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스카이데일리, 2023. 3. 2.,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3925, 2024. 2. 28. 인출). 즉, 노키즈존

31) 일반음식점 면적 100㎡ 기준으로 보험료는 25,000원(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휴게음식점 20,600원)이며, 시설소유관리자 담보는 대인 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 대물은 1사고당 500만 원 보상을 한도로 하되, 가입 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 특히,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내치료비(1인당 1백만 원, 1사고당 1백만 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 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까지 포함되어있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_서울소식_서울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1832, 2024. 8. 20. 인출).

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소에서 아이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예스키즈존을 따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노키즈존을 당연시하여 아동 차별의 인식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또한 오케이존에서는 자녀의 훈육 등에 소홀한 부모가 오케이존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No도 OK도 아닌 ‘케어키즈존’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둘러싸고 이들 용어가 공존하는 상황이 아동의 차별 문제를 희석하거나 상황에 맞게 키즈존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 서울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서울시에서는 2023년 5월에 마련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여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4).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어린이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23년 11월에 고척돔에서 시범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어 2024년에도 16개 경기 및 행사에서 약 68,000명 규모로 운영한 바 있다. 2024년 8월 현재 시립체육시설 9개소³²⁾와 시립문화시설 2개소³³⁾에서 실시하고 있다(서울시 사업 담당자 서면조사 결과, 2024. 8. 19.).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시립문화시설 참여기관과 참여 형태가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기관의 경우는 최초 시행 시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이 포함되었으나, 관람객 대기열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초에 ‘서울역사박물관’은 캠페인 방식으로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 참여 형태는 시립체육시설의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등과는 달리 시립문화시설은 관람객 대기 인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효성 낮아서 해당 기관에서 참여에 비협조적이고, 2024년 상반기부터 시립문화시설은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 배려해주세요’ 배너를 설치하여 캠페인 형식의 참여로 변경되었다.

한편 사업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일부 경기장에서 안전사고 우려와 일

32)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야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빙상장

33)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반 관람객의 불만이 예상되며, 행정 전달체계 측면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우선 대규모 시설이고 대기 인원도 많은 경기장의 경우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별도의 입구를 마련할 경우 안전사고와 일반 관람객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담당업무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참여 시설에 따라 시행 부서가 달라서³⁴⁾ 협조나 사업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개선과제로는 일부 시설에서 시행 의지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국립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하는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 시설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사회적 확산 및 홍보를 요구하였다.

3)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주 지역에는 노키즈존으로 지정한 영업장이 몰려 있어서 2023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2023.4. 의안번호 707). 동 조례에는 도지사에게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제4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이에 따라 도지사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권고’ 및 ‘제도’ 할 수 있으며,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동 조례안 제6조).

그런데 동 조례안은 지난해 9월에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는 기존의 조례안이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등으로 그 방향성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초 발의안의 경우는 제주도 의회에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목적과 영업의 자유 등이 충돌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심사를 보류하였다(KBS 뉴스, 2023. 9. 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0722>, 2024. 2. 19. 인출). 구체적으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차별 행위를 금지

34) 제도 도입 당시 ‘한성백제박물관’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문화정책과는 업무에서 제외되고 현재는 아동담당관에서 독립된 사업소(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선언적 권고의 의미로서 찬성하는 의견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 유보 원칙’의 위배,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등에 따른 반대 의견, 그리고 법적 근거의 마련이 조정하는 방식이어야 하나 당초 조례안의 경우는 소송이나 또다른 갈등을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심의 과정에서 노키즈존이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사고에 따른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된다는 점도 짚어졌다(KBS NEWS, 2023. 9. 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0722>, 2024. 2. 19. 인출). 이러한 우려는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 노키즈존의 지정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과도 관련된다(조덕상, 2023: 60).

이러한 논의 과정은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아동의 출입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다양한 논쟁점을 포함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정된 조례안의 조항 구성을 이하 <표 IV-1-1>과 같이 기존안과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표 IV-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 관련 조례안 비교

	기존 조례안(2023. 4)	수정가결(2023. 10. 12)
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2.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3.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4.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2.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및 홍보 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1: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2023.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_아동출입제한업소_확산_방지_및_인식개선을_위한_조례/\(3508,20231012\)](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_아동출입제한업소_확산_방지_및_인식개선을_위한_조례/(3508,20231012))), 2024. 5. 23. 인출)

이와 유사하게 광주시 남구에서도 2023년 11월 3일에 조례를 제정(시행: 2023. 11. 3)한 바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기초 지자체](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1544,20231103), 2024. 5. 23. 인출).</p>
</div>
<div data-bbox=)

1) 서울 성동구: 성동아이사랑 맛집³⁵⁾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서울시 성동구 보건위생과에서는 양육 친화적·포용적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은 2018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아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음식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아이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함과 동시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IV-1-2〉 서울 성동구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사업 개요

시기	추진내용
사업 기간	2018년부터 진행하여 2년마다 업체 지정
지정 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만 6세 이하 아동 및 동반가족(5인 이하) 음식값할인 동참업소
지정 기준	신청 업소 현장 점검 시행 후 우수 업소 지정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발생(2회 이상) 업소 제외
할인 범위	음식 가격의 5~10%(할인율 및 할인메뉴 업소 자율 지정)
지원 내용	-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 연 1회 위생 점검 및 위생봉투 지원 등 사후관리 - 온라인 홍보 지원(‘성동스마트지도’에 업소 표시, 구청 SNS 활용 등)

자료: 서울시 성동구(2024). 내부자료. 「성동 아이사랑 맛집·카페」 운영 개요 및 결과. 서울시 성동구 보건위생과.

나) 주요 사업내용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사업은 보건위생과, 외식업 중앙회에서 접수를 받아,

35) 본 내용은 서울시 성동구 보건위생과 ‘성동아이사랑 맛집’ 관련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2024. 6.)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신청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비용 할인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판을 보급하고 홍보하며, 위생봉투 등을 지원한다.

[그림 IV-1-3] 서울 성동구의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지정 절차



자료: 서울시 성동구(2024). 내부자료. 「성동 아이사랑 맛집·카페」 운영 개요 및 결과. 서울시 성동구 보건위생과.

다) 사업 추진 현황

성동구에서는 2023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을 확대·운영하고, 아이사랑 맛집에 대한 추가 모집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그림 IV-1-4] 서울 성동구의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아이사랑 맛집 포스터



자료: 성동구청 홈페이지_보건소_보건광장_음식점_찾기_아이사랑_맛집·카페, (<https://www.sd.go.kr/health/selectBbsNttlList.do?bbsNo=541&key=5051&searchCtgr=%EC%95%84%EC%9D%B4%EC%82%AC%EB%9E%91%EB%A7%9B%EC%A7%91&>, 2024. 9. 5. 인출)

기존에는 연중 1회 모집하여 2023년 7월에 신규로 지정을 완료하였으나, 9~11월에 수시로 추가 모집하여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제공하던 아이사랑 맛집 현판 제작 및 위생봉투 지원, 성동구 홈페이지, 소식지 홍보 뿐 아니라, 아이사랑 맛집 포스터를 배포하였다. 2019년 29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27개소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6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2023년 이후 총 5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추진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³⁶⁾

사업 추진 시의 어려움과 개선과제에 대해 사업 담당자는 다음을 언급하였다.

먼저, '성동 아이사랑 맛집 카페'의 지정은 홀수 연도에 2년마다 시행하는데, 지정 기간 동안 영업주의 개인 사정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통 영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참여업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신청한 영업주의 판매 메뉴가 아이나 부모가 선호하는 음식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성동아이사랑 맛집'에서는 가격 할인의 적용대상이 만 6세 이하 아동의 동반 가족인데, 영업주가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자녀의 나이를 속이는 일부 부모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거론하였다.

향후로는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업소를 확대하는 등 보다 활성화 하여 눈치 보지 않고 양육자가 자녀와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개선과제로는 지정 업소에서 아동을 위한 음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며, 아이 및 부모가 선호할 만한 가게를 늘려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 사업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이상에서 살펴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고려사항이 언급된다. 우선 음식 가격의 할인을 및 할인 메뉴는 업소의 자월에 맡기고 있어서 가게마다 적용하는 내용이 다른 상황이며, 이용 부모에 따라 가격 절감 혜택에 대한 필요도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지정업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36) '라) 사업 추진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와 '마) 사업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는 성동 아이사랑 맛집 키슬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업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어린이용 식기 등)와 제도적 혜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하는 등 지역에서 양육친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들었다.

2)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사업³⁷⁾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에서는 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동반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을 대상으로 ‘웰컴키즈존’을 지정하였다. 이는 2019년 명품동래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제안된 주민소통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웰컴키즈존’ 지정을 기초조사로 동래구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 조사를 계획하였다. 2020년 6월 사업체 조사와 연계하여 일반 및 휴게 음식점 4,043개소를 1차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에 9개의 음식점을 지정하였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내용)를 근거로 한다.

부산 동래구에서는 ‘웰컴키즈존’ 지정을 위해 2020년 1월 한국외식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지부 사전 홍보를 시작하였고, 2020년 2~3월 웰컴키즈존 지정 운영 가능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정에 적합한 업체를 파악하였다. 1차 전수 조사 이후 어린이 편의시설 적합 업체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방문하여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한편 본 사업의 예산은 연간 100만원으로 면적 300㎡이상 음식점에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수당 30만원과 표찰(스티커 제작) 70만원을 지출하였다.

〈표 IV-1-3〉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추진 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0.1	한국외식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지부 사전 홍보	-

37) 본 내용은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웰컴키즈존’ 관련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2024. 5)

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0.6.	웰컴키즈존 지정 운영 가능업체 전수 조사	(조사 방법) - 2020년 사업체 통계 조사시 조사원 활용하여 조사 - 면적 300㎡ 미만 음식점: 육안과 구두 조사로 대상 업체 유무 조사 - 면적 300㎡ 이상 음식점: 94개 업소 조사표 의거 조사 (유아수저, 유아식기, 유아의자, 놀이방 여부 확인 등) (조사 내용) - 어린이 식기, 유아의자, 놀이방 시설 등 어린이 편의시설 설비 여부 - 유아식기, 유아의자 미비 업체의 기증 수요포함 조사 후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여 가정에 필요 없는 물품 기증 검토
2020.7	1차 전수조사 후 어린이 편의시설 적합 업체 담당자 현장방문 및 심사	심사기준 적격성 여부를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 협조하여 심사
2020.10.	선정업체 지정(식) 및 웰컴키즈존 표찰 수여 및 선정업체 정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도 온라인 파일에 수록	개별업체를 방문하여 웰컴키즈존 지정서를 수여하고, 표찰과 스티커를 배부하여 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

자료: 부산시 동래구(2020). 내부자료. 명품 동래를 위한 웰컴키즈존 운영에 따른 일반휴게 음식점 조사 계획. 부산시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나) 주요 사업내용

부산시 동래구의 '웰컴키즈존'은 동래구 소재 카페, 식당 등 일반 및 휴게 음식점 중 어린이 편의시설 등 선정기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웰컴키즈존 표찰 또는 스티커 제작·배부하여 업소 입구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연1회)으로 관리하여 업체의 발전 의견 수렴 및 어린이 편의시설 설비 상태 관리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장소를 찾는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양육자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과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산 동래구의 양육친화 환경 조성 및 자치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동래고을'이라는 동래구에서 발간하는 지역신문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홍보하고, 자체 홈페이지의 육아정보 코너에 게재하여 홍보를 제공하며, 2019년부터 동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맞춤형 생활지도'³⁸⁾에 웰컴키즈존 업체 정보 추가 수록하였다.

38) 부산시 동래구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생활지도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임신부, 고령자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담당부서는 제도 도입될 당시에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계에서 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웰컴키즈존을 지정하였으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출산·육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림 IV-1-5] 부산시 동래구의 '웰컴키즈존' 인증 스티커



자료: 부산 동래구청 홈페이지_여성아동_여성정책_임신출산육아_웰컴키즈존,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504004008000 (2024. 6. 10. 인출)

다) 사업 추진 현황

부산시 동래구에서는 2020년에 선정된 9개의 웰컴키즈존과 2023년 12월 기준 6개의 웰컴키즈존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사항으로는 1) 웰컴키즈존 지정 이후 업소명, 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확인(변경 시 웰컴키즈존 변경신청서 제출)하고, 2) 업소 입구, 매장 안 웰컴키즈존 지정 표찰 또는 스티커 부착 상태 등 확인, 3) 놀이시설, 유아식기 등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웰컴키즈존 지정 영업자에게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공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그림 IV-1-6]과 같다.

[그림 IV-1-6] 부산시 동래구의 '웰컴키즈존' 영업자 준수사항

1. 아이를 동반한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실 것
2. 웰컴키즈존 지정 표찰 및 스티커를 출입문 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 주실 것
3.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업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놀이방만 설치된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와 청결·위생을 이행하여 주실 것 등

자료: 부산시 동래구(2023). 내부자료. 육아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웰컴키즈존 점검 계획,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작되어 배부 중임(관련 기사 2019. 6. 20., <https://www.nbnv.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37>).

라) 추진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³⁹⁾

사업 담당자는 사업 추진 시의 어려움과 개선과제로 다음을 언급하였다. 먼저, 웰컴키즈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아식기류 구비, 아이를 위한 놀이 공간 및 놀이 시설 등 웰컴키즈존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수조사 시 웰컴키즈존 지정 및 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업체가 다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개선과제로는 웰컴키즈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마다 웰컴키즈존을 부르는 용어가 예스키즈존, 키즈오케이존 등으로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점을 제기하였다.

마) 사업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사업 담당자는 사업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으로 음식점 좌석 개선사업 등 놀이시설, 유아 식기 구매 시 일정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웰컴키즈존에 부합하는 업소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내 사업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점도 언급하였다.

3) 부산 금정구: '금정 예스키즈존' 사업⁴⁰⁾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부산시 금정구의 '예스키즈존'은 금정구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였던 사업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같이의 가치'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이동반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 음식점을 발굴하여 '금정 예스키즈존'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 동반 손님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여 관내 출산, 양육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정 음식점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39) '라) 사업 추진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와 '마) 사업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는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40) 본 내용은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금정 예스키즈존' 담당자를 통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2024. 6).

를 제공하여 코로나 시기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2022년 4월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 금정구 지부의 협조를 받아 금정소식지, SNS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예스키즈존 신청 안내 및 인센티브 홍보를 진행하였다. 금정소식지, SNS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예스키즈존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6월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예스키즈존을 선정하였다.

한편 본 사업의 예산은 연간 약 80만원으로, 예스키즈존 스티커 제작, 유아수저 세트 구입 등에 소요되었다.

〈표 IV-1-4〉 부산 금정구 '예스키즈존' 추진 과정

시기	추진 내용	비고
2022. 4-5.	'예스키즈존' 홍보·안내	- 금정구 홈페이지 내 신청 - 관내 안심식당 280여개소 우편 발송 -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금정구지부 홍보 협조 - 금정소식지, SNS 홍보 등
2022. 5.	'예스키즈존' 신청·접수	- 금정구 소재 가족 선호(어린이 포함) 메뉴 음식점(카페)
2022. 6.	'예스키즈존' 지정·관리	- 금정구 소재 가족 선호(어린이 포함) 메뉴 음식점(카페) 중 '예스키즈존' 신청 업체

자료: 부산시 금정구(2022). 내부자료. 금정 예스키즈존 발굴·운영 계획.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나) 주요 사업내용

부산시 금정구의 '예스키즈존'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선정기준 적격성 여부 심사를 통해, 2022년 6월 말 기준 평가 접수 상위 20개소를 최종 선정한 후 '예스키즈존' 스티커 및 유아 수저 세트를 배부하였다. 지정업체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1) 업체 홍보(금정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2) 우수 참여업체 표창 수여: 출산장려 유공(구청장 표창) 3) 물품 지원: 유아 수저 세트 지원을 제공한다. 선정 후 연1회 정기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이 될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고, '예스키즈존' 스티커도 회수한다.

〈표 IV-1-5〉 부산 금정구 ‘예스키즈존’ 지정기준표

구 분	지정기준	
	연번	세부항목
1. 어린이 편의시설 (50)	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상태
	나	◦ 유아 수저 제공 및 상태
	다	◦ 유아 식기 제공 및 상태
	라	◦ 유아 의자 제공 및 상태
2. 위생·청결 (30)	가	◦ 종업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여부
	나	◦ 주방 및 홀 내부, 화장실 청결도
3. 서비스·기타 (20)	가	◦ 직원 친절도 및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나	◦ 옥외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 여부

자료: 부산시 금정구(2022). 내부자료. 금정 예스키즈존 발굴·운영 계획.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그림 IV-1-7〉 부산시 금정구의 ‘예스키즈존’ 인증 스티커



자료: 금정 예스키즈존 지정 업체에 제공하는 ‘금정 예스키즈존’ 표찰 및 유아식기.
 연합뉴스(2022. 7. 18). 부산 금정구, 관내 음식점 10개소 ‘금정 예스키즈존’ 지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8/0002784206>, 2024. 6. 10. 인출)

2.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사례

이하에서는 공공장소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와 면담 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때 아동의 출입에 제약이 없고, 아동이나 양육자를 배려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소 등을 공공장소 유형별로 고르게 선정하였으며, 추진 배경, 주요 운영사항, 애로사항, 개선과제, 그리고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및 지원요구를 위주로 파악하였다.

가. 공공청사: 전주시청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로,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지소 등의 근린 공공시설과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의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나뉜다(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 4-5-4-1). 현대의 공공청사는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김서우, 2022). 또한 공공청사 공간은 여러 시민 또는 주민들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활동과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써 청사 공간은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다(권민영, 2016).

전주시청⁴¹⁾에서는 아동 및 양육자의 편의성을 위해 공공청사의 광장을 놀이터와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내부 로비는 도서관 겸 카페로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마이뉴스, 2023. 12. 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984571, 2024. 6. 10. 인출).

1)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전주시는 2019년 11월에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 5대 플랜'의 일환으로 노송광장을 팝업놀이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주시 보도자료, 2019). 이러한 시도는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청 앞 광장을 자유로운 야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서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2014년부터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주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놀이터 조성사업(숲놀이터 10개, 덕진공원 놀이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8개소, 공공 놀이터 개선 8개소)을 추진해왔으며,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조성은 숲놀이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 주요 사업내용

2019년 6월에 노송광장에 어린이의 자연친화적인 정서와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돌입하였다. 당시 사업 담당자는 노송광장은 소나무로 둘러

41) <https://www.jeonju.go.kr>

러싸인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므로 숲놀이터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때 추진 방향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강조되었다(전주시, 2019). 또한 광장의 일부를 소규모 문화행사가 가능한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쉼터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을 추가하고, 시설물 관리 비용을 확보하는 노력도 이어졌다(전주시, 2019).

이상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에 이르러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 안전검사 등의 절차를 마치고 전면 개방하였다(전주시 보도자료, 2020a). 이후로도 지역내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노송광장을 홍보하여 바깥놀이 공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 및 테마의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병행하여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다(전주시 보도자료, 2019).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는 아동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숲놀이터는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해요, 나무를 이 정도 경사로, 기울기로 해서 나무타기를 만들어 놔는데, 아이들이 너무 쉽게 타면 나중에 높이를 높인다든가. (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특히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는 노송광장이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전주시 보도자료, 2020b). 또한 노송광장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한하여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데,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IV-2-1] 전주시청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자료: 전주시(2018b). 내부자료.

한편 이러한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 총 14인으로 '노송광장 놀이환경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놀이관찰 결과를 공유하고 놀이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전주시, 2020).

그 밖에도 청사내 로비에 도서관 겸 카페로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공간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노송광장의 자연놀이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천 시에 아이들은 광장에서 놀이를 하는 경우 부모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등 아동친화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전담부서인 야호아이놀이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지자체단체장이 바뀌면서 현재는 여성가족과(놀이터 조성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송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식뿐만 아니라 놀이마당, 체험부스, 부대행사 등을 계획하여 아동 및 부모 등 전주시민 2,000명을 참여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전주시, 2024).

3)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향후 추진 계획

사업 담당자는 추진의 어려움으로 아동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주관하는 것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에 포함되어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터를 추진하였으나, 어린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업은 공무원에게 생소한 경험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충을 호소하였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게 아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숲놀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일반 공무원들이 평소에 해보기가 어려운 과정이에요. (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힘들었다고 언급하였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린 아동과 다른 성인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이 거렸으나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동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권리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가의 자문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게 두 트랙인 거예요.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어른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이거를 담 아내야 되는 거죠. 결과물은. 이분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만족을 하고, 참여했던 어른들도 만족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조금은 이제. 당시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 있죠. (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또 숲 해설가분들. 유아 지도사분들. 이런 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를 해라. 해가지고. 다울 마당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어른들 이죠. 이거에 아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야별로 모집도 하고, 일반가정 엄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집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제일 많이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분들은 그분들(자문단)이거든요. 아이들의 성향이나 성격, 놀이 행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만들 때.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 자문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나중에 사후 모니터링을 자문단이 담당하는 데, 저의 생각과 자문단의 생각이 일치가 돼요.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문단이 아닌 동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부담은 될 수 있어요. (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4)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전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앞서 살펴본 ‘야호 5대 플랜’의 일환이다. 당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담당자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공간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 그 안정적인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동친화적 놀이환경의 조성은) 아동친화도시(인증)의 근거 자료로 들어갔고. 재인증받을 때도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인증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중략)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님이 바뀌어서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전임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뀌면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전주시청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이와 더불어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강조된다. 앞서 언급된 사업 담당자의 추진 시 어려움으로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 단체(세이브더칠드런), 전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전주시, 2018a). 당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민간에서는 학교 놀이 공간 건축 및 기부와 놀이터 운영에 관한 컨설팅, 사업의 모니터링, 캠페인 및 홍보, 후원기업 연계, 평가 연구 등을 담당하고, 전주시는 대상 학교 선정, 컨설팅 지원과 민간 업무에 대한 협력 등이 역할 및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다(전주시, 2017). 또한 덕진공원 내 아동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전주시, 2018b).

또한 전주시의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이용자가 ‘다양한 연령대’이고 ‘열린 공간 운영’을 강조한 점은 전국적 확산의 측면에서 그 목적을 감안할 때 특히 주목할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전주시가 2019년에 ‘야호 5대 플랜’에서 도심 곳곳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숲, 도서관, 미술관을 놀이터로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이를테면 덕진공원의 아동친화공간 조성으로 이용자는 기존에는 노령층 위주였으나, 가족 단위 방문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전주시, 2018b). 전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에서도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더불어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가 제시된다(전주시, 2018b).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청사에 아동 및 양육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은 단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 도서관: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부산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 금정구에 위치한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은 에스키즈존으로 조성하여 정숙한 도서관보다는 자유로운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표방한다⁴²⁾(부산광역시 대표 블로그, 2023. 11. 27., <https://blog.naver.com/coolbusan/223276>

42) <https://blog.naver.com/coolbusan/223276124581>

124581, 2024. 6. 10. 인출). 이 도서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직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비로 운영되며(인건비,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 금정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작은도서관팀(팀장 1명, 팀원 3명)에서 직영하고,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다.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이 80명인 소규모로 운영하는 단층 구조의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어린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실 내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을 위한 공연 기획, 보드게임 관내 대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1)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은 아동기의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형성이 책 읽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아동 도서와 아동 시설을 마련하여 도서관 발걸음을 유도하고자 설립되었다. 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도서관 방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독서인구로 성장하는 것을 도우려는 도서관 사업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2) 주요 사업내용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은 아동 방문객을 위해 좌식 공간으로 아동 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온돌 기능이 있는 마루바닥(좌식)을 설치하여 아동이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등 독서 행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동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영유아를 둔 양육자를 배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아동극 공연 등을 운영하여 즐거운 방과후 활동과 올바른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독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아동과 대학생 멘토와의 1:1 결연으로 방과후 독서와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2-2] 부산 금정구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어린이열람실



자료: 작은도서관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2272, 2024. 9. 9. 인출)

마지막으로 어린 아동이 도서관을 보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에스키즈존”임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고지하여 아동과 함께 하는 공간임을 알리고 어린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데 따른 다른 이용자의 배려와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3) 운영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담당 공무원은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아동을 배려하는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발생시키는 소음 발생과 소음에 대한 제지로 인한 보호자의 불만 표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을 허용하는 것이 아동의 소리 지르기, 과한 발걸음 소리로 이어짐에 따라 성인 이용자의 불만이 접수되고, 이를 제지할 때 아동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중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4)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사업 담당자는 보다 많은 어린 아동의 도서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다음을 제기하였다. 우선 아동 특성에 대한 성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들었다. 또한 아동은 도서관 이용예절에 대한 인식, 자녀 동반 양육자는

아동의 대한 도서관 이용예절 준수에 대한 교육, 도서관 운영자는 아동과 성인 이용객의 조화로운 이용과 증재 노력(안내사항 고지 등), 다른 이용자 또는 고객은 아동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식당

1) 대기업: V식당(C기업)

외식업체인 V식당⁴³⁾은 1997년부터 운영 중인 양식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뷔프는 2016년부터 ‘웰컴키즈존’ 정책을 펼친 데 이어 최근에는 ‘키즈 프렌들리 공간’을 마련하여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 어린이 전용 의자와 식기와 색칠용 테이블 매트를 제공하고, 아동 전용 샐러드바를 따로 마련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동선과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키즈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운영 전반에 걸쳐 ‘키즈 프렌들리’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아이뉴스24, 2024. 4. 15., <https://www.inews24.com/view/1708116> 에서 2024. 6. 10. 인출).

가)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V식당을 운영하는 C기업은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외식기업으로, 기업사명 또한 한 마을에 사는 가족과 이웃들이 단란한 식사 공간을 통해 행복과 사랑을 나누듯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족 레스토랑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비전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매장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고객과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아동이나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 이용자도 주된 고객층이다. 이에 아동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공간과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본적인 운영 방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V식당이 아동친화적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려는 영업 전략

43) <https://www.ivips.co.kr>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V식당의 아동친화적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아동 식사 메뉴를 구비하고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식사 공간을 마련하였다. 최근 오픈 매장의 경우는 키즈 특화 메뉴를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둘째, 양육자가 아동에게 식사를 편하게 먹일 수 있는 어린이 의자, 식기, 아기 침대 등 각종 물품을 비치하여 아동과 아동을 둔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셋째, 키즈룸, 놀이방 등 아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공간에 어린이 매트나 색칠놀이 도구 등을 구비하여 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V식당의 아동친화적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지만 최근 서비스를 확대한 지점의 사례에 의하면 대체로 키즈특화 메뉴나 아동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편의사항은 대규모 식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소규모 식당에 비해 차별화가 된다고 여겨진다.

V식당의 00점의 경우 어린이 동반 고객층에게 더 많은 편의를 드리고자 넓은 여유 공간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과 메뉴, 서비스 요소를 추가적으로 세심하게 반영한 매장입니다. (중략)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만족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기 모호한 면이 있으나, 근래 00점의 사례를 살펴보면 메뉴와 공간을 어린이 친화적인 요소로 제공한 것이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V식당 운영자_서면조사)

다) 운영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

V식당의 운영자는 아동 동반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어려움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다만, 아동 동반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간에 매장 이용 시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고객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사전에 아동 동반 고객은 놀이방 등 아동친화적 공간 근처에 자리를 제공하고, 일반 이용자들은 샐러드바 근처에 자리를 제안하는 등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하여 안내하고 좌석 만족도 체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중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더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르게 확보하여 중간에 자리를 이동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 고객 클레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키즈존, 키즈 프렌들리 매장에 관계없이 어느 매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의 식사 중 일반 고객과 갈등 상황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V식당 운영자_서면조사)

또한 아동친화적 매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비를 위한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점, 운영과 유지를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고객의 세분화하여 운영하므로 행정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하였다.

라)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V식당의 운영자는 아동친화적 업소에 필요한 지원으로 다음을 제기하였다. 먼저, 위생등급제, 가족친화기업인증과 같이 인증을 획득한 매장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육아정책 관련 사이트나 복지포 등에 인증 매장이거나 기업의 공시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친화적 사업자와 정부가 아동 및 육아지원사업에서 협력하여 다동이 행복카드 등을 통해 정부지원 할인 사업을 제안하였다.

한편 V식당 운영자는 노키즈존과 키즈 프렌들리로 양분화 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 업체 운영자, 이외 일반 고객 모두의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개인 사업자: B식당

개인 사업자의 사례로는 전주 소재 식당의 운영을 다루었다. 해당 업소는 소규모 일식당으로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에 공간이 협소하고, 영업 이윤의 측면에서 아동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제공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아동의 자유로운 이용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예스키즈존’임을 알리고 아동을 환대하고 있다(경향신문, 2024. 3. 26., <https://www.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203260600001>, 2024.6. 10. 인출). 앞서 다룬 V식당과 비교하여 아동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미흡하지만, 어린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양육

자가 편의성을 보장하는 경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례로 선정하였다.

가)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B식당 운영자에 의하면,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시기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이 갈 곳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아동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방문을 원하는 손님들이 입장하기 전에 어린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다수 경험하면서 아동의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양육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아동을 환대하게 된 것은 오랜 고객이 결혼과 자녀 출산 이후로도 계속해서 업소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걸(예스키즈존임) 명시한 이유는 저희가 오픈을 했던 시기에 노키즈존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아기 있는데 괜찮나요? 애기랑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이럴 거면 그냥 예스키즈존으로 명시하게 되었고...8년째 (영업) 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 오셔서 연애 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제가 노키즈존 이니까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그 단골 분들이 더 이상 저희 가게를 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노키즈존을 선언하면 이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시겠어요.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나) 주요 운영사항

업소에서 아동 동반 고객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입구나 홍보 채널 등에 아동의 출입이 가능한 “예스키즈존”임을 명시하여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점과 함께 유아용 식기, 유아용 의자, 색칠 공부책 등의 놀잇감을 제공하고 있다. 업소가 위치한 전주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키즈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기업에서 영유아나 아동 자녀를 둔 고객 유치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대규모의 부지나 영업장을 활용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는 달리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살, 6살? 그 정도 친구들 오면 그 친구들이 놀 수 있게. 색칠 공부하는 책 등을 구비하고, 놀이거리를 하면서, 다른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편이기도 해요.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아이들용(유아용 식기)도 있고요. 보통 오시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있나요? 하면 애기들이 이거 이런 거 잘 먹습니다.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아이용 의자도 구비를 해놨는데요. 아이용 의자를 구비하게 된 이유는 작은 애기가 왔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옷으로 애를 의자에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 거를 보고 아. 구비를 해야겠다. 싶어서...최대한 (양육자를)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다) 운영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

에스키즈존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매출상의 손해와 일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다른 손님이 경험하는 피해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 우려로 인해 아동의 출입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인식하였다. 우선 매출상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 헛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 고객이 성인이 되어 방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다른 고객의 불만이나 피해는 대다수의 이용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문제시 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영업장이어서 자녀동반 부모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양육자가 다른 이용자를 배려함에 따라 다른 고객이나 운영자도 자연스럽게 상호배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저희는 바(형식)여서 발로 벽을 많이 차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가) 케어를 해주시면 저희도 부모님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막 그렇게 화가 난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반대의 경우로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거나, 발로 차는데도 부모님이 제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너무 심하면 아기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한테도 주의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가게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다른 한편 영업주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공감하였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공론

화가 많이 되고, 부모의 불만도 수위가 높아서 영업상 불이익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부모가 아닌 업소가 져야 하므로 영업주 입장에서 어린 아동을 환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저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거기에 글 하나 올라가는 거로 가게가 잘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그냥 애초에 아기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그게 다른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중략) 가게에서 서비스가 별로였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 관련해서 일이 생긴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큰 불만을 제기하고...그런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중략) 애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컴플레인을 걸으니까 그 뒤로는 아예 노키즈 로으로 바꿔 버린 가게도 있거든요.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된 아이 관리는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네. 그. 저희 그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기 의자라든가. 안전한 식기라든가, (중략) 아이가 그 공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애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가 뛰어다니는 걸 방치를 하다가 애가 어디에 부딪힌 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러면 부모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업소로 돌리니까.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라)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식당 등의 업소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배려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등과 같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법적 장치를 강조하였다. 즉,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민원 대응과 법률적 조치 등을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업소에서 이들 법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개인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노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아이가 다쳤다고 했을 때 병원비를 요구했을 때는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본사에서 다 지급해 주는데 개인 사업자는 손님에게 응대를 해줘야 하고 보험은 보험대로 하는 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오롯이 다 감내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B식당 운영자_면담조사)

라. 여가문화시설: 미술관/공연장/경기장

1) 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은 2023년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 9시까지 개방하고,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학부모와 아동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데일리, 2023. 6. 3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2566635646968>, 2024. 6. 10. 인출). 이러한 운영 방침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시간 이외 특정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유아와 부모가 이용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가)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어린 아동에게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은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술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관람객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노키즈존 문제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소재의 가족친화 또는 아동친화기업과 협력하여 미술관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 이루어졌다.

나) 주요 사업내용

당시 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는 아이들이 전시장에서 편하게 놀면서 예술작품을 구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어린 아동이 현대미술을 보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색채가 강조되는 게임 방식과 색채가 강조되는 간식을 구비하는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기획하였다. 야간 개장 시 체험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에 운영하고 이후로는 문화가 있는 날의 낮 시간에 가족 뮤지컬 등 가족과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어린 아동이 미술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로비 등 보다 넓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활동 범위가 전시설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아동이

편하게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따르므로 공영 공간에 속하는 미술관의 로비 등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공영 공간에서 아동이 편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시실과 달리 다른 고객의 별다른 저항 없이 스치거나 지나치게 되어 문제 상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된다.

가장 큰 로비에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고객의) 저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공간별로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스 키즈 프로그램 할 때는 진품이 있는 전시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아이들이 뛰어 다녀서... 민원 발생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공용 공간인 로비에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전시실로 갈 사람은 갔거든요. (수원시립미술관 사업 담당자_면담조사)

한편 이들 사업은 교육홍보팀에서 맡아서 담당하고, 소요 재원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성인과 구분되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배정된 예산에서 충당하였다. 공공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나 과가 배치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은 색다른 시도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인터뷰에서 사업 기획 담당자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수행하기 때문에 '예스키즈'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다) 운영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는 기존의 인력으로 수행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 관객으로 인한 출입 시 안전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미술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는 평소에 비해 많은 자제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간 개방이나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시는 이른바 '뮤지엄 매너'에 대한 공지에 더하여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실내 정숙 등 필요한 태도를 재공지하고 있다.

라)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어린 아동이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소재의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기업과 연계하여 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확산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관객의 이용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어린 아동의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획하였던 ‘문화의 날’이 아닌 다른 별도의 날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캠페인을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동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일정 시간대에 아동 및 양육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면 다음 관람객들이 이를 반영하여 관람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아동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지역과 함께하는 미술관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기업과의 연계도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술관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특히 앞서 논의한 공영 공간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아동 안전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이 공모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모색할 만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타 지역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 담당자 중에서 영유아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컨설팅 등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에도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운영 방침이 다른 실정이므로 이들 방침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2) 공연장: M컴퍼니

클래식 전문 기획사인 M컴퍼니⁴⁴⁾는 2022년 1월에 M아트홀을 개관하고 연령

44) <https://blog.naver.com/megcompany>

제한이 없는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어린 아동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소극장 실내악 축제인 ‘위클리클래식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의 소형 클래식 공연장, 갤러리, 피아노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관객이 될 수 있다고 표방하고 있으므로 사례로 선정하였다(K스피릿, 2024. 3. 3.,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23>, 2024. 6. 10. 인출; 클래식잡지 월간리뷰, <https://blog.naver.com/artireview/223282633910>, 2024. 6. 10. 인출).

가)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모든 아동에게 허용되는 클래식 공연장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순수예술에 대한 경험이 아동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운영자는 클래식 음악은 전(全)연령에 걸쳐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령의 제약이 없는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문턱을 낮춘 클래식 공연은 다른 관객들에게 어린 아동을 배려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영자는 공연장에서 지지 받은 아동은 재관람율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순수예술 관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나) 주요 사업내용

M컴퍼니에서 기획하는 공연(토들러 클래식, 키즈 클래식, 패밀리 클래식 등)에는 모든 아동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아동이 어릴수록 순수예술에 전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운영자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아동이 함께 향유하는 공연이므로 공연 전에 진행자가 다른 관객에게 아동 관객에 대해 안내하고, 공연 후에 진행자가 아동 관객의 관람 예절 등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아동 관객을 위한 박수를 유도하여 다른 성인 고객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이때 다른 성인 고객들에게 아동 고객이 클래식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들이 편하게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연장에서 아동 관

객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클래식 음악이 아동에게 즐거운 경험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공연장에서는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부산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어디가 가서 공연을 보겠냐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고 소란해도 다른 관객들은 이것을 지적하는 순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참게 되는 거 같아요. (M컴퍼니 대표_면담조사)

또한 소규모 공연장 위주로 기획하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컴퍼니 대표는 위클리 클래식 공연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해 이하와 같이 언급하면서 ‘생활 속 예술 공간’을 표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위클리 클래식 페스티벌은 올해가 3회 째예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M아트홀(저희가 운영하고 있는)에서 하는 기획 공연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하에 넣었고요. M아트홀은 처음부터 기획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동네에 카페 같은 그런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 옆에 있는...신도시에 있는 상가 한 칸이 그냥 공연장이 공사를 하고 공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느낌으로.. (M컴퍼니 대표_면담조사)

이와 더불어 소규모 공연장은 아동 고객의 편의성의 측면에서 잇점이 있다고 언급된다. 규모가 작은 공연장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아동을 부모가 공연장 밖으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잠이 든 아동을 그대로 둘 수 있으며, 무대와 관객, 객석이 구분되지 않고 가까워서 아동들이 공연을 놀이로 인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8개 전국 지역에서 ‘위클리 클래식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대표들도 소규모 공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연장으로는 유희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연령 제약이 없는 공연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강조된다. M컴퍼니에서 자체적으로 창단한 M양상블에 의한 키즈 클래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 등 지역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어린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다) 운영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

아동 관객이 함께 하는 공연의 어려움으로는 재정 문제를 언급하였다. 공연 기획사는 연주자 모집, 프로그램 컨셉 기획, 포스터 제작 및 홍보, 공연 일정 조율, 예매 사이트 운영 등을 담당하는 데, 여기에 연주가를 위한 연주 사례비 이외에도 업무별로 인건비가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기획사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로는 아동 대상 공연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유아 의자나 아동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라)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지원요구

클래식 공연에 대한 어린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유아 의자 등 설비, 아동친화적인 공연장 대여 등을 위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특히 아동 관객이 허용되는 공연의 관람비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공연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공연료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은 전국 지역의 문화재단 등에서 아동 관객을 허용하는 공연에 대한 기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요소라고 인식된다. 이때 민간 부문 공연에 대한 비용지원의 요건으로는 전체 공연에서 아동 관객의 일정 비중을 준수하고, 대상아동 연령, 공연 횟수, 프로그램 운영 및 연주자의 전문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영자는 어린 아동이 클래식 공연을 향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으로 다음을 언급하였다. 즉, 아동과 부모는 기본적인 공연 예절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고, 공연장에서는 아동을 배려한 설비 등을 구비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며, 다른 관람객의 아동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운영자는 아동 대상의 클래식 공연에 대한 부모 수요가 높으나 공공기관 등에서 아동을 관객으로 허용하는 공연은 많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아동 대상 클래식 공연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공공기관 대상의 홍보와 지역내 유관 기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아동 관객을 위한 공연 기획에서는 전문 해설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에 아동이 들을 수 있는 한 곡의 길이가 4~5분 정도임을 감안하여

중간에 해설을 포함하는 것이 아동 특성에 부합하다고 설명하였다.

3) 경기장: 고척스카이돔(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은 야구 경기장으로 최대 16,670명을 수용하는 좌석을 갖추고 있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어린 자녀와 함께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제’를 시행하고 ‘유아동반 가족석’을 제공하고 있다.

가)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서울시설공단의 사업 실무자는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First 운동’ 전개를 위해 프로야구 경기 시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입장(Fast Track) 제도 시행하고, 어린이 동반가족이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별도 출입구로 우선 입장을 시행하여 가족문화 활동이 장려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유아동반 가족석은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에게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육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상의 노력을 통해 공공시설을 어린이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주요 사업내용

공단은 2024년 3월에 고척스카이돔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키움이어로즈 프로야구단과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 입장제’ 관련 협업을 진행하여 초등 이하 어린이와 함께 고척돔을 찾으면 야구장내 2곳의 전용 케이트를 통해 즉시 입장이 가능토록 하였다(서울시설공단 보도자료, 2024: 2). 이러한 시도는 서울시 방침 「서울 어린이 프로젝트(23~27)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관람객 사이에서 호평이 쏟아지면서 공단과 구단은 어린이 동반 가족의 우선 입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주요 사업(핵심 사업) 「고척에서 만나는 ‘서울 어린이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척스카이돔 내

에 유아동반 가족석을 2024년 6월 기준으로 총 21석을 마련하였으며(서울시설공단, 2024: 2), 공식적으로 지정한 내용은 2023년에는 유아동반 가족석이 2가족 4석, 가족 테마석 4가지 17석, 2024년에는 유아 동반 가족석이 4가족 8석, 가족 테마석 6가지 25석으로 증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좌석은 조성 이전에는 5.9%에 그쳤으나, 조성한 이후로는 2023년에는 96%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특히 가족테마석(17석)의 경우 평균 98%의 이용률로 증가하여 추가 증설하고, 유아동반 가족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관람 모니터(복도 4대, 수유실 2대)와 수유실(2개소)에 안전쿠션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 개선과제

사업 실무자는 경기장을 아동 및 양육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을 들었다. 우선 초등 이하 아동의 경우는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녀 동반 양육자는 우선 입장에 관심을 기울여 참여를 늘리고,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자녀 훈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아동, 어린이 동반가족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고,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는 아동, 어린이 동반 가족을 배려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정부의 아동친화적인 공공장소 및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장소의 유형별로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사업의 목표는 노키즈존의 확산을 예방하고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동권리가 보다 부각되는 사회적 대응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즉,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포용하며, 아동이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소통하는 권리를 지니며, 공공장소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주시청에서 노송광장을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과 ‘M컴퍼니’ 대표가 클래식 음악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점, 그리고 ‘B식당’ 대표가 어린 고객으로 인한 당장의 영업상 손실이 아니라 아동이 미래의 고객이라고 인식하는 점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특성을 포용하여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동은 공공장소의 목적이나 성격에 부합하는 이용 예절을 학습하고 실천해야 하며, 양육자는 타인을 배려하여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주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어린 아동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데 따른 이해와 배려를 구하며, 다른 이용자는 어린 아동이나 양육자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쟁이 어린 아동으로 인한 불편이 다른 고객이나 영업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협소하게 대응하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노키즈존 현상이 영유아의 아이다움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민감하고 의젓한 아이나 부모의 완벽한 통제를 기대할 뿐 이들을 포용하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김도리·이희원·최원미·백준상·박주희, 2023: 988).

셋째, 정부의 키즈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사업 명칭과 지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즈존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별도 사업 명칭이 달라서 인지도가 낮을 수 있고, 지정기준이나 지원내용, 그리고 지정업체의 운영관리 사항도 상이하여 기대효과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존중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일관된 적용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사업 추진의 목적과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전수조사, 지정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지정업체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지방정부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키즈존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

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업소의 안심보험 제도와 민원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아동 출입은 아동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을 상기하면(김도균·윤보배, 2016: 17-18), 아동친화 지정 업소의 시설안전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내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아동이나 아동 전문가로 구성되는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이나 기업 등과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키즈존 사업의 적용범위는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 한정되므로 그 적용범위를 다양한 공공장소 및 공간으로 확장하고,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어린 아동의 배제가 이용이나 출입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 편의성을 포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카페 등과 같이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약하지는 않으나, 아동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공공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장소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운영사항을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운영 사례에 의하면, 미술관은 공영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특정 시간대를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공연장은 지역내 소규모 공연장을 발굴하여 아동 관객의 접근성을 제고하되 해설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도서관은 아동을 위한 공간을 구분하되, 온돌을 설치하는 등 설비 보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V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 및 경험과 요구

- 01 일반국민의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 02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 03 유자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개선요구
- 04 일반국민의 사회적 대응에 관한 인식과 요구
- 05 소결

V.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 및 경험과 요구

제5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경험을 일반국민과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 대응 과제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때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를 포괄하였으며, 사회적 포용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다루었다. 또한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에 따른 인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1. 일반국민의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이하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고,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되는 함의를 모색하였다.

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에 대한 특성과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아동에 관한 인식과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아동이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3%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사회적 활동 및 참여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3%에 달하여 지배적인 의견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아동 자신만의 견해를 지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8.6%에 그치고,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격을 지니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82.1%에 머물렀다.

〈표 V-1-1〉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동의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아동은 미숙하므로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	87.3	12.7	100.0 (1,200)
아동은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8.6	21.4	100.0 (1,200)
아동은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92.3	7.7	100.0 (1,200)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격을 지니고 있다	82.1	17.9	100.0 (1,200)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고, 사회적 활동 및 참여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아동은 독자적인 견해를 지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항목에서는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격을 지닌다’ 항목에서는 특히 20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74.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와 여성은 ‘아동의 독자적인 견해 및 행동에 대한 권리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아동에게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동을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여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2〉 아동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87.3	78.6	92.3	82.1
연령				
20~29세	85.7	80.5	91.7	74.2
30~39세	86.7	90.5	91.3	84.0
40~49세	83.6	89.1	94.6	89.3
50~59세	86.1	76.9	90.6	82.9
60세 이상	91.2	67.7	92.7	80.3
χ^2 (df)	7.819(4)	63.700(4)***	3.077(4)	17.842(4)**
성별				
남성	87.3	74.0	91.1	79.2

구분	①	②	③	④
여성	87.4	83.2	93.4	85.0
χ^2 (df)	0.047(1)	16.483(1)***	1.755(1)	7.568(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6.8	78.1	92.2	84.3
자녀 없음	88.7	80.0	92.5	76.9
χ^2 (df)	1.465(1)	0.101(1)	0.001(1)	10.477(1)**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83.9	87.3	93.4	87.4
초등 이하 자녀 없음	88.9	74.8	91.8	79.8
χ^2 (df)	5.253(1)*	27.642(1)***	1.508(1)	11.428(1)**

주: ① 아동은 미성하므로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 ② 아동은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④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격을 지니고 있다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3개 항목 모두에서 ‘그럴수 있다’고 허용하는 비율이 90%선을 넘어 영유아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려가 기대된다.

〈표 V-1-3〉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수용 여부		계(수)
	그럴 수 있다고 봄	이해하기 어려움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94.5	5.5	100.0 (1,200)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문제행동(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는 등)을 하는 상황	92.3	7.7	100.0 (1,200)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기질, 질병, 발달 장애 등)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	90.8	9.2	100.0 (1,200)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전반적으로 40대 이상과 자녀를 둔 가구에서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 정도를 보이는 20대와 30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영유아가 보이는 행동이 발달 특성이나 기질에서 비롯되는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4〉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전체	94.5	92.3	90.8
연령			
20~29세	92.8	84.0	80.2
30~39세	94.9	89.6	85.2
40~49세	96.1	96.0	92.8
50~59세	97.5	94.3	94.7
60세 이상	92.4	93.8	94.4
χ^2 (df)	8.772(4)	26.156(4)***	41.191(4)***
성별			
남성	94.1	91.5	90.8
여성	94.9	93.0	90.8
χ^2 (df)	0.294(1)	0.452(1)	0.144(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4.2	93.7	91.7
자녀 없음	95.3	88.8	88.4
χ^2 (df)	0.074(1)	10.448(1)**	3.776(1)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96.0	94.6	90.0
초등 이하 자녀 없음	93.9	91.3	91.1
χ^2 (df)	2.691(1)	4.817(1)*	0.110(1)

주: ①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②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문제행동(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는 등)을 하는 상황 ③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기질, 질병, 발달 장애 등)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아동의 입장을 우선시하거나 배려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놀이권을 보장하며,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문항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집 앞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집 근처의 놀이터가 줄어들 예정이다”의 상황에서 ‘아동에게는 놀 장소가 필요하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급식에 포함된 음식으로 인해 아동

의 몸이 갑자기 간지러워졌다” 상황에서 ‘집단생활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는 대체급식을 제공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4.0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녀온 이후에 친구와 놀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학원 등 부모의 판단에 의한 활동을 요구한다”의 상황에서는 ‘아동의 일상에 대한 선택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와 ‘부모의 지시는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동의하는 수준이 3.1점과 3.2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아동이 부모의 지시에 따르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5〉 아동권리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녀온 이후에 친구와 놀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학원 등 부모의 판단에 의한 활동을 요구한다							
아동의 일상에 대한 선택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5.6	21.5	37.0	29.3	6.6	100.0 (1,200)	3.1
부모의 지시는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4.9	15.8	40.6	33.2	5.5	100.0 (1,200)	3.2
집 앞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집 근처의 놀이터가 줄어들 예정이다.							
아동에게는 놀 장소가 필요하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3.0	4.3	12.8	30.3	49.6	100.0 (1,200)	4.2
아동이 놀 장소는 다른 데도 있으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된다	49.5	25.9	15.3	7.0	2.3	100.0 (1,200)	1.9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급식에 포함된 음식으로 인해 아동의 몸이 갑자기 간지러워졌다							
집단생활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는 대체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2.4	6.7	18.4	31.2	41.2	100.0 (1,200)	4.0
집단생활에서는 모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14.7	19.6	27.6	27.2	11.0	100.0 (1,200)	3.0

주: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

게 인식하는 비율과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서 자녀 훈육에서 양육자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30대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아동이 놀 장소는 다른 데도 있으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항목을 지지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동권리 측면에서 상반된 의견이 확인된다.

〈표 V-1-6〉 아동권리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전체	3.1	3.2	4.2	1.9	4.0	3.0	(1,200)
연령							
20~29세	3.3	3.1	4.0	2.2	3.9	3.2	(171)
30~39세	3.3	3.2	4.1	2.1	3.8	3.3	(182)
40~49세	3.2	3.3	4.3	1.8	4.0	3.0	(216)
50~59세	3.0	3.3	4.3	1.8	4.3	2.8	(238)
60세 이상	2.9	3.1	4.2	1.7	4.0	2.9	(393)
F	7.7***	2.5*	2.0(a)	10.0***	5.5***(a)	5.9***	
성별							
남성	3.0	3.2	4.2	1.9	4.0	3.0	(593)
여성	3.2	3.2	4.2	1.8	4.0	3.0	(607)
t	-3.2**	1.4	-1.0	1.7	0.1	0.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1	3.2	4.2	1.8	4.0	3.0	(848)
자녀 없음	3.2	3.1	4.1	2.0	4.1	3.1	(352)
t	2.2*	-3.1**	-1.6	2.0*	0.9	1.8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3	3.3	4.3	1.9	4.0	3.1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0	3.1	4.2	1.9	4.1	3.0	(832)
t	-3.7***	-2.8**	-2.7**	0.6	1.4	-1.5	

주1: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아동의 일상에 대한 선택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모의 지시는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아동에게는 놀 장소가 필요하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④ 아동이 놀 장소는 다른 데도 있으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된다 ⑤ 집단생활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는 대체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⑥ 집단생활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는 대체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이하에서는 일반국민의 사회적 포용과 아동 배제의 인식을 다루고, 공공장소에서 초등 이하 어린 아동으로 불편을 경험한 내용과 아동에 대한 배제 인식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사회적 배제와 관련되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관계에 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타인을 배려하는 데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 특히 사회적 신뢰도가 관련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주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8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부족하거나 평소에 소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는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적 배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자녀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1〉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포용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3.3	7.9	17.6	44.1	27.2	100.0 (1,200)	3.8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이웃 등)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8.5	22.6	30.3	29.4	9.3	100.0 (1,200)	3.1
평소에 교류(대면, 전화, 인터넷 등)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7.6	20.0	27.2	33.3	11.8	100.0 (1,200)	3.2

주: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청년남성2는 사회적 관계가 타인을 배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평소에 교류나 단절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친구를 사귄 수 있긴 한데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친구 관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확실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기보다는 협소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남성2_심층면담)

다음으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관련되는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일반국민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평균 4.5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4.4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4.3점)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4.0점과 3.9점에 그쳐서 어린 아동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수용하거나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한다는 측면에서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유아가구1은 지역주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양육자의 사례를 들었다.

〈표 V-2-2〉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중요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0.5	1.1	18.0	57.2	23.2	100.0 (1,200)	4.0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0.1	1.0	7.1	37.3	54.6	100.0 (1,200)	4.5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	0.2	0.5	9.6	53.9	35.8	100.0 (1,200)	4.3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0.1	0.6	7.2	39.7	52.4	100.0 (1,200)	4.4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	0.4	2.7	23.6	53.2	20.1	100.0 (1,200)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저희 10층 할아버지가 9층 친구 아이에게 이제 자주자주 보는 아이였는데 할아버지가 여기 단지 내에 있는 거기 파리바게트 가서 빵 사줄게 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바로 앞이고 집도 바로 앞이고 해서 저 같으면 별 생각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도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엄마 같은 경우는 너무 경악을 하면서 할아버지께 이거는 이야기

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는 이렇게 못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아가구1_심층면담)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고, ‘법과 규칙을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4.5점과 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어린 자녀를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3〉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수)
전체	4.0	4.5	4.3	4.4	3.9	(1,200)
성별						
남성	4.0	4.3	4.2	4.3	3.9	(593)
여성	4.1	4.6	4.3	4.5	3.9	(607)
<i>t</i>	-1.5	-4.6***	-2.8**	-4.4***	-0.7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9	4.4	4.2	4.3	3.8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4.1	4.5	4.3	4.5	3.9	(832)
<i>t</i>	3.4**	1.3	1.9	2.9**	1.6	

주1: 5점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②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③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 ④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p* <.01, *p* <.001

나. 나이에 따른 차별 인식

일반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유형 중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지위(소득 등)에 따른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4.0점(5점 만점)과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은 3.3점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3.6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나이가 어린 아동의 차별의 민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4〉 차별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심각함 인식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4.6	20.6	39.4	26.7	8.7	100.0 (1,200)	3.1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9	9.8	36.8	38.3	13.2	100.0 (1,200)	3.5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인한 차별	2.3	12.1	30.4	37.6	17.7	100.0 (1,200)	3.6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2.1	14.6	44.3	30.1	8.8	100.0 (1,200)	3.3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1.4	7.7	34.7	42.1	14.1	100.0 (1,200)	3.6
경제적 지위(소득 등)에 따른 차별	0.6	3.3	21.5	43.6	31.1	100.0 (1,200)	4.0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1.0	4.6	27.4	41.2	25.8	100.0 (1,200)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 '매우 심각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과 더불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그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며, 특히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나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현상과 관련되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녀 유무 특히 초등 이하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공장소 등에서 어린 아동을 동반하여 초래되는 불편에 대해 당사자인 양육자가 차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V-2-5〉 차별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3.1	3.5	3.6	3.3	3.6	4.0	3.9	(1,200)
연령								
20~29세	3.2	3.7	3.9	3.5	3.6	4.1	3.9	(171)
30~39세	3.4	3.6	3.8	3.3	3.5	4.1	3.8	(182)
40~49세	3.3	3.6	3.8	3.4	3.6	4.1	4.0	(216)
50~59세	3.1	3.5	3.5	3.3	3.6	4.1	3.9	(238)
60세 이상	3.0	3.4	3.3	3.2	3.7	3.9	3.8	(393)
F	6.3*** ^(a)	3.4* ^(a)	19.6***	5.9*** ^(a)	0.6 ^(a)	5.3***	2.4* ^(a)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성별								
남성	3.3	3.3	3.4	3.2	3.5	3.9	3.8	(593)
여성	3.0	3.7	3.8	3.3	3.7	4.1	3.9	(607)
<i>t</i>	6.7***	-9.2***	-8.2***	-2.0*	-5.1***	-3.0**	-2.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1	3.5	3.5	3.3	3.6	4.0	3.9	(848)
자녀 없음	3.2	3.6	3.7	3.4	3.7	4.1	3.8	(352)
<i>t</i>	1.0	2.5*	2.0*	2.0*	1.2	1.5	-1.3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3	3.6	3.8	3.4	3.6	4.1	4.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1	3.5	3.5	3.3	3.6	4.0	3.8	(832)
<i>t</i>	-3.2**	-0.9	-5.7***	-1.4	1.1	-2.0	-3.3**	

주1: 5점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 '매우 심각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②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③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인한 차별 ④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⑥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등)에 따른 차별 ⑦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앞서 다룬 차별 인식에 이어 사회적 배제의 수위를 진단하기 위해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심각성을 조사하였다.

1)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우선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 자녀(초등 이하)를 동반한 여성양육자에 대해 평균 3.1점으로, 남성(2.6점)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은 2.9점으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혐오표현 문제는 여성 양육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V-2-6〉 한국사회의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심각한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	10.3	23.4	37.1	22.2	6.9	100.0 (1,200)	2.9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 (어머니)에 대한 혐오표현	10.1	20.1	33.8	24.3	11.7	100.0 (1,200)	3.1
어린 아동을 동반한 남성 양육자 (아버지)에 대한 혐오표현	15.5	28.3	38.2	14.3	3.8	100.0 (1,200)	2.6

주: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와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20대와 30대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 양육자와 남성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경우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아동 및 양육자의 부정적인 경험이 우려된다.

〈표 V-2-7〉 한국사회의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수)
전체	2.9	3.1	2.6	(1,200)
연령				
20~29세	3.4	3.7	2.6	(171)
30~39세	3.1	3.4	2.5	(182)
40~49세	3.1	3.4	2.8	(216)
50~59세	2.8	2.8	2.6	(238)
60세 이상	2.7	2.6	2.6	(393)
F	16.2***	47.1***(a)	2.6*(a)	
성별				
남성	2.9	3.0	2.8	(593)
여성	3.0	3.2	2.5	(607)
t	-1.7	-4.5***	5.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	3.0	2.7	(848)
자녀 없음	3.0	3.3	2.6	(352)
t	1.4	3.4**	-1.0	

구분	①	②	③	(수)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2	3.4	2.7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2.8	2.9	2.6	(832)
<i>t</i>	-5.6***	-6.2***	-2.0*	

주1: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 ②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어머니)에 대한 혐오표현 ③ 어린 아동을 동반한 남성 양육자(아버지)에 대한 혐오표현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 참여한 여성 양육자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되고 과거에 비해 사회적 편견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영아가구1),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아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영아가구1). 이러한 진단은 청년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청년여성4).

요즘 혐오 발언도 너무 스스럼없이 하고,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글이나 제가 사진으로만 딱 보고 이제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략) 뭔가 너무 엄마들은 조금 너무 애들만 생각해, 다른 사람 타인은 생각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편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엄마들에 대해서 맘충이라던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략) 이상한 엄마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좀 한쪽 모습 좋지 않은 것보다 온라인상에서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어쨌든 요즘 과거나 현재나 남편들이나 아빠가 여자에 비해서 좀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생계를 어쨌든 많이 하는 편이니까 예전에도 지금도 육아 참여도가 그렇게 사실은 지금은 많아졌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게 아닐까. (영아가구1_심층면담)

온라인에서 사실 엄마는 아무래도 주양육자다 보니까 뭔가 이런 앞서 말한 아동으로 인한 불편한 사태가 생겼을 때 주로 이제 엄마랑 같이 있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 엄마에 대한 여론이 더 많게 형성되는 것 같고 아빠는 이제 거기서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청년여성4_심층면담)

2) 온라인 상 혐오표현에 대한 공감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이나 양육자에 언급되는 표현의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55.1%로 절반 이상의 일반국민이 문제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초보자를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요린이, 골린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비율이 59.3%로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에 ‘일정 정도 공감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이고, ‘공감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5%로 나타나서 배려심이 부족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표 V-2-8〉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공감 정도			계(수)
	전혀 공감/이해할 수 없다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된다/이해가 간다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	28.2	59.3	12.5	100.0 (1,200)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55.1	34.1	10.8	100.0 (1,200)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2.7	43.9	33.5	100.0 (1,200)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심층면담에 참여한 영아가구3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부모가 부각되어 논란이 되는 상황이므로 아동보다는 부모의 무개념이 문제라고 보았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부모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분들의 사례가 올라오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주요 변인별로는 연령, 성별, 자녀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20대의 경우는 공감이나

이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 아동이나 여성 양육자에 대해서는 25.0%, 18.2%로 상대적으로 높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한 응답률은 46.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해서는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공감이나 이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더 높게 나타나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배려심이 없는 양육자를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V-2-9〉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빚댄 표현

단위: %(명)

구분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			계(수)
	전혀 공감/이해 할 수 없다	일정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해가 된다	
전체	28.2	59.3	12.5	100.0 (1,200)
연령				
20~29세	19.1	55.9	25.0	100.0 (171)
30~39세	20.3	61.5	18.2	100.0 (182)
40~49세	24.4	64.1	11.5	100.0 (216)
50~59세	27.8	62.6	9.6	100.0 (238)
60세 이상	38.2	55.1	6.7	100.0 (393)
$\chi^2(df)$	60.410(8)***			
성별				
남성	24.2	60.1	15.7	100.0 (593)
여성	32.2	58.5	9.3	100.0 (607)
$\chi^2(df)$	19.784(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0.0	60.2	9.8	100.0 (848)
자녀 없음	23.9	57.1	18.9	100.0 (352)
$\chi^2(df)$	20.211(2)***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23.0	63.5	13.5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0.6	57.4	12.0	100.0 (832)
$\chi^2(df)$	5.641(2)			

주: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빚댄 표현은 '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0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V-2-10〉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

단위: %(명)

구분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			계(수)
	전혀 공감/이해 할 수 없다	일정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해가 된다	
전체	55.1	34.1	10.8	100.0 (1,200)
연령				
20~29세	43.0	38.8	18.2	100.0 (171)
30~39세	41.9	43.7	14.4	100.0 (182)
40~49세	45.8	40.1	14.2	100.0 (216)
50~59세	53.9	37.6	8.6	100.0 (238)
60세 이상	72.3	22.2	5.5	100.0 (393)
χ^2 (df)	80.364(8)***			
성별				
남성	49.4	36.4	14.1	100.0 (593)
여성	57.4	33.1	9.4	100.0 (607)
χ^2 (df)	6.49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7.4	33.1	9.4	100.0 (848)
자녀 없음	49.4	36.4	14.1	100.0 (352)
χ^2 (df)	6.493(2)*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46.5	40.2	13.3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58.9	31.4	9.7	100.0 (832)
χ^2 (df)	15.256(2)***			

주: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은 '맘충' 등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p < .05$, $***p < .001$

〈표 V-2-11〉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

단위: %(명)

구분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			계(수)
	전혀 공감/이해 할 수 없다	일정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해가 된다	
전체	22.7	43.9	33.5	100.0 (1,200)
연령				
20~29세	10.7	42.5	46.7	100.0 (171)
30~39세	14.4	45.4	40.2	100.0 (182)
40~49세	13.1	46.7	40.2	100.0 (216)
50~59세	26.9	44.6	28.6	100.0 (238)
60세 이상	34.4	41.8	23.8	100.0 (393)
χ^2 (df)	84.724(8)***			

구분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			계(수)
	전혀 공감/이해 할 수 없다	일정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해가 된다	
성별				
남성	25.0	41.4	33.6	100.0 (593)
여성	20.3	46.3	33.4	100.0 (607)
χ^2 (df)	5.809(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3.2	46.1	30.6	100.0 (848)
자녀 없음	21.2	38.4	40.3	100.0 (352)
χ^2 (df)	12.562(2)**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14.3	48.5	37.3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26.4	41.8	31.8	100.0 (832)
χ^2 (df)	23.627(2)***			

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표현은 '진상부모' 등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3) 혐오표현 사용에 대한 인식

혐오표현에 대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62.7%로 가장 높고,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쌤민이, 골린이 등)' 37.2%,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8.0%로 조사되었다. 앞서 다룬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2%로 나타났다.

〈표 V-2-12〉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			계(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주린이, 쌤민이, 골린이 등)	37.2	54.5	8.3	100.0 (1,200)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62.7	31.0	6.4	100.0 (1,200)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8.0	54.8	17.2	100.0 (1,200)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이 아동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유아가구2는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빗대어 사용하는 표현을 귀엽게 표현하는 단어로 인식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잼민이라는 단어가 그냥 귀엽게 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를 궁금해서 잼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부정적인 거였고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제가 딸한테도 잼민아, 잼민아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서.(유아가구2_심층면담)

주요 변인별로는 앞서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와 마찬가지로 연령, 성별, 자녀 유무에 따라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로, 초등 이하 자녀가 없는 가구(30.1%)보다 오히려 낮고,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V-2-13〉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단위: %(명)

구분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			계(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37.2	54.5	8.3	100.0 (1,200)
연령				
20~29세	20.4	60.6	19.0	100.0 (171)
30~39세	25.4	60.4	14.2	100.0 (182)
40~49세	31.2	64.3	4.5	100.0 (216)
50~59세	37.9	56.2	5.9	100.0 (238)
60세 이상	52.9	42.6	4.6	100.0 (393)
χ^2 (df)	103.489(8)***			
성별				
남성	32.3	56.9	10.8	100.0 (593)
여성	42.0	52.1	5.9	100.0 (607)
χ^2 (df)	18.166(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9.8	54.4	5.9	100.0 (848)

구분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			계(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녀 없음	31.1	54.7	14.2	100.0 (352)
χ^2 (df)	22.224(2)***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28.9	64.0	7.2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40.9	50.3	8.8	100.0 (832)
χ^2 (df)	17.863(2)***			

주: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은 '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01$

<표 V-2-14>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

단위: %(명)

구분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			계(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62.7	31.0	6.4	100.0 (1,200)
연령				
20~29세	44.3	48.2	7.5	100.0 (171)
30~39세	52.9	36.9	10.1	100.0 (182)
40~49세	56.3	36.7	7.0	100.0 (216)
50~59세	67.5	27.4	5.0	100.0 (238)
60세 이상	75.7	19.7	4.6	100.0 (393)
χ^2 (df)	63.216(8)***			
성별				
남성	56.2	35.6	8.2	100.0 (593)
여성	69.0	26.5	4.5	100.0 (607)
χ^2 (df)	23.247(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6.4	27.7	5.9	100.0 (848)
자녀 없음	53.8	38.8	7.5	100.0 (352)
χ^2 (df)	13.804(2)**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56.9	35.7	7.4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65.2	28.9	5.9	100.0 (832)
χ^2 (df)	6.026(2)*			

주: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은 '맘충' 등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2-15〉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

단위: %(명)

구분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			계(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28.0	54.8	17.2	100.0 (1,200)
연령				
20~29세	11.3	60.8	27.8	100.0 (171)
30~39세	18.8	58.9	22.3	100.0 (182)
40~49세	21.6	63.8	14.6	100.0 (216)
50~59세	29.6	54.5	15.9	100.0 (238)
60세 이상	42.1	45.4	12.4	100.0 (393)
χ^2 (df)	85.748(8)***			
성별				
남성	28.9	52.2	18.9	100.0 (593)
여성	27.1	57.3	15.6	100.0 (607)
χ^2 (df)	3.966(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0.5	54.9	14.5	100.0 (848)
자녀 없음	21.9	54.4	23.6	100.0 (352)
χ^2 (df)	19.655(2)***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23.3	59.5	17.1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0.1	52.7	17.2	100.0 (832)
χ^2 (df)	7.264(2)*			

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표현은 '진상부모' 등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라.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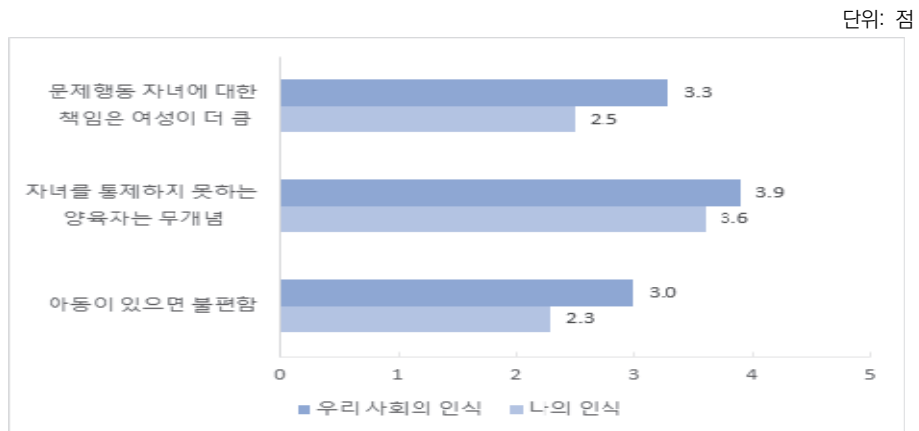
1)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되, 응답자 개인의 생각과 한국사회의 인식을 구분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우선 3개 항목에 걸쳐 응답자 개인의 인식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의 동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한국사회는 74.8%(평균 3.9점, 5점 만점), 응답자의 경우는 62.6%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한 비율은 한국사회는 33.7%(3.0점), 응답자는 10.3%(2.3점)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보다 한국사회의 인식 즉, 사회적 분위기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양육자가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V-2-1]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과 한국사회의 인식_일반국민: 비교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표 V-2-16]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공공장소의 상황별 동의 정도_나의 인식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	22.3	37.5	30.0	9.3	1.0	100.0 (1,200)
나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	2.8	10.3	24.3	46.0	16.6	100.0 (1,200)
나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문제행동을 할 때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22.5	31.1	22.3	17.2	6.9	100.0 (1,20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표 V-2-17〉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한국사회의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공공장소의 상황별 동의 정도_한국사회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사회는 아동이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5.1	25.8	35.4	30.5	3.2	100.0 (1,200)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5	6.2	17.5	55.1	19.7	100.0 (1,200)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문제행동을 할 때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6.5	19.3	23.7	37.5	12.8	100.0 (1,20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자녀 유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아동이 공공장소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와 한국사회 모두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아동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3.2점(5점 만점)으로 초등 이하 자녀가 없는 가구(2.9점)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서 그 함의에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공공장소의 다른 이용객이 자신의 자녀로 인해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결혼 전이나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에 자신도 불편하거나 기피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영아가구1, 3, 4). 이로써 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 다른 고객을 배려할 수 있는 양육자의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저희 아이 때문에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저도 아이 없이 밖에 나가서 불일을 이제 보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지금 생각하는 감정이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사람이었으면 비슷한 상황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그랬을 때 저희 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저도 좀 이해는 되면서 그렇게 좀 불편하거나 좀 기분이 안 좋다고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경험이 결혼 전이나 아이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아이가 생겨보니 이제 아이들이 이런 행동 특성이 있고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저한테 불편한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게 저는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이 있는 부모들에게 좀 배려가 부족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네, 저도 비슷한데 저도 결혼 전에 아이가 없을 때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갔을 때 만약 그곳

이 노키즈존 이었으면 한편으로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조용히 식사를 하거나 뭔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방해받지 않고 뭔가 그 장소를 더 잘 즐길 수 있겠다 싶었고 또 혹여 노키즈존이 아니었을 경우에 갔을 때 아기들이 너무 막 떠들거나 막 돌아다니며 부모 부모님은 뭐 하는 거지 왜 제어를 안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애기가 있고 보니까 제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를 깨달았거든요. (영아가구4_심층면담)

또한 공공장소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에서 더 낮고, 한국사회의 인식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2-18〉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수)
전체	2.3	3.6	2.5	(1,200)
연령				
20~29세	2.4	3.6	2.2	(171)
30~39세	2.3	3.6	2.3	(182)
40~49세	2.2	3.7	2.3	(216)
50~59세	2.3	3.6	2.6	(238)
60세 이상	2.3	3.7	2.9	(393)
F	0.7(a)	0.4(a)	17.0***	
성별				
남성	2.4	3.6	2.6	(593)
여성	2.2	3.7	2.5	(607)
t	2.7**	-1.5	2.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2	3.6	2.6	(848)
자녀 없음	2.5	3.7	2.4	(352)
t	4.2***	1.4	-2.2*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2.2	3.6	2.4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2.3	3.7	2.6	(832)
t	2.9**	1.7	3.7***	

주1: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나는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 ② 나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 한다 ③ 나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문제행동을 할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심층면담에 참여한 전통적인 성역할 즉, 여성 양육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인식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초저가구2, 3). 또한 초저가구4는 여성에게 편중된 부정적 인식이 부당한 편견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였다.

엄마가 주양육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더 활동이 많고 아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부딪히는 건 엄마고 그래서 이제 뭐 뉴스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엄마가 이제 많이 나오죠. 엄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생긴 말이 맘충, 빠충이란 말도 있긴 한데 맘충이란 말이 맨 처음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 그리고 남자들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보면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엄마들을 되게 적대시해요. 그런 것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의 사회악으로 단정하더라고요. (초저가구2_심층면담)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극진히 사랑을 해서 병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엄마 학교에서 학원 유치원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건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여서 아이가 금쪽이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만큼 엄마를 조금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엄마가 똑바르면 애도 반듯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저가구3_심층면담)

제 주변의 엄마들은 워킹맘도 많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몇몇 케이스 때문에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초저가구4_심층면담)

〈표 V-2-19〉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한국사회의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수)
전체	3.0	3.9	3.3	(1,200)
연령				
20~29세	3.4	4.1	3.5	(171)
30~39세	3.2	3.9	3.4	(182)
40~49세	3.2	4.0	3.4	(216)
50~59세	2.8	3.7	3.2	(238)
60세 이상	2.8	3.7	3.3	(393)
F	20.3***(a)	11.3***(a)	3.0*(a)	
성별				
남성	2.9	3.7	3.1	(593)
여성	3.1	4.0	3.6	(607)
t	-4.5***	-6.8***	-8.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0	3.8	3.3	(848)

구분	①	②	③	(수)
자녀 없음	3.1	4.0	3.3	(352)
<i>t</i>	2.0*	2.4*	0.3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2	3.9	3.4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2.9	3.8	3.3	(832)
<i>t</i>	-4.5***	-2.1*	-1.2	

주1: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우리 사회는 아동이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②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문제행동을 할 때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p* < .05, **p* < .001

2)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기피와 혐오표현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에 대한 기피와 혐오표현 사용과 어린 자녀(초등 이하) 양육자에 대한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 15.8%,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함)' 15.2%,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다' 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0〉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기피 및 혐오표현 경험 여부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경험 여부		계(수)
	예	아니오	
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	15.8	84.2	100.0 (1,200)
나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다	9.8	90.2	100.0 (1,200)
나는 아동에 대한 혐오 표현(잼민이 등)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함)	15.2	84.8	100.0 (1,200)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응답자에서 3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21〉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기피 및 혐오표현 유경험 비율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구분	①	②	③
전체	15.8	9.8	15.2
연령			
20~29세	21.1	9.3	39.7
30~39세	21.0	16.0	17.2
40~49세	13.9	9.6	13.3
50~59세	16.7	10.0	9.6
60세 이상	11.7	7.1	7.9
χ^2 (df)	11.844(4)*	9.954(4)*	97.471(4)***
성별			
남성	16.5	11.6	19.0
여성	15.1	8.0	11.5
χ^2 (df)	0.581(1)	4.941(1)*	12.939(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6	9.7	10.4
자녀 없음	21.2	9.9	26.7
χ^2 (df)	13.080(1)***	0.002(1)	53.739(1)***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14.0	11.8	13.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16.6	8.9	15.8
χ^2 (df)	2.442(1)	2.250(1)	2.248(1)

주: ① 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 ② 나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다 ③ 나는 아동에 대한 혐오 표현(짤민이 등)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함)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3)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로 인한 불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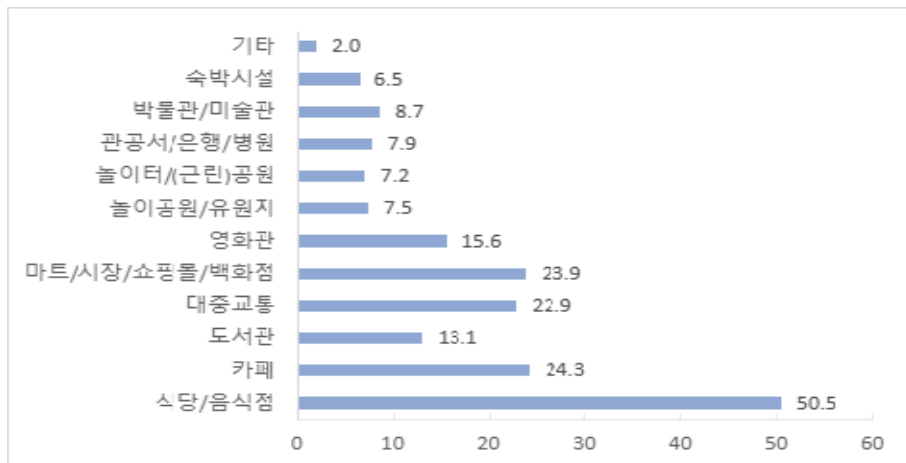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중복하여 응답한 비율은 식당과 음식점은 50.5%, 카페 24.3%, 마트(시장, 쇼핑몰, 백화점)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공공장소의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서 식당이나 음식점의 경우는 50대 이상에서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대중교통이나 도서관에서는 20대가 불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V-2-22 참고). 이는 연령별로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다른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짐작된다. 초등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대중교통에서 20대의 불편이 높게 지적된 것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가구2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더 눈치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유아가구3은 그 원인으로 자녀 출산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림 V-2-2]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유경험 비율_일반국민

단위: %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표 V-2-22〉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유경험 비율(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식당/ 음식점	카페	도서관	대중교통	(대형) 마트/시장/ (대형) 쇼핑몰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유원지	놀이터/ (근린) 공원	관공서 은행, 병원	박물관/ 미술관	숙박시설 (캠핑장 포함)	기타
전체	50.5	24.3	13.1	22.9	23.9	15.6	7.5	7.2	7.9	8.7	6.5	2.0
연령												
20~29세	47.1	28.3	19.3	36.1	15.1	27.2	4.9	6.0	6.2	9.4	4.1	3.9
30~39세	53.6	32.9	15.0	26.6	22.6	18.1	9.3	11.4	11.8	10.1	9.4	1.2
40~49세	45.5	29.9	12.5	16.3	22.2	20.0	10.5	7.6	8.0	7.0	9.2	1.9
50~59세	52.8	25.1	15.6	19.6	27.8	14.5	6.5	6.5	7.7	11.4	7.7	1.5
60세 이상	51.9	14.9	8.4	21.0	26.8	7.8	6.6	6.1	7.0	6.9	4.0	1.8
성별												
남성	50.1	21.7	13.6	24.6	22.4	16.7	8.9	5.8	7.9	8.9	6.2	2.1
여성	50.9	26.8	12.7	21.2	25.3	14.6	6.1	8.7	8.0	8.5	6.9	1.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9.6	23.8	13.0	19.0	24.7	13.9	8.1	8.2	8.3	8.2	6.8	1.7
자녀 없음	52.6	25.5	13.3	32.2	21.8	19.8	6.0	5.0	7.0	9.8	5.9	2.5
중요행선 이하 자녀 유무												
중요 이하 자녀 있음	45.8	27.5	14.9	18.0	19.7	17.5	10.3	9.6	8.4	9.1	8.9	1.5
중요 이하 자녀 없음	52.6	22.8	12.3	25.0	25.7	14.8	6.2	6.2	7.7	8.5	5.5	2.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1.7	20.2	9.8	32.5	26.7	13.5	6.4	6.6	7.2	10.2	3.3	2.8
300만원 초과~500만원	48.8	24.2	12.7	19.4	23.9	16.5	8.4	7.4	9.2	5.7	6.7	0.7
500만원 초과~700만원	51.8	28.4	16.9	20.8	22.5	17.1	7.8	7.4	9.3	11.1	10.7	1.6
700만원 초과	50.4	24.2	12.9	20.1	22.1	15.0	6.6	7.4	4.7	8.9	4.8	3.8

구분	식당/ 음식점	카페	도서관	대중교통	(대형) 마트/시장/ (대형) 쇼핑몰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유원지	놀이터/ (근린) 공원	관공서 은행, 병원	박물관/ 미술관	숙박시설 (캠핑장 포함)	기타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45.8	23.2	12.7	26.1	23.1	16.2	7.6	8.4	8.1	10.0	6.6	1.8
중소도시	54.2	24.3	13.5	20.4	25.8	16.4	7.6	6.3	7.2	8.6	6.7	1.5
읍면지역	54.8	28.0	13.1	20.0	20.0	11.1	6.5	6.2	9.5	4.4	5.6	4.4
(전체)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주1: 중복응답 결과임.

주2: 최근 1년 이내 기준으로 경험한 내용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르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오히려 좀 눈치를 좀 주시는 걸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를 앞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아가구2_심층면담)

사실 저도 애기 낳기 직전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애를 케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엄마가 힘든지를 잘 모르니까...당연하게 배려하는 못한 거 같아요. (중략) 어르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려고 하고 배려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젊은 층들은 확실히 이제 애가 조금 칭얼거리고 답답하니까 큰소리를 내게 되면 대놓고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유아가구3_심층면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불편사항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고성 등)이나 위험한 행동, 시끄러운 영상을 시청하거나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부모의 자녀 방치, 고성이나 비위생적 행동 등 양육자의 예절 없음 등이 지적되었다. 공공장소 유형별로는 식당에서는 식사를 방해하는 행위,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파손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대중교통에서는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언급되었다.

이상에서 제기된 아동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불편 경험은 양육자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 그리고 다른 이용자의 포용과 배려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년여성 대상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가능한 연령은 미취학아동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년여성2와 5는 공통적으로 초등학생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예절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인식하였다.

초등학생 정도면 그래도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꼭 공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다고 생각해서 초등학생이 만약에 좀 다른 타인한테 불쾌하게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뭐 뭐든거나 그러면 좀 이해도 안 가고 그런 애들 보면 저는 계속 좀 째려보거든요. (청년여성2_심층면담)

초등학생은 '부모는 뭘 하길래 애가 저렇게 이제 떠들게 놔두는 거지' 아니면 '이제 부모가 저런 걸 잘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더라도 이미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을 이제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나이였던 말이에요. (청년여성5_심층면담)

〈표 V-2-23〉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불편한 경험_일반국민(중복응답)

단위: 건수

구분	불편한 경험	(수)
식당 /음식점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219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님, 물건, 음식 던짐 등)	249
	타인의 식사 방해	10
	부모의 아동 방치(통제 안 함, 시끄러운 영상 시청, 통제 못 함)	140
	부모의 비매너 행동(일방적 편의 요구, 비위생적 행동, 고성 양육 등)	15
카페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92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님, 음식 및 기물파손)	85
	타인 방해(유모차 및 물건 방치, 함부로 물건가져감)	10
	부모의 아동 방치(시끄러운 영상 시청, 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58
	부모의 비매너 행동(비위생적 행동, 고성양육)	4
도서관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 및 이동	122
	부모의 아동 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18
	도서 방치 및 파손	7
	부모의 비매너 행동(큰소리로 책 읽어주기, 대화 등)	5
대중교통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등)	149
	아동의 위험한 행동(의자에서 뛰기, 뛰어다니기 등)	35
	타인의 대중교통 이용 방해(의자 차기, 운행 지연, 신체 접촉, 공중도덕 무시 등)	28
	부모의 아동방치(시끄러운 영상 시청, 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33
	부모의 비매너 행동(좌석 양보 강요, 고성 양육 등)	9
(대형)마트 /시장 /(대형)쇼핑몰 /백화점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등)	91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니기, 카트 타기, 기물파손 등)	106
	타인의 쇼핑 방해(계산 방해, 신체접촉, 길막기 등)	30
	부모의 아동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44
	부모의 비매너적 행동(고성양육, 무전취식 등)	11
영화관	아동의 소음 및 이동	150
	부모의 아동 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17
	부모의 비매너 행동(아동과 대화, 핸드폰 등)	9
	타인의 관람 방해(의자차기, 핸드폰 등)	25
놀이공원 /유원지	공중도덕 무시(새치기, 쓰레기 투기, 진로방해, 놀이기구 독점 등)	35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27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님, 기물파손, 위험지역 출입)	11
	부모의 아동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10
	부모의 비매너적 행동(고성, 노상방뇨, 자신의 아이 위주 케어)	6
놀이터 /(근린)공원	공중도덕 무시(놀이기구 독점, 새치기, 쓰레기 투기 등)	16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 는 행동, 고성)	16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님, 다른 아동 위협, 물건 던짐)	36
	부모의 아동방치(통제 못 함, 다른 어른에게 놀아달라 할 때 방치 등)	12
	부모의 비매너적 행동(자신의 아이 위주 케어, 용변처리 등)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구분	불편한 경험	(수)
관공서 (시청, 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공중도덕 무시(신발 신고 의자 올라가기, 쓰레기 투기 등)	11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34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님, 장난 등)	22
	부모의 아동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17
	부모의 비매너 행동(일방적 편의 요구, 고성 양육, 용변처리 등)	5
박물관 /미술관	관람 예절 부족(작품 훼손, 관람 방향 무시 등)	15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40
	아동의 위험한 행동(뛰어다님, 장난 등)	38
	부모의 아동방치(통제 못 함, 통제 안 함 등)	6
	부모의 비매너 행동(고성 양육)	3
숙박시설 (캠핑장 포함)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36
	아동의 위험한 행동(불근처 이동, 다른 아동 위협, 뛰어다님 등)	20
	부모의 아동 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4
	부모의 비매너 행동(고성훈육, 아동 노상방뇨 등)	8
	타인 방해(타인의 물건 사용, 노상방뇨, 시설 점유 등)	10
기타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떼쓰는 행동, 고성)	10
	아동의 위험한 행동(불근처 이동, 다른 아동 위협, 뛰어다님 등)	2
	부모의 아동 방치(통제 안 함, 통제 못 함 등)	6
	부모의 비매너 행동(고성 훈육, 아동 노상방뇨 등)	4
전체 건수		2,23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4) 노키즈존의 인지 여부와 사회적 인식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의 인지 여부와 등장 배경 등 사회적 인식,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가) 노키즈존의 인지 및 이용 여부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2%로 다수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에 그쳐서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지됨을 알수 있다.

주요 변인별로는 노키즈존에 대해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여성과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또한 이례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노키즈존으로 지정된 공공장소가 주로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V-2-24〉 노키즈존 인지 여부_일반국민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인지 여부			계(수)
	알고 있음	들어는 왔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78.2	16.4	5.4	100.0 (1,200)
연령				
20~29세	92.8	4.8	2.4	100.0 (171)
30~39세	92.8	5.7	1.5	100.0 (182)
40~49세	90.3	8.0	1.7	100.0 (216)
50~59세	78.6	18.6	2.8	100.0 (238)
60세 이상	58.3	29.7	12.0	100.0 (393)
χ^2 (df)		169.688(8)***		
성별				
남성	72.5	19.8	7.7	100.0 (593)
여성	83.9	13.1	3.1	100.0 (607)
χ^2 (df)		27.604(2)***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91.2	7.8	1.0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72.5	20.2	7.3	100.0 (832)
χ^2 (df)		60.165(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1.2	20.1	8.8	100.0 (275)
300만원 초과~500만원	77.4	17.9	4.7	100.0 (407)
500만원 초과~700만원	81.6	14.6	3.7	100.0 (293)
700만원 초과	84.0	11.5	4.5	100.0 (224)
χ^2 (df)		18.897(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노키즈존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나타나서 이용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주요 변인별로는 연령, 성별, 자녀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노키즈존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나서 30대 이하에서는 50%선을 넘는 반면, 60대 이상은 22.3%에 그치며, 여성과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V-2-25〉 노키즈존 이용 여부_일반국민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이용 경험 여부		계(수)
	이용해 본 적 있음	이용해 본 적 없음	
전체	36.4	63.6	100.0 (939)
연령			
20~29세	52.6	47.4	100.0 (159)
30~39세	50.9	49.1	100.0 (169)
40~49세	35.1	64.9	100.0 (195)
50~59세	28.4	71.6	100.0 (187)
60세 이상	22.3	77.7	100.0 (229)
χ^2 (df)	63.901(4)***		
성별			
남성	29.7	70.3	100.0 (430)
여성	42.1	57.9	100.0 (509)
χ^2 (df)	23.805(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3.4	66.6	100.0 (661)
자녀 없음	43.7	56.3	100.0 (278)
χ^2 (df)	7.102(1)**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40.8	59.2	100.0 (335)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4.0	66.0	100.0 (603)
χ^2 (df)	3.728(1)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나)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논쟁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6개 항목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5점이고, 그 다음으로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3.4점으로 조사되어 아동의 권리와 영업주의 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와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항목에서 동의하는 정도는 공히 3.2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V-2-26〉 노키즈존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5점 평균	계(수)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3.2	100.0 (1,200)
노키즈존은 고객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3.3	100.0 (1,200)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4	100.0 (1,200)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3.5	100.0 (1,200)
노키즈존에 대한 경험(어리다는 이유로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3	100.0 (1,200)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2	100.0 (1,200)

주: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청년층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해 대조적인 입장이 확인되었다. 청년여성5는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해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노키즈존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청년여성4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일반성인이 이용하는 공간과 구분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20대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제 20대들은 앞으로 밖으로 못 나오게 하자 이렇게 한다면 분명 차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략)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건데 너무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사람에 대한 처벌은 따로 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을 해야...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아예 단절해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여성5_심층면담)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어른용 아니고 어른용이니 어른들이 주로 가는 곳 그리고 이제 아기를 동반해서 가는 곳 이게 자체가 아예 좀 생활이 아예 아이를 낳으면 분리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들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노키즈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청년여성4_심층면담)

주요 변인별로는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영업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서 30대 이하에서 평균보다 높은 3.8점(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모든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인식은 자녀가 있거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더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 논란의 실상을 보여준다.



〈표 V-2-27〉 노키즈존 인식의 동의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전체	3.2	3.3	3.4	3.5	3.3	3.2	(1,200)
연령							
20~29세	3.1	3.4	3.2	3.8	3.2	3.3	(171)
30~39세	3.2	3.4	3.2	3.9	3.1	3.2	(182)
40~49세	3.4	3.2	3.5	3.6	3.4	3.4	(216)
50~59세	3.2	3.3	3.5	3.4	3.2	3.0	(238)
60세 이상	3.2	3.1	3.4	3.2	3.3	3.1	(393)
F	2.4	4.5**	2.2	18.7***	2.0	3.1*(a)	
성별							
남성	3.2	3.2	3.4	3.5	3.2	3.1	(593)
여성	3.2	3.3	3.4	3.5	3.3	3.2	(607)
t	-1.0	-0.3	-1.1	-0.6	-0.7	-2.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3	3.2	3.5	3.4	3.3	3.2	(848)
자녀 없음	3.0	3.4	3.2	3.6	3.2	3.0	(352)
t	-5.0***	3.6***	-4.7***	2.5*	-2.0*	-2.7**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5	3.2	3.6	3.7	3.4	3.4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1	3.3	3.3	3.4	3.2	3.0	(832)
t	-6.0***	1.8	-4.3***	-3.1**	-1.9	-5.2***	

주1: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② 노키즈존은 고객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③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⑤ 노키즈존에 대한 경험(어리다는 이유로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⑥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노키즈존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영아가구1은 자녀를 둔 경우는 타인의 불편한 시각을 경험해야 하고, 양육친화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면 육아가 더 힘들게 느껴져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전체적으로 좀 각박해진 느낌이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 양육 환경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이들이 밖에서 그렇게 행동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중략)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힘들어지겠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좀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도 아이 낳으

면 나도 저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겠다고 느껴져서. (영아가구1_심층면담)

다)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인식

앞서 살펴본 노키즈존의 논쟁에 관한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확인된다. 8가지 항목에 걸쳐 노키즈존의 등장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에 대해서는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와 관련이 있다’를 등장 배경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공히 3.7점으로 높게 나타나서 대조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와 ‘나와 다른 특성을 지닌 타인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공히 3.3점에 그쳐 노키즈존을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거나 그 원인을 사회구조적 원인 즉, 사회적 포용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V-2-28〉 노키즈존 도입 배경 관련성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5점 평균	계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	3.3	100.0 (1,200)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과 관련이 있다	3.5	100.0 (1,200)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	3.7	100.0 (1,200)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4.1	100.0 (1,200)
영업 이익을 중요시하는 업주(식당, 카페 등)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3.3	100.0 (1,200)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와 관련이 있다	3.7	100.0 (1,200)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권리 보장(조용한 분위기 추구 등)과 관련이 있다	3.6	100.0 (1,200)
나와 다른 특성을 지닌 타인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3.3	100.0 (1,200)

주: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표 V-2-29〉 노키즈존 도입 배경 관련성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3.3	3.5	3.7	4.1	3.3	3.7	3.6	3.3	(1,200)
연령									
20~29세	3.4	3.5	3.7	4.1	3.2	3.7	3.7	3.4	(171)
30~39세	3.1	3.4	3.7	4.2	3.2	3.8	3.6	3.3	(182)
40~49세	3.4	3.6	3.7	4.2	3.3	3.7	3.7	3.5	(216)
50~59세	3.2	3.5	3.7	4.1	3.3	3.7	3.5	3.3	(238)
60세 이상	3.4	3.5	3.7	4.0	3.3	3.6	3.5	3.3	(393)
F	2.5*(a)	1.0(a)	0.1	4.5**(a)	0.6	1.5(a)	1.9	1.4	
성별									
남성	3.3	3.5	3.6	4.0	3.3	3.6	3.5	3.3	(593)
여성	3.3	3.5	3.8	4.2	3.3	3.8	3.7	3.4	(607)
t	-0.4	-1.4	-3.6***	-4.8***	0.0	-4.3***	-3.7***	-1.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4	3.5	3.7	4.1	3.3	3.7	3.6	3.4	(848)
자녀 없음	3.1	3.4	3.7	4.0	3.2	3.7	3.6	3.2	(352)
t	-3.1**	-1.7	-0.4	-2.2*	-2.0	-0.7	0.4	-3.7***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4	3.6	3.7	4.2	3.3	3.8	3.6	3.5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3	3.5	3.7	4.0	3.2	3.6	3.6	3.2	(832)
t	-2.2*	-2.2*	-0.6	-4.2***	-1.9	-2.9**	-0.9	-4.8***	

주1: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 ②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과 관련이 있다 ③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 ④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⑤ 영업 이익을 중요시하는 업주(식당, 카페 등)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와 관련이 있다 ⑦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권리 보장(조용한 분위기 추구 등)과 관련이 있다 ⑧ 나와 다른 특성을 지닌 타인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주요 변인별로 아동권리와 사회적 포용의 부족이 노키즈존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자녀를 둔 가구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유자녀 가구에서 아동권리와 사회적 포용을 보다 중요시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표 V-2-29 참고).

한편 초저가구의 심층면담에서는 노키즈존의 배경으로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한 양육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저가구3과 2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과는 달리 초등학생은 공공장소의 예절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가능하므로 이들의 문제행동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문제시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청년여성3과 4는 카페와 대중교통 이용 시 어린 아동으로 인해 불편이 아동보다는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노키즈존이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어릴 때는 아마 기질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커가면서도 막 버릇없이 행동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초저가구3_심층면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한 거는 그 아이의 기질이나 그때 기분이나 컨디션 이런 거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좀 잘하고 다독여주고 하면. 근데 이게 엄마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래서 남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인 거는 그냥 부모가 문제인 것 같아 평상시에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이에게 아예 훈육 자체를 안 하거나 그냥 거의 방임 이런 것 같아요. 그 훈육이라는 걸 해왔다면 그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 안 되면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잖아요. 저는 부모가 문제인 것 같아요. (초저가구2_심층면담)

커피숍이 소파가 하나로 크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까지 뛰어 와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머니들이 제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뛰다가 제가 마시고 있었던 음료를 치는 바람에 노트북에 음료가 다 쏟아져가지고, 그게 화가 나서 그 어머니랑 좀 말다툼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략) 당연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여성3_심층면담)

부모에게 아이를 좀 제지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부모라면 충분히 이제 제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 부모가 노력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아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저도 못 참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청년여성4_심층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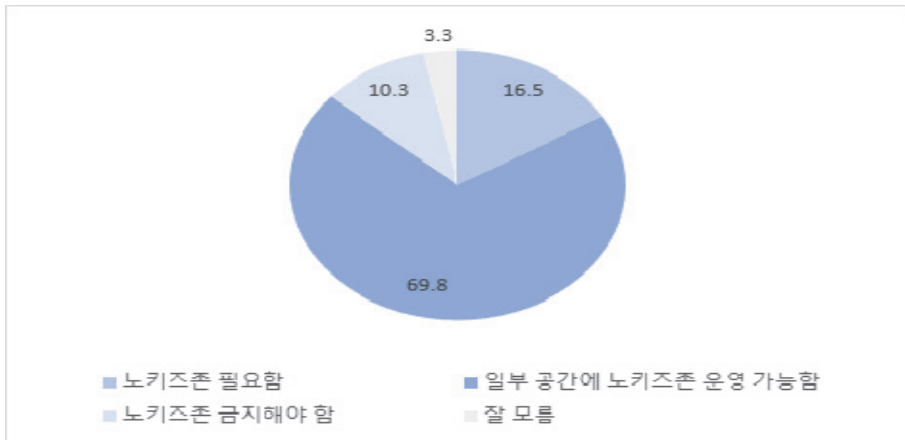
라) 노키즈존의 필요성 인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일부 공간에 한하여 노키즈존 운영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다수였고,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키즈존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에 그쳤다.

[그림 V-2-3] 노키즈존 필요성 인식 일반국민

단위: %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없거나 초등 이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각각 20.3%와 18.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여성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우려되며, 소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한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청년여성1). 또한 청년여성4는 20~30대에서 노키즈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을 들었다. 그 밖에도 청년남성 1과 2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도 노키즈존이 필요한 이유로 지목하였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저는 불편한 상황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식당, 카페 그러니까 좀 이제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누군가와 보내러 왔고 그럴 만한 공간과 시간을 골라서 이제 온 건데 이제 그런데 뭔가 예상치 못한 이제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상황과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여성1_심층면담)

아이 양육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나와 다른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당연히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기는 한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고,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청년여성4_심층면담)

근데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도 아이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가 그 사람 아이들은 겁을 먹을 수가 있고 부모들은 아이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낸 상황이 온 적도 있습니다. 이걸 꼭 이걸 이 뿐만 기차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뭐라 하면은 그 부모의 분노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갈등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격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남성1_심층면담)

그냥 저희가 사회가 점점 더 살기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를 개선하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쏠는다고 생각해요. (청년남성2_심층면담)

다른 한편 노키즈존의 적용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초저가구4는 초등학생이 미취학 아동에 비해 놀만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어렸을 때는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키즈카페도 연령 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곳이나 아예 성인이 이용할 곳은 굉장히 많은데 이 중간에 애매한 나이 대에 정말 놀이터에서 놀아도 꼬맹이들이랑 같이 놀면 위험해 보이고 아니면 여기 공을 차도 저희 아파트도 아예 공차기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 7살에서 10살 정도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놀아야 돼? 키즈카페도 안 되고 놀이터도 너무 커서 안 되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초저가구4_심층면담)

〈표 V-2-30〉 노키즈존의 필요성 인식 일반국민

단위: %(명)

구분	노키즈존 필요성 인식				계(수)
	노키즈존 필요함	일부 공간에 노키즈존 운영 가능함	노키즈존 금지해야 함	잘 모름	
전체	16.5	69.8	10.3	3.3	100.0 (1,200)
연령					
20~29세	19.1	65.2	11.5	4.2	100.0 (171)
30~39세	22.1	66.6	9.9	1.4	100.0 (182)
40~49세	10.0	78.6	9.3	2.1	100.0 (216)

구분	노키즈존 필요성 인식				계(수)
	노키즈존 필요함	일부 공간에 노키즈존 운영 가능함	노키즈존 금지해야 함	잘 모름	
50~59세	18.5	67.5	10.3	3.7	100.0 (238)
60세 이상	15.1	69.9	10.7	4.2	100.0 (393)
χ^2 (df)	21.845(12)*				
성별					
남성	18.9	66.9	11.1	3.2	100.0 (593)
여성	14.2	72.7	9.7	3.4	100.0 (607)
χ^2 (df)	4.793(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4.9	70.9	11.2	2.9	100.0 (848)
자녀 없음	20.3	67.2	8.2	4.3	100.0 (352)
χ^2 (df)	10.419(3)*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12.3	74.5	11.2	1.9	100.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18.3	67.8	10.0	3.9	100.0 (832)
χ^2 (df)	12.976(3)**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는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 시설안전 측면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공간에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영아가구3)과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영아가구2) 입장이 공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유아가구1은 안전상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

저는 아이가 이용할 때 위험한 게 있으면 노키즈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복층으로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계단에 난간이 없다던가 계단과 계단 사이가 굉장히 높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2층으로는 노키즈존으로 못 올라가게 한다든가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영아가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한 시설이 있는 경우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저는 애가 있지만 제가 조용히 즐기고 싶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 노키즈 식당, 노키즈 카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기하고 상관없이, 소비자의 권리 입장에서. (영아가구2_심층면담)

저도 식당을 아예 노키즈존이라서 갈 생각도 안 했던 데는 식당이에요. 근데 굉장히 핫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너무 맛있다고 하길래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 없을 때 엄마들하고 갔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라고 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사장 젊은 사장이 아이들이 싫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유아가구1_심층면담)

3. 유아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개선요구

이하에서는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훈육의 어려움 등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과 공공장소에서 자녀 동반 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자녀 훈육의 어려움과 공공장소의 부모 역할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평소에 자녀를 훈육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41.9%(평균 3.2점, 5점 만점)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훈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자녀에서 52.6%로 절반 이상이고, 셋째 자녀에서 42.9%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표 V-3-1〉 자녀의 훈육 또는 통제 관련 역량 인식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 (명), 점

구분	어려움 정도					계(수)	5점 평균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4.9	21.3	31.8	36.5	5.4	100.0 (446)	3.2
연령							
20~29세	12.5	25.0	25.0	37.5	0.0	100.0 (16)	2.9
30~39세	4.2	16.1	36.3	37.5	6.0	100.0 (168)	3.3
40~49세	4.7	25.1	28.8	36.7	4.7	100.0 (215)	3.1
50~59세	7.5	25.0	25.0	32.5	10.0	100.0 (40)	3.1
60세 이상	0.0	0.0	71.4	28.6	0.0	100.0 (7)	3.3
$\chi^2(df) / F$	17.868(16)						0.8
성별							
남성	5.5	20.2	32.6	37.2	4.6	100.0 (218)	3.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구분	어려움 정도					계(수)	5점 평균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여성	4.4	22.4	31.1	36.0	6.1	100.0 (228)	3.2
$\chi^2(df) / t$	1.147(4)						-0.2
막내 자녀 연령							
영아	1.0	12.4	34.0	46.4	6.2	100.0 (97)	3.4
유아	5.4	21.8	29.3	36.1	7.5	100.0 (147)	3.2
초등 저학년	5.8	22.1	32.7	35.6	3.8	100.0 (104)	3.1
초등 고학년	7.1	28.6	32.7	28.6	3.1	100.0 (98)	2.9
$\chi^2(df) / F$	17.872(12)						5.0**
막내 자녀 출생순위							
첫째 자녀	8.2	19.6	35.3	29.3	7.6	100.0 (184)	3.1
둘째 자녀	2.3	22.7	29.1	41.8	4.1	100.0 (220)	3.2
셋째 자녀 이상	4.8	21.4	31.0	40.5	2.4	100.0 (42)	3.1
$\chi^2(df) / F$	16.269(8)*						1.0

주: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다' 1점 ~ '매우 어렵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5$, ** $p < .01$

다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자녀 훈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4개 항목에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 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항목에서 40.6%,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 30.3%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공공장소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로 나타났다. 이로써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자녀 훈육이 되지 않는 상황은 양육자의 배려심 없는 태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 양육기술 부족, 그리고 고립된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3-2〉 공공장소의 자녀 훈육 관련 어려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 (명)

구분	자녀 훈육의 어려움 여부		계(수)
	예	아니오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0.6	59.4	100.0 (446)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	30.3	69.7	100.0 (446)

구분	자녀 훈육의 어려움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자녀에게 평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엄격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6.6	83.4	100.0 (446)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공공장소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22.0	78.0	100.0 (44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훈육이 어려운 상황을 양육기술의 부족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영아가구1, 3, 4). 또한 영아가구1은 자녀의 기질로 인해 훈육이 어려운 경우를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저희 애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할 만큼. 그게 그냥 커가는 과정 중에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예가 또 제가 부족하다고 되게 느낀 날도 있고. (영아가구1_심층면담)

저는 (양육)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로 유튜브나 육아 서적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내가 어떤 점을 알아뒀어야 되는데 놓쳐서 이게 커진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어서 이런 상황일 때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 이게 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영아가구3_심층면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아기한테 좀 더 부드럽게 훈육을 하기보다 이렇게 큰소리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면 아기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더 격한 반응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집이 아니라 외부 공간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아가구4_심층면담)

저는 첫째와 둘째를 똑같은 방식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와 둘째는 너무 다른 그런 행동이나 반응들을 보이는 거를 보면 이걸 분명히 엄마 아빠의 양육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아이의 기질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명을 하고 싶죠. 근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좀 스스로 했고요. (유아가구1_심층면담)

주요 변인별로는 성별과 자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자녀에게 평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엄격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를 경험한 비율도 23.9%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항목에 걸쳐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공공장소에서 훈육하기 힘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어려움 정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대체로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에서 훈육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3〉 공공장소에서 자녀 훈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40.6	30.3	16.6	22.0
성별				
남성	43.1	33.9	23.9	24.3
여성	38.2	26.8	9.6	19.7
χ^2 (df)	1.138(1)	2.730(1)	16.247(1)***	1.361(1)
막내 자녀 연령				
영아	57.7	37.1	18.6	35.1
유아	45.6	36.1	18.4	23.1
초등 저학년	33.7	27.9	18.3	20.2
초등 고학년	23.5	17.3	10.2	9.2
χ^2 (df)	27.325(3)***	12.517(3)**	3.706(3)	19.334(3)***

주1: 세부 문항별로 초등 이하 자녀를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임

주2: ①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 ③ 자녀에게 평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엄격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④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공공장소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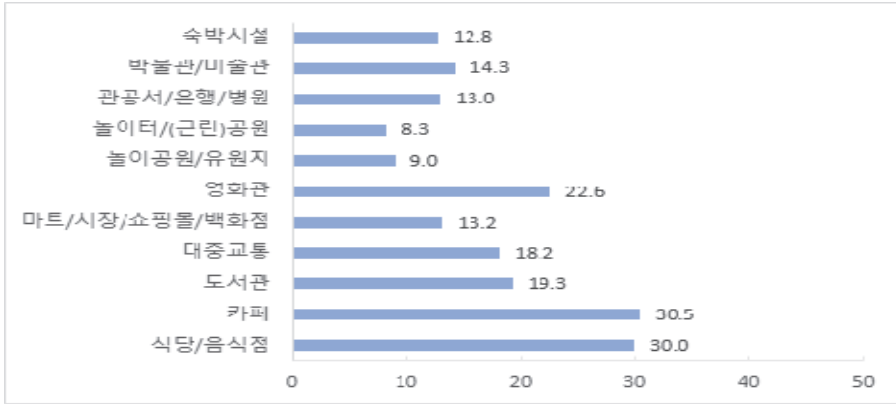
나. 공공장소의 자녀 동반 시 어려움

1) 공공장소 유형별 불편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불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카페와 식당에서 30.5%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관 22.6%, 도서관 19.3%, 대중교통 18.2%, 박물관이나 미술관 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3-1]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불편 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경험한 비율은 대체로 막내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미취학 아동에서 평균보다 높고, 특히 영아자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고립 육아 측면에서 미취학 아동을 둔 양육자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V-3-4]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불편 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막내자녀 연령				계(수)	χ^2 (df)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식당/음식점	30.0	42.3	35.4	24.0	16.3	100.0 (446)	19.442(3)***
커피	30.5	40.2	34.7	25.0	20.4	100.0 (446)	11.725(3)**
도서관	19.3	33.2	17.7	14.4	13.3	100.0 (446)	15.807(3)**
대중교통	18.2	25.8	20.4	17.3	8.2	100.0 (446)	10.923(3)*
마트/시장/쇼핑몰/백화점	13.2	17.5	12.2	13.5	10.2	100.0 (446)	2.470(3)
영화관	22.6	40.2	21.1	17.3	13.3	100.0 (446)	23.893(3)***
놀이공원/유원지	9.0	16.5	8.8	6.7	4.1	100.0 (446)	10.237(3)*
놀이터/(근린)공원	8.3	10.3	8.2	8.7	6.1	100.0 (446)	1.146(3)
관공서/은행/병원	13.0	23.7	10.9	13.5	5.1	100.0 (446)	15.842(3)**
박물관/미술관	14.3	20.6	14.3	16.3	6.1	100.0 (446)	8.836(3)*
숙박시설	12.8	17.5	10.9	12.5	11.2	100.0 (446)	2.654(3)

주: 최근 1년 기준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앞서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공공장소의 범주별로 파악하였다. 가장 많은 양육자가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대중교통에서 아이에게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됨(43.2%), 관공서/은행/병원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의 부재(43.1%), 숙박시설에서 아이를 위한 편의용품이나 시설 및 설비 부족(43.1%)이 지목되었다. 나이가 어려서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약되는 경우는 식당이나 카페(33.7%), 놀이공원이나 숙박시설(22.2%), 도서관이나 미술관(22.1%)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공공장소 유형별로 양육자가 불편을 경험하는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5〉 공공장소 유형별 자녀 동반시 불편사항(중복응답)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식당/음식점, 카페	33.7	34.9	40.0	36.0	34.9	26.9	8.0	13.1	6.3	1.1	(175)
놀이공원/유원지 놀이터/(근린)공원 숙박시설	22.2	19.4	43.1	37.5	30.6	40.3	11.1	12.5	12.5	4.2	(72)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미술관	22.1	26.7	30.5	38.2	19.1	23.7	19.8	13.7	6.9	6.1	(131)
대중교통	8.6	9.9	32.1	13.6	16.0	43.2	17.3	12.3	8.6	11.1	(81)
마트/시장/소방물/백화점	6.8	13.6	33.9	28.8	18.6	27.1	13.6	20.3	13.6	3.4	(59)
관공서/은행/병원	5.2	24.1	27.6	43.1	19.0	29.3	13.8	17.2	6.9	5.2	(58)

주: ① 나이가 어리다고 자녀의 출입이 금지됨 ② 자녀의 출입은 허용되나, 일부 공간에서는 이용이 제한됨 ③ 아이를 위한 편의용품, 시설, 설비(예시: 식기 및 의자, 아동용 변기, 세면대 발디딤대, 유아차 비치 공간 부재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④ 아이가 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음 ⑤ 아이를 위한 식단 등(어린이 메뉴, 맵기 조절 등 포함) 아이를 배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⑥ 아이에게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됨 ⑦ 다른 고객과 아이의 행동으로 언쟁이나 갈등을 경험함 ⑧ 업주(또는 운영자, 관리자)로부터 아이의 행동(소란스럽거나, 뛰어다니는 등)을 제재 당하거나 요구 받음 ⑨ 욕설 등 적대감이 드는 표현(비하, 조롱, 모욕 등 적대적 표현)을 들음 ⑩ 기타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는 자녀를 동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영아가구1, 2, 4). 특히 유아가구3은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비행기에서 제기되는 다른 이용객의 불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비행기 기내의 노키즈존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초저가구4는 대중교통에서 노키즈존을 적용해야 하는 연령으로 미취학 아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초등 학생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예절을 실천하면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숙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아이를 데리고 한 번 버스를 탔었는데 이제 아이가 승하차 할 때 조금 느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사람이 많은 때였는데 뒤에서 뭔가 약간 좀 한숨을 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똑같은 날이었는데 이제 배려석이 있잖아요. 노약자 배려석 거기에 이제 아이도 앉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앉아 계신다거나 (중략) 노약자가 아닌 분이 그냥 아이를 보고도 그냥 좀 무시하고. (영아가구1_심층면담)

저는 아기가 아직 어릴 때 아기띠 하고 이제 버스를 탔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조금 칭얼거리고 소리를 조금 코 크게 낸 경우가 있었는데 시선이 많이 좀 느껴져 가지고. 자꾸 쳐다보시는 게 물론 울어서 그냥 쳐다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쳐다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방해가 되나 혹시 불편하셔서 저러나 싫어가지고 (영아가구4_심층면담)

노키즈존은 안 가면 되고 애랑 갈 수 있는 데는 충분히 많고 하는 데 어쩔 수 없이 불편했던 거는 비행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가야 되는 거고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애가 생각보다 통제가 안 돼서 울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이들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는 하는데... (중략) 내릴 때쯤에 좀 애 케어 좀 잘하지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비행기 안에도 노키즈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힘든 부분은 안 갈 수 없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 (영아가구2_심층면담)

영유아랑 같이 타야 되는 좌석을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탈 때는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엄청 짐을 바리바리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애가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 내 짐만으로도 많은데 아이가 쓸 짐만 해도 또 너무 많은 그런 불편함도 있고...(중략) 비행기에서도 애가 이제 갑자기 귀가 아파서 울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특히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유아가구3_심층면담)

아이들이 너무 옆에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너무 불편해 해요. 애는 이제 여자 애고 혼자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데서는 굉장히 조용히 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자체도 불편해 해요. (초저가구4_심층면담)

또한 식당에서 잠든 자녀를 눕힐 공간이 없어서 난감하였던 경험이나 수유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상황 등이 불편한 경험으로 언급되었다(유아가구 2, 3). 자녀가 잠이 들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지 않고 초등저학년 자녀에서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초저가구1).

아이가 잠투정이 좀 있는 편인데요. 밖에 나가서 잠들었을 때가 제일 난감해요. 아이가 이제 19년생인데 몸무게가 있다 보니까 안고 다니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도 대중교통에서 애가 잠들어버리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중략) 혹

시 아기 눕힐 자리 있겠냐고 말을 했는데 좀 싫어하는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쭙봤거든요. 의자를 좀 붙여주기만 해도 눕힐 수 있는 건데. (유아가구 2_심층면담)

모유 수유할 때 딱히 별도의 수유 공간이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아무리 요즘 수유 가리개 이런 걸로 많이 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밖에서 남들 다 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저는 싫거든요. 화장실 가서 먹인 적도 많고 또 화장실에도 기저귀 가리대가 없는 곳 하다 못해 대학병원에 가도 없더라고요. (유아가구3_심층면담)

저는 아이는 몸은 컸어도 신나게 뛰어 놀고 이제 바깥에서 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하면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을 시간에 잠이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기띠를 하거나 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럴 수 있는데 아이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커졌는데 아이는 즐기고 있어요...(중략)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일단은 제가 양보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렇게 자는 거예요. 서서 자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앉아요. (초저가구1_심층면담)

그 밖의 불편사항으로는 숙박시설에서 아동을 동반한 경우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도서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관공서 등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줄까봐 긴장하거나 눈치가 보이는 점이 언급되었다. 가장 빈번한 어려움으로 지목된 대중교통에서는 유모차의 이동이 어렵거나 아동의 승하차가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표 V-3-6〉 공공장소 유형별 자녀 동반 시 불편사항_초등 이하 자녀 가구

구분	불편한 경험	단위: 명 (수)
놀이공원/유원지, 놀이터/(근린)공원, 숙박시설	- 아동 동반시 추가 비용이 과함	1
	- 아동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까봐 긴장	1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미술관	- 아동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까봐 긴장	4
대중교통	- 기사의 난폭 운전, 욕설	1
	- 아동 좌석 부족 및 유모차 이동이 어려움	3
	- 아동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까봐 긴장 및 눈치	2
	- 아동 통제의 어려움	1
	- 아동의 승하차가 어려움	1
관공서/은행/병원	- 아동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까 봐 긴장 및 눈치	2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한편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행동으로 다른 고객과 인쟁이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19.8%로 나타나며, 도서관이나 박물관(19.8%), 대중교통(17.3%)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불편한 경험 중에서 '욕설 등 적대감이 드는 표현(비하, 조롱, 모욕 등 적대적 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13.6%로 나타나며, 마트나 백화점(13.6%), 유원지나 숙박시설(12.5%)에서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험한 적이 있는 적대감 표현으로는 '맘충' 등이 언급되어 여성 양육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가 우려된다.

〈표 V-3-7〉 공공장소 유형별 불편사항(중복응답)_초등 이하 자녀 가구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
식당/음식점, 카페	33.7	34.9	40.0	36.0	34.9	26.9	8.0	13.1	6.3	1.1	(175)
놀이공원/유원지, 놀이터/공원, 숙박시설(캠핑장 포함)	22.2	19.4	43.1	37.5	30.6	40.3	11.1	12.5	12.5	4.2	(72)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미술	22.1	26.7	30.5	38.2	19.1	23.7	19.8	13.7	6.9	6.1	(131)
대중교통	8.6	9.9	32.1	13.6	16.0	43.2	17.3	12.3	8.6	11.1	(81)
마트/시장/쇼핑몰, 백화점	6.8	13.6	33.9	28.8	18.6	27.1	13.6	20.3	13.6	3.4	(59)
관공서(시청, 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5.2	24.1	27.6	43.1	19.0	29.3	13.8	17.2	6.9	5.2	(58)

주: ① 나이가 어리다고 자녀의 출입이 금지됨 ② 자녀의 출입은 허용되나, 일부 공간에서는 이용이 제한됨 ③ 아이를 위한 편의용품, 시설, 설비(예시: 식기 및 의자, 아동용 변기, 세면대 발디딤대, 유아차, 비치 공간 부재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④ 아이가 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음 ⑤ 아이를 위한 식단 등(어린이 메뉴, 맵기 조절 등 포함) 아이를 배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⑥ 아이에게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됨 ⑦ 다른 고객과 아이의 행동으로 인쟁이나 갈등을 경험함 ⑧ 앉자(또는 운전자, 관리자)로부터 아이의 행동(소란스킴거나, 뛰어다니는 등)을 제재 당하거나 요구 받음 ⑨ 욕설 등 적대감이 드는 표현(비하, 조롱, 모욕 등 적대적 표현)을 들음 ⑩ 기타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V-3-8〉 초등 이하 자녀 공공장소 동반 시 적대감을 느낀 표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구분	(수)
'애는 왜 데리고 왔어.'	2
'아들에게는 핸드폰이나 주고 애는 중독되고 엄마들끼리 쓸데없는 수다나 떨러왔다.',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여자들.', '남편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 등등	1
'자녀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공공장소 예절이 없다.'	1
'새끼'를 붙이는 경우	1
'맘충', '애 있으면 집구석에나 있어라', '애새끼 관리 똑바로 안 하나', '개념이 없다.' 등	2
'애를 왜 여기에 데려와서 사람 힘들게 하는지. 도통 저 부모는 생각이 없는 건가.'	1
'맘충이 애새끼들 끌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음.	1
전체	9

단위: 명

주: 공공장소에서 경험한 불편사항으로 ⑨ 육설 등 적대감이 드는 표현(버하, 조롱, 모욕 등 적대적 표현)을 들음에 응답자 경우, 해당 표현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2) 공공장소의 자녀 출입 금지 및 방문동반 포기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할 때, 출입/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봐 이용이나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식당이나 음식점 34.1%, 카페 32.1%, 영화관 23.3%, 도서관 19.3%, 대중교통 16.4%, 미술관과 박물관 15.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3-2〉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출입/이용 제한 및 방문 포기 유형별 비율: 전체

단위: %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앞서 살펴본 불편사항과 마찬가지로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

록 출입이나 이용 제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용이나 방문을 포기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구에서 이용이나 방문을 포기한 경험은 많은 공공장소는 영화관(영아, 54.6%), 식당이나 음식점(영아 47.4%, 유아 42.9%), 카페(영아 40.2%, 유아 35.4%)로 나타났으며, 영아를 둔 가구에서는 도서관이나 대중교통에서 39.2%와 34.0%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V-3-9〉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출입/이용 제한 및 방문포기 유경험 비율: 주요 변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막내자녀 연령				계(수)	χ ² (df)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식당/음식점	34.1	47.4	42.9	28.8	13.3	100.0 (446)	32.895(3)***
카페	32.1	40.2	35.4	32.7	18.4	100.0 (446)	12.151(3)**
도서관	19.3	39.2	17.7	14.4	7.1	100.0 (446)	35.760(3)***
대중교통	16.4	34.0	15.0	13.5	4.1	100.0 (446)	33.742(3)***
마트/시장소핑몰/백화점	8.7	12.4	7.5	8.7	7.1	100.0 (446)	2.208(3)
영화관	23.3	54.6	21.1	15.4	4.1	100.0 (446)	77.568(3)***
놀이공원/유원지	8.1	16.5	6.1	6.7	4.1	100.0 (446)	12.382(3)**
놀이터/(근린)공원	6.3	13.4	5.4	4.8	2.0	100.0 (446)	11.914(3)**
관광서/은행/병원	11.7	21.6	12.2	9.6	3.1	100.0 (446)	16.904(3)**
박물관/미술관	15.0	23.7	12.2	9.6	3.1	100.0 (446)	13.347(3)**
숙박시설	9.2	16.5	8.8	8.7	3.1	100.0 (446)	10.667(3)*

주: 최근 1년 이내에 자녀 동반 시 출입금지 또는 이용제약을 우려하여 이용 및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초등저학년 자녀의 경우는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할 만한 장소가 많아져서 불편사항이 늘 수 있고(초저가구1), 초저가구4는 아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도 추가로 발생한다고 언급되었다.

너무 어렸을 때는 식당에 아이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좀 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은 아이도 컸고 해서 이제 이용하려고 가려고 하면 이제 저는 시간 타임에 좀 걸렸었거든요. 이제 사람들 붐비는 시간에는 노키즈존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초저가구1_심층면담)

아이는 ‘왜 내가 못 들어가는 곳이야 여기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불편한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불편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중략)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마지막 타임 같은 경우는 거의 노키즈인 경우가 많거든요. (오후) 6시면 초등학교생한테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놀고 싶은 시간이고 방 안에서도 다 보이고 (중략) '나는 왜 저 시간에 못 가? 불만을 갖게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이해시키기도 참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저가구4_심층면담)

또한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자녀 동반 외출 시에 우려되는 불편으로 인해서 외식 등을 포기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인식하였다(유아가구4).

항상 키트처럼 (외출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종이 접기 할 색종이 크레파스 그림 그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서 항상 나가고 왜냐면은 카페는 조용해서 그렇고 식당도 요리가 오는 그 시간에 애들이 가만히 못 있거든요. (중략) 그런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시켜먹자 차라리. (유아가구4_심층면담)

3) 공공장소 이용 시 노키즈존 사전 확인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와 동반하여 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확인하는 비율은 23.1%로 확인하지 않는 비율(29.8%)과 유사하였다.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확인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확인하는 비율(대부분 확인한다+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확인한다)이 높아서 영아와 유아 자녀에서 75.3%와 75.5%에 달하였다.

〈표 V-3-10〉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노키즈존 사전확인 여부

단위: %, (명)

구분	출입금지 및 이용 제약 사전 확인 여부			계(수)
	대부분 확인함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전체	23.1	47.1	29.8	100.0 (446)
성별				
남성	18.3	44.0	37.6	100.0 (218)
여성	27.6	50.0	22.4	100.0 (228)
χ^2 (df)	13.687(2)**			

구분	출입금지 및 이용 제약 사전 확인 여부			계(수)
	대부분 확인함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막내 자녀 연령				
영아	29.9	45.4	24.7	100.0 (97)
유아	31.3	44.2	24.5	100.0 (147)
초등 저학년	16.3	54.8	28.8	100.0 (104)
초등 고학년	11.2	44.9	43.9	100.0 (98)
χ^2 (df)	24.753(6)***			

주: 최근 1년 이내 기준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1$, *** $p < .001$

대부분 확인한다고 응답한 유아가구3은 자녀와 외출 시에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을 덜하게 된다고 언급하여, 자녀 동반 시에 일상화된 심적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냥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네이버 지도 어플을 이용해서 놀이방에 있는 식당을 싹 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만 찾아가는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애초에 얘기가 있는 집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가 조금 옆에서 이렇게 막 조금 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깐. (유아가구3_심층면담)

또한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자녀 동반 외출 시에 노키즈존 여부의 확인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사전준비 사항을 언급하였다. 즉, 영아가구3과 4는 공공 장소에서 아동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영아가구1은 예절교육도 미리 실시한다고 언급하였다. 초등저학년 자녀의 경우에도 스스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출 시에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초저가구4).

저는 일단 아이가 충분히 배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 나가거나 아니면 아이가 졸려할 때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야 울거나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어서 그렇게 나가는 편이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또 주로 챙겨 나가고 있어요. 치발기라든가 쪽쪽이 같은 거를 물리면 아무래도 아이가 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진정이 금방 되거나 안 올 때가 많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영아가구3_심층면담)

꼭 나갈 때 미리 챙기는 게 간식이랑 그 다음에 장난감 그리고 스티커북 같은 것도 챙기고요. 그리고 주위를 미리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진짜 만약



에 극도로 잘 제어가 안 되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건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진짜 필요할 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영아가구4_심층면담)

아이들한테 눈으로 보자거나 만지지 말자거나 그럼 미리 좀 몇 번 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나마 막내도 어리지만 인식을 좀 하고 만지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오거나 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저희도 아이가 갖고 다니는 상시 가방이 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챙겨줬으면 썩 크니까 이제 본인이 어디를 가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초저가구4_심층면담)

오히려 아기 때는 긴 시간 갈 때 비행기 같은 데서는 오히려 잠을 잘 자니까 차라리 많이 안 챙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잠을 잘 안 자고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초저가구4_심층면담)

4) 키즈존 인지 및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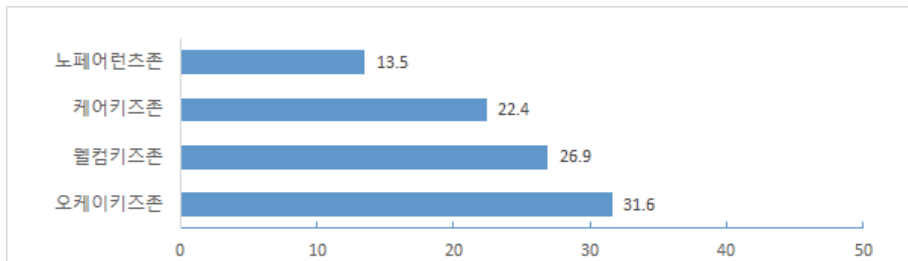
가) 키즈존 인지 여부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배려하거나 환대하는 오케이존 등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케이키즈존’ 31.6%, ‘웰컴키즈존’ 26.9%, ‘케어키즈존’ 22.4%, ‘노페어런츠존’ 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고,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V-3-3] 키즈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



주: ‘오케이키즈존’은 아동을 위한 식기와 의자 등 편의용품이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아이를 환영한다고 안내함, ‘웰컴키즈존’은 아이의 가게 출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안내함, ‘케어키즈존’은 아이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안내함, ‘노페어런츠존’은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함.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표 V-3-11> 키즈존 인지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오케이키즈존 인지 비율			계(수)	
	알고 있음	들어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31.6	30.3	38.1	100.0	(446)
성별					
남성	23.9	34.9	41.3	100.0	(218)
여성	39.0	25.9	35.1	100.0	(228)
χ^2 (df)	12.220(2)**				
막내 자녀 연령					
영아	34.0	25.8	40.2	100.0	(97)
유아	38.8	29.9	31.3	100.0	(147)
초등 저학년	29.8	29.8	40.4	100.0	(104)
초등 고학년	20.4	35.7	43.9	100.0	(98)
χ^2 (df)	11.084(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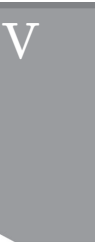
<표 V-3-12> 웰컴키즈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웰컴키즈존 인지 여부			계(수)	
	알고 있음	들어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26.9	26.5	46.6	100.0	(446)
성별					
남성	20.6	29.8	49.5	100.0	(218)
여성	32.9	23.2	43.9	100.0	(228)
χ^2 (df)	8.808(2)*				
막내 자녀 연령					
영아	32.0	23.7	44.3	100.0	(97)
유아	35.4	21.8	42.9	100.0	(147)
초등 저학년	23.1	27.9	49.0	100.0	(104)
초등 고학년	13.3	34.7	52.0	100.0	(98)
χ^2 (df)	17.576(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5$, ** $p < .0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V-3-13〉 케어키즈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케어키즈존 인지 여부			계(수)	
	알고 있음	들어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22.4	25.1	52.5	100.0	(446)
성별					
남성	16.5	28.0	55.5	100.0	(218)
여성	28.1	22.4	49.6	100.0	(228)
χ^2 (df)	8.787(2)*				
막내 자녀 연령					
영아	28.9	18.6	52.6	100.0	(97)
유아	28.6	20.4	51.0	100.0	(147)
초등 저학년	19.2	28.8	51.9	100.0	(104)
초등 고학년	10.2	34.7	55.1	100.0	(98)
χ^2 (df)	18.583(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5$, ** $p < .01$

〈표 V-3-14〉 노페어런츠존 인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노페어런츠존 인지 여부			계(수)	
	알고 있음	들어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13.5	23.5	63.0	100.0	(446)
성별					
남성	11.9	28.9	59.2	100.0	(218)
여성	14.9	18.4	66.7	100.0	(228)
χ^2 (df)	6.928(2)*				
막내 자녀 연령					
영아	13.4	19.6	67.0	100.0	(97)
유아	15.0	24.5	60.5	100.0	(147)
초등 저학년	12.5	24.0	63.5	100.0	(104)
초등 고학년	12.2	25.5	62.2	100.0	(98)
χ^2 (df)	1.700(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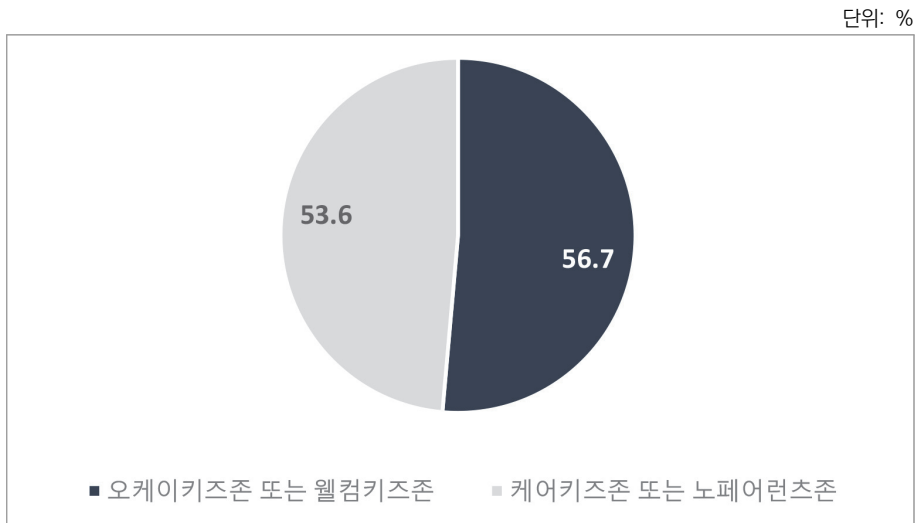
나) 키즈존 이용 경험

앞서 질문에서 ‘키즈존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오케이키즈존’과 ‘웰컴키즈존’은 56.7%, ‘케어키즈존’과 ‘노페어런츠존’은 53.6%로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키즈존 유경험자가 도움받은 내용으로는 모든 키즈존에서 ‘아이를 동반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중복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오케이키즈존’과 ‘웰컴키즈존’은 76.4%, ‘케어키즈존’과 ‘노페어런츠존’은 53.3%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되고(66.3%, 50.0%),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리함(58.4%, 40.0%), 아이를 위한 메뉴가 있거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함(52.8%, 31.7%), 아이를 환대하는 분위기(38.2%, 33.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3-4] 키즈존 이용 경험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 응답 사례수는 오케이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은 157명, 케어키즈존과 노페어런츠존은 112명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 의하면, 키즈존 이용에 관하여 노키즈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과는 달리 키즈존을 찾아서 이용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영아가구3). 또한 유아가구4는 케어키즈존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전제로 하는 조치로 인식되어 아동 전반이 배제되어 결과를 초래하여 거부감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가 가고 싶은 리스트를 이제 만약에 추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노키즈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파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웰컴키즈존이 그 안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웰컴 키즈존이 있는 데를 굳이 찾아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키즈 케어존이라고 해서 그런 문구를 써요. 말씀하신 그런 문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그것도 약간 거부감으로 느껴지고요. 불편해요. 일단 애한테 문제가 있을 거고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 아니면 이 아이 컨디션에 따라서 괜찮은 애도 있거든요.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당하는 이런 느낌 그런 게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유아가구4_심층면담)

〈표 V-3-15〉 오케이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 방문 시 도움받은 내용(중복응답)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
오케이키즈존/웰컴키즈존	76.4	66.3	38.2	58.4	52.8	28.1	20.2	38.2	0.0	(89)
케어키즈존/노페어런츠존	53.3	50.0	33.3	40.0	31.7	21.7	8.3	15.0	3.3	(60)

주: ① 아이를 동반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됨 ②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식기 및 의자, 세면대 앞 발디딤대, 아동용 변기 등)이 구비되어 편리함 ③ 아이를 환대하는 분위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반응해 주는 등)가 느껴짐 ④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리함 ⑤ 아이를 위한 메뉴가 있거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함 ⑥ 아이에게 위험한 설비가 없이 안전함 ⑦ 아이를 위한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받음(예시: 풍선, 왕관 등) ⑧ 아이의 놀 거리 (또는 프로그램)를 제공 받음(예시: 대기 시간 동안 색칠 키트 등 제공) ⑨ 기타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다. 아동 존중 및 양육친화 환경 관련 인식

1) 인식 전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4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와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에 동의하는 비율(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이 54.3%(평균 3.4점)와 50.5%(3.4점)로 절반 이상의 양육자가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의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와 ‘여성 양육자에 더 적대적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공히 3.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16〉 한국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동을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8.7	25.1	30.0	28.3	7.8	100.0 (446)	3.0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4.3	16.6	24.9	40.8	13.5	100.0 (446)	3.4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 이다	7.2	21.7	27.1	30.7	13.2	100.0 (446)	3.2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	7.0	17.0	25.6	34.1	16.4	100.0 (446)	3.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표 V-3-17〉 한국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수)
전체	3.0	3.4	3.2	3.4	(446)
성별					
남성	2.8	3.2	2.9	3.0	(218)
여성	3.2	3.7	3.5	3.7	(228)
<i>t</i>	-4.5***	-5.5***	-6.5***	-7.5***	

주1: 5점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아동을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②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③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 이다 ④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p* <.001

2) 공공장소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개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64.3%,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42.8%,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40.8%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인한 무시 또는 비하'를 경험한 비율은 24.0%와 17.5%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가 눈치를 보거나 타인에 대

한 불편을 우려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표 V-3-18〉 공공장소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경험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 (명)

구분	경험 여부		계(수)
	있다	없다	
나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64.3	35.7	100.0 (446)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40.8	59.2	100.0 (446)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42.8	57.2	100.0 (446)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시 당한 적이 있다	17.5	82.5	100.0 (446)
나는 자녀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24.0	76.0	100.0 (446)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한다고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영아가구2는 아동을 배려한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모차가 많다고 불편함을 제기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영아가구1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자녀와 외출을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초래되는 불편에 대해 긴장을 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유아가구1과 4는 카페 등에서 눈치가 보이고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애기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은 애기한테 인사도 많이 해주고 대부분이 애기 예쁘다 애엄마 고생이 많아요. 전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기는 하는데...간혹 예를 들면 00백화점에는 유모차 전용 엘리베이터 존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왜 유모차가 많냐 불편하다 약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아가구2_심층면담)

아이들을 준비시켜 가더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를 같이 갔는데 돌발 행동할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게 뭔가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를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아니면 그 업장에 어떤 피해가 갈까 이런 게 좀 긴장이 되니까 그게 좀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카페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그럼 나오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주문을 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아이가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확 나와 버렸

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라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걸레 좀 달라고 해서 휴지랑 걸레 가지고 막 닦고 이런 다음에 그냥 얼른 아이스크림 받아서 후다닥 나왔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것 자체가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유아가구1_심층면담)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시키면 너무 눈치 보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 큰 잔을 다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 하나 사서 이렇게 나눠서 주고 하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여분의 컵을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 민폐인 것 같은 거예요.(유아가구4_심층면담)

주요 변인별로는 연령이 낮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항목별로 유경험 비율이 다른 양상을 보여서 '자녀의 문제행동 등으로 외출을 꺼리거나 주변에 불편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취학 아동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사회적으로 배려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점,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거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이하 연령 전반에 걸쳐 사회적 배제나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19〉 공공장소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유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64.3	40.8	42.8	17.5	24.0
연령					
20~29세	75.0	68.8	68.8	25.0	50.0
30~39세	74.4	48.8	50.6	23.8	29.2
40~49세	62.3	35.8	38.1	12.6	19.1
50~59세	32.5	22.5	30.0	15.0	20.0
60세 이상	42.9	42.9	14.3	14.3	14.3
χ^2 (df)	27.676(4)***(b)	17.407(4)**(b)	15.478(4)**(b)	9.121(4)(b)	11.970(4)*(b)
성별					
남성	57.3	31.2	45.0	16.5	17.9
여성	71.1	50.0	40.8	18.4	29.8
χ^2 (df)	9.135(1)**	16.319(1)***	0.789(1)	0.281(1)	8.705(1)**
막내 자녀 연령					
영아	25.8	55.7	56.7	20.6	28.9
유아	29.3	42.2	54.4	18.4	27.9
초등 저학년	39.4	36.5	32.7	17.3	21.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초등 고학년	51.0	28.6	22.4	13.3	16.3
χ^2 (df)	17.486(3)**	15.844(3)**	36.680(3)***	1.951(3)	6.106(3)
(수)	(446)	(446)	(446)	(446)	(446)

주1: 세부 상황별로 빈도는 최근 1년 이내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차이 검증은 경험 여부에 따른 결과임.

주2: ① 나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②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 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③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④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이유로 타인의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시 당한 적이 있다 ⑤ 나는 자녀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 사회적으로 배려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주3: 카이제곱 값의 (b)표기는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라. 공공장소 이용 시 지원요구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를 자녀와 함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5점 척도로 필요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 한다’ 평균 3.9 점. ‘업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모서리 보호대 등)를 강화한다’와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오케이키즈존, 웰컴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가 공히 3.7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을 위한 조치(별도 메뉴, 별도 프로그램, 놀이 공간 조성 등)를 별도로 마련한다’와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한다’에 대한 필요도가 공히 3.6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V-3-20〉 초등 이하 자녀와 공공장소 이용 시 조치의 필요도 인식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명), 점

구분	필요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 한다	3.6	4.9	18.4	44.8	28.3	100.0 (446)	3.9
아동을 위한 조치(별도 메뉴, 별도 프로그램, 놀이 공간 조성 등)를 별도로 마련 한다	4.7	6.7	28.5	42.8	17.3	100.0 (446)	3.6
어린 자녀와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안내한다	6.3	12.1	39.5	30.7	11.4	100.0 (446)	3.3

구분	필요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업주 또는 시설 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모서리 보호대 등)를 강화 한다	2.2	7.2	27.8	44.6	18.2	100.0 (446)	3.7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 한다	4.5	8.1	30.3	35.7	21.5	100.0 (446)	3.6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업소나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 한다	7.4	11.0	29.8	35.4	16.4	100.0 (446)	3.4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오케이키즈존, 웰컴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한다	4.3	5.8	26.2	39.7	24.0	100.0 (446)	3.7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부모 심층면담에서 공공장소에서 도움을 받은 내용으로는 아동을 배려한 편의시설 등이 언급되었다(영아가구1, 2, 3).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냥 사소하게 그 업장에서 아기 식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기 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고맙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배려... 작지만 작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특별하게 도움 받은 것은 애기랑 있을 때 애기한테 인사도 잘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사회 인식인 것 같고요. 00백화점의 유모차 엘리베이터 전용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가구2_심층면담)

00백화점 갔을 때 아기랑 같이 온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출입문 근처에 따로 조성해 놓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아이랑 있으면 유모차도 꺼내야 되고 아이도 꺼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딱 정해져 있고 좀 다른 차들보다 좀 공간이 넓었어요. 그리고 아이랑 이제 이 출입문이라도 가까우니까 아이가 혹시나 뛰쳐나갔을 때도 사고가 좀 벌어질 위험이 적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주차 공간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는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식당내 키즈존, 노키즈존 분리, 칸막이 등과 같은 아동 동반 가족과 일반인의 공간 분리, 부모교육(자녀 훈육, 공공질서 훈육법 등),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기저귀 갈이대, 수유실, 낮은 세면대 등), 아동친화 업소 등에 대한 비용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표 V-3-21〉 초등 이하 자녀와 공공장소 이용 시 요구되는 추가 조치_초등 이하 자녀 가구

구분	단위: 건수 (수)
사회적 인식 개선(아동에 대한 배려, 캠페인 등)	75
아동 동반 가족과 일반인의 공간 분리(식당내 키즈존, 노키즈존 분리, 칸막이 등)	60
부모교육(자녀 훈육, 공공질서 훈육법 등)	34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기저귀 갈이대, 수유실, 낮은 세면대 등)	16
금전적 지원(시설 이용비 할인, 바우처, 현금 지급 등)	11
아동친화 업소에 대한 세제혜택 또는 지원금 제공	5
전체	201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구체적으로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되었다. 유아가구4는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강조하였다.

저는 맨 처음에 부모교육을 대학교 1학년 때 정규 수업으로 들었는데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 수업으로 인해서 애들이 되게 존중 받아야 된다고 이걸 처음 안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류의 교육이 좀 더 아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성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도덕 이런 과목에 넣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유아가구4_심층면담)

또한 초저가구의 심층면담에서는 부모교육과 더불어 아동 대상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초저가구3은 초등자녀의 특성을 따른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부모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운전 하면 뒤에 엉망진창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등대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교통 교육을 받았는데 등을 딱 붙이고 앉으라고, 안 그러면 앞으로 튕겨나가서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초저가구3_심층면담)

4. 일반국민의 사회적 대응에 관한 인식과 요구

이하에서는 아동 존중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공공장소의 아동 존중과 양육자 배려와 세부 과제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아동 및 양육자 배제와 차별의 사회적 대응에 관한 합의를 모색하였다.

가. 공공장소의 아동 존중 및 양육자 배려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4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평균 3.9점,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와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공히 3.8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표 V-4-1〉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면, 아동이 공공예절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7.8	16.0	26.4	34.2	15.6	100.0 (1,200)	3.3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1.8	6.6	25.8	40.5	25.3	100.0 (1,200)	3.8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1.6	5.1	26.7	40.5	26.1	100.0 (1,200)	3.8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	1.2	4.5	23.2	43.0	28.2	100.0 (1,200)	3.9

주: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아동과 양육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배려에 대한 호소는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아가구1, 3, 4는 소음 등 자녀의 문제행동 등을 제어할 수 없는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남성에서도 확인된다. 즉, 청년남성6은 다른 성인이 자신의 자녀를 훈육하는 상황도 수용할 수 있는 양육자의 태도가 요구되며, 이는 사회적 포용에 기반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이가 보채거나 울거나 뭐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뭔가 아이의 시각에서 한 번만 바라봐주면 이게 저의 양육자 탓이 됐건 아니면 아이의 탓이 됐건 아니면 환경이 탓이 됐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너무 그냥 시끄럽거나 아니면 방해가 된다는 자체만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니가 그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부모도 이 아이를 키워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중략) 아이랑 있는 상황에 놓이면 일단 이 아이에 대해 신경을 쓰려고 하지만 잠깐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럴 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니까 좀 부모들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할 때 있고 그럴 때 좀 다른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제가 경험한 건데, 동네에서 걸어 다니거나 마트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나이 많으신 여자 어르신 분들이 저한테 막 아기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썼나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이제 내 딸이 저렇게 육아를 하고 있다 내지는 내 조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아가구4_심층면담)

그냥 애기가 커가는 과정에 일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럴기 때문에 발달 단계상 저럴 때구나,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시선도 왜 저렇게 훈육을 못해가 아니고 저분도 양육의 과정이구나 육아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아가구4_심층면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로 아무래도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좀 더 조언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대신 제재해줬을 때 그걸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각박하지 않고 좀 열린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남성6_심층면담)

한편 유아가구3은 어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받은 경험을 언급하고 유아가구4와 초저가구1은 공공장소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확장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점에서 30대 이하가 공동체 경험이 부족한 세대라고 지적한 바는 주목할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기차를 탈 때도 제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손을 잡고 내리든지 해야 하니까 짐을 내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저희가 먹고 있을 때 사실 아이가 먹을 만하게 많이 없어서 그냥 단출하게 김에 안 매운 나물 반찬 하나 이렇게 먹이고 있으면 ‘아기 먹을 게 없죠?’ 이러면서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가구3_심층면담)

자리 양보를 그래도 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님 세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손자 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양보할 수 있게 해야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애기 운 것 때문에 사실 승무원분도 그분이 가운데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저한테도 이제 괜찮다 말씀해 주셨던 그분한테도 좀 감사를 느꼈던 것 같고. (유아가구4_심층면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오히려 저희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앉아 있을 때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가 더 부듯 해하고 자기가 너무 뭔가를 해냈다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가셔도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예뻐하고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시선 하나하나가 저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자기 손자 손녀가 아닌데도 굉장히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말 한마디가 저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초저가구1_심층면담)

다음으로 주요 변인별로는 전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면 아동이 공공예절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4-2〉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수)
전체	3.3	3.8	3.8	3.9	(1,200)
연령					
20~29세	3.4	3.7	3.8	3.8	(171)
30~ 39세	3.3	3.8	3.8	4.0	(182)
40~49세	3.6	4.0	4.0	4.1	(216)
50~59세	3.2	3.8	3.8	3.9	(238)
60세 이상	3.2	3.8	3.8	3.9	(393)
F	5.2***	3.9**(a)	2.4*(a)	2.6*(a)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구분	①	②	③	④	(수)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2	3.6	3.8	3.8	(352)
자녀 있음	3.4	3.9	3.9	4.0	(848)
<i>t</i>	-3.2**	-4.8***	-2.8**	-3.1**	
초등학생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2	3.7	3.8	3.8	(832)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7	4.1	4.0	4.1	(368)
<i>t</i>	-7.9***	-8.2***	-5.0***	-6.0***	

주1: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면, 아동이 공공예절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②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③ 양육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④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p* < .05, *p* < .01, ****p* < .001

나.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차별 해소

공공장소에서 아동이나 양육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6개 항목의 사회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 한다'에 대한 중요도는 공히 평균 4.3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 한다' 4.1점,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한다'는 3.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4-3〉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응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중요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5	1.1	13.6	42.4	42.6	100.0 (1,200)	4.3

구분	중요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0.2	1.2	11.2	39.4	48.0	100.0 (1,200)	4.3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이용 제한) 조치하도록 허용한다	3.4	9.6	27.1	36.7	23.3	100.0 (1,200)	3.7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한다	1.7	4.2	21.7	44.9	27.4	100.0 (1,200)	3.9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다	0.4	1.8	14.7	38.8	44.3	100.0 (1,200)	4.3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한다	0.8	2.9	18.7	40.0	37.6	100.0 (1,200)	4.1

주: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 조치하도록 한다'에 대해서는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로써 사회적 대응의 방향성은 비교적 원활한 합의가 기대된다.

〈표 V-4-4〉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응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전체	4.3	4.3	3.7	3.9	4.3	4.1	(1,200)
연령							
20~29세	4.2	4.3	3.8	4.0	4.3	4.2	(171)
30~ 39세	4.2	4.3	3.8	3.9	4.2	4.1	(182)
40~49세	4.3	4.4	3.9	4.0	4.3	4.2	(216)
50~59세	4.2	4.4	3.7	3.9	4.3	4.1	(238)
60세 이상	4.3	4.3	3.4	3.8	4.2	4.0	(393)
F	1.6(a)	0.9	8.8***(a)	1.7	0.8	1.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성별							
남성	4.2	4.3	3.6	3.8	4.1	4.1	(593)
여성	4.3	4.4	3.7	4.0	4.4	4.2	(607)
<i>t</i>	-3.5***	-4.4***	-2.1*	-3.5***	-6.0***	-2.7**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2	4.3	3.7	4.0	4.3	4.2	(352)
자녀 있음	4.3	4.3	3.6	3.9	4.2	4.1	(848)
<i>t</i>	-1.8	-0.8	1.6	1.1	1.4	2.2*	
초등학교생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4.3	4.3	3.6	3.9	4.3	4.1	(832)
초등 이하 자녀 없음	4.3	4.3	3.8	4.0	4.2	4.1	(368)
<i>t</i>	-0.3	0.0	-2.9**	-0.8	0.8	-0.1	

주1: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①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②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③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이용 제한) 조치하도록 허용한다 ④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 한다 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다 ⑥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한다

주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는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 다음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영아가구1은 어린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장하여 배려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동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을 배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영아가구3과 유아가구3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특정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아동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패스트트랙을 이용을 하고 이제 아이부터도 뭔가 나도 이 사회에서 뭔가 보호받고 조금 그렇게 나도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이도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정신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에 대한 뭔가... 내가 신뢰도?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아이부터도 뭔가 그렇게 자라나면 나중에 이 아이도 양육자나 그런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아가구1_심층면담)

우리 사회가 그런 임신부들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좀 배려가 있는 사회였으면 애초에 이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 하는 거는 좋긴 좋은데 그거를 안 해

도 될 만큼의 어떤 사회를 인식을 만드는 데 더 에너지를 쏟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아가구3_심층면담)

아이가 평생 아이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배려를 받고 그러면서 자라고 저희 같은 어른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굳이 노키즈고 어쩌고 나눠서 이런 불합리함을 내가 겪으면서 애를 키워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거 조금 불편한 거 참는다고 당장 내가 죽니 사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식부터 당연하게 내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내가 저 아이를 노약자를 배려해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도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장소에 뭔가 제약을 주고 뭐 혜택을 주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아가구3_심층면담)

다른 한편으로 청년층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역차별로 인식하거나 (청년남성1), 부정적 교육적 효과를 우려하는 등(청년남성6) 부정적 의견이 다수여서 확산에는 논란이 예상된다.

줄을 서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 들어간다 이런 인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아이기 때문에 나는 우선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더 이상 그거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이를 넘어서서 나이를 먹을 텐데 ‘그때는 왜, 나는 이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냐’면서 반항심 또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남성1_심층면담)

아이가 이게 줄 패스트트랙을 쓸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 약자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에 좀 어렵거든요 (중략) 오히려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역차별적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줄 서는 것 자체도 일단 교육의 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언가를 일단 들어가거나 일단 얻고자 했을 때 인내와 이런 거 다 경험이고 이런 걸 통해서도 아이가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는 것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일단 박탈시켜버린다고 생각을 듣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청년남성6_심층면담)

5. 소결

이상에서 논의를 종합하여 세부 과제의 도출 시 주목해야 할 결과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여 명확한 이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일반국민은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미성숙하여 통제하거나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0~90%선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부모에 의한 적절한 훈육에 국한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30대 이하 청년층과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도 90%선으로 높은 수용도를 나타내어 아동 전반에 대한 기피나 배제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아동에 대한 공공장소의 배제는 아동의 특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의 태도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혐오의 대상도 이들에 국한되어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혐오 인식은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특히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이 부각되어 논의됨에 따라 모든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확장되고 이들 모두를 공공장소에서 배제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일부 양육자로 인해 모든 양육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상황으로 확장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일부 불편을 감내하고 아동의 특성을 포용하거나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다른 이용객에 주목하고, 이들이 사회적 포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셋째, 어린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개인적 인식보다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아동 존중과 양육친화 사회환경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분위기가 출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불편이 우려되어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각각 60.3%와 40.8%로 높고, 실제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42.8%로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이들 가구에서 공공장소 이용 시에 노키즈존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이 70%선으로 높게 나타나며, 출입금지 등 불편을 우려하여 공공장소의 방문을

포기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30%선에 달하였다.

넷째, 사회적 대응의 방향으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양육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대체로 높은 지지를 보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적으로 노키즈존 등에서 필요도를 높게 응답한 자녀가 없는 가구와 30대 이하에서도 양육자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배제에 대한 사회적 원인이 문제행동 아동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포용의 측면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일반국민 조사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 타인을 배려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나, 특히 청년층에서는 공동체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우려를 자아낸다. 게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공공장소의 불편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인식은 주로 여성 양육자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여성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인 혐오표현으로 지목된 ‘맘충’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이들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훈육이 힘든 상황에 대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양육자의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고립된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나 아동의 기질이나 컨디션 등 다차원적인 원인이 존재함을 이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섯째,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부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경험한 비율은 일반국민의 경우는 식당이나 카페에 치중되어 있으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불편

사항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반국민의 불편사항으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가 주를 이루어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과 예절교육, 타인을 배려하는 양육자의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경험하는 공공장소의 불편사항은 단지 출입 금지나 이용제한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다양한 불편들이 제기되므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아동을 배려하는 편의시설 구비 등은 초등저학년 이하 아동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곱째,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아동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공간에 한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되, 연령 기준은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초등이상 자녀의 훈육에 대한 양육자의 책임과 아동의 인식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특정 공공장소에서 출입을 금지당한 경험이 자존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는 미취학 아동과는 달리 학교교육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자기조절과 공중예절 등을 실천할 수 있다고 기대되며, 이에 따라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도 연령이 낮을수록 훈육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VI

정책 제언

- 01 요약 및 종합
- 02 사회적 대응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전략
- 03 사회적 기반의 조성 방안
- 04 세부 과제

VI. 정책 제언

제6장에서는 앞서 다룬 분석의 주요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때 주요결과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사회적 대응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구조적 원인과 일반 국민과 유자녀 가구의 인식,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담론의 실상 등을 위주로 담았다. 또한 공공장소 유형별 세부 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기반의 조성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1. 요약 및 종합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3장과 5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원인을 규명하였다. 우선 아동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사회적 배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는 자녀훈육의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며, 아동 및 양육자배려를 위한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이 배제되는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 실체는 모든 아동이나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기피나 적대감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로 인해 문제행동이 예상되는 어린 아동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어린 아동과 이들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 관념을 내포하므로 부당한 사회적 편견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를 부각하여 혐오 인식을 확산하고, 이에 기반하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어린 아동과 양육자를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배제하는 차별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1) 아동 혐오에 대한 진단

: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혐오 인식

일반국민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영유아의 울음이나 소란스러움 등 문제행동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항목에서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영유아의 기질 등으로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비율은 20~30대에서 각각 80.2%와 85.2%에 그쳐 이들에게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에 비해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서 당사자 아동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양육자에 대해서는 비난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학생에게 공공장소 등에서 자기조절과 예절을 기대하는 것은 이들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유아 발달에 대한 높은 수용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 어린 아동에 대한 기피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일반국민 조사에서 '공공장소에 어린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에 그치고, 20~30대에서도 20% 선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이 공공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선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혐오는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미취학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는 가구나 청년층마저도 발달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단적으로 기피나 혐오의 대상은 아동 전반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하는 초등학생을 적절히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양육자로 파악되었다.

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진단

: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에 따른 동반 자녀의 배제와 차별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문제행동을 하는 초등학생과 타인을 배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훈육하게 않는 양육자에 대한 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양육자로 인해 모든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확산되고, 특히 여성 양육자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결국 양육자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표현은 곧 여성 양육자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여성 양육자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셈이다.

한편 어린 아동이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단지 특정 장소의 출입이나 이용의 제한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당연시하여 다른 영역으로 아동 차별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2점(5점 만점)에 그친다. 또한 아동을 미숙하고 통제와 훈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대하기 힘들고, 이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 초등자녀가 특정 공간이나 시간대에 자신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이에 대해 부모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이를 동반하는 외출을 꺼리거나 자녀 동반 시에 사전준비사항 등으로 인한 양육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양육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이해

1)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권리 인식 수준은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배제의 원인 및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아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공공장소에서 아동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함의를 던져준다. 아동을 통제가 요구되는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공공장소에서 아동의 배제가 제대로 훈육 받지 못한 아동과 그에 대한 양육자의 책임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모든 아동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차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통제와 제약이 필요한 훈육 대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서 일반국민은 아동을 미성숙하고 통제와 제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데, 이러한 인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자녀 훈육의 문제에 국한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행동은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 개별적 기질이나 컨디션 등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아동을 문제행동을 하여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당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장소나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동을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나 참여에서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모순적 이해와 상충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그 이해도가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게다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미숙함을 빗대어 사용하는 비하 표현(짤민이 등)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점도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혼선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이처럼 낮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이 성인과 함께 어울리고 이를 위한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시하

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우려된다.

이처럼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의 아동이 환대받고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제와 차별을 확산할 가능성도 내포하므로 시급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2) 여성 양육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표현 확산

공공장소에서 제기되는 혐오 인식과 혐오표현의 경험은 주로 여성 양육자에서 두드러지며,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양육자로서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자녀 가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남성 양육자에 비해 여성 양육자를 더욱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고(평균 3.4점, 5점 만점), 여성 응답자가 동의하는 비율은 50.5%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으로 ‘공공장소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에 달하고,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8%로 나타난다.

한편 여성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20~30대 청년층에서는 허용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계를 요한다.

3) 자녀훈육 영향 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일반국민 조사에서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으로 지목되는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차원적 이해가 요구된다. 다시말해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원인을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 또는 컨디션,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양육기술의 부족 등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자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유자녀가구에서 자녀훈육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아동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려는 미취학 아동에서 나아가 초등학교 자녀에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층면담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대중교통 등에서 편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4) 아동 및 양육자 배려의 구조적 취약성

아동 및 양육자를 배려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으로는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타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나와 다른 특성을 지닌 타인을 이해하고 불편을 감내하기 힘든 사회환경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을 배제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방안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으로 한계를 지님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과 관용, 대인 신뢰도, 이타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은 상황이 어린 아동이 공공장소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구조적 원인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공공장소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포괄 범위 확장

1) 공공장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장소는 일부 대상이 점유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주민 등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경험을 통해 사회적 배려와 관용을 기대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들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장소에는 공적 부문은 물론이고 사인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므로 상업시설을 포함하여 특정 대상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나 참여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곧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 존중 및 양육친화적 공공장소의 개념 확장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진단은 단지 출입 허용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해당 장소나 공간이 아동의 특성이 반영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배려는 단지 이용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특성에 부합하는 용품이나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 시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기획하여 제공하는지 등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양육자가 어린 아동을 돌보기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포괄한다.

3) 아동 배제의 장소 및 공간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대응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위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앞서 다룬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특성이 이해되거나 배려받지 못하고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은 식당이나 카페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장소나 공간의 유형에 따라 불편사항도 다양하게 제기되므로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세분화된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노키즈존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14년에는 공공장소 중에서 주로 식당이나 카페를 위주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나,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년에는 대중교통, 캠핑장 등 아동이 배제되는 공공의 장소가 보다 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식당이나 카페 이외의 공공장소에서도 아동이 편하게 이용하기 힘든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반국민이 어린 아동으로 인해 경험한 불편사항은 공공장소의 유형과 상관없이 소음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지만,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제기한 불편사항은 대중교통 등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치는 공공장소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과제가 요구된다.

2. 사회적 대응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전략

앞서 논의한 주요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공의 장소와 공간에서 아동이 배제되는 현상에 대응하는 기본 방향 및 목표와 주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과 목표

첫째,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아동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공공장소 및 공간의 운영이 요구된다. 일반국민이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아동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나타나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이 공공장소에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로 높게 나타나서 우리 사회가 어린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양육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일반가구 조사에서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정도는 평균 3.8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유아녀가구는 자녀 동반 시에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0%이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외출을 꺼리는 비율이 각각 64.3%와 40.8%로 높게 나타나서 양육친화적이지 않은 사회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셋째, 공공의 장소나 공간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어울려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모든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허용하되, 아동보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아동 특성에 부합하는 편의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국민 조사에서 공공장소를 아동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양육자의 타인 배려와 아동의 예절교육 강화와 더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 4.3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넷째, 공공장소를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노키즈존의 경우 아동 및 양육자의 행복추구권, 다른 이용자의 행

복 추구권, 그리고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가 동시에 고려되는 사회적 대응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등에서는 특정 대상의 입장만을 강조하지 말고, 관련 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전략

위의 제1절에서 논의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진단에 의하면, 정책적 개입의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등 사회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앞서 [그림 I-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 아동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1) 아동 존중과 양육자 배려 관련 우수 사례의 확산

어린 아동이라고 해도 공공의 장소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아동을 배려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아동을 배제하는 업소나 시성에 대해 강제적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아동을 존중하는 업소를 부각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은 노키즈존의 급속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나, 어린 아동이 공공장소를 편히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되므로 사회적 대응 방향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출입 금지업소의 지정을 금지하는 조치는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실제 적용에 난관이 예상되고, 영업주와 다른 고객, 그리고 양육자 사이의 갈등을 보다 첨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2) 모든 연령대를 위한 열린 공간의 확충을 통한 아동 배제의 극복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이나 공간을 확충하여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유희공간의 발굴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앞서 다룬 전주시청에서 기존 공간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M 아트홀에서 아동 관객을 위해 지역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공연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의 연계를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어린 아동이 편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원활한 사업 연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경험의 확장을 위한 민관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 강화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배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의 인력이 추가로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공모사업에서 아동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5) 노키즈존의 사회적 대응: 차별금지와 아동보호 기준 마련

모든 공공장소나 공간은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단, 이들 장소에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영역에 한하여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일반국민 조사에서 일부 공간에 한하여 노키즈존 운영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나타나는 데, 이때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초등저학년 가구가 참여한 심층면담에서도 안전상의 이유가 이용 제한의 요건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 시 유의사항이나 이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도

록 한다. 즉, 영업주는 미취학아동에 한하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을 제약하거나, 부모가 동반 시 이용 등의 내용을 안내문에 명시한다.

6) 공공장소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아동 존중 및 배려 조치 마련

공공장소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제안한다. 특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등과 같이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에서는 어린 아동 이용객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별도 공간의 조성이나 프로그램 기획을 추구한다.

3. 사회적 기반의 조성 방안

위의 제2절에서 사회적 대응의 전략으로 사회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적 편견에 기반하여 아동에 대한 비하와 여성 양육자에 대한 적대감을 담은 혐오표현의 확산을 규제하고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부당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림 1-4-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가. 아동의 권리 강화와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1)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와 구제조치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해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아동의 특정 연령을 명시하여 차별이나 차별 의도를 암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차별행위의 중지와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예방과 조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차별 사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의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평균 3.3점, 5점 만점)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에 달하지만 노키즈

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로서 인식하는 정도는 3.2점(5점 만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공공의 장소와 공간에서의 배제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차별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차별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법률안에는 나이를 차별의 이유로 명시하고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따른 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 규정의 위반 시에 사용자에게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제조치가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별의 개념에는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과 영국의 「평등법」에서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차별 행위 즉, 간접 차별, 직접차별, 복합 차별, 차별 지시 등이 포함되고, 캐나다의 「인권법」에서와 같이 차별행위를 규율하는 범위로서 서비스와 시설의 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제사업위원회, 2020: 8-10). 영국의 「평등법」에서와 같이 개인의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본다(표 VI-3-1 참고).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노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 시정에 관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아동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에서는 나이 등이 이유로 공급이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VI-3-1〉 주요국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국가	법률명	주요 내용
영국	평등법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규율 ◦ 차별 개념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이 포함됨. 괴롭힘, 불이익 조치는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 ◦ 평등법에 따라, 평등인권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평등법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 내용은, '법률자문'(legal advice), '소송 대리'(legal representation), 분쟁해결 위한 편의(facilities for the settlement of a dispute) 등임. ◦ 평등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손해배상, 금지명령(injunction), 확인(declarations) 등을 선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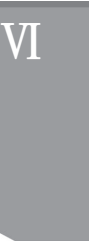
국가	법률명	주요 내용
독일	일반 평등 대우법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종, 출신민족, 성별(임신 및 출산 포함), 종교 또는 세계관, 장애, 나이, 성적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사회보호, 공공시설, 교육, 민법상 문제 등에 있어서의 동등대우 규정 차별 개념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지시가 포함됨. 차별금지 규정 위반 시 사용자에게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책임, 비재산상 손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함. 손해배상 산정 관련하여, 차별이 없었더라면 채용되었을 지원자와 채용되지 않았을 지원자로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게 하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고 3개월분의 임금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캐나다	인권법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표시(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17년 법 개정으로 추가),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유전적 특징(genetic characteristics), 장애, 사면 또는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를 이유로 재화·서비스·시설·숙소의 이용, 고용기회 및 업무관계, 임금 등 영역에서의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 규율 차별이나 차별 의도를 암시, 표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하는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재현물을 공공에 출판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

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20).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 pp.8-10 재구성

이상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의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 <표 VI-3-2>와 같다.

<표 VI-3-2>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관련 법안 및 조항

차별금지법안의 관련 조항
<p>(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급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차별이나 차별 의도를 암시, 표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하는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재현물을 공공에 출판 또는 게시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차별금지법안의 관련 조항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진정)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20).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 p.16, 22, 27 수정 및 보완

2) 아동의 권리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사업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하여 아동이 연령과 상관없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적용대상 아동연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본법 성격을 지닌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서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미취학과 초등저학년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들 연령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아동권리에 기반하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법률적 기반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한편 앞서 제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존에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아동의 권리 침해에 관한 구제 수단(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3a)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 논의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은 발달권의 보장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사회환경의 조성 측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공간을 누릴 권리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와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행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VI-3-3>과 같다.

〈표 VI-3-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예방 관련 아동기본법안 및 조항

아동기본법안의 관련 조항
<p>(발달권 보장) ①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아동은 인격, 재능 및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 여건과 사회적 공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④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아동은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⑥ 아동은 발달에 필요한 쉼 권리와 놀 권리를 가진다.</p>
<p>(아동권리 침해의 구제 및 진정, 사후조치) 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해 보장기구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자치체장이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장기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권리 관련 아동의 해로사항 접수 및 대응 2. 아동권리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굴 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③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권고, 이행 실태 점검, 미이행시 통보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p>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3a). 아동기본법안 검토보고: p.44, p.56 수정 및 재구성

나. 아동친화업소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앞서 제시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과 더불어 늘어나는 노키즈존의 확산을 예방하는 즉각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노키즈존이 도입되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2014년과 비교하면 노키즈존은 해외에서 주목할 만큼 두드러진 확장세를 보이며, 지정 장소도 식당과 카페 위주 이외에 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2%에 달하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4%에 불과하여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때 즉각적인 정부의 개입은 현재 지방정부 사업에서와 같이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을 배려하는 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추진 중인 키즈존 사업 특히 오케 이키즈존과 예스키즈존의 경우는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마땅한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 대해 어린 아동의 경우는 출입과 이용 가능 여부를 양육자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하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키즈존 사업은 그 사업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정 기준과 운영관리 사항도 달라서 일원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탑재하여 홍보하고, 편의시설 유지 등에 관한 비용지원 등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표 VI-3-4>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제36조의2 제4항).

<표 VI-3-4>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사업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36조의2(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을 아동친화업소(이하 이 조에서 “아동친화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아동친화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영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p> <p>④ 아동친화업소의 신청·인증 및 표지, 자원,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다. 아동 및 양육자 배려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아동친화업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키즈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2023년에 제주도(10.12)와 광주광역시 남구(11.3)에서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는 당초에 아동출입업소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금지의 필요성과 지정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아동출입금지업소의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당초 지정의 금지를 위한 사항으로는 제한업소의 지정 금지를 권고하거나 계도 하고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이외에도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내용이 모호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한계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응의 방향은 업소의 규제 보다는 아동친화 업소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홍보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는 기존 조례에서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아동출입제한의 범위를 업소에 한정하고 있어서 보다 다양화되는 출입제한의 장소나 공간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는 '아동출입을 제한하는 공공의 시설이나 장소의 확산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아동이 존중 받고 양육하기 편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그 정의에는 아동출입 제한의 범위에는 기존의 업소 이외에 공공장소와 시설을 추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내 공공시설이나 장소에서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를 배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동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제8조에 의거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충북 괴산군에서 제정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양육지원(제4조)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양육친화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이외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VI-3-5〉 충북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부과제의 법적 근거
제4조(양육지원) 군수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2.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3. 영유아의 소아과 등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한 교통비 지원 4. 양육친화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양육지원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료: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4. 8. 3. 인출)

3)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 장소나 공간을 활성화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는 아동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어린 아동이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의 조성과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의 구축, 그리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을 배려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개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들 조례는 아동친화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공 부문에 한정하여 공간이나 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조례를 근거로 하여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업소나 시설을 아동을 배려하는 설비를 구비하거나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의 조성하는 경우, 아동안전 시설 구비, 아동권리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친화 공공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민관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표 VI-3-6〉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연계 관련 규정: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시)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연계 사항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p>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방향성 부합</p>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p>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아동친화 공공시설 접근성 제고</p>
<p>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아동친화업소와 시설의 아동안전 조치 강화</p>
<p>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아동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일한</p>
<p>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p>	<p>대국민 아동권리 교육 강화</p>
<p>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가정·생활·교육·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아동친화업소 및 시설 /아동출입제한 업소 및 시설의 실태 파악 및 조치 마련</p>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연계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동친화 공공시설의 비용지원 근거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아동친화 시설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연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4. 8. 3. 인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모색

지방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양육자가 편하게 자녀와 동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간의 조건을 균등하게 달성하는 것을 성평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에게 편중된 편견은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본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복합적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를 배려하는 조치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위한 근거 규정도 갖추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도 기대할 수 있다.

〈표 VI-3-7〉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연계 관련 규정: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연계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방향성 부합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양육자 배려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아동친화 공공시설 접근성 제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4. 8. 3. 인출)

라. 아동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아동친화기업(CRB: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은 2011년 ‘유엔 기업과 이행 원칙’ 발표에 따라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을 모두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을 공동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다(유니세프_아동친화사회 만들기, <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public-private-partnership/childrens-rights-and-business>, 2024. 5. 9. 인출).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활동이 어린이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업의 아동권리 침해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아동친화기업의 경영원칙에는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

은 아동을 배려하는 업소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동친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확산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3년에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가 아동친화경영 우수 사례(9개 기업)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세이브더칠드런, 2013), 그 이후로는 확산이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과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그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와 더불어 아동친화기업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사항에 관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며, 이때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기업이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과제로 일·생활 균형과 더불어 아동친화기업에 관한 과제를 추가로 모색할 만하다. 즉, 기존에 발표된 과제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도입, 중소기업 육아친화경영 문화 확산, ESG 공시 기준에 일·가정 양립 경영 지표를 포함하는 등 부모를 지원하는 과제가 위주여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24-25),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세부 과제

이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환대하고 배려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통된 조치들을 제안하고, 공공장소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 아동 존중 및 배려의 적극적 조치

1) 아동친화 업소 인증 및 운영기준 일원화: 식당/카페

가) 법적 근거의 마련과 사업 명칭

아동의 출입을 허용하는 사업 명칭보다는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사업 명칭을 고안하고(가칭: 워드키즈),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이나 양육친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업체 인증 기준과 지원내용

아동친화 업체의 인증 기준으로는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위생청결 관리, 아동 배려 조치사항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업체 또는 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관련 정보의 공시 등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편의용품 등 업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 업소에 대한 재인증을 위한 현장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교육(아동권리 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 업체 준수사항

아동친화 인증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한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동 이용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배려, 인증 표찰의 부착,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기준 이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 업체의 관리를 위해 폐업 등에 따른 통보 조치를 의무로 부과한다.

라) 운영관리 사항: 사후관리

인증 업소에 대한 점검은 연중 1회 이상 실시하되,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한다.

이에 앞서 지역 내 대상 업체의 전수조사와 인증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업소 대상 정부 안심보험 도입

영리 목적의 민간 영역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추가적인 비용 투자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 문제로 인한 우려도 어린 아동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일정 공간에 한하여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한 ‘웰컴키즈 안심보험’과 같이 음식점이나 카페의 업주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안전 문제 등 어린 아동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양육자의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3) 아동 및 양육자 배려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어린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가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이용할 시에 아동을 배려한 물품이나 시설 구비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정보 제공 방식을 고안하여 해당 업소나 시설에서 배포한다. 식당 등 업소와 공공 장소 및 시설의 입구에 아동을 배려한 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공지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을 위한 물품이나 시설을 구비한 경우 해당 정보를 담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시설 별로 디자인하여 유관 업소에 제공한다.

안내 스티커 지원대상은 앞서 제안한 바 있는 아동친화 인증업소는 물론이고, 이외 업소의 경우에도 배포하여 아동 및 양육자가 구비된 물품과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확대 및 요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 취지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우선 입장이 제도화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가 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가 우선적으로 입장하여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실시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관련하여 일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부터 공공 시설이나 상업시설 창구 등에서 임신부나 자녀 동반 양육자를 우선적으로 안내하는 위해 어린이가정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일본 어린이가정청,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 2024. 8. 27. 인출). 기사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아동가정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이 중심 사회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다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중인 시설은 2024년에 도입 당시 보다 크게 늘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청사(여권 업무, 운전면허 업무, 주민등록 업무 등), 대중교통(철도, 버스, 항공, 여객선), 공립 미술관 박물관 극장, 정부 지원 각종 행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전국적 확장을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고, 그 적용 범위도 경기장 등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공공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 특히 청년층에서는 어린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장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큰 것으로 파악되므로, 좌석이 지정되어 있어서 어린 아동의 우선 입장이 이용 기회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시설을 위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사회적 인식 제고

가) 키즈프렌들리 캠페인

아동이 예술 경험을 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의 날과 구분되는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편하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날과 시간대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테면 일반 이용객의 이용이 적은 요일과 시간대를 지정하여 미취학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이를 국공립미술관 등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나) 공립미술관/박물관 교육사업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배정된 교육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기획되어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되므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 한다. 이들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지역에서 아동이 편하게 참여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장소의 유형별 아동친화 환경조성 방안

1)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공공청사와 같이 자연친화적이고 넓은 규모의 유희공간을 갖춘 시설에서는 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정부청사 등과 같은 공공 부문의 시설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을 추구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이들 청사의 열린 공간은 아동관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여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공간의 대여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간 대여의 범위를 공공 부문에 한정할 것인지, 행사 등의 목적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하고, 그 행정 처리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실외 놀이터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권리 단체 등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협의기구 또는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가 함께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는 복도 등을 활용하여 북카페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아동을 동반하고 실외의 열린 공간을 이용하는 양육자 등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2) 도서관

도서관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어린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역내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으나 어린이를 위한 독서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특히 작은 도서관을 어린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별도의 건물이나 분리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어린 아동을 위한 설비가 요구된다. 즉, 어린 아동을 위한 공간을 분리하되, 이들 공간을 온돌 기능을 갖춘 좌식 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 아동이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공연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아동을 배려하는 설비와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어린 아동을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하여 양육자는 물론이고 다른 이용객의 배려와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한다.

3) 미술관

미술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열린 공간이며, 특히 아동에게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미술작품의 파손 등이 우려되어 어린 아동의 출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초등 저학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린 아동을 둔 양육자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도 제약이 따를 우려가 있다.

어린 아동이 미술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내의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에게 미술관을 놀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어린 아동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은 교육 이외에도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인력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의 기업과 협력하여 어린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가족친화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운영시간 이외 시간대에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특히 일반 이용객의 줄어드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어린 아동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시간을 지정하여 공지하고, 이때 다른 고객에게 어린 아동과 함께 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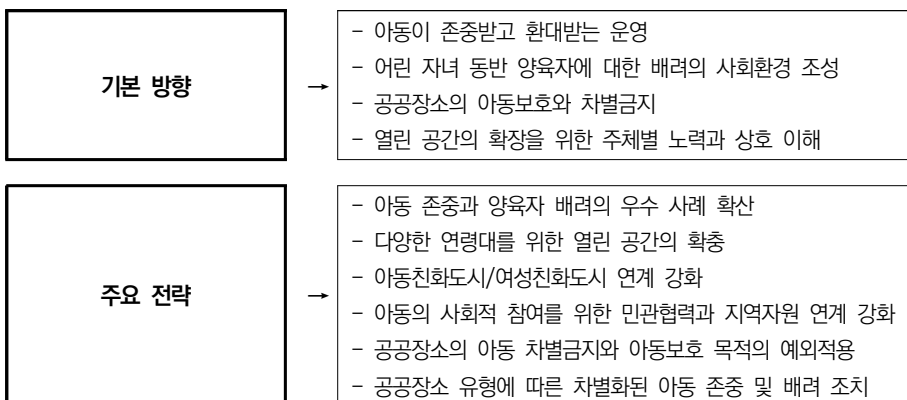
순수 예술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클래식 공연을 포함하여 어린 아동에게 공연장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린 아동이 공연을 놀이로 인식하여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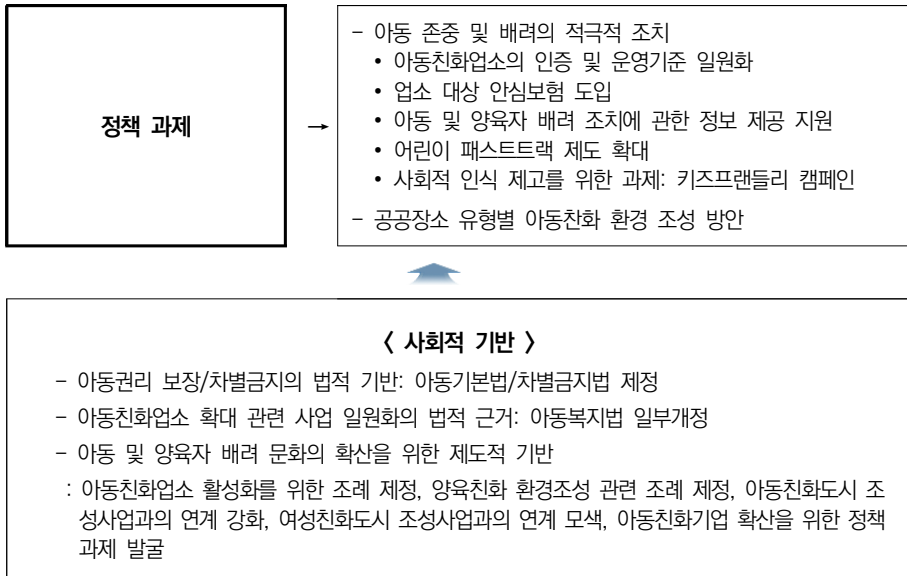
이를 위해 소규모 공연장을 발굴하여 어린 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며, 공연 중간에 전문 해설자의 공연 진행을 편성하는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한 공연 시작 전에 아동 및 양육자에게는 공연 예절을 강조하고, 공연이 종료된 이후에는 참여한 아동을 격려하며, 다른 이용객에게 어린 고객이 함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는 점을 공지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들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비용지원 요건으로는 전체 공연에서 아동의 관객의 비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아동 연령과 공연 횟수, 연주자의 전문성, 아동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추진사항에 관한 내용도 심사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대응 방향과 주요 전략, 그리고 세부 과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이하 [그림 VI-4-1]과 같다.

[그림 VI-4-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대응 방향 및 주요 전략과 세부 과제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2023). 한눈에 보는 영유아 발달지원 가이드북.
-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23).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국가인권위원회(2017). 전원위원회 결정문(2017. 9. 25.).
-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3년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7).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차별: 13세 이하 아동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어(2017. 11. 24.).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제한 하는 것은 차별(2023. 8. 30.).
-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20).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6호).
- 국회보건복지위원회(2023a). 아동기본법안 검토보고: 양금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733호)·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 제21756호)(2023. 6).
- 국회보건복지위원회(2023b).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성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80호).
- 국회운영위원회(2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굿네이버스(2019).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과제.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호.
- 권민영(2016). 공적공간으로서의 지방청사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도균·유보배(2016).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 김도리·이희원·최원미·백준상·박주희(2023). 영유아를 배려하는 공공장소를 위한 디자인 연구. The HCI Society of Korea, 978-993.

- 김서우(2022). 복합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범죄예방 설계 필요성 조사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3(3), 51-76.
- 김소은·정익중·정수정(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
-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홍인옥·김태완·강민희·이소정·원일·윤필경·유정예(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2020).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진·유덕산·방준성·장광호(2020). 경찰청 112 신고 데이터의 미분류 유형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기반 잠재적 신고유형 분석. 한국통신학회 종합 학술 발표회 (하계), 202(0), 893-894.
- 김정수(2020).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 노키즈존 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7(4), 27-57.
- 김진(2023).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차별금지법.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이상인 국회의원실·국회인권위원회 등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김보영 옮김(2019). 제3의 장소(The Great Good Place). 풀빛.
- 마크로밀 엠브레인(2019).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 마크로밀 엠브레인(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 박고은(2023).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사건들.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이상인 국회의원실·국회인권위원회 등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 박성원(2023).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국회미래연구원.
- 박주섭·김나랑·한은정(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과학기술동향 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2), 63-73
- 보건복지부(2019).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줍니다(2023. 12. 28.).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항 채택 (2023. 8. 10.).
- 부산시 금정구(2022. 4. 12.). 내부자료(금정 에스키즈존 발굴·운영 계획).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 부산시 동래구(2020. 6. 3.). 내부자료(명품동래를 위한 웰컴키즈존 운영에 따른 일반휴게 음식점 조사계획). 부산시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 부산시 동래구(2023. 12. 11.). 내부자료(육아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웰컴키즈존 점검계획).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 서울시 보도자료(2022). “아이는 언제나 환영”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존’에 350개 점포 동참.
- 서울시 보도자료(2023a). 아이와 함께 오세요... 서울키즈 오케이존, 500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시 보도자료(2023b). ‘노키즈?’ 서울은 ‘오케이키즈’...‘서울키즈 오케이존’ 9개월 만에 5백개소 돌파.
- 서울시 보도자료(2024). 오세훈 시장, 저출생 시대에 ‘40만 서울 어린이 행복’ 챙긴다(2024. 5. 1.).
- 서울시설공단 보도자료(2024). 서울시설공단, 고척돔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아이 동반 이용 최적화 장소로 ‘각광’(2024. 6. 22.).
- 서울시 성동구(2024. 6. 2.). 내부자료. (「성동 아이사랑 맛집·카페」 운영 개요 및 결과). 서울시 성동구 보건위생과.
-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2013).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아동친화경영 우수사례 기업 9곳 선정 (2013. 5. 29.)
- 안상준·유원준(2023). 딥 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 위키독스.
- 오서현·정기상(2019). 아동보호법론. 유로.
- 오수경·양은별·김서현·정익중(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KJCS, 44(3), 361-373.
- 우경연(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극복 개입방안. 동광. 111호, 85-138.

유니세프.

- 이서인·진경선(2023). 내·외집단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아동의 추론. 한국사회 심리학회지: 발달 36(4), 104-119.
- 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201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소.
- 이재연·황옥경·강현아·서영숙·이완정·구은미·정선아(2018). 아동권리와 복지. 창지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 전경옥·김영란·김현숙·황혜미(2019). 혐오표현 위험성 조사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연구. 경기도의회.
- 전주시(2017). 내부자료.
- 전주시(2018a). 내부자료(민관협력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 전주시(2018b). 내부자료(아동친화공간 '맘껏 놀이터' 조성 계획).
- 전주시(2019). 내부자료(노송광장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계획).
- 전주시(2020). 내부자료(「노송광장 놀이환경개선 기획단」 회의 결과보고).
- 전주시(2024). 내부자료.
- 전주시 보도자료(2019). 전주시청 노송광장, 상상력·모험심 키우는 놀이터 된다 (2019. 10. 25.)
- 전주시 보도자료(2020a). 노송광장 자연놀이터 오는 6일 전격 개방(2020. 1. 3.)
- 전주시 보도자료(2020b). 초등생들과 노송광장 '트리하우스' 만든다.(2020. 10. 21.)
- 전진옥·전인옥(2015). 영아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익중·오정수(2021).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조덕상(2023). 토론문: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토론회 자료집. 용혜인 국회의원실 주관.
- 조복희(2006). 아동발달. 경기: 교육과학사.
- 조복희·도현심·유가효(2010). 제2판 인간발달. 경기: (주)교문사.

- 한국리서치(2021).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7-2호). 여론속의 여론, 기획: 노 키즈존에 대한 여론(2021. 11. 29.).
- 한국리서치(2023).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19-2호). 여론속의 여론, 기획: 노 키즈존에 대한 여론변화는?(2023. 2. 22.).
- 한상희(2019).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마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홍성수(2018). 말이 같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 홍성수(2019). 편견, 차별, 혐오-현상, 개념, 대응(2019).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박주민 국회의원실 등 공동주최.
- 황현주(2017).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의 영유아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 Aber, J., Gershoff, D. T., & Brooks-Gunn, J. (2002). Social exclusion of children in the U.S.: Compiling indicators of factors from which and by which children are excluded. Paper presented at the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conference,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Hassani, H., Beneki, C., Unger, S., Mazinani, M. T., & Yeganegi, M. R.(2020). Text mining in big data analytics. Big Data and Cognitive Computing, 4(1), 1-34.
- Jayson, D. & 신의진 편역(2005). 어린이의 행동문제.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 Lee, S., & Choi, N. (2020). A big data analysis of social perceptions of childhood obe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1), 57-80.
- Rogers, R. S., & Rogers, W. S. (1992). Stories of childhoo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신문기사】

- 경향신문(2022. 3. 26.) “어서오세요! 어린이 손님”...늘어나는 예스키즈존.
<https://www.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203260600001>

(2024. 6. 10. 인출)

경향신문(2023. 10. 31.), 노키즈존? 서울키즈 오케이준!...“안전보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필요한 때”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10311435001#c2b> (2024. 8. 20. 인출)

매일경제(2023. 8. 29.). [단독] 아이 문전박대하는 노키즈존...인권위 “명백한 차별”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16925> (2024. 2. 28. 인출)

세계일보(2024. 2. 20.). “한국, 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노키즈존 때린 르몽드, https://m.segye.com/view/20240220503617?utm_source=dable (2024. 2. 27. 인출)

스카이데일리(2023. 3. 2.). [이슈진단] 서울시 키즈 오케이존 논란: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키즈 오케이존, 외려 갈등·차별 야기 우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3925 (2024. 2. 28. 인출)

아이뉴스24(2024. 4. 15.). “NO 키즈? YES 키즈!”...빔스, 은평구에 ‘키즈 프렌들리’ 매장 오픈. <https://www.inews24.com/view/1708116> (2024. 6. 10. 인출)

연합뉴스(2022. 7. 18.). 부산 금정구, 관내 음식점 10개소 ‘금정 예스키즈존’ 지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8/0002784206> (2024. 6. 10. 인출)

연합뉴스(2023. 6. 26.). “세계 최저 출산율에 노키즈존?”...CNN, 타당성 논쟁 조명,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AKR20230626068900009> (2024. 2. 18. 인출)

오마이뉴스(2023. 12. 9.). 전주시청 1층에 가보셨나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4571 (2024. 6. 10. 인출)

이데일리(2021. 6. 18.). “노키즈존인지 알려라도 주세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779011&memberNo=3939441&vType=VERTICAL> (2024. 2. 27. 인출)

이데일리(2023. 6. 30.). 미술관이 ‘예스 키즈존’으로...수원시립미술관 행사 성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2566635646968> (2024. 6. 10. 인출)

- 일요시사(2023. 10. 4.) 제주도 맛집·카페 “노키즈존 공지하면 큰일 나나?”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972> (2024. 2. 27. 인출)
- 클래식잡지월간리뷰(2023. 12. 4.) 오산 민간공연장 제1호 MEG아트홀 대표 권지혜. <https://blog.naver.com/artireview/223282633910> (2024. 6. 10. 인출)
- 한겨레(2024. 5. 21.). 서울시, ‘노키즈존 줄이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 최초 출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1419.html>, (2024. 8. 20. 인출)
- NBN뉴스(2019. 6. 20.). 부산 동래구, 사회적 약자 맞춤형 생활지도 제작 배부,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37>(2024. 6. 1. 인출)
- K스피릿(2024. 3. 3.). 전국 8개 소극장에서 92회의 클래식 공연.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23> (2024. 6. 8. 인출)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구석구석. 경기도 예스 키즈존 카페 4 이색체험도 가능하다고?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9ef0abca-cee1-4eec-8287-41c0b4719393 (2024. 6. 10. 인출)
- 부산 동래구청 홈페이지. 여성아동 -> 여성정책 -> 임신출산육아 -> 웰컴키즈존.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504004008000 (2024. 6. 10. 인출)
- 부산광역시 대표 블로그(2023. 11. 27.) 독서철 맛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부산 속 작은도서관. <https://blog.naver.com/coolbusan/223276124581> (2024. 6. 10.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홈페이지_보건소_보건광장_음식점 찾기_아이사랑 맛집·카페, <https://www.sd.go.kr/health/selectBbsNttList.do?bbsNo=541&key=5051&searchCtgry=%EC%95%84%EC%9D%B4%EC%82%AC%EB%9E%91%EB%A7%9B%EC%A7%91&> (2024. 9. 5. 인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_스마트 서울맵, <https://map.seoul.go.kr/smgis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_서울소식_서울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1832 (2024. 8. 20. 인출)

유니세프_아동친화사회 만들기, <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public-private-partnership/childrens-rights-and-business/> (2024. 5. 9. 인출)

일본 어린이가정청,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 (2024. 8. 27. 인출)

작은도서관홈페이지, 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2272 (2024. 9. 9. 인출)

통계청, 「사회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67&upCd=11> (2024. 4. 19.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69&upCd=11> (2024. 4. 19.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년 5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2024. 6. 10. 인출)

KBS NEWS(2023. 9. 22), 전국 첫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추진...무엇을 남겼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0722> (2024. 2. 19. 인출)

【법률 및 법률안/조례안】

강홍식 의원 대표발의(2023. 5. 2.) 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1756.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2021. 8. 3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2330.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2023. 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

-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2023. 4. 28.). 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173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2021. 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46.
이성만 의원 대표발의(2023. 7.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3180.
장혜영 위원 대표발의(2020. 6. 29.). 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1116.



The current status and pending tasks in relation to the social exclusion of children: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Haemi Yoo, Jihyun Kim, Eun Jung Park, Shinyeong Song

Anyone should be able to use and communicate comfortably in public places and spaces. Therefore, restricting the use of public spaces because of age can lead to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this study, among the various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we focused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and diagnosed whether young children were excluded or discriminated against in public places and spac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200 people, including 446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elementary school age, and surveyed on perceptions of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and In addition,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12 people from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12 young people(ages 20 to 39) to investigate awareness of young children's use and entry of public spaces.experiences and demands of social exclusion for young children. Local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child-friendly public spaces and operation cases by type of public space were analyzed. Through social big data analysis, social discourse on children's rights and social exclusion of children from 2014 to 2023 was identified.

By combining the above analysis results, we diagnosed whether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children exist, and proposed major strategies for social response and detailed improvement tasks for each

type of public space.

First of all, the avoidance of young children in public places is not a cause for concern, and the targets of avoidance or disgust are identified as caregivers who do not discipli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engage in problematic behavior.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hate speech against female caregivers is spreading. Next, the main strategies for social response are spreading best practices related to respect for children and consideration for caregivers, overcoming child exclusion by expanding open spaces for all age groups, and fostering children through linkage with child-friendly city and women-friendly city creation projects. It was presented as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and preparing differentiated measures to respect and consider children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space. As a way to create a social foundation, it was proposed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ge and strengthen relief measures, and to enact the “Basic Children’s Act”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unification of child-friendly business-related businesses and to identify policy tasks to expand child-friendly businesses. Lastly, detailed tasks regarding active measures for respect and consideration of children were presented for each type of public space.

Keyword: social exclusion of children, children’s rights,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diagnosis of children

부록 1. 설문조사표: 일반국민 대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24년도 기본과제「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의 일환으로 일반국민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 및 아동권리,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식당, 카페, 미술관 등)에서 어린 아동(초등학생 이하)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그 경험과 요구를 추가로 질문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귀하의 생각이나 경험을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응답자 확인 사항>

SQ1. [할당]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현재 기준으로 만 연령을 응답함.

- ① 20~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④ 50~59세
- ⑤ 60세 이상

SQ2. [할당] 귀하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 ① 서울
- ② 인천/경기
- ③ 대전/세종/충청
- ④ 광주/전라
- ⑤ 대구/경북
- ⑥ 부산/울산/경남
- ⑦ 강원/제주

SQ3. 귀하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 지역에 속합니까?

- ① 농어촌(읍면) 지역
- ② 중소도시 지역(특례시, 세종시 포함)
- ③ 대도시(광역시) 지역

SQ4. [할당]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SQ5. [할당] 귀하는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 ① 자녀 없음 **☞ 문1으로 이동**
- ② 자녀 있음 **☞ SQ5-1로 이동**

SQ5-1.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SQ52 (SQ5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막내 자녀는 만 나이 기준으로 몇 세입니까?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어린 자녀(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함.

- ① 영아(35개월 까지)
- ② 유아(36개월~미취학)
- ③ 초등 저학년(1~3학년)
- ④ 초등 고학년(4~6학년)
- ⑤ 중고등학생 자녀
- ⑥ 성인 자녀

SQ53. (SQ5-1 응답으로 자동코딩) 막내 자녀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① 첫째 자녀 ② 둘째 자녀
- ③ 셋째 자녀 ④ 넷째 자녀
- ⑤ 다섯째 자녀 이상

1.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문 1~3번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용성, 아동권리 존중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아동에 관한 다음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동의 여부	
		예	아니오
		①	②
1	아동은 미숙하므로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	①	②
2	아동은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②
3	아동은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①	②
4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격을 지니고 있다	①	②

2. 귀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서 영유아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는 초등학교 취학전 만0~5세의 아동을 말합니다.

구분		수용 여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1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①	②
2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문제행동(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는 등)을 하는 상황	①	②
3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기질, 질병, 발달 장애 등)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	①	②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3.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동의 정도	동의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녀온 이후에 친구와 놀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학원 등 부모의 판단에 의한 활동을 요구한다					
	아동의 일상에 대한 선택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의 지시는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집 앞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집 근처의 놀이터가 줄어들 예정이다.					
	아동에게는 놀 장소가 필요하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이 놀 장소는 다른 데도 있으므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급식에 포함된 음식으로 인해 아동의 몸이 갑자기 간지러워졌다					
	집단생활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는 대체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집단생활에서는 모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II.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인식

※ 문 4~5번은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포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4.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일반적으로 ~ 사람은 ~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동의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이웃 등)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평소에 교류(대면, 전화, 인터넷 등)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평소에 다음 항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나는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문 6~8번은 아동 차별 인식과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6. 귀하가 보시기에 **우리 사회**는 다음 이유로 인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심각한 정도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3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6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등)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7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보시기에 **우리 사회**는 다음의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비하, 조롱, 모욕 등 적대적 표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심각한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2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어머니)에 대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아동을 동반한 남성 양육자(아버지)에 대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맘스홀릭베이비, 네이트판 등)에서 아동이나 양육자 등에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8-1. 귀하는 다음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전혀 공감/이해 할 수 없다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된다/이해가 간다
		①	②	③
1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주린이, 쌤린이, 골린이 등)	①	②	③
2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①	②	③
3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 (진상부모 등)	①	②	③

8-2. 귀하는 다음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절대 사용하지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하는 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1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주린이, 쌤린이, 골린이 등)	①	②	③
2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①	②	③
3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 (진상부모 등)	①	②	③

※ 문 9~11-2번은 가정이나 일터 이외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를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9-1. 귀하는 각 상황별로 어떻다고 느끼거나 생각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문제 행동을 할 때 아버보다 엄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다음은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를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9-2. 귀하가 보시기에 **우리 사회**는 각 항목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우리 사회는 아동이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문제행동을 할 때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경험 여부	
		예	아니오
		①	②
1	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		
2	나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다		
3	나는 아동에 대한 혐오 표현(잼민이 등)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함)		

11. 귀하는 다음 장소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아동(응답자 본인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는 제외) 이용객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불편을 경험한 장소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 ① 식당/음식점
- ② 카페
- ③ 도서관
- ④ 대중교통
- ⑤ (대형)마트 / 시장 / (대형)쇼핑몰/ 백화점

- ⑥ 영화관
- ⑦ 놀이공원 / 유원지
- ⑧ 놀이터 / (근린)공원
- ⑨ 관공서(시청, 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 ⑩ 박물관 / 미술관
- ⑪ 숙박시설(캠핑장 포함)
- ⑫ 기타()

11-1. [로직] 문 11번에서 선택한 항목만 응답]

문 11번에서 아동 및 양육자로 인해 불편하였다면 구체적인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소별로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불편사항
1	식당 / 음식점	
2	카페	
3	도서관	
4	대중교통	
5	(대형)마트 / 시장 / (대형)쇼핑몰 / 백화점	
6	영화관	
7	놀이공원 / 유원지	
8	놀이터 / (근린)공원	
9	관공서(시청, 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10	박물관 / 미술관	
11	숙박시설(캠핑장 포함)	
12	기타()	

※ 문 12~13-1번은 노키즈존(아동 출입금지 및 이용 제한)의 이용 경험과 도입 배경 등 원인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2-1. 귀하는 '노키즈존'에 대해 알고있습니까?

- ① 알고 있음 ⇨ 문 12-2번으로 이동
- ② 들어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함 ⇨ 문 12-3번으로
- ③ 모름(들어본 적 없음) ⇨ 문 12-3번으로

12-2. 귀하는 '노키즈존'인 곳을 이용해본 적 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해본 적 있음
- ② 이용해본 적 없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12-3. 귀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노키즈존이란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장소(식당, 카페 등)를 말합니다.

구분		동의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키즈존은 고객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노키즈존에 대한 경함(어디라는 이유로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함)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6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4. 귀하는 **노키즈존의 등장**은 다음 항목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노키즈존이란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장소(식당, 카페 등)를 말합니다.

노키즈존의 등장은 ~		관련성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과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영업 이익을 중요시하는 업주(식당, 카페 등)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권리 보장(조용한 분위기 추구 등)과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다른 특성을 지닌 타인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키즈존이란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장소(식당, 카페 등)를 말합니다.
- ① 노키즈존은 필요하다
 - ② 일부 공간은 노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예: 테라스 등)
 - ③ 노키즈존은 없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Ⅲ. 아동 및 양육자의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경험과 개선요구

[로직] SQ5-2에서 ①, ②, ③, ④번에 응답한 경우만 제시(초등학생 이하 자녀 양육가구)

※ 이하 질문(문 14~21)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 **문 14~15번은** 양육자의 부모 역량과 양육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14. 귀하는 평소에 자녀를 훈육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② 별로 어렵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어렵다
 - ⑤ 매우 어렵다
15. 귀하께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를 이용할 때 자녀를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다음 항목의 해당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구분		해당 여부	
		예	아니오
		①	②
1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		
3	자녀에게 평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엄격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공공장소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 **문 16-21-1번**은 가정이나 일터 이외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아동 및 양육자의 경험과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6-1.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다음의 각 장소에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최근 1년내 불편했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①	②
1	식당 / 음식점	①	②
2	카페	①	②
3	도서관	①	②
4	대중교통	①	②
5	(대형)마트/시장/(대형)쇼핑몰/백화점	①	②
6	영화관	①	②
7	놀이공원/유원지	①	②
8	놀이터/(근린)공원	①	②
9	관공서(시청, 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①	②
10	박물관/미술관	①	②
11	숙박시설(캠핑장 포함)	①	②
12	기타()	①	②

귀하께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하였다면, 구체적인 불편 사항은 무엇입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불편 사항
1	[로직]문 16-1의 1,2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식당 / 음식점 , 카페	
2	[로직]문 16-1의 7,8,11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놀이공원/유원지, 놀이터/(근린)공원, 숙박시설(캠핑장 포함)	
3	[로직]문 16-1의 3,6,10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미술관	

4	[로직]문 16-1의 4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대중교통	
5	[로직]문 16-1의 5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대형)마트/시장/(대형)쇼핑몰/백화점	
6	[로직]문 16-1의 9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관공서(시청,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7	[로직]문 16-1의 12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기타()	

<보기>	
①	나이가 어리다고 자녀의 출입이 금지됨
②	자녀의 출입은 허용되나, 일부 공간에서는 이용이 제한됨
③	아이를 위한 편의용품, 시설, 설비(예시: 식기 및 의자, 아동용 변기, 세면대 발 디딤대, 유아차 비치 공간 부재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④	아이가 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음
⑤	아이를 위한 식단 등(어린이 메뉴, 맵기 조절 등 포함) 아이를 배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⑥	아이에게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됨
⑦	다른 고객과 아이의 행동으로 언쟁이나 갈등을 경험함
⑧	업주(또는 운영자, 관리자)로부터 아이의 행동(소란스럽거나, 뛰어다니는 등)을 제재 당하거나 요구 받음
⑨	욕설 등 적대감이 드는 표현(비하, 조롱, 모욕 등 적대적 표현)을 들음
	☞ 문 16-3번으로
⑩	기타(구체적으로:)

16.3. [로직] 문 16-2번에서 ⑩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만 제시
문 16-1-1번에서 응답한 적대감이 들게 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적대감을 느낀 표현	
1	
2	
3	
4	
5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16-4.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할 때, 출입/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봐 이용/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최근 1년내 방문을 포기했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1	식당 / 음식점	①	②
2	카페	①	②
3	도서관	①	②
4	대중교통	①	②
5	(대형)마트/시장/(대형)쇼핑몰/백화점	①	②
6	영화관	①	②
7	놀이공원/유원지	①	②
8	놀이터(근린)공원	①	②
9	관공서(시청, 동사무소 등), 은행, 병원	①	②
10	박물관/미술관	①	②
11	숙박시설(캠핑장 포함)	①	②
12	기타()	①	②

17.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와 동반하여 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십니까?

- ① 대부분 확인한다
- ②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확인한다
- ③ 확인하지 않는다

18-1. 귀하는 다음의 OO존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들어보았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들어본 적 없음)
			문 19번	문 19번
		①	②	③
1	오케이키즈존 (아동을 위한 식기와 의자 등 편의용품이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아이를 환영한다고 안내함)	①	②	③
2	웰컴키즈존	①	②	③

	(아이의 가게 출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안내함)			
3	케어키즈존 (아이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안내함)	①	②	③
4	노페어런츠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함)	①	②	③

- 18-2. 귀하는 다음의 OO존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이용 경험	
		이용해본 적 있음	이용해본 적 없음
		①	②
1	오케이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	①	②
2	케어키즈존 또는 노페어런츠존	①	②

[로직] 문 18-2번에서 1번 항목에 대해 보기 ①번에 응답한 경우

- 18-3. 오케이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도움 받은 내용을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로직] 문 18-2번에서 2번 항목에 대해 보기 ①번에 응답한 경우

케어키즈존 또는 노페어런츠존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도움 받은 내용을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도움 받은 내용
1	오케이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	
2	케어키즈존 또는 노페어런츠존	

<보기>

- ① 아이를 동반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됨
- ②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식기 및 의자, 세면대 앞 발디딤대, 아동용 변기 등)이 구비되어 편리함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 ③ 아이를 환대하는 분위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반응해 주는 등)가 느껴짐
- ④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리함
- ⑤ 아이를 위한 메뉴가 있거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함
- ⑥ 아이에게 위험한 설비가 없이 안전함
- ⑦ 아이를 위한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받음(예시: 풍선, 왕관 등)
- ⑧ 아이의 놀 거리(또는 프로그램)를 제공 받음(예시: 대기 시간 동안 색칠 키트 등 제공)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9. 다음은 **우리 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우리 사회는 ~ 분위기이다)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아동을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 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서 다음 항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경험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	나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①	②
2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①	②
3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①	②
4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시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5	나는 자녀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 사회적으로 배려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21. 귀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를 자녀와 함께 편하게 이용하려면 다음 조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생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필요도				
		낮음 ①	← ②	③	→ ④	높음 ⑤
1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을 위한 조치(별도 메뉴, 별도 프로그램, 놀이 공간 조성 등)를 별도로 마련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자녀와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안내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업주 또는 시설 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모서리 보호대 등)를 강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업소나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오케이키즈존, 웰컴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1. 문 21번 이외에 귀하께서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를 자녀와 함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모두 작성해주시오.

어린 자녀와 공공장소 또는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1	
2	
3	
4	
5	

V.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대응 요구

22. 귀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양육자에 대한 다음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동의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면, 아동이 공휴일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귀하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서 아동이나 양육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사회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말합니다.

구분		중요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이용 제한) 조치하도록 허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 한다	①	②	③	④	⑤

V. 응답자 특성

※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농림어업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② 자영업/개인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④ 생산/기능/노무직 <input type="checkbox"/> ⑤ 사무/관리/전문직 <input type="checkbox"/> ⑥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⑦ 학생 <input type="checkbox"/> ⑧ 은퇴 <input type="checkbox"/> ⑨ 무직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DQ2 결혼 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비혼 <input type="checkbox"/> ② 기혼(사실혼 포함) ☞ DQ2-1로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이혼
DQ2-1. 맞벌이 가구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부와 모가 모두(한부모 가구는 부 또는 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임. ※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포함됨. <input type="checkbox"/> ② 홀벌이 가구 <input type="checkbox"/> ③ 모두 근로 안함
DQ3 가구소득 (※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	<input type="checkbox"/> ① 2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201만원~3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301만원~4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401만원~5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⑤ 501만원~6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⑥ 601만원~7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⑦ 701만원~8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⑧ 801만원 이상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공공장소의 자녀 동반 시 어려움과 개선요구 조사

- 면담조사 질문지(부모용) -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심층면담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출입금지 또는 이용제한, 그리고 이용 시 불편을 경험하는 내용(논치가 보이는 등 이용 기피 포함)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 면담 참여자 정보

→ 조사업체 작성

구분(그룹)	자녀 연령	응답자 정보(총 9인)	
		번호	참여자 이름
1그룹 (영아자녀 가구)	막내자녀 기준, 만 연령 표기 → <u>자녀 연령: 만() 세</u> ※ 0~11개월은 0세로 표기	1	
		2	
		3	
2그룹 (유아자녀 가구)	막내자녀 기준, 만 연령 표기 → <u>자녀 연령: 만() 세</u>	4	
		5	
		6	
3그룹 (초등저학년자녀 가구)	막내자녀 기준 만 연령 표기 → <u>자녀 연령: 만() 세</u>	7	
		8	
		9	

※ 응답자 일반적 특징(스크리닝 및 할당 질문 반영)

→ 조사업체 작성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 공공장소의 자녀 동반 시 어려움과 개선요구 조사

- 조사내용: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아동 배제 및 차별 경험과 개선요구
- 소요 시간 및 진행 방식: 약 90분/집단면담(그룹: 영아/유아/초등저학년 자녀)
- ※ 사전협조: 개인정보 제공(사례비 지급)/면담내용의 녹취 및 보고서 활용

1. 응답자 특성 / 양육 실태 전반(참여자 확인)
1) 귀하의 자녀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합니까? - 자녀 특성: 막내자녀 자녀 연령 및 출생순위, 총 자녀수 -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참여자 직업 - 거주 지역
2)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u>한국사회의 분위기/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u> 어려움을 언급해주시시오. - 우리 사회의 분위기 또는 (지역사회) 환경은 양육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닌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언급해주시시오. - 우리 사회는 아동을 존중하거나 환대하는 분위기가 또는 환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닌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언급해주시시오. - 우리 사회는 양육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또는 환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닌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언급해주시시오.
3) 귀하는 아동친화적/양육친화적 문화와 분위기의 조성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양육자의 입장에서 그 중요도를 전반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 - 양육비용(현금지원), 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 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과 비교하여 그 중요도가 어떠한지 언급해주시시오.

2.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 배제 및 차별의 경험과 양육의 어려움
<p>1) 귀하는 우리 사회는 어린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양육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온라인 상의 인식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양육자 일반/양육자 남성/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어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 자녀를 동반한 남성 양육자/여성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p>※ 공공의 장소 및 공간: 식당/카페, 놀이공원/유원지/공원/숙박시설(캠핑장 포함),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마트/식당/백화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관공서(주민센터 등)/병원/은행 등</p> <p>- 이상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양육자로서의 감정이나 기분은 어떠합니까?</p>
<p>2)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다음의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유아 식기 등 아동 편의시설 미비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경우) 공공의 장소 및 유형별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언급해주시시오. <p>※ 공공의 장소 및 공간: 식당/카페, 놀이공원/유원지/공원/숙박시설(캠핑장 포함),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마트/식당/백화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관공서(주민센터 등)/병원/은행 등</p> <p>2)-1. 위의 2-1)번 장소 또는 공간 이외에 불편함을 경험한 곳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공간/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p>3)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할 때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로부터 비난, 모욕, 적대감을 느끼거나 혐오표현을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온라인 상의 경험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공간/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p>이런 경우 양육자로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드십니까?</p>
<p>4)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자녀와 동반하여 이용하면서 업주 또는 운영자/다른 고객들의 불만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공간/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p>5) 귀하는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 자녀 동반 시에 배제 또는 차별이 우려되어 외출을 포기하거나 또는 평소에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태블릿, 간식 준비 등)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여부 / 출산 및 양육에 미치는 효과
1) 귀하는 노키즈존(No-Kids-Zone)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귀하는 노키즈존의 등장 및 확산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 귀하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 귀하는 노키즈존의 확산이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1.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양육자로서 노키즈존의 확산이 우려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자녀 동반 시 훈육의 어려움/자녀와의 상호작용
1) 귀하는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어려움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어려움이 없는 경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동반 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훈육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
2) 귀하가 보시기에 다음의 사항은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 자녀 동반 시에 자녀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 육아로 인한 우울감/양육스트레스 - 통제하기 힘든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 -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평소에 부모로서 잘해주지 못해서 등) - 양육 기술의 부족 2)-1. 위의 4-2)번의 항목 이외에 자녀의 훈육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귀하가 보시기에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양육자로서 필요한 태도 또는 유의사항 등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한 부모 대상의 공지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5.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자녀 동반 이용 시 도움 받은 내용 / 개선요구

1) 귀하는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 자녀 동반 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장소 및 공간의 유형별로 도움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

2) 귀하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알고 들어보거나 또는 직접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오케이존/웰컴키즈존
 - 케어키즈존/노페어런츠존

구분	주요내용
오케이키즈존	아동을 위한 식기와 의자 등 편의용품이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아이를 환영한다고 안내함
웰컴키즈존	아이의 가게 출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안내함
케어키즈존	아이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안내함
노페어런츠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함

- (알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양육자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직접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 귀하는 자녀와 함께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하 항목으로 구분하여 언급해주시시오.
 -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 (장소 및 시설의) 업주 또는 운영자
 - 아동 또는 부모

4) 귀하는 자녀와 함께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하 항목의 필요도 및 이유를 언급해주시시오.

구분		필요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을 위한 조치(별도 메뉴, 별도 프로그램, 놀이 공간 조성 등)를 별도로 마련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자녀와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안내 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4	업주 또는 시설 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모서리 보호대 등)를 강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업소나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오케이 키즈존, 웰컴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 위의 5-4)번의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5) 귀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기 위해 아동이나 양육자의 태도나 유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청년용

공공장소의 아동 배제와 사회적 대응 관련 인식 조사 - 면담조사 질문지(청년층) -
<p>안녕하세요?</p> <p>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p> <p>이번 심층면담은 청년층(20~30대)을 대상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의 어린 자녀(초등학생 이하)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대응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책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p>

※ 면담 참여자 정보

→ 조사업체 작성

구분	응답자 정보(총 8인)		
	번호	참여자 이름	연령(만 나이)
1그룹 (청년층 여성)	1		
	2		
	3		
	4		
2그룹 (청년층 남성)	5		
	6		
	7		
	8		

※ 응답자 일반적 특징(스크리닝 및 할당 질문 반영)

→ 조사업체 작성

심층면담 질문지(청년층)

: 공공장소의 아동 배제와 사회적 대응 관련 인식 조사

- 조사내용: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대응
- 소요 시간 및 진행 방식: 약 100분/집단면담(그룹: 여성/남성)
 - ※ 사전협조: 개인정보 제공(사례비 지급)/면담내용의 녹취 및 보고서 활용

1. 응답자 특성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귀하의 자녀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합니까?

- 연령
- 결혼 및 자녀 유무
- 노키즈존 찬성/반대
- 취업 현황/가구 형태(동거인 여부)

※ 나의 인식: 사전응답 처리

2) 귀하가 보시기에 “**우리 사회는**” 어린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양육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온라인 상의 인식 포함)

- 어린 아동에 대한 인식: 긍정/부정 인식

구분		동의 여부	
		예	아니오
1	아동은 미숙하므로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	①	②
2	아동은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②
3	아동은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①	②
4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격을 지니고 있다	①	②

- 양육자 일반/양육자 남성/여성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인식 여부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어린 아동에 대한 인식: 기피 또는 불편함 인식 여부와 이유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 자녀를 동반한 남성 양육자/여성 양육자에 인식
 - : 기피 또는 불편함 인식 여부와 이유

구분		동의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면, 아동이 공공예절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공공의 장소 및 공간: 식당/카페, 놀이공원/유원지/공원/숙박시설(캠핑장 포함),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마트/식당/백화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관공서(주민센터 등)/병원/은행 등

3) 귀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영유아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이해하기 힘든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이해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분		수용 여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1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①	②
2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문제행동(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는 등)을 하는 상황	①	②
3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기질, 질병, 발달 장애 등)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	①	②

2.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이용 경험/필요성 여부

1) 귀하는 노키즈존(No-Kids-Zone)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귀하는 노키즈존이 왜 등장하였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등장 배경을 아동, 양육자, 업주, 고객으로 구분하여 각각 응답해주시시오.
 (예시) 아동: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등 예절을 지키지 않음
 부모: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을 못하는 또는 하지 않음
 업주: 영업을 더 이익을 중요시하여 어린 아동을 배려하는 않음
 고객: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거나 나와 다른 타인을 포용하지 않음

3) 귀하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분	동의 정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키즈존은 고객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노키즈존에 대한 경험(어리다는 이유로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6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노키즈존의 확산은 귀하의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 노키즈존 이외 공공장소의 어린 아동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 함께 이용을 기피하거나 불편할 것으로 우려되십니까?
 - (기피하거나 불편이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피하거나 불편이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어린 자녀 또는 자녀 동반 양육자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3)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자녀 동반 양육자와 소란스러운 등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공간/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4) 귀하는 온라인 상 등에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다음의 혐오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용해도 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구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하는 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1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주린이, 잼린이, 골린이 등)	①	②	③
2 임미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①	②	③
3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 (진상부모 등)	①	②	③

4.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아동 배제 및 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응

1) 귀하는 식당 등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어울려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구분	중요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이용 제한) 조치하도록 허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보시기에 다음의 사항은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 자녀 동반 시에 자녀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해 또는 수용이 되십니까?

- 육아로 인한 우울감/양육스트레스
- 통제하기 힘든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
-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평소에 부모로서 잘해주지 못해서 등)
- 양육 기술의 부족

2)-1. 위의 4-2)-1번 이외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귀하가 보시기에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어린 아동이나 양육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사회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동의를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중요도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이용 제한) 조치하도록 허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위의 문 4-3)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5. 아동 배제의 영향 요인 / 개선 필요사항

1) 귀하는 다음의 항목이 어린 아동을 기피하거나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의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일반적으로 ~ 사람은 ~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관련성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이웃 등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평소에 교류(대면, 전화, 인터넷 등)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어린 아동(초등학생 이하 자녀)과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하 항목으로 구분하여 언급해주세요.
 -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아동 및 양육자 이외 다른 이용자 또는 고객)
 - (장소 및 시설의) 업주 또는 운영자
 - 아동/부모

3) 귀하는 아동친화적/양육친화적 문화와 분위기의 조성이 귀하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양육비용(현금지원), 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 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과 비교하여 그 중요도가 어떠한지 언급해주세요.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 공무원용

아동친화 공공장소 지원 정책과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4년 기본과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의 일환으로, 공공의 시설이나 기관을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관련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 사례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조사 항목

본 조사의 목적은 공공의 장소 및 시설에서 어린 아동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없이 다른 성인 등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정책 추진 현황, 추진 시 애로사항, 중앙정부 지원요구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언론 등에서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어린이 패스트트랙
- ※ 서울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맛집
- ※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사업

이하 조사항목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면 연구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조사 항목]

- I.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 II.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 III. 사업 추진의 어려움/개선과제/추진 계획
- IV. 지원요구(중앙정부 차원의 역할, 사업 확산의 고려사항)

◎ 필수 작성: 이하 란에 지역명/사업명/추진 년도 작성

※ 유관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명과 추진 시기를 작성함.

지역명	사업명	추진 년도(연도)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정책과 요구 조사(공무원용)

※ 이하 질문 마다 하단의 <답변> 란에 구체적인 응답을 작성해주시시오.
응답내용이 별도로 없는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 란에 '응답내용 없음'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해당 지역별로 이하 사업에 관하여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어린이 패스트트랙
- 서울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맛집
- 부산 동래구: 월کم키즈존 사업

I.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 귀 지역에서 아동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식당 등 포함)를 방문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추진 배경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답변>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사업 목적이 변경된 경우는 도입 당시의 목적을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추진 배경
1	
2	
3	
2) 사업 도입이나 추진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거나 또는 반영한 지역의 특성(인구구성, 물리적 환경 등)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① 예	☞ 문 I-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II-2번으로 이동

2)-2. **(위의 문 I-2-1)-①번에 응답한 경우)** 사업 추진과제에서 반영된 지역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지역 특성을 아하 <답변>란에 추가로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사업 추진에 반영된 지역 특성
1	
2	
3	

2. 추진 경과

1) 귀 지역에서 아동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식당 등 포함)를 방문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사업의 목적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확장 또는 축소되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 ① 예 ☞ 문 I-2-1)-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II-2번으로 이동

1)-1. **(위의 문 I-2-1)-①번에 응답한 경우)**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확장(또는 축소)되었다면, 변경된 목적과 변경 사유를 이하 <답변>란에 추가로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변경된 사업 목적	변경 사유
1		
2		
3		

III. 사업 추진 시 어려움과 개선과제 및 향후 계획	
1.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p>1) 귀 지역에서 아동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식당 등 포함)를 방문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사업 내실화 또는 확장 과정의 어려움을 이하 <답변> 란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p>	
구분	사업 수행의 어려움
1	
2	
3	
<p>2) 귀 지역에서 아동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식당 등 포함)를 방문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사업의 개선과제는 무엇입니까? ※ 개선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답변>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p>	
구분	개선과제
1	
2	
3	
<p>3) 위의 문 1)번과 2)번에서 응답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p>	

- ① 있다 ⇨ 문 III-1-3)-1번으로 이동
- ② 없다 ⇨ 문 III-2번으로 이동

3)-1. (위의 문 III-1-3)-①번에 응답한 경우) 중앙정부에 요구되는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지원요구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중앙정부 지원요구사항
1	
2	
3	

2. 향후 추진 계획

1) 귀 지역에서 아동이 존중받고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공공장소 및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 ① 있다 ⇨ 문 III-2-1)-1번으로 이동
- ② 없다 ⇨ 문 IV번으로 이동

1)-1 (위의 문 III-2-1)-①번에 응답한 경우) 향후 추진하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향후 추진 계획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답변>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향후 추진 계획
1	
2	
3	

IV. 지원요구	
1.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 필요사항	
<p>귀하가 보시기에 아동 존중 및 육아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정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어린 아동 및 양육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p> <p>※ 해당 역할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주시요.</p> <p>⇒ <답변></p>	
구분	중앙정부의 역할
1	
2	
3	
2. 전국적 확산을 위한 요건 또는 고려사항	
<p>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동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식당 등 포함)를 방문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사업 요건이나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p> <p>※ 사업 추진의 경험을 반영하여 타 지역의 신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요건이나 사전 고려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p> <p>※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주시요.</p> <p>⇒ <답변></p>	
구분	전국적 사업 확산을 위한 요건 또는 고려사항
1	
2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공무원용〉

서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동이 존중받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담 번호: 운영자 () 번 (※ 응답자는 기입하지 않음)

Q1. 소속기관명 /담당부서명	소속기관명	
	담당부서명	
Q2. 재직 기관	()년	

♫ 고견에 감사합니다 ♫

부록 5. 사례조사 질문지: 운영자용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현황과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24년 기본과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의 일환으로 공공의 장소 및 시설을 아동과 양육자를 배려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관련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 사례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조사 항목

본 조사의 목적은 공공의 장소 및 시설에서 어린 아동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없이 성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설비 또는 용품 등을 구비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례를 선정하여 아동을 배려하는 운영사항, 운영 시 어려움, 정부 지원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 기관이나 시설은 언론 등에서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조사항목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면 연구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조사 항목]

- I. 아동친화 운영의 배경 및 목적
- II. 아동친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의 주요내용
- III. 아동친화 운영의 어려움과 요구
- IV. 개선과제 / 향후 추진 계획

- ※ 이하 질문 마다 하단의 <답변> 란에 구체적인 응답을 작성해주시시오.
응답할 내용이 별도로 없는 질문의 경우는 <답변> 란에 '응답내용 없음'으로 작성해주시시오.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현황과 요구 조사(운영자용)

I. 아동친화 운영의 배경 및 목적		
1. 아동친화 시설 운영 및 공간 조성의 배경과 도입 시기		
<p>1)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아동(및 양육자)을 배려하여 운영하게 된 <u>배경이나 계기는 무엇입니까?</u> ※ 아동친화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p> <p>⇒ <답변></p>		
구분	아동친화 시설 운영의 배경	
1		
2		
3		
<p>2) 귀 기관이나 시설을 아동(및 양육자)을 배려하여 <u>운영하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u> ※ 구체적인 도입 시기(년도)를 이하 <답변> 란에 작성해주시고, 운영사항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다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p> <p>⇒ <답변></p>		
구분	도입 시기(년도) ※ 작성 예시: 2021년 부터	해당 년도의 운영상 특징 ※ 작성 예시: 운영자의 변경에 따른 도입
1		
2		

3		
2. 아동친화 시설 운영 및 공간 조성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귀 기관 또는 시설에서 아동(및 양육자)을 배려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답변>		
2) 귀 기관 또는 시설을 아동(및 양육자)을 배려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아동친화 운영사항에 따라 기대효과가 다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고, 전반적인 기대효과로 판단되는 경우는 “기대효과”만 작성해주시요. ⇒ <답변>		
	아동친화 운영관리의 기대효과	
구분	아동친화 운영관리 사항 ※ 작성 예시: 유아 식기 비치	기대효과
1		
2		
3		
II. 아동친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의 주요내용		
1. 아동친화 시설 또는 업소 지정 여부		
1)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현재 일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과거에 노키즈존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① 현재 일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 ⇨ 문 1)-①번으로 이동 ② 과거에 노키즈존을 운영한 적이 있다 ⇨ 문 1)-2번으로 이동 ③ 노키즈존을 운영한 적이 없다		

<p>1)-1. (위의 문 II-1-1)-①번에 응답한 경우 현재 일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답변></p>
<p>1)-2. (위의 문 II-1-1)-②번에 응답한 경우 과거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답변></p>
<p>2) 귀 기관이나 시설은 정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아동친화 시설 또는 업소(오케이키즈존 등)에 해당 합니까?</p> <p>(해당 번호 표기: _____)</p> <p>① 예 ⇨ 문 2)-1, 2)-2번, 2)-3번으로 이동</p> <p>② 아니오 ⇨ 문 II-2번으로 이동</p>
<p>2)-1. (위의 문 II-1-2)-①번에 응답한 경우 공식적으로 지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p> <p>⇒ <답변></p>
<p>2)-2. (위의 문 II-1-2)-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문 2)번의 지정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p> <p>⇒ <답변></p>
<p>2)-3. (위의 문 II-1-2)-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문 2)번의 지정으로 운영상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p> <p>※ 도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답변> 란에 '도움 되는 내용 없음'으로 표기합니다.</p> <p>⇒ <답변></p>

3)-1. (위의 문 II-2-3)-①번에 응답한 경우 공식적으로 지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답변>

Ⅲ. 아동친화 운영의 어려움과 요구

1. 아동친화 운영 시 애로사항

1)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① 있다 ☞ 문 1)-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문 2)번으로 이동

1)-1. **(위의 문 III-1-1)-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갈등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갈등 상황별로 구분하여 대응 또는 해결 방안을 작성해주시시오.
 ※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면 ‘해결 방안’란에 ‘해결되지 않음’으로 표기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갈등 상황 또는 분쟁 내용	해결 방안
1		
2		
3		

2)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아동(및 양육자)을 배려하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① 있다 ☞ 문 2)-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문 3)번으로 이동

2)-1. **(위의 문 III-1-2)-①번에 응답한 경우** 아동친화 운영에 따른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어려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아동친화 운영에 따른 어려움
1	
2	
3	

2)-2. 위의 문 2)-1번에서 응답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 ① 있다 ⇨ 문 2)-2-1번으로 이동
- ② 없다 ⇨ 문 3)번으로 이동

2)-2-1. (위의 문 III-1-2-2-①번에 응답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정부지원의 필요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아동친화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1	
2	
3	

2. 아동친화 운영의 확산 또는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1) 귀하가 보시기에 귀 기관이나 시설을 아동과 양육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음 대상의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1) 아동 2) 양육자 3) 다른 시설의 운영자 또는 업주 4) 다른 이용자 또는 고객으로 구분하여 노력해야 하는 내용(인식 개선, 태도 등 포함)을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번호	대상	노력이 필요한 사항
1	아동(초등학생 이하)	
2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	
3	시설의 운영자/업소의 업주	
4	다른 이용자 또는 고객	

2)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아동을 배려하여 운영하기 위해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입니까?

※ 정부지원요구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아동친화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1	
2	
3	

IV. 개선과제 / 향후 추진 계획	
1. 아동친화 운영의 개선과제	
<p>1)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아동(및 양육자)을 배려하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p> <p>① 있다 ⇨ 문 1)-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문 IV-2번으로 이동</p>	
<p>1)-1. (위의 문 IV-1-1)-①번에 응답한 경우)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주시요.</p> <p>⇒ <답변></p>	
구분	아동친화 운영을 위한 추가 개선과제
1	
2	
3	
2. 향후 추진 계획	
<p>1) 귀 기관이나 시설에서 아동친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p> <p>① 있다 ⇨ 문 1)-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문 IV-2번으로 이동</p>	
<p>1)-1. (위의 문 IV-1-1)-1)-①번에 응답한 경우)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해당 계획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번호를 구분하여 이하 란에 모두 작성해주시요.</p> <p>⇒ <답변></p>	

구분	향후 추진 계획
1	
2	
3	
<p>2) 귀하가 보시기에 공공장소 및 시설을 아동(및 양육자)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내용 등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오, ⇒ <답변></p>	
구분	아동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
1	
2	
3	

<운영자용>
 서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동이 존중받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담 번호: 운영자 () 번 (**※ 응답자는 기입하지 않음**)

Q1. 기관 또는 시설명 /공공장소 유형	기관/시설명	
	공공장소 유형	※ 작성 예시: 공공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식당, 카페, 숙박업소,
Q2. 설립 또는 개소 년도	() 년도	
Q3. 규모	최대 이용 및 수용 인원	() 명 ※ 별도 인원 제약이 없는 경우는 “제약 없음”으로 표기함
	면적/층수	() 평형 / () 층
Q4. 기관 또는 시설의 특성	설립 유형 (번호 표기)	() 번 ※ 이하 중 해당 번호 표기함 ① 공공기관 ② 개인사업자 ③ 법인 ④ 기타(구체적으로)
	물리적 환경 (설비 등)	※ 작성 예시: 복합시설
	운영관리	※ 작성 예시: 아동친화 복합공간 운영
Q5. 소재지 특성	※ 농산어촌 지역 여부 표기함(예시: 농산어촌 지역임)	
Q6. 소재지	() 광역시 / () 시도 () 시군구 ※ 작성 예시: 부산광역시 / 동래구	

쇼 고견에 감사합니다 쇼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6 650947

ISBN 979-11-6865-094-7